

발 간 등 록 번 호

11-142100-000001-10

www.mss.go.kr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Ⅱ 유관기관 편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CONTENTS

제1편

유관기관(금융기관)

제1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4
1-1 ①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4
1-1 ② 투융자복합금융	18
1-1 ③ 신성장기반자금	20
1-1 ④ 재도약지원자금	23
1-1 ⑤ 긴급경영안정자금	26
1-1 ⑥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9
1-2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31
1-3 수출바우처	32
1-4 수출인큐베이터	35
1-5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37
1-6 글로벌협력기반구축	39
1-7 융복합기술교류촉진(해외기술교류)	40
1-8 융복합기술교류촉진(국내기술교류)	42
1-9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44
1-10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46
1-11 기술사관 육성사업	50
1-12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52
1-13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54
1-14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56
1-15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 사업	58
1-16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60
1-17 연수사업	62
1-18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64
1-19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66
1-20 창업성공패키지(스타트업 Si기술인력 양성)	68
1-21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기술개발)	70
1-22 중소기업기술사업화 역량강화	72

	1-23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75
	1-24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77
	1-25 진로제시 컨설팅 80
	1-26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82
	1-27 내일채움공제 85
	1-28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87
	1-29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89
제2부 신용보증기금	
	2-1 신용보증 92
	2-2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96
	2-3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98
	2-4 보증연계투자 100
	2-5 투자옵션부보증 103
	2-6 유동화회사보증 106
	2-7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110
	2-8 매출채권보험 112
	2-9 잡매칭(Job Matching) 115
	2-10 컨설팅 116
	2-1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118
	2-12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120
	2-13 녹색보증 122
	2-14 문화산업완성보증 125
제3부 기술보증기금	
	3-1 2022년 보증지원계획(총괄) 130
	3-2 기술보증 131
	3-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134
	3-4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137
	3-5 일자리창출 지원 프로그램(굿잡보증 등) 140
	3-6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143
	3-7 혁신성장산업 및 제4차 산업혁명 지원 제도 146
	3-8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 149
	3-9 클린플러스 보증 152
	3-10 원클릭보증 155

CONTENTS

3-11 문화산업완성보증	157
3-12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160
3-13 기후환경보증	162
3-14 신재생에너지보증	163
3-15 R&D 보증	166
3-16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169
3-17 지식재산(IP) 평가보증	172
3-18 기술평가	175
3-19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177
3-20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179
3-21 지식재산공제사업(舊 특허공제사업)	181
3-22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183
3-23 기술신탁관리	185
3-24 기술임치	187
3-25 TTRS(증거지킴이)	189
3-26 보증연계투자	191
3-27 벤처투자연계보증	193
3-28 엔젤투자연계보증	195
3-29 VC투자매칭특별보증	198
3-30 벤처확인평가	201
3-31 이노비즈(Inno-Biz) 인증평가	204

제4부 기업은행

4-1 2022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208
4-2 스마트동산 담보대출	209
4-3 IP사업화자금대출	210
4-4 IBK강소기업대출	212
4-5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213
4-6 IBK문화콘텐츠대출	214
4-7 IBK시설투자대출	216
4-8 IBK토지분양협약대출	217
4-9 중기부 R&D 사업화자금대출	218

제5부 한국수출입은행

5-1 2022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220
 5-2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221
 5-3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223
 5-4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224
 5-5 기술금융 프로그램 225
 5-6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227
 5-7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228
 5-8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협력대출) 230
 5-9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232
 5-10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234
 5-11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236
 5-12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238
 5-13 해외사업금융 240
 5-14 수입금융(수입자금) 243
 5-15 이행성보증 245
 5-16 무역금융(수출관련) 247
 5-17 해외온렌딩 249

제6부 한국산업은행

6-1 온렌딩대출 254

**제7부 한국무역보험
공사**

7-1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258
 7-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260
 7-3 수출신용보증(매입) 261
 7-4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262
 7-5 단기수출보험 263
 7-6 중소중견Plus+보험 266
 7-7 환변동보험 267
 7-8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글로벌공급망) 270
 7-9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272

CONTENTS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제1부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1-1 R&D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278
1-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280
1-3 창업성장기술개발	283
1-4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285
1-5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287
1-6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289
1-7 산학연Collabo R&D	292
1-8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	295
1-9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298
1-10 성과공유형 공동기술개발	300
1-11 그린뉴딜유망기업100(R&D, 사업화)	302
1-12 중소기업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22년 신규)	305
1-13 중소기업Net-Zero기술혁신개발('22년 신규)	307
1-14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	309
1-15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311
1-16 공정품질기술개발	313
1-17 스마트서비스ICT솔루션개발	315
1-18 제조데이터공동활용플랫폼기술개발	317
1-19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22년 신규)	319
1-20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22년 신규)	321
1-21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	323
1-22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325
1-23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327
1-24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329
1-25 중소기업R&D역량제고	331
1-26 지역특화산업육성	334
1-27 지역특화산업육성+(R&D)	338
1-28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R&D	340

	1-29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342
	1-30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	345
	1-31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지원사업	347
	1-32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349
제2부 중소기업 진흥공단	2-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	352
	2-2 사업조정제도	356
	2-3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	359
	2-4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361
	2-5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363
	2-6 수출컨소시엄 사업	365
	2-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367
	2-8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369
	2-9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 사업	370
	2-10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371
	2-1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	375
	2-12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제도	378
	2-13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제도	380
	2-14 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제도	382
	2-15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	384
	2-16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삼성전자) ..	386
	2-17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포스코) ..	388
	2-18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390
	2-19 중소기업 승계 세무 자문 프로그램	391
	2-20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392
	2-21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운영	394
	2-22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396
제3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3-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401
	3-2 상권정보시스템	404
	3-3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舊 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이버평생교육원)	407

CONTENTS

3-4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409
3-5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411
3-6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413
3-7	경험형 스마트마켓	416
3-8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417
3-9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419
3-10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421
3-11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424
3-12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426
3-13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428
3-14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429
3-15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	430
3-16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431
3-17	온라인 판로지원	432
3-18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434
3-19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437
3-20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439
3-21	희망리턴패키지	441
3-2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443
3-23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445
3-24	소공인특화자금	447
3-25	성장촉진자금	449
3-26	일반경영안정자금	451
3-27	청년고용연계자금	453
3-28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455
3-29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457
3-30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460
3-31	시장경영패키지지원	462
3-32	온누리상품권 발행	465
3-33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467
3-34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471
3-35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사업)	475

	3-36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478
	3-37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안전점검 481
	3-38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483
제4부 대한상공회의소	
	4-1 코참경영상담센터 494
	4-2 계약서 검토 서비스 496
	4-3 제조물배상책임(PL) 단체보험 497
	4-4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498
제5부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5-1 해외진출 및 인증 상담 502
	5-2 이동 KOTRA 504
	5-3 해외시장조사 506
	5-4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508
	5-5 수출상담회 509
	5-6 무역사절단 510
	5-7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512
	5-8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514
	5-9 한국우수상품전 515
	5-1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517
	5-11 디지털 마케팅(buyKOREA) 518
	5-12 코로나19 대응 화상상담 519
	5-13 K-스튜디오 활용 디지털 마케팅 사업 521
	5-14 수출바우처사업 523
	5-15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526
	5-16 지사화사업 528
	5-17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530
	5-18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533
	5-19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진입 지원 사업 536
	5-20 크라우드펀딩/오픈마켓 연계 혁신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사업 538
	5-21 CES 혁신상 수상 지원 540
	5-22 KOTRA 글로벌점프300 542
	5-23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544

CONTENTS

5-24 ICT 글로벌멘토링센터	546
5-25 ICT기업 해외수출지원(K-Global@)	548
5-26 해외IT지원센터	549
5-27 GMV (Global Mobile Vision)	551
5-28 ICT컨소시엄 수출지원	552
5-29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	554
5-30 스마트팜 해외진출 지원	555
5-31 서비스 BM 사업	556
5-32 에듀테크 해외진출 지원	557
5-33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지원	558
5-34 콘텐츠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559
5-35 서비스 해외거점 지원	560
5-36 서비스 온라인 수출대전(K-Service Digital)	561
5-37 한류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562
5-38 방산물자 교역지원	563
5-39 해외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565
5-40 해상풍력 글로벌 파트너십 사업	566
5-41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	567
5-42 해외경제정보드림(해드림)	568
5-43 KOTRA 해외시장뉴스	569
5-44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570
5-45 경제외교 활용포털	571
5-46 FTA해외활용지원센터	572
5-47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574
5-48 수출인큐베이터	576
5-49 해외 GP센터(Korea GP Center)	578
5-50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	580
5-51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581
5-52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582
5-53 해외지식재산권 보호(IP-DESK)	583
5-54 국내복귀기업 지원	586
5-55 글로벌 M&A 지원사업	588

	5-56 KOTRA 글로벌 ESG + 사업	590
	5-57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 사업	592
	5-58 KOTRA아카데미 교육·연수	593
	5-59 열린무역관	595
	5-60 경제외교 활용 사업	596
제6부 한국무역협회		
	6-1 포춘 500대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598
	6-2 스타트업 해외 실증 테스트베드	599
	6-3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운영	601
	6-4 tradeKorea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 ...	602
	6-5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603
	6-6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사업	606
	6-7 TradeSOS 무역애로건의 종합지원시스템	608
	6-8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609
	6-9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610
	6-10 KITA 해외 바이어 초청 화상수출상담회	612
	6-11 O2O 전시·화상 수출상담회	613
	6-12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매칭 수출 상담회	614
	6-13 대기업 전문무역상사 네트워크 활용 해외시장 개척 지원	616
	6-14 국내 전문 전시회 개최	617
	6-15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618
	6-16 디지털 무역상담 플랫폼 TradePro	620
	6-17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621
	6-18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발급	623
	6-19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627
	6-20 용역 및 전자적 무채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629
	6-21 국내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630
	6-22 무역센터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632
	6-23 스타트업 브랜치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633
	6-24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634
	6-25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636

CONTENTS

제7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7-1 기업간 거래공정화	638
7-2 성과공유제	643
7-3 상생누리 플랫폼 운영	645
7-4 상생결제제도	647
7-5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649
7-6 기술보호 현장자문	652
7-7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654
7-8 기술보호지원반	655
7-9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지원	656
7-10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657
7-11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증제(신규)	659
7-12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시범)	660
7-13 기술자료 임치제도	661
7-14 기술보호 역량강화	663

제8부 창업진흥원

8-1 예비창업패키지	666
8-2 초기창업패키지	668
8-3 창업도약패키지	670
8-4 재도전성공패키지	673
8-5 민간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TIPS)	675
8-6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678
8-7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680
8-8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682
8-9 혁신분야 창업패키지(BIG3)	684
8-10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686
8-11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688
8-12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690
8-13 메이커 스페이스	692
8-14 창조경제혁신센터	695
8-15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697
8-16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699
8-17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701
8-18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703

	8-19 창업존 운영	705
	8-20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707
	8-21 청소년 비즈쿨	709
	8-22 창업에듀	710
	8-23 실전창업교육	711
	8-24 창업기업 확인(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712
	8-25 도전! K-스타트업	714
	8-26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715
	8-27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717
	8-28 창업지원포털(K-Startup)	719
제9부 기 타		
	9-1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722
	9-2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724
	9-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726
	9-4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728
	9-5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730
	9-6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732
	9-7 고용창출장려금(신종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733
	9-8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734
	9-9 고령자 고용지원금('22년 신설 시행)	736
	9-1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738
	9-11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743
	9-12 소규모 사업장 건강 디딤돌 사업	747
	9-13 근로복지기금지원	749
	9-1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51
	9-15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753
	9-16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755
	9-17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759
	9-18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760
	9-19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관광벤처사업 공모전) ..	763
	9-20 관광 중소기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	765
	9-21 액셀러레이터 연계 관광기업 육성 지원	767
	9-22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768

CONTENTS

9-23	관광플러스 팁스	771
9-24	관광선도기업 글로벌 육성 지원	772
9-25	관광기업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	773
9-26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775
9-27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778
9-28	문화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자유공모-단비)	780
9-29	문화산업완성보증	782
9-30	스포츠 창업 지원	785
9-31	스포츠 중소기업 성장 지원	786
9-32	스포츠 선도기업 육성 지원	789
9-33	IP제품혁신 지원(舊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791
9-34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794
9-35	국제 지적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796
9-36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사업	798
9-37	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800
9-38	전경련경영자문단 경영자문	802
9-39	경영닥터제	803
9-40	중소기업 경영진단	804
9-41	맞춤형 교육	805
9-42	중장년 전직 지원	806
9-43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808
9-44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810
9-45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812
9-46	ICT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지원	814
9-47	ICT영세·중소기업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지원	816
9-48	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 서비스	817

제1편

유관기관(금융기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1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정책자금지원 공통사항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용자대상 및 절차, 용자제한기업, 용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다음의 중점지원분야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 중점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그린분야, 비대면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 용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용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용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용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용자한도

- 개별기업당 용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용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의 경우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사회적경제기업 등 정책지원 목적성이 높은 분야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정책자금 대출업체 중 대출전월 대비,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한 인원에 대해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시 1인당 최대 0.2%p
 - * 12개월 유지시 1인당 0.1%p, 24개월 유지시 인당 0.1%p 추가환급
 -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대출전월 대비 6개월 후 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 시 고용 실적 인정 가능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업체 중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 0.3%p
 -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10만불 이상 달성
 -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 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단, 브랜드K인증기업은 수출성공 및 향상기업 기준 50% 완화
- 금리우대(고용, 수출)는 1년간 한시적용(고용은 최대 2년)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중진공 수납 기준) 범위 이내 지원
 - * 투융자복합금융 및 고정금리 자금, 금리우대 자금, 연체, 휴·폐업 업체 등은 이자환급 불가

용자방식

- 중진공에서 용자신청·접수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 보증서 담보는 재정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정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용자절차

- 용자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용자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자금상담→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예약 및 자금상담(신청서 제출 포함)이 필요
 -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 월 조정 가능
 - * (온라인신청예약)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방문 및 비대면 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고용창출, 수출 및 시설투자 기업 등은 우선 지원)
 -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용자신청
 -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표준진단, 종합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용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용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용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용자약정 체결 후 대출
 - *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다만,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 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 대출자금의 용도와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용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 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 용자제한기업**
- ① 휴·폐업중인 기업
 -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④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용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 단,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⑤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용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용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⑥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⑦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⑧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 적용 예외 >**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용자 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⑨ 증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인 기업은 예외)
- 증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⑩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 적용 예외 >**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에서 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⑪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은 적용 예외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⑫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및 실적산정 예외)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 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신규지원 및 실적산정 예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용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⑬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기에 한하여 적용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은 산정 예외)

⑭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및 실적산정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BIG3 혁신성장 지원기업
 - (신규지원 예외)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기업 지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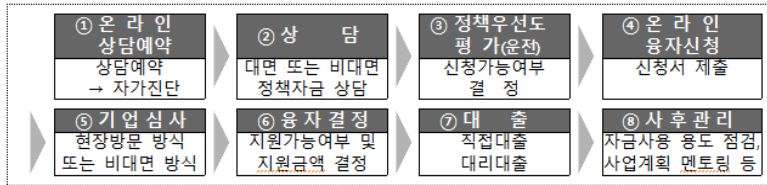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 기준으로 운영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처리절차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용자 절차 운영

- ① 온라인 상담예약 : 신청 희망기업은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일자를 예약하고 신청대상 여부 등을 자가진단

* 신청 희망기업은 사전에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상담예약 생략 가능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제한

- ② 상담 :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한 기업은 해당 지역본(지)부와 용자신청 가능성 등을 상담

* 대면상담은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며, 비대면 상담 대상기업은 유무선 통화로 상담

- ③ 정책우선도 평가 : 중진공은 상담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 평가'(운전자금)를 통해 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정책우선도 평가는 그린분야, 혁신성장분야, 지역주력산업,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등을 고려하여 평가

- ④ 온라인 용자신청 :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은 보증서 취급 가능)

- ⑤ 기업심사 :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를 수행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필요 시 별도 평가기준 운영)
* (기업진단) 기업애로 분석 및 해법을 제시하고 자금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상황 등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수행 여부 결정

- ⑥ 용자결정 :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용자 여부를 결정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성공패키지 포함)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 ⑦ 대출 :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용자하는 방식
- (대리대출)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용자하는 방식
* 대리대출 가능 기관(16개) :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씨티,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기업, 산업,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⑧ 사후관리 :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 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용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점검

지원규모

- 중소기업 정책자금 : 5조 600억원
- * 혁신창업사업화자금(2조 3,0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1,2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4,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16,2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4,2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2,000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2019년 6월 창업하여 자동차 부품용 스프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생산 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요?

A. 창업하신지 7년 미만이라면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의 시설자금을 신청하세요. 연간 최대 60억원 이내에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올해 가정용 세제를 개발해 특허를 받고 미국 FDA로부터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품 생산과 마케팅 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A. 특허가 있으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세요. 개발제품 사업화에 소요되는 설비구입 용도의 시설자금과 원자재 구입, 마케팅비 등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Q. 지난 1995년 회사를 설립한 실린더 밸브 전문기업입니다. 최근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합니다.

A. 7년 이상 된 기업이 시설투자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은 ‘신성장기반자금’입니다. 시설도입 후 초기 가동비도 지원합니다.

Q. 고해상도 후드 적외선 카메라를 생산하여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업체와 수출거래 중 추가로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제품 생산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A. 수출실적이 있으나 생산비용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Q. 2009년부터 컴퓨터 프레스와 판금 사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오다가 2013년 이후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여 전기온풍기 업종 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경우 업종추가, 업종전환, 품목 추가 시 '사업전환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Q. 지난해 공장을 인수하면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 정책자금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Q. 정책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추가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기업 당 지원횟수를 최근 5년 내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 보증,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누적 100억원을 초과한다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Q. 신청 및 평가절차가 궁금합니다. 은행을 통해서도 용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 본·지부로 신청을 하시면 지원대상 및 요건 확인 후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진공 직접대출 외에도 자금 종류에 따라 주거래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도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용자잔액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기금

대출금리와 국고채 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하며,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의 이자율을 말함

변동금리 :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대위변제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

대지급 : 은행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업자가 기일 내에 지급을 불이행하였을 때 지급보증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화의 :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것

기업회생신청 :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과거 법정관리)

청산절차 : 회사가 합병·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용자제한 부채비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지원 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서 최근년도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가장 평균한 2~3배의 값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 직접대출은 중소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에 대해 중진공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한 후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 대리대출은 중진공이 정책자금을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함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예비사회적기업(지역 조례·규칙, 부처별 지침),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수출향상기업 : 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한 기업

1-1 ①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업력 7년미만 창업 중소기업 지원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지원대상

- 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로 구분
 - (창업기반지원)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 창업기반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청년전용창업자금 >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 유형의 경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

- 대표자가 대기업·중견기업·정부출연연구소 경력보유자,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비대면분야창업자금 >

- 비대면 분야를 영위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일자리창출촉진)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기업

■ 일자리 유지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좋은 일자리 강소기업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 **인재육성**
 -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 근로시간 단축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
-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 시·도교육청 추천 우수 선도기업

- (개발기술사업화)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 ④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⑥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술
- ⑧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⑨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 ⑩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 ⑪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응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 범위 : 사업장(공장) 内の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지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및 사업장 확보를 위한 임차보증금
 -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 하는데 필요한 비용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청년전용창업자금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연간 30억원 이내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연간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융자방식

-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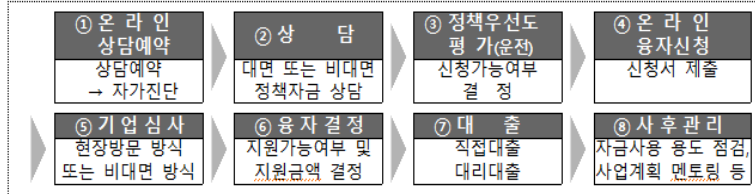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처리절차



지원규모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2조 3,000억원
* 2021년 11월말 신청기업 13,251개사 중 11,296개사 2조 5,500억원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 ②

투융자복합금융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 단계 진입을 도모

지원대상

-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크고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스케일업금융 :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으로 회사채를 발행하여 직접 금융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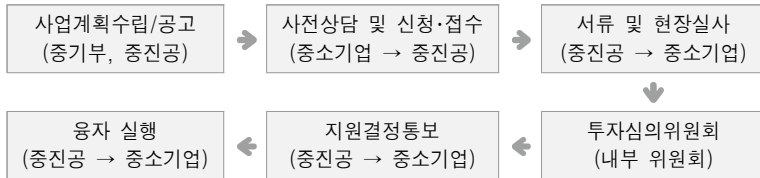
지원내용

- 용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방식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대출기간 내 기업의 상장(IPO)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증진공이 주식 전환 여부 결정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증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스케일업금융) : 3년 이내(회사채 종류, 기업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금리, 한도 차등)
 - * 용자조건, 신청·접수, 처리절차 등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 참고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 혁신형기업 소재·부품 영위기업 등은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지원규모

- 투융자복합금융 : 1,200억원
 - * 2021년 11월말 신청기업 296개사 중 164개사 1,400억원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 :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상환전환우선주(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 인수합병 시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

1-1 ③

신성장기반자금

업력 7년이상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지원대상**
- 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로 구분 지원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협동화 >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 * '용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 * '용자제한기업' ⑧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산업경쟁력강화 >

- 한중FTA 지원업종(참고15)을 영위하는 업력 7년 이상인 중소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물·대기 관리, 환경정화 등 그린분야(참고2)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국내 복귀기업은 '용자제한기업' ⑧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물·대기 관리, 환경정화 등 그린분야(참고2)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응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 범위 : 사업장(공장) 内の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협동화자금은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및 부지 조성공사 용도 지원 가능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및 사업장 확보를 위한 임차보증금
 -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서비스산업(참고7) ■ 사회적경제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 사업전환 성공기업(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	--

* 혁신성장지원자금(산업경쟁력강화)은 운전자금 별도 지원 불가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단, 협동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협동화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협동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협동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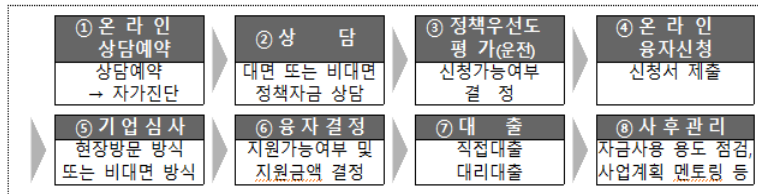
- 응답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응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 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사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처리절차



- 지원규모**
- 신성장기반자금 : 1조 6,200억원
 - * 2021년 11월말 신청기업 2,869개사 중 2,622개사 1조 7,675억원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 ④

재도약지원자금

중소기업의 재도약 성공을 지원

신사업개척과 무역피해 극복, 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정상화를 도모하고, 재창업업을 통한 재기지원 등 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도약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지 원 요 건
사업 전환 자금	① 업력 3년 이상, 상시종업인수 5인 이상으로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③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구조 개선 자금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추진기업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②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추진기업 ④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및 종결 후 3년 내 기업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판정된 기업 ⑥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몰납 법인 ⑦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 한 기업
재창업 자금	재창업 예정이거나 재창업 후 7년 미만인 기업 중 ① 사업실패로 인한 저신용상태 혹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자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 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할 것 ④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실패기업 폐업을 완료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실패 개인기업의 대표이거나 실패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폐업한 실패기업이 매출실적 보유(단,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전환) 사업전환계획승인탈락일 또는 승인취소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업체
- ▶ (재창업)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한 기업인 등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사업 전환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 기업당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5년 포함 *무역조정자금 - 2%고정금리
구조 개선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5년, 거치 2년 포함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 2.5%고정금리,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
재창업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4년 포함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 (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상담예약, 상담 후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공통) 시장전망, 기술성, 사업성, 상환능력 등을 평가
- ▶ (초기재창업자) 재창업준비의 충실성, 재기노력도 등을 심의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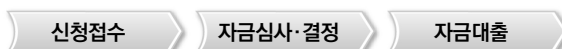
- (공통) 용자신청서
(사업전환) 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서, (재창업) 폐업사실증명원

처리절차

- 사업전환자금



- 구조개선자금



● 재창업자금



* 초기재창업자(예비 및 업력 1년미만)는 심의위원회를 통한 별도 절차로 처리

지원규모

- 재도약지원자금 : 4,200억원

* 2021년 11월말 신청기업 1,299개사 중 1,111개사 2,500억원 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재도약정책과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재도약성장처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kosmes.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A

Q.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과 사업전환자금 신청은 별개인가요?

A. 네, 별개입니다. 사업전환자금은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전환계획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재창업예정자입니다. 아직 사업자등록 전인데 지원이 되나요?

A. 네, 예비재창업자도 신청은 가능하며 심의위원회 평가절차를 통해 지원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출은 사업자등록 후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경영위기 기업 대상 구조개선을 통한 정상화자원을 위해, 중진공이 채권은행과 협업하여 '기업구조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신규자금, 채무조정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워크아웃제도보다 선제적이고 기업중심적인 구조개선·재도약을 지원하는 '21년 신규사업입니다.

1-1 ⑤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 지원

재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지원대상

● 재해중소기업지원 및 일시적경영애로지원으로 구분

- (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용자제한기업’ ①항(휴·폐업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③항(부채비율초과 기업) 적용 예외 (단, ①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다음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용자제한기업’ ③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은 ‘용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③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④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① 경영애로 사유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피해 ■ 대형사고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보호무역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5) ■ 일본수출규제 관련 피해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이란제재 피해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 애로기업으로 6개월 내 원자재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제조 중소기업 ■ 물류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영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비 상승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직접 수출(계약)중소기업(최근 1년 내 직수출 실적 또는 6개월 내 체결한 수출계약서 보유) 및 국제물류추진업 영위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 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한국GM(군산·창원공장) 협력기업
-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
- 對이란제재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물류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③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용자범위

- 운전자금
 - (재해중소기업지원)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 (원자재 수급안정자금) 사지원금액의 50%이상 원자재 구매(6개월 후 세금계산서, 수입신고 필증 등 제출 필요)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 재해중소기업지원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 물류비 안정지원 자금 : 연간 3억원 이내

용자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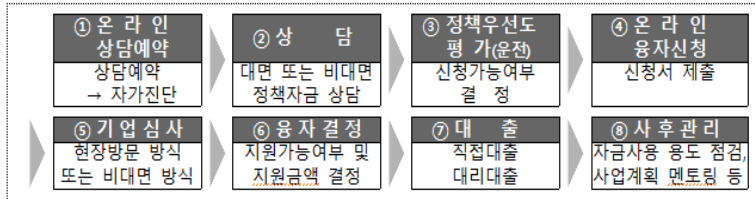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처리절차



- 지원규모**
- 긴급경영안정자금 : 2,000억원
 - * 2021년 11월말 신청기업 5,276개사 중 5,007개사 8,000억원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 ⑥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글로벌 기업화 촉진 지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 설비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

지원대상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최근1년) 중소기업

- 수출 초보기업 : 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디지털수출기업화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실적 보유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 (수출글로벌기업화)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최근1년) 중소기업

- 수출 유망기업 :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신산업 영위기업 :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BIG3 신산업분야 영위기업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지원내용

- 용자범위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 용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 해외진출 스타트업은 5천만원 이내
 - * 브랜드K 선정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예약 → 자금 상담 → 융자 신청서 제출 → 신청결과 통보 및 접수 → 기업 평가 → 융자결정 → 대출실행

- 지원규모**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4,000억원
 - * 2021년 11월말 신청기업 2,514개사 중 2,380개사 5,000억원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 기간 또는 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이 지원가능하며,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Q. 수출실적 확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최근 1년간 직접·간접 수출실적 합계로 판단하며,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에서 수출실적 증명원 발급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간접수출 : 제조업자가 자국내에 있는 무역상사를 통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

1-2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매출채권 활용 유동성 공급 지원

중소기업의 보유자산인 매출채권을 인수하여 판매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상환청구를 구매기업에게만 실시하여 연쇄부도 방지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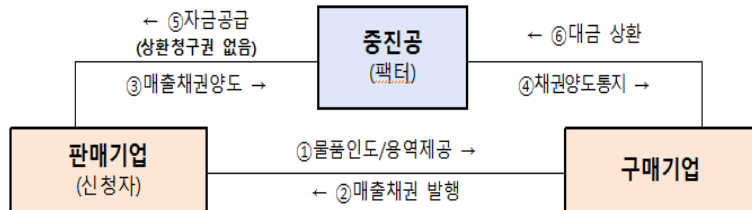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방식 : 중소기업 보유 매출채권 양수 및 회수

● 지원기간 : 60~90일

* 상품 판매기업이 받은 지급기일 60~90일 내외의 매출채권 양수 후 구매기업에 대금 회수

● 지원한도 : 기업당 연간기준 10억원

● 처리절차



신청·접수 ● 추후 별도 공고 예정('22년 3월 중)

문의처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3

수출바우처

수출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최대 지원금 한도 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매출액 10억원 미만) 70%, (매출액 10~50억원 미만) 60%, (매출액 50억원 이상) 50%
물류전용바우처는 일괄 70% 보조

세부사업명	예산 (백만원)	지원규모 (개사)	지원 대상	지원한도 (백만원)
내수기업	24,670	990	전년도 직접수출 '0'인 내수 중소기업	30
수출초보기업	23,000	950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30
수출유망기업	20,000	555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50
수출성장기업	17,000	330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80
수출강소기업	11,000	300	전년도 직접수출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포함)	100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11,860	847	국제운송비(해상 및 항공 등) 지원 희망 중소기업	14

* 신청현황에 따라 지원기업 수 및 배정예산 조정 가능

** 지원한도는 정부보조금 지원한도를 의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기업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 동일한 수출단계(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법인
- ▶ 사행산업 등 국민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차·항락, 건강유해 등)

지원내용

-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시 필요한 마케팅서비스를 패키지식(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지원영역	지원항목
디자인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각종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종이/전자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BI·CI 등
홍보동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조사/일반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국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통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역량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해외규격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특허/지재권/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AEO인증 획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 AEO인증 획득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 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 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환보험 등
홍보/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및 사후 정산,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브랜드 개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지원영역	지원항목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전시회/상담회/세미나/설명회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 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의료기기 제품설명회 등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국제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 및 항공) 및 보험료(국내 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정산제외)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성장바우처에 수출강소트랙 신설, 혁신바우처는 폐지하여 수출 성장단계로 단일화
 - * 혁신바우처 트랙 폐지에 따라 舊 혁신바우처 트랙 대상기업에 가점 신설
 - * 중진공과 지방청만 운영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재편하여 일원화 관리
- ▶ 수출두드림사업 참여기업 우대지원
 - * 수출가능성이 높은 수출유망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수출 두드림기업'이 사업신청시 우선선정 우대

신청·접수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처리절차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수출마케팅활동

지원규모

- 3,125개사 내외(예산 956.7억원)
 - * '21년 지원현황(12월 기준) : 총 3,941개사 지원(본예산 1063억원, 추경 109억원)

문의처

- 수출바우처지원센터 : 055-752-8580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4

수출인큐베이터

해외 사무공간 제공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BI를 설치·운영*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조기 정착을 돕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 (12개국 20개소) 시카고, LA., 워싱턴 D.C, 뉴욕, 베이징, 상하이, 시안, 충칭, 광저우, 호치민, 하노이, 프랑크푸르트, 도쿄, 방콕, 양곤, 멕시코시티, 산티아고, 두바이, 알마티, 모스크바

지원대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 (업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건설업, 주류·담배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보건업 등
- ▶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실질적 기업주 포함)

- 지원내용**
- 임차료의 80%(2차년도 50%) 지원
 - 사무공간(12~20㎡),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 전용선 제공
 - 현지 시장정보, 마케팅·법률·회계 등 자문 및 컨설팅
 - 특성화·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출 현지화 지원
 - 공유오피스를 통한 단기 출장 지원, 현지 파견직원의 행정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지역본지부가 발굴 및 추천한 기업에게 수출BI 사전입주제인 Pre-BI 자격을 부여하여 현지 특성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 및 지자체 협업사업 확대 추진
- * ('21년 지원내용) ①정보제공, ②바이어 발굴, ③멘토링, ④O2O 상담회, ⑤홍보 등)

신청·접수

- 연중 수시 신청·접수
 - (입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고, 제출 서류에 대해 우편 접수
- *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중진공 글로벌사업처 수출인큐베이터 담당자 앞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경영평가, 진출준비도, 해외시장성, 일자리창출도 평가 등
- ▶ (우대사항) 수출유망중소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지사화사업 참여 기업, 코트라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진공 Family 기업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055-751-9685, 967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지원사업-수출인큐베이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유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공유오피스는 예비창업자 등 중소벤처기업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시 사무공간, 상담실 등을 소정의 실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Q. 독립실의 사용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A. 입주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입주 활동 실적에 따라 최대 4년(연장 2년) 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연장을 신청하시면 입주 활동의 적극성, 입주 후 수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용어설명

공유오피스 중소벤처기업이 수출 활동을 위하여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지역에 중·단기 출장 시, 수출인큐베이터 내 공용 사무공간 지원

1-5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창업생태계 안착 지원

KSC를 중심으로 유망스타트업의 현지 창업생태계 안착을 지원하고, 현지 창업 네트워크 발굴·강화로 양국 창업생태계 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 (거점형) 시애틀, 뉴델리, 스톡홀름, 싱가포르, (프로그램형) 텔아비브, 헬싱키, 파리

지원대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창업 7년 이내)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업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건설업, 주류·담배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보건업 등
- ▶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실질적 기업주 포함)

지원내용 ● 해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단기) 현지 산업관계자 미팅 및 시장조사를 통한 태핑기회 제공
- (정규) 6-10주간 현지 비즈니스 매칭, 현지진출전략 멘토링, 글로벌 대기업과의 meetup 등으로 구성된 현지 프로그램 참가 및 기업 지원금 지원

- 사무공간 임차료 지원(100%, 최대 2년)
- 법률·회계·마케팅 컨설턴트의 자문
- 법인설립, 투자유치, 현지협업체계구축 등 현지진출 지원
- 공유오피스를 통한 단기 출장 지원

신청·접수 ● 연중 수시 신청·접수

- K-스타트업센터 통합플랫폼 (<http://www.k-startupcenter.org>)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우편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창업자 전문성, 창업 준비도, 해외창업 경쟁력 등
- ▶ (우대사항) 현지 특화업종 영위기업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055-751-9682, 9676)

K-스타트업센터 통합플랫폼 (<http://www.k-startupcenter.org>)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거점형과 프로그램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프로그램형은 해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만 수행하는 KSC이고, 거점형은 엑셀러레이팅뿐만 아니라 입주공간, 법인설립, 법률·회계·마케팅 컨설턴트의 자문 등의 후속지원을 포함하는 KSC입니다.

Q. 단기와 정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단기는 KSC 국가로의 본격적인 진출 이전에 현지 창업생태계 안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비즈니스 매칭 위주의 시장 태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규는 단기프로그램 참가기업 중 현지진출 경쟁력이 있는 소수 기업을 선발, 집중 지원하는 현지안착 프로그램입니다.

용어설명

엑셀러레이팅 :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창업 노하우, 시장 접근법, 투자유치를 위한 IR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1-6

글로벌협력기반구축

글로벌협력을 통한 해외진출지원

외국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네트워크 구축·협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

지원대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 분야별지원내용

분 야	내 용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해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기반 구축 해외 협력파트너 알선 (합작투자 및 전략적 제휴 등) 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지진출 및 현지 정착 지원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APEC 역내 회원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 역내 진출지원 APEC 역내 중소기업 현장에 경영·기술전문가를 파견하여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우리 중소기업과 APEC 역내 중소기업 간 비즈니스상담회 지원

신청·접수 ● 세미나, 상담회 등 개별행사는 일정확정시 ‘중진공 및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www.kosmes.or.kr, www.gobizkorea.co.kr)의 ‘공지사항’ 및 ‘수출지원/마케팅’을 통해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692, 9688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APEC중소기업혁신센터 APEC 역내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역내 진출지원을 위한 센터로서,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참석, 컨퍼런스 및 매칭상담회 개최, 회원국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을 추진하고 있음

1-7

융복합기술교류촉진(해외기술교류)

국내 우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신남방, 신북방 국가와의 정부간 협력을 통해, 한국의 기술을 이전받기 원하는 현지 기업과 해외로 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을 발굴하여 매칭 하는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여 기술교류가 가능한 중소벤처기업 중,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 * (기술수출유형) 라이선싱, 합작투자, OEM생산, 설비이전, 기술영업, 제조공정이전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수출금지 품목 및 기술을 신청하는 기업
-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원내용

- 기술교류단 파견 기회 제공
 - 통역비, 현지 이동차량비, 기술교류상담장 등 수출활동 지원
 - 현지기업발굴 및 매칭, 기업별 전담코디네이터를 통한 현지기업과의 협상 중재 지원
- 국내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한 전문가 진단비용 지원
- 현지 기업과의 교류성과달성 가능 시, 별도 검토를 통한 현지 이동차량 및 통역, 계약서 법률자문 등 상시교류 지원
- 기술교류플랫폼(www.G-Tep.or.kr)구축 및 운영을 통해 기술교류사업 참여기업의 기술DB구축 및 국내외 기업간 상시교류 지원
- 한국정부와 현지정부간 협력(G2G)을 위해 현지 정부기관에 기술교류 센터 설치를 통한 기술교류지원
 - (개소) 이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카자흐스탄, 중국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온라인상담회 형식으로 진행 중이며, 상황에 따라 현지 기술교류단 파견방식으로도 추진 가능

신청·접수

- [공급기술등록 및 진단]
 - 해외기술교류 온라인 플랫폼(G-TEP)에 접속하여 공급기술 등록
 - www.g-tep.or.kr 접속 및 로그인 → PMS클릭 → 공급기술등록
 - 기술사업화 코드를 통한 공급기술 진단
- [정기 기술교류 신청]
 - 공급기술이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각 수행기관별, 국가별 모집시기에 따라 정기 기술교류 신청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계량 및 비계량 평가 진행
 - * 경영안정성, 기술성, 고용, 수출 등 계량 및 사업추진여건, 수출가능성, 시장성 등 비계량 평가 병행

문의처

- 해외기술교류 홈페이지(www.g-tep.or.kr)
- 중진공 글로벌사업처 : 055-751-9687, 9678
- 이노비즈협회 : 031-628-9625, 9697
- 기정원 : 044-300-0613

Q&A

Q. 현지 기술교류상담회 참여시 항공, 숙박비도 지원해 주나요?

A. 아닙니다. 현지기업 발굴 및 매칭, 기술소개서 영문번역, 현지통역, 현지 상담장 및 차량임차 등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항공료, 숙박비는 기업 자부담입니다.

응어설명

공급기술 :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기업에 기술이전 하고자 하는 기술

수요기술 : 해외 현지기업이 국내기업에게 기술이전 받고자 하는 기술

1-8

융복합기술교류촉진(국내기술교류)

산학연 기술교류 및 협력 촉진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 교류·협력 인프라를 조성하여, 산업생태계 중심 R&D 및 인적교류 기반의 기술혁신을 촉진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산학연 기술교류 및 R&D 역량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원내용

-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연구기관·대학과 기술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운영
 - * 기술상담, R&D역량강화교육, 기술교류회, R&D멘토링, R&D연계 등
- 기술분야별 네트워크
 - 포럼·세미나, IR·피칭, 협력R&D 발굴·기획, 정책제안 등 네트워크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율 구성·운영
 - <참고> '21년 네트워크 분야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스마트제조, 스마트서비스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코로나19로 인해 기술교류회 등을 온라인으로 추진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교류회도 추진 가능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 홈페이지를 통해 멤버십기업 가입 후 기술교류프로그램 참여
 - www.bridge.smtech.go.kr
- [기술분야별 네트워크]
 - 각 네트워크별 지원기관에 기술교류 프로그램 참여 신청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 044-300-0630.0632, 031-739-6910,6911
- 기술분야별 네트워크 : 044-300-0610.0611

Q&A

Q.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기술교류프로그램 참여는 무료인가요?

A. 맞습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의 ‘멤버십기업’ 가입부터 모든 프로그램 (기술상담, R&D역량강화교육, 기술교류회, R&D멘토링, R&D연계 등)은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온라인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및 자사 쇼핑몰을 활용한 판매지원, 공동물류, 온라인전시관 운영 등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을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및 대표자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가능

지원내용 ● 온라인수출 활성화

- ① (쇼핑몰 활용 판매) 아마존 등 글로벌 쇼핑몰 판매 촉진을 위한 교육, 입점지원,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수출지원
 - ② (자사몰활용 판매)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자사 쇼핑몰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기술, 마케팅 등 지원
- 물류 및 인프라 구축
- ① (공동물류 지원) 아마존 등 글로벌 쇼핑몰 판매 촉진을 위한 교육, 입점지원,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수출지원
 - ② (온라인수출 인프라) 온라인 수출 저변확대를 위한 온라인전시회 운영,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자사몰 지원규모 확대 및 미디어커머스 지원사업 추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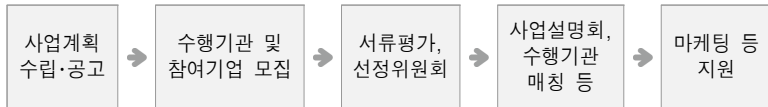
신청·접수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해 신청 및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공통 : 상품의 시장 경쟁력(수출품목 시장성, 해외배송 적합여부), 수출준비도(해외 규격인증 획득 여부, 현지어 포장) 등
- ▶ 공동물류 : 주요 수출국, 역직구 쇼핑몰 사이트 보유 여부, 월평균 배송물량, 이용 희망 물류사 등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기업(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5,807개사 내외(367억원)

- 문의처**
- 고비즈코리아 : kr.gobizkorea.com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 www.mss.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사업을 신청하고 싶으면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A.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사업 신청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kr.gobizkorea.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10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중소기업과 구직자간 일자리 매칭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희망 구직자에게 직무교육, 현장코칭(실습), 취업컨설팅을 지원하여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하여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지원대상

- 청년 등 중소기업 구직자 일자리 매칭
 - (지원기업) 구인애로 중소기업
 - (지원인력) 청년(만 34세 이하), 중년, 장년 구직자 등
-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 (지원기업) 대·중견기업 사업단과 협력 중소기업 컨소시엄 참여
 - (지원인력)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 (지원기업) 소재·부품 장비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예정)기업 등 구인애로 중소기업(150개사 내외)
 - (지원인력) 해당 직무경력 1년 이상 실업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300명 내외)
-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 사업
 - (지원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200개사 내외)
 - (지원인력) 스마트공장 취업희망 구직자(300명 내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 향락, 부동산 투기 등)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청년 등 중소기업 구직자 일자리 매칭
 - 직무교육, 취업컨설팅, 취업지원서비스(AI모의면접, 인적성검사 등), 취업연계
-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 대기업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구직자에게 맞춤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대기업(중견기업) 협력사에 취업연계 지원
 -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 교육생 훈련수당 지원(주당 10만원)
-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 직무교육과 1:1 현장코칭·실습을 통해 기업현장에 적합한 숙련인력을 조기 육성, 공급하여 구인난 및 구직난 해소 지원
 - * (직무교육) 인력당 집합교육(3일 이내) 1회(온·오프라인 병행 가능)
 - * (기업보조비) 기업에게 인력당 훈련수당 월 60만원 지원(최대 3개월)
 - * (현장코칭비)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등을 통한 코칭비(1회 50만원, 최대 12회)
-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 사업
 -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과 구직 희망자를 매칭, 직무교육을 통해 제조 전문인력으로 양성 공급
 - * (직무기초교육) 스마트공장 도입 및 구축, 운영 관련 온라인 연수(3개 과정)
 - * (직무심화교육) 스마트공장 현장맞춤연수 심화교육비 (1회 50만원, 최대 5회)
 - * (기업보조비) 기업에게 인력 당 훈련수당 월 60만원(최대 3개월)
 - * (참여보조비) 참여자에게 실습기간 내 월 20만원(최대 3개월)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 사업 제도개선 사항 써 주세요 (기업요건, 구직자 요건 개선 추진사항)

신청·접수

- 청년 등 중소기업 구직자 일자리 매칭
 - (참여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job.kosmes.or.kr) 웹사이트의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job@kosmes.or.kr)
 - (참여자) 기업인력애로센터(job.kosmes.or.kr)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 청년희망나눔 블로그 및 상생누리 홈페이지에 각 사업단별 모집공고 참조(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 (참여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job.kosmes.or.kr) 웹사이트의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참여자) 기업인력애로센터(job.kosmes.or.kr)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 사업
 - (참여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job.kosmes.or.kr) 웹사이트에서 사업 참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참여자) 기업인력애로센터(job.kosmes.or.kr)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심사·평가 주요내용

▶ 모집공고 상 참여기업의 자격(지원) 요건은 있으나, 별도 심사평가는 진행하지 않음

제출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등

처리절차

- 청년 등 중소기업 구직자 일자리 매칭



-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 현장코칭 숙련인력양성사업



-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 사업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후관리센터(1899-3001)
- 기업인력애로센터 홈페이지(job.kosmes.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Q&A

Q. 취업지원서비스 중 AI면접 응시 후 결과 공개가 필수인가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정확한 취업매칭을 위해 AI면접결과 공개를 권장합니다. 공개해주시면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한 취업 매칭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개된 정보는 취업매칭 담당자, 지원기업 담당자 외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Q.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에 구직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A. 사업에 선정된 대기업(중견기업) 사업단별 모집공고를 청년희망나눔 블로그 또는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현장코칭 숙련인력양성 사업에 3개월 참여가 필수인가요?

A. 아닙니다. 협약기간은 기업에서 가능한 기간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개월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Q. 현재 스마트공장 도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다만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기)참여 기업이거나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 기업(확인서 발급)의 경우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사행산업 : 이용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산업(ex) 카지노업, 경마, 복권, 도박, 향락 등)

인적성검사 :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를 아울러 이르는 말

1-11

기술사관 육성사업

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기술인력 양성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2+2)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생산기술,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등 특성화고 - 전문대 연계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특성화고와 전문대
 - 전문대 1개와 복수의 특성화고가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사업단 구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단, 부동산업, 일반유희주점업, 무도 유희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캠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 지원내용**
- (지원내용) 학생활동 지원비, 실습재료비, 운영비 등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학교	학생활동지원비, 연수비, 실습재료비, 훈련지원금, 운영비 등
학생	직업교육, 전문대 진학, 협약기업 취업, 산업기능요원 우대
기업	전문기술인력확보,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우대

- 신청·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단(특성화고-전문대)을 구성하여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신규 사업단 사업 추진 절차)

사업공고(중기부)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협약제결(사업단)

- (사업단 선정 후 추진 절차)



- 지원대학 (9개대학, 17개 특성화고) (예산 2,898백만원)

* '20년 지원현황 : 12개대학, 18개 특성화고 지원 (예산 2,898백만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044-204-779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055-751-9828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anhakin.mss.go.kr)

Q&A

Q. 기술사관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A. 참여학교 현황 및 연락처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anhakin.ms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12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선취업-후진학 기반 구축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을 통해 우수인재 양성 및 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단, 부동산업, 일반유희주점업, 무도 유희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캐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 학교는 학과 운영비, 학생은 등록금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학교	계약학과 운영비(학기 당 35백만원 ± α)
학생	기준등록금* 대비 학위별 차등** 지원 * 기준등록금('20년) : (석·박사) 290만원, (학사) 230만원, (전문학사) 180만원 ** 재직자(석·박사 65%, 학사·전문학사 85%), 동시채용형(100%)

신청·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참여대학은 사업계획서 제출(신청양식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별도 확인)
- 사업 추진 절차

사업공고(중기부)

신청·접수

현장실태조사

대면평가

주관대학 선정

학과운영

운영실적 보고

사업비 정산

- 지원대학 (48개 대학, 69개 학과) (예산 119억원)

* '20년 지원현황 : 47개 대학, 68개 학과 지원 (예산 114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044-204-779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055-751-9818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anhakin.mss.go.kr)

Q&A

Q. 중소기업 대표자도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중소기업 대표자는 계약학과 입학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경영인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학과 입학이 가능합니다.

Q. 졸업 후 기업에서 반드시 근무해야 하나요?

A. 네. 그 기간을 의무 근무기간이라 하는데 이는 학위과정을 이수한 참여학생이 해당 대학 졸업일을 기준으로 참여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재교육형은 졸업 후 1년, 재교육형 동시채용과 채용조건형은 졸업 후 2년을 의무 근무해야 합니다.

1-13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산업 수요 반영 현장중심교육을 통한 기술·기능인력 양성

특성화고생 대상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지원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 산업분야의 차별화된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이 안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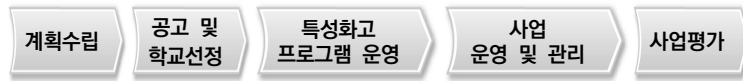
▶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 지원제외)

지원내용 ● 주요 프로그램

모듈	프로그램	주요내용	대상
①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	1. 취업(산학)맞춤반	기업, 협·단체와 채용협약 후 맞춤형 교육	중소기업 3학년생
	2. 1팀 1기업 프로젝트	기업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팀프로젝트	중소기업 1~3학년
	3. 교수학습자료 개발	현장중심 교육 운영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	교사
②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연계	1. 현장학습 프로그램	현장견학, 현장체험, 현장실습 활동	중소기업 1~3학년
	2. 전공동아리 프로그램	취업중심 전공동아리 활동 지원	1~3학년
	3. 외부전문가 활용	산학협력교사 등 취업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학교
③ 특성화 마인드 제고	1. 진로지도 프로그램	취업마인드 제고 및 맞춤형 진로지도	1~3학년
	2. 중소기업 이해연수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통한 진로선택폭 확대	교사 1~3학년
	3. 교원 직무연수	교원 전문성 향상 및 특성화 마인드 제고	교사

신청·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참여학교)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별도 확인)
- (참여희망기업) 회사소개서(자유양식),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고용보험가입내역서(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사업 추진절차



- 전국 215개 특성화고
* '21년 지원현황 : 전국 215개 특성화고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044-204-779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65, 9822, 9862~63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Q&A

Q. 맞춤형에 참여할 시 중소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A.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소요 인원 배정시 우선 선정 대상(3자 협약)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사업 선정평가지 가점이 부여됩니다.

Q.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참여학교 현황 및 연락처는 중소기업 인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14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사람 중심의 기업경영 확산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기업과 근로자간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의 기업 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인을 선정

지원대상

- (신청대상) 성과공유 도입, 인재육성 우수사례 등으로 유관기관 추천 및 국민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 대표
- 평소 기업 활동을 통해 직원의 복지 증진과 사회 공헌 등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의 모범이 될 만한 우수 기업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캠블링 및 베텩업, 무도장 운영업인 등 6개 업종은 제외

지원내용

- 선정패 수여
 - 중기부 장관 표창 수여
 - 존경받는 기업인 트로피 및 동판(대표자 얼굴) 수여
- KBS 1TV 방송 프로그램 출연
 - 존경받는 기업인의 성과공유 우수사례를 대국민 전파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과공유 도입 유도 및 사람중심 경영문화 확산
 - * 프로그램명 : KBS 1TV 사장님이美쳤어요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평판조사 강화) 신청 기업인의 사회적 물의 여부 등 검증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공개검증, 지역 평판조사 등 실시
- ▶ (국민심사단 기능 강화)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기업인 선정을 위해 국민심사단 인원 확대 및 평가점수 비중 상향

- 신청·접수**
- 중진공 담당자에게 메일을 활용하여 접수(kth3856@kosmes.or.kr)
 - (제출서류) 선정신청서, 성과공유기업 증빙서류, 재무제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 (공고문 참고)
 - (선정과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정량평가) 성과공유 추진 노력, 성과공유 도입 실적 우수성, 교육 훈련 정도, 경영성과, 일자리 양 증가 등을 평가
- ▶ (정성평가) CEO 경영 및 노력, 인재육성, 미래 경쟁력 제고 노력, 질 좋은 일터 구현, 사회공헌 등을 평가
- ▶ (발표평가) CEO 혁신 의지, 조직문화 및 성과우수성 등을 대표자가 직접 발표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25, 9829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 지원시책」참조

Q&A

Q.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후 지원내용인 방송 프로그램 출연은 꼭 해야 하나요?

A. 네,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목적은 성과공유 우수사례를 대국민 전파하여, 중소기업 CEO의 성과공유 도입 유도, 청년 구직자의 중기 취업 인식개선으로, 선정된 기업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성과공유 및 인재육성 등의 우수 사례 전파를 위해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용어설명

성과공유 기업 :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1.성과급, 2.성과보상공제, 3.임금수준, 4.우리사주, 5.복지기금 운영, 6.스톡옵션 등

1-15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 사업

성과공유 기업 발굴 및 지원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인식 개선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우수인력 유입 촉진

- 지원대상**
-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성과공유 유형

- ① 경영성과급 ② 성과보상기금공제(내일채움공제) ③ 임금상승률
- ④ 우리사주조합 ⑤ 사내근로복지기금 ⑥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⑦ 기타유형(인재육성형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가족친화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참여, 복지플랫폼 활용 기업)

- 지원내용**
-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청자격 부여(7년 미만 기업 해당)
 -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점수반영(건당 2점, 최대 10점)
 - 중기부 공모사업(R&D, 수출지원)평가 시 점수반영(건당15점, 최대30점)
 - 성과공유 우수기업 대상 홍보물 제작 및 홍보
 - 세제 혜택(단, 성과급 유형으로 인증서를 받은 기업에 한함)
 - (기업)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근로자) 성과급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공제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우수기업 홍보) 성과공유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업의 사례를 인기 유튜브 채널(인사담당자, 구독자 25만)에 업로드 하여 홍보
- ▶ (기타유형 추가) 복지플랫폼 활용 우수기업을 성과공유 유형으로 편입시켜 성과공유 저변 확대

- 신청·접수**
- 산학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서류 검토 후 승인
 - (제출서류) 고시* 유형별 도입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 중소기업부 고시(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 (승인과정)

신청·접수(수시)

제출 서류 확인

승인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공동)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의 감소 여부 확인
- ▶ (도입) 성과공유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서류(도입 유형에 따른 증빙 서류를 평가하여 지정)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25, 9829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 지원시책」참조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Q&A

Q. 세제지원 혜택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 A. 성과공유 유형 중 경영성과급 유형으로 도입 지정을 받아야 하며, 경영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으로 최근 1년 이내에 35만원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응어설명

성과공유 기업 :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 1.성과급, 2.성과보상공제, 3.임금수준, 4.우리사주, 5.복지기금 운영, 6.스톡옵션 등

1-16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우수 인재 양성 분위기 조성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이를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 및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탱업, 무도장 운영업인 등 6개 업종은 제외

지원내용

-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청자격 부여(7년 미만 기업 해당)
-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점수반영
- 중기부 공모사업(R&D, 수출지원)평가 시 점수반영
- 인재육성 우수사례집 발간 및 배포
- 인재육성형 전용채용관 운영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국민추천 도입) 인재육성형 우수사례 신청·접수 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추천제 도입
- ▶ (평가지표 개선) 서면·현장 평가 등에서 중복으로 평가되고 있는 지표를 일원화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에 대한 평가 신뢰도 향상

신청·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서 기업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접수

- (제출서류) 선정신청서, 성과공유기업 증빙서류,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 등 (공고문 참고)
- (선정과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정성평가) CEO 의지, 일자리 양·질, 교육 훈련 정도 등을 방문하여 평가
- ▶ (정량평가)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근로환경, 교육훈련 등을 평가
- ▶ (심의위원회) 서면·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재육성 노력, 인재육성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 심의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25, 9829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 지원시책」참조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Q&A

Q.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전 재신청 하시면 지정일로부터 다시 3년이 유효기간이 됩니다.

Q. 3년 미만의 기업도 지원 가능하나요?

A. 네,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이면 3년 미만 기업이라도 신청 가능하며, 재무제표 평가는 기본 점수를 부여하여 진행합니다.

용어설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기술능력, 연구개발 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

1-17

연수사업

중소기업 CEO 및 재직자 대상 전문역량 향상 연수

중소기업 CEO 및 기술·경영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기술, 관리기법 습득 및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재직자, 중소기업 취업대상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 지원내용**
- (직무역량향상연수) 기술, 품질, 창의인재(경영) 등 공개집합교육
 - (맞춤연수) 기업의 교육훈련 니즈에 따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운영
 - (정책연수)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부정책 연계교육, 취업교육, 수출교육 등
 - (온라인연수) 웹 및 모바일 기반의 자기주도적 교육 프로그램

연 수 분 야			주 요 연 수 내 용
오프라인	직무역량향상연수	기술연수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공장운영시스템, 러닝팩토리실습, 제조자동화, 설계기술·가공기술, 스마트공장관리
		스마트융합	전기전자·PLC·ICT융합, CAD, 정보기술·IT
		생산기술	기계설계·기계가공, 정밀측정·도면해독, 자동화·유공압, 플라스틱·고무
		뿌리기술	주조·소성가공·용접, 표면처리·열처리·금형
	생산품질	제품·공정개발, 생산관리, 품질관리(국제인증포함), 현장혁신	
	창의인재	계층역량강화, 직무역량향상(문제해결형 코칭연수)	
	최고경영자	중소기업 CEO 명품아카데미	
	맞춤연수	문제해결형	개별기업 니즈를 반영, 연수과정을 설계하여 실시하는 연수
		현장맞춤형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연수
		조직활성화	조직분위기 쇄신으로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 도모
정책연수	중기지원정책연수, 취업연계연수, 협업·산학협력		
온라인	인터넷연수	인터넷 및 모바일을 활용하는 연수로 직무, 소양교육 및 MOOC(온라인무료공개수업), 라이브 웨비나	
	모바일연수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대상 교육 신설, 고도화(AI, 빅데이터 활용) 과정 확대

- 신청·접수**
- (직무·정책·맞춤연수) <http://sbti.kosmes.or.kr>
 - (온라인연수) <https://cyber.kosmes.or.kr>

- 제출서류**
- 연수신청서(훈련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 직무역량향상연수는 연수비 할인제도 운영, 할인대상 해당 시 증빙서류 별도 제출

연수과정	적용 대상 및 절차	할인율
직무역량향상연수 (공개집합연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20%
	지방소재(수도권이외지역) 소기업	50%
	신규과정('22년 신규 개설)	30%

* 연수비 할인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증빙서류는 연수원 홈페이지 참조

처리절차



- 지원규모**
- 연간 50,000명 내외(직무·정책·온라인 연수), 맞춤연수 400개사 내외

문의처

- 중소기업연수원(안산) : 031-490-1472
- 중소기업연수원(광주) : 062-250-3000
- 중소기업대구경북연수원(경산) : 053-819-5001
- 중소기업부산경남연수원(창원) : 055-548-8045
- 중소기업충청연수원(천안) : 041-559-9225
- 글로벌리더십연수원(태백) : 033-550-5000

Q&A

Q. 기업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노동부 고용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개인카드 결제시 고용환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업카드 또는 현금(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1-18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 CEO의 창업 쏠 단계 패키지 지원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사업화 등 창업 쏠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지원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단,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기업은 제외)
-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지원내용**
- (창업공간) 창업사관학교에 창업준비공간(개별, 공동)을 제공
 -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역량 등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 실시
 - (창업코칭) 전문인력을 1대1 배치하여 창업 쏠 과정 집중지원
 - (사업비지원) 최대 1억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이내)
 - *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지재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 지원
 - (기술지원) 제품설계부터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기술 및 장비지원
 - (연계지원) 정책자금 연계, 투자 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선발심사) 서류심사 → 발표(PT)심사 → 심층심사 → 현장심사 4단계 심사
 - * 자격 검토,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모델, 기술성, 성장가능성 등 종합평가

문의처

● 주요 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수도권 및 강원	본교 (안산, 경기 구리)	(안산) 031-490-1351, 1362, 1384, 1393 (구리) 031-554-2785~8
	서울	02-2130-1431~6, 1430, 1438
	인천	032-858-7859, 7860~1
	경기북부(파주)	031-949-9686~8
	강원(원주)	033-748-9267~9
호남권 및 제주	대전(대전)	042-862-9937~8
	세종(세종)	044-850-5631~2
	충남(천안)	041-589-0834~8, 0840
	충북(청주)	043-903-9357~8
	광주	062-250-3034, 3031~3, 3039, 3042~3
충청권	전북(전주)	063-276-8218~20
	전남(나주)	061-331-8708~9
	제주	064-759-9648~9
영남권	대구	053-656-8177~8
	경북(경산)	053-819-5054~7, 5062
	부산	051-305-9930~1
	울산	052-276-8937~9
	경남(창원)	055-548-8050~4, 8062, 8064
본사	창업지원처	055-751-9837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start.kosmes.or.kr)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팀 신청의 경우 전원 신청자격을 만족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팀 신청의 경우, 신청자와 팀원 모두 신청자격 적격여부를 검토 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사관학교에 선정된 후 현금 부담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중진공에서 안내한 계좌로 현금부담금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1-19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글로벌 D.N.A. 분야 혁신창업기업 패키지 지원

D.N.A. 분야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 글로벌 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하 D.N.A. 분야 (예비)창업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동 사업을 통해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 등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글로벌 D.N.A. 교육) 우수한 D.N.A.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 대상 단계별·과제별 혁신교육 제공

- ① D.N.A 특화교육 : 국내 D.N.A. 현업전문가 및 대기업 협업교육
 - ② 실전 프로젝트교육 : 세계적 AI 경진대회 플랫폼 'Kaggle'의 기출 프로젝트 해결 및 실전대회 참여 지원
 - ③ 글로벌 대기업교육 : D.N.A. 분야 글로벌 대기업의 분야별 특화교육
- (글로벌액셀러레이팅) 글로벌 탐티어 액셀러레이터가 글로벌창업사관 학교에 상주하며 밀착·연합보육 실시
 - (사업비지원) 최대 50백만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이하)

* 입교팀 평가(중간·성공)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별도 지급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선발심사) 서류심사 → 발표(영어 PT)심사 2단계 심사
- * 자격 검토, 기술성 및 시장성, 신청 동기, 사업화 역량 등 종합 평가

문의처

- 주요 연락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창업팀(02-6735-1332~5)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start.kosmes.or.kr)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팀 신청의 경우 전원 신청자격을 만족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팀 신청의 경우, 신청자와 팀원 모두 신청자격 적격여부를 검토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치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사관학교에 선정된 후 현금 부담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중진공에서 안내한 계좌로 현금부담금(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1-20

창업성공패키지(스타트업 시기술인력 양성)

스타트업-청년인재 이어드림(Year-Dream)

청년을 인공지능 실무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여 청년인재와 혁신 벤처스타트업 간
미스매치 해소 및 스타트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학력·전공과 무관, 만 39세 이하인 청년

지원이 안되는 자

- ▶ 교육과정 수료 및 수료 이후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재학생 및 휴학생, 직장인 등은 제외(단, 전과정 수료 및 즉시 취업이 가능한 졸업 예정자는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인공지능 특화교육) 인공지능 관련 학과의 4년 교육과정 및 실전 프로젝트까지 4단계에 걸쳐 10개월간 집중 운영
 - ① 인공지능 초급과정 : 인공지능 활용에 기본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알고리즘 개론 등 기초 공통과정 운영
 - ② 데이터 엔지니어링/분석 과정 :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초부터 라이브러리 활용까지 실무업무에 필요한 빅데이터 엔지니어링 기술과정 운영
 - ③ 인공지능 심화 및 백엔드 개발 등 과정 : 백엔드 개발, API, 다양한 인공지능 툴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실적 인공 지능 과정 운영
 - ④ 산업 융합형 실전 프로젝트 교육 : 캐글(Kaggle) 플랫폼* 기반 모의·실전 경진대회 참가 및 벤처스타트업 연계 프로젝트 실습

* 전세계 시개발자 온라인 커뮤니티 및 시경진대회 플랫폼(190여개국 300만명 참여)
- (스타트업 채용기회 마련)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중심으로 매칭데이 운영 등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선발심사) 서류심사 → 심층면접 2단계 평가
- * 적성검사 : 자격검토, 인적성(IT분야 등) 및 인공지능 상식 평가 등

문의처

- 주요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2-6735-1342~3)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start.kosmes.or.kr)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IT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맞습니다. 학력이나 전공과 무관하게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교육은 어디서 받게 되나요?

A. 교육 장소는 서울 흥대 스파크플러스(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86, LC흥대타워)입니다.

Q. 사업에 선정되면 교육비는 얼마를 내야하나요?

A. 교육비는 따로 들지 않습니다. 사업 선정이 되시면 교육비용은 내실 필요 없이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21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기술개발)

기술개발 지원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 소재 분야의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

우대조건

-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 수행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함
 -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내용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관련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구분 (지원비율)	항목	내용	비고
기술개발 (75%)	자전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원한도 : 연 2억원 이내 (과제당 총 3억원 이내) 	* 참여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단독기술개발은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지원
	해양레저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원한도 : 연 2억원 이내 (과제당 총 3억원 이내)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 * '22년 1월~2월중 사업공고 예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통해 선정이 이루어지며, 필요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
- ▶ 기술성, 경제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로 실시
- ▶ 선정 관련 세부내용은 '22년 사업공고문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 15억원(계속과제 포함)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핵심부품 소재 국산화와 제품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전거 분야	해양레저장비 분야
자전거 및 관련 부품·소재 * 전기자전거, 개인용이동수단 포함	해양레저장비 분야

- * 관련 세부내용은 '22년도 사업공고문 참조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자 : 055-751-9854, 9858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A

Q.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지원제외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기간 내 서류제출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부도 또는 세금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중복과제 지원 불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내 '21년도 레저장비 산업개발지원(기술개발, 맞춤형사업화) 사업공고문을 참조하세요.

1-22

중소기업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중소기업 개발기술을 사업화 성공으로

사업화가 되지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사업화 지원 및 기능개선(R&D) 등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하는 사업

지원대상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단,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 ①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로 확인* 가능한 경우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정부지원 R&D 성공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 ②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
 - *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 또는 전용실사권, 개인기업은 대표,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 보유 필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 ▶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기술완성도, 시장성, 사업화역량)하고 과제에 대한 사업화 추진 유형 및 연계지원 방안 도출(100개사 내외)
- 사업화지원
 - 개발 기술의 시장성 보안을 위해 기획지원,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등 분야별 2개 이상 항목을 종합적으로 지원(최대 8천만원, 30개사 내외)

* 기획지원(사업화 기획), 기술지원(성능테스트,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시장테스트),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

분야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대분류	중분류	
기획 지원 (3개)	사업화 기획	기술 컨설팅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해결 등을 위한 컨설팅
		경영 컨설팅	경영전략, 운영, 인사, 재무, 조직 등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개선	사업화 전략 수립, 시장 규모·경쟁사 조사, 제품화·양산, 판로개척,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
기술 지원 (2개)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 및 제품성능 개선에 필요한 금형 및 시제품 제작 (제품개선 또는 생산 기구설계 및 3D 프린팅 설계 등 포함)
	성능테스트		잠재 고객사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성능인증, 검증, 평가 * (예시)고객 사양에 맞는 품질평가, 신뢰성 평가 등
마케팅 지원 (3개)	시장 테스트	시장조사	고객검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시장조사 * (예시)시장시뮬레이션, 고객패널조사, 시장조사·분석 등
		마케팅 전략 수립	광고·판매 전략, 가격전략, 고객관리, 매장구성전략, 소비자전략, 유통전략, 제품전략 등 수립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홍보 및 시장(반응)조사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상용화를 위한 기능개선, 성능향상 등을 위한 R&D 지원 (최대 1억원, 18개사 내외,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기술이전
 - 기술완성도 및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의 NTB(기술은행)에 등록하여 이전기술에 대한 홍보 추진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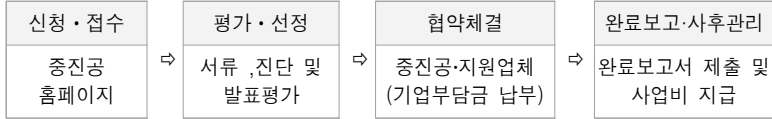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서류평가 → 기술사업화 진단 → 발표평가
 - * T(Technology) : 기술완성도, M(marketability) : 시장성, C(Capability) : 사업화역량 평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 공통



● 사업화지원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규모

- 기술사업화 진단(100개사), 사업화 지원(30개사),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18개사)(예산 39.2억원)

* '21년 지원현황 : 기술사업화 진단(35개사), 사업화 지원(32개사), 시장친화형 기능개선(20개사) (예산 43.5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자 : 055-751-9855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2년 지원시책 참조

Q&A

Q. 정부 R&D성공판정기술과 특허등록 모두 보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정부R&D 성공판정 기술 또는 특허등록 둘 중 하나의 자격요건만 만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화(양산화, 매출)가 진행되지 않은 기술만 신청 가능합니다.

Q. 특허 출원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사업 신청기간 내 특허등록을 완료하시어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통상실시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23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탄소 다배출 업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 ICT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등의 지원으로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기반 마련

지원대상

- 뿌리기술, 섬유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이 시급히 필요한 과제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상세 지원업종은 별도 사업 공고문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사업공고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남해와 달라진 내용

- ▶ (지원업종) 뿌리기술 및 탄소 다배출 일부 업종(용접 등 6개)에서 뿌리기술 전체 업종 등으로 확대

지원내용

- (진단·설계 컨설팅) 기업의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 요인 등 에너지 현황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ICT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제조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관리 및 공정 혁신 솔루션(FEMS, MES 등) 및 이와 연계된 계측 시스템, 제어 시스템, 자동화 설비 등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 (고효율 설비 교체) 에너지 다소비, 노후설비 등 유틸리티 설비를 중심으로 에너지 감축에 효과적인 고효율 설비로 교체 지원

- 신청·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 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구축 가능성, 공정혁신 계획의 적절성, 고용창출, 경영성과 등 산업 및 시장에 미치는 기대효과, 기업의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826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 참조

Q&A

Q.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차이점은 무엇 인가요?

A.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ICT기반 탄소 저감 공정혁신, 고효율 설비 교체 등의 탄소중립 3대 요소를 패키지로 지원 하여,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저탄소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기초단계 70백만원, 동일수준 70백만원, 고도화1 200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기업부담입니다.

1-24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중소 기업혁신 촉진

성장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역량 평가를 통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여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재기컨설팅은 별도 운영)
 - 13개 지방청별 탄력적 우대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제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 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 지원제외 업종 : 33402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기타 보조금법 위반 기업 등(상세 내용은 사업공고문 등 참조)
- 지원규모 : 2,400여개 사(예산 61,805백만원)
- * '21년 선정현황 : 총 1,594개사(재기컨설팅 별도)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를 서비스 수행기관에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소요 경비의 50~90% 차등지원

매 출 액	정부지원 비율	최대 지원금
3억원이하	90%	최대 50백만원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 최대 3개 분야 패키지 지원 가능(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및 재기컨설팅은 별도 운영)

● 바우처 메뉴판

지원 분야	지원 메뉴	지원 내용
컨설팅	경영기술전략	생산관리, 기술사업화, 노무, 인사, 회계, 구조개선 등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규제대응	최저임금제 대응, 근로시간 대응, 화학물질관리 대응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응복합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별도트랙) 탄소중립 경영혁신	공정혁신, 에너지 효율 아이템 발굴, 인식개선 활동 등
	(별도트랙) 재기컨설팅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회생 및 재기지원을 통해 유·무형 자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컨설팅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 (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시스템 및 시설 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등
	기술지원 및 지적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적권 획득 (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규격인증	국내인증(품질 검증, 제품 인증), 국외인증 등
	제품시험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설 계	시제품 설계, 공정설계 등
마케팅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홍보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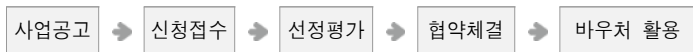
● 사업기간 : 최대 1년

신청·접수

-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요건검토 → 서면심사 → 현장 진단·평가 → 심의위원회*
- * 지역별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 ▶ 처리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
-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 공지사항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Q&A

Q. 우리 기업이 제조 소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에 들어오셔서 커뮤니티 - 자료실에 '참여기업 사업 진행 관련 주요 FAQ'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Q.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컨설팅이 필수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컨설팅을 필수로 정부지원금 50백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1-25

진로제시 컨설팅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진로제시

경영위기 기업을 전문가가 방문, 진단하여 구조개선, 사업정리 또는 기업회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연계지원

지원대상 ● 경영위기 또는 재창업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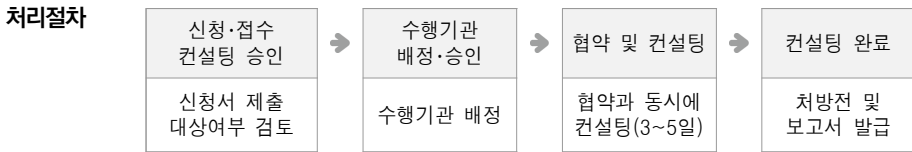
- ▶ 휴·폐업 기업
-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에 수행기관 및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지원내용**
- (기초 진로제시) 전문가가 경영위기 기업을 방문 진단하여 구조개선, 사업정리 또는 기업회생 가능 여부에 대한 진로를 제공
 - (재창업자 컨설팅) 재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과거 실패분석 등을 통해 성공적 재기를 위한 경영컨설팅 제공
 - (사업정리 지원) 기업유지가 곤란하거나 만성적 적자운영으로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기업의 전문분야별 사업정리 지원
 -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소요 경비의 90% 지원(기업부담 10%)

구 분		투입일수	보수액
기초 진로제시 또는 재창업자 컨설팅	재무분석	3MD	180만원
	기술사업성 분석	2MD	60만원
사업정리	사업정리에 필요한 3가지 전문분야* 중 2가지 분야 * 세무/노무/법무분야	-	총 240만원 (분야별 120만원)

-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mssmiv.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 사업공고 후 연중 수시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 * 홈페이지(www.mssmiv.com) 공고 참조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재도약성장처
 - 홈페이지(www.mssmiv.com)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 컨설팅 결과인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A.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1-26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중소 밀집지역 지원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활용 스마트 플랫폼 조성을 지원하여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광역자치단체-민간* 컨소시엄(필수)
 - 광역지자체별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지역이 기초지자체 단위인 경우 광역-기초지자체 간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 앵커(민간)기업이 투자 가능한 지역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광역-기초지자체 간 예산 분담 필수
- (지원조건) 국비와 지방비 등 대응자금(현금) 1:1 매칭 가능
 - * 민간 앵커기업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예정지역 내 투자 필수
 - ** 사업 신청 시점에서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권원 확보 필수
- (지원예산) ('22년) 4,200백만원
 - (계속지원) '21년 선정지 2개소 × 4,000백만원 × 50%(지방비 50% 매칭)
 - (컨설팅) '23년 사업예정지 4개소 × 100백만원 × 50%(지방비 50% 매칭)
 - * 사업예정지 4개소에 대한 컨설팅 완료 후 '23년 사업대상지 2개소 내외 최종 선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가 자유롭게 계획을 마련 하되, 사업 취지에 맞게 지역 내 그린 스마트화 관련 사항 증점 추진
 - (스마트 공동시설) IoT, AI 등을 활용한 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및 Post-코로나 대비 비대면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조성
 - (친환경 인프라)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인프라 관련 시설 조성 및 시스템 구축
 - * 태양광, 태양열 및 폐기물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배기가스 등에 포함된 수분과 미세 먼지를 제거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동활용 스마트플랫폼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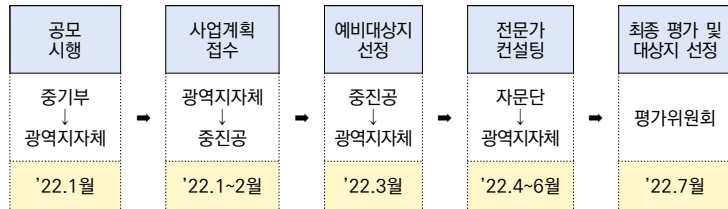
지원 항목		세부 지원내용
스마트 공동시설	스마트 제조	• 빅데이터, AI, 로봇 등을 도입한 시험 및 테스트베드 공간, AR 기술을 도입한 시제품 시물레이션 공간 등
	스마트 물류	• IoT, AI 기술 등을 활용한 다품종 공유형 디지털 물류 시스템 등
	Post-코로나	• 비대면 회의시스템, 제품홍보를 위한 AR/VR 활용 스튜디오 등
친환경(그린) 인프라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시설, 환경관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 또는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

신청·접수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예비대상지 선정(4개소) → 예비대상지 전문가 컨설팅 → 최종 대상지 선정(2개소)
- * 사업필요성, 앵커기업 투자 및 권원확보, 추진전략, 공간 조성·운영전략, 지속가능성 등 평가
- ▶ 처리절차 :



* 상기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성장처 ☎ 055-751-9280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A

Q. 중소기업 밀집지역은 어디를 말하나요?

A.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23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합니다.

Q. 앵커기업의 투자가 필수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로 본사 이전, 지사(공장 포함) 설치, 지역 기업과의 상생형 협업공간 조성, 스마트플랫폼 민관 공동 조성 등 유형의 투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 용어설명

앵커기업 : 민간기업으로서 스마트 혁신지구 내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지사(공장, 연구소 등) 설치 및 유형의 투자를 통해 민관 공동으로 스마트플랫폼이나 상생형 협업 공간을 조성하는 기업을 말함

스마트플랫폼 : 스마트 제조 공동플랫폼, 스마트 물류 공동플랫폼, 포스트 코로나 공동플랫폼, 친환경 (그린) 인프라를 말함

1-27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직무기여도가 높아 중소기업 대표자가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학력, 경력, 자격 무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지원내용

- 가입기간 : 5년이상
- 공제납입금
 - 적립금 : 매월 34만원 이상을 근로자와 기업이 1:2이상 비율로 적립
 - 만기금 : 2천만원 이상 + 복리이자
- 공제금리
 - 변동금리 적용(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 가입혜택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납입금에 대하여 전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
 - (핵심인력)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가입 대상 확대 : (기본) 중소·중견기업 → (변경) 기존 + 중소기업협동조합, 부동산 산업, 비영리의료기관

신청·접수

- (방문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분(지)부 또는 기업·신한·우리은행 방문 청약
- (온라인접수)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청약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중소기업) 휴·폐업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등
- ▶ (핵심인력) 중소·중견기업 재직 여부 등

제출서류

- (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온라인 가입 시)
- (핵심인력)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온라인 가입 시)

처리절차

공제청약

심사 및 승인

공제부금 납입

계약 성립

지원규모

- 지원현황('21.11 기준, 누적) : 27,365개사, 69,627명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044-204-7791, 779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1-2977, 9731
-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Q&A

Q.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 A. 핵심인력은 직무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상시 근로자로서, 학력·연령·자격·경력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대표자, 실질 경영주, 일용직 근로자 제외)

1-28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청년재직자에게 성과보상금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3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 근로자(청년근로자)
 -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15세~34세) 근로자
 - 군 복무기간 만큼 추가 인정(최대 39세)
 - * 단, 기업과 특수관계인(최대주주, 최대주주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경우 가입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지원내용

- 가입기간 : 5년
- 공제납입금
 - (청년) 5년간 720만원 적립 (월 최소 12만원 × 60개월)
 - (기업) 5년간 1,200만원 적립 (월 최소 20만원 × 60개월)
 - (정부) 3년간 1,080만원 적립 (3년간 7회 분할적립)
- 공제금리
 - 변동금리 적용(내일채움공제 누리집 공시)
- 가입혜택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납입금에 대하여 전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
 - (핵심인력) 5년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가입 대상 확대 : (기본) 중소·중견기업 → (변경) 기존 + 중소기업협동조합, 부동 산업, 비영리의료기관

신청·접수

- (방문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또는 기업·신한·우리은행 방문 청약
- (온라인접수)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청약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중소기업) 휴·폐업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등
- ▶ (핵심인력) 중소·중견기업 재직 여부 등

제출서류

- (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온라인 가입 시)
- (핵심인력)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온라인 가입 시)

처리절차



지원규모

- 지원현황('21.11 기준, 누적) : 46,061개사, 133,851명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044-204-7791, 779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1-2977, 9731
-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Q&A

Q.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나 시중은행(기업, 신한, 우리) 방문가입 및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가입 모두 가능합니다.

- * 방문가입 : 중진공 지역본(지)부 및 기업·신한·우리은행 방문 → 청약서 작성·접수
- * 온라인 가입 : 누리집(www.sbcplan.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서 작성·접수

1-29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공제 만기자에게 성과보상금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청년공제 만기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3년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21년 신설)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배출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 후, 해당기업에 계속 근무중이며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지원내용

- 가입기간
 - 3년(36개월)
- 공제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각각 14만원씩 공동납부(3년간 1,008만원+복리이자)
- 공제금리
 - 변동금리 적용(내일채움공제 누리집 공시)
- 가입혜택
 - 중소기업부 일부 지원사업 우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21년 신규 신설된 공제 사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배출 기업 및 만기자를 대상으로 함

- 신청·접수**
- (방문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분(지)부 또는 기업·신한·우리은행 방문 청약
 - (온라인접수)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청약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중소기업) 휴·폐업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등
- ▶ (핵심인력) 중소·중견기업 재직 여부 등

- 제출서류**
- (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온라인 가입 시)
 - (핵심인력)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온라인 가입 시)

처리절차

공제청약

심사 및 승인

공제부금 납입

계약 성립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육성과 : 044-204-7791, 7796
-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1-2977, 9731
-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Q&A

Q.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만 가입가능한가요?

A. 네 맞습니다. 해당 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이후 중도이탈을 완화하기 위한 공제사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자 배출기업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해당기업에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제2부
신용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1

신용보증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단, 도박,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지원내용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보증종류	주요내용
대출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 일반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용 등
제2금융보증	기업이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 농·수협,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상거래담보보증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한 보증 ▶ 담보어음 보증 및 지급어음, 받을어음에 대한 보증
이행보증	기업이 공사, 납품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보증의 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납세보증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보증 한도

- 같은기업당 보증한도 : 30억원

-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 *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70~150억원까지 지원가능

자 금 증 류	보증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장 혁신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아이콘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 소부장 협력모델 기업 	15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자금 	1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자금용,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보증 ■ 지식기반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70억원

* 보증심사등급에 따라 차등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 * 매출액한도 : 추정매출액의 1/2 ~ 1/6 이내
- *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신청·접수

●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영업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수 집 (제 출) 자 료	자 료 수 집 경 로
신보 직접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객이 법인번호, 부동산 소재지 고지 시 인터넷 등기소(대법원)에서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고객 동의 시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에서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재무제표 	세무대리인이 자료 전송 시 메타게이트를 통해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확인서 	고객 동의 시 전산으로 수집
고객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 주주명부 • 기업개요표 	고객이 FAX 또는 현장조사서 제출

처리절차

단 계 별	처 리 내 용
신청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	
자료수집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	
보증심사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약정 보증서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약정체결: 고객의 자서날인 •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지원규모

- 보증잔액 58.5조원으로 운용예정
- * '21년 지원현황 (11월말기준) : 59.3조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신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보증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 분	내 용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수출기업 및 수출희망기업에 맞춤형 보증 지원
유망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창업기업에 대해 업력·유형별로 최대 30억원까지 맞춤형 지원
고용창출기업 보증	고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상품 지원*
유망서비스기업 보증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한 특별보증
시설자금특례보증	사업장 신축·매입, 기계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뉴딜기업 특화지원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관련 산업 영위기업 지원
문화산업 정책보증	문화관련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제작, 유통 등)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사회적경제기업에 특화된 보증 상품 지원**
기 타	신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 경영혁신형 인증기업 등

* 고용창출 특례보증,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보증, 고용의질 우수기업 우대보증 등

**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협동조합 희망보증, 마을기업 두레보증, 자활기업 초록보증

Q. 보증료는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며, 보증료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증료율은 심사등급별 기준요율에서 일정률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연율 0.5%부터 3.0%까지 범위에서 운용합니다.

2-2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수요자 중심의 혁신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잠재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본격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을 결합한 융복합 지원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입니다.

지원대상

-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성장 분야*를 영위하는 3년 이내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포함)

* 첨단제조,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용보증규정」에서 정한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 ▶ 「보증심사방법 운용기준」에서 정한 보증제한업종, 보증취급유의업종 영위기업
- ▶ 타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 수요자 또는 수행중인 자 및 중도탈락·포기자

* 유사 지원사업 예시: 기술보증기금 '기보 벤처캠프'

지원내용

- 액셀러레이팅
 - 초기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정보제공 등을 복합 지원(사업계획 진단, 성장전략 코디네이팅, 시장 포지셔닝, IR 스토리텔링 역량강화 등)
- 금융지원
 - NEST기업 액셀러레이팅 수행 평가등급 등을 반영하여 신용보증 지원, 투자 지원(신보 직접투자, 민간 액셀러레이터 Seed 투자, 협업기관 공동투자) 및 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 등 우대
- 성장지원
 -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컨설팅, 대기업 연계 및 네트워킹, M&A컨설팅 및 M&A보증을 통한 사업확장과 회수전략 지원, 거래소시장별 맞춤형 IPO 지원

- 신청·접수**
- 신보 스타트업 플랫폼(www.kodit.co.kr/startup)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상·하반기 연 2회 공모)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업가정신, 기술성 및 개발능력, 제품·서비스 경쟁력, 지속성장가능성, 사업화가능성 등

- 제출서류**
- 지원서, 사업계획서 등

- 처리절차**
- (선정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1차선발(서류심사)

최종선발(발표심사)

- (지원절차)

최종선발

액셀러레이팅

금융지원

성장지원

- 지원규모**
- 200개사 내외 선발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4.0창업부 : 053-430-4370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3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기술성 및 혁신성이 우수한 혁신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혁신성장 분야를 영위하는 10년 이내 스타트업

* 전문자격 창업, 아이디어 창업, 기술·지식창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 (보증제한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휴업 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 스텝업 준비기업 보증

- 창업 후 5년 이내의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10억원의 보증한도로 R&D연구개발 자금 지원

● 스텝업 도전기업 보증

- 창업 후 5년 이내의 초기사업화 또는 본격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20억원의 보증한도로 Credit-Line을 설정하여 자금 지원

● 퍼스트뱅크 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의 연구개발, 초기사업화 또는 본격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30억원의 보증한도로 Credit-Line을 설정하여 자금 지원

● Pre-ICON 보증

- 창업 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도약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50억원의 보증한도로 Credit-Line을 설정하여 자금 지원

신청·접수 ● 연중 영업점 방문 및 인터넷(www.kodit.co.kr)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 신보가 직접 수집이 불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 (신보 직접 수집)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고객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내용)
 - 신청 및 상담: 신보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 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 자료수집 및 조사: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검토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약정 및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 약정 체결(고객의 자서날인)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0.7%) 수납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4

보증연계투자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지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증과 투자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복합금융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가치창출능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기술력 및 경영진의 경영능력이 우수하고 사업전망이 양호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투자와 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기업. 단, 창업기업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투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지원내용

- 개별기업 당 투자한도
 - 30억원으로 신보의 보증금액 2배 이내로 운용하되, 미래성장성등급 별로 차등적용

미래성장성등급	인수한도
K1등급 ~ K6등급	30억원
K7등급 ~ K8등급	15억원
K9등급 이하, 무등급, 기타등급	10억원

- 투자종류 : 주식(보통주, 우선주) 또는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등
- 투자기간 : 주식 3년~10년, 사채 5년이내

- 신청·접수** ●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지점 및 영업점에 신청 및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투자대상기업 대표자의 경영능력, 사업성·기술성 및 재무건전도 등 투자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용보증 신청 시 수집 자료 등
- 단, 기수집된 자료 중 투자심사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 생략 가능

- 처리절차** ● (보증연계투자 업무처리순서)



- 지원규모** ● 600억원 이내(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 '21년 지원현황 : 563억원 투자예정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현재 신용보증 거래가 없어도 투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현재 신용보증 거래가 없더라도 보증과 투자를 동시에 신청하여 투자 실행 전까지 신용보증을 사용 중이면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상환전환우선주

☞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 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이나 M&A시 잔여재산이나 매각대금 분배에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종류주식'입니다.

전환사채

☞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된 가격(신주인수가격)으로 당해 발행회사에 일정한 수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2-5

투자옵션부보증

미래성장성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미래성장성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증자참여권)가 부여된 보증을 지원한 후, 기업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투자전환을 결정하는 투·융자 복합금융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설립 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상법상 주식회사)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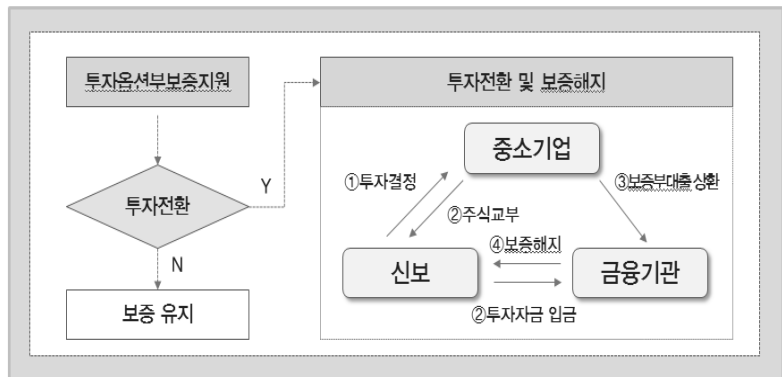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지원내용

- 제도 개요
 -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증자참여권)가 부여된 보증상품으로, 기업경영성과, 후속투자 등에 따라 투자전환

〈투자옵션부보증 구조〉



● 지원 내용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최대 10억원
보증기한	• 5년으로 운용
보증료	• 0.5% 고정 보증료를
보증비율	• 100%
증자참여권	• 행사기간 내 보증부대출 상환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보가 납입하고 이를 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기 위한 주금납입금으로 총당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계약조건	• (행사기간) 보증취급 후 1년 경과시점부터 4년간. 단, 후속투자 유치, 상장절차 진행 및 기업가치 상승 등 사유 발생 시 보증취급 후 3개월 경과시점부터 행사가능 • (행사가격) 기관투자자 투자 유치 시 1주당 발행가액 100% 등

신청·접수

-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지점 및 영업점에 신청 및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보증신청기업의 미래성장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용보증 신청 시 수집 자료 등

처리절차

- 투자유선부보증 업무처리순서



지원규모

- 400억원 이내(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 '21년 지원현황 : 400억원 지원예정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증자참여권 행사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증자참여권의 행사가격은 기관투자자의 후속투자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후속투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전환심사 시점에 신보가 산정한 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창업초기 기업의 기업가치 산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후속투자 유치 시 평가된 가치에 연동하는 최근 투자시장의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용어설명
증자참여권

☞ 신보가 보증기업의 자본증자(신주 발행)에 참여(인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후속투자

☞ 후속투자란 신보가 인정한 기관투자자가 신보의 투자옵션부보증을 받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증권연계형 사채를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2-6

유동화회사보증

회사채 발행을 통한 보증지원

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다음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대기업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CPA 감사보고서 보유 : 신보 미래성장성등급 K10 이상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 미래성장성등급 K9 이상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

지원 불가 기업

채무불이행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회생·구조조정절차 진행 기업 변제 이행기간 3년 미만 또는 변제이행률 60% 미만 회생 조기종결 기업 당기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인 기업
재무구조 개선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
지원타당성이 낮은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업 영위 기업

지원 유의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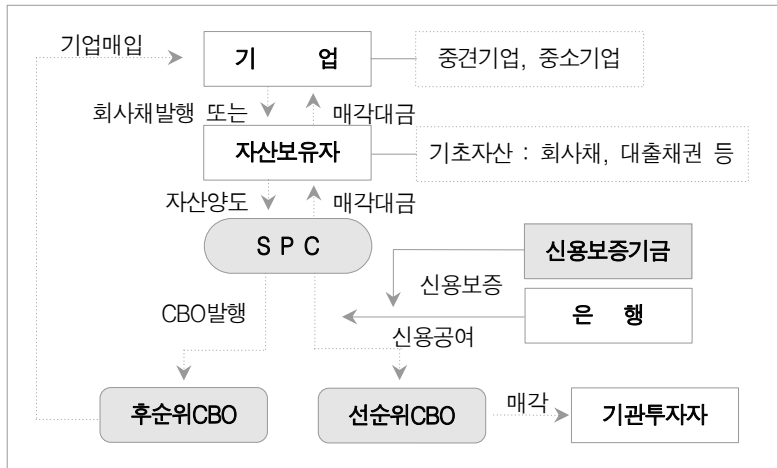
채무불이행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제 이행기간 3년 초과 & 변제이행률 60% 초과 회생 조기종결 기업
신용상태 취약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2개년 동안 EBITDA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 (미래성장성등급K5(회사채등급BB+) 이하) 업종별 부채비율 상한선 초과기업, 기업가치가 0이하인 기업 총 차입금(이번 신청건 포함)이 당기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생·기업구조조정 종결 후 2년 이내 기업인 경우

* 지원 유의 기업의 경우, 보증사업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편입 여부 결정

제도개요

-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 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증권과 후순위증권으로 구분 발행
 - 선순위 증권에 대하여 신보가 원리금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
- 신보의 보증으로 AAA등급으로 상향된 선순위증권은 직접금융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 증권은 회사채 발행 기업이 매입

〈유동화회사보증 구조〉



- 지원한도는 아래의 각 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 이내

① 편입한도

- 대기업

(단위:억원)

회사채등급	A-이상	BBB+	BBB	BBB-	BB+	BB	BB-
코로나19	1,500	1,275	1,050	825	600	450	300
일반	-						

- 중견기업

(단위:억원)

회사채등급	A-이상	BBB+	BBB	BBB-	BB+	BB	BB-
코로나19	1,050	900	750	600	450	300	150
일반	350			300	250	170	100

- 중소기업

(단위:억원)

미래성장성등급	K3이상	K4	K5	K6	K7	K8	K9	K10
코로나19	250	200	180	160	100	70	60	50
일반	200	170		140	80	50	40	30

(주1) CPA 감사보고서 비보유기업은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가능

② 매출액·자기자본 한도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및 유망·특화서비스기업 : 추정매출액의 1/3~1/4 이내 그 밖의 업종 영위기업 : 추정매출액의 1/4~1/6 이내
자기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채 등급 BB 이하인 기업(미래성장기업군 Ⅲ군)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 이내

(주) 신보, 기보 및 보증재단의 일반보증+투자금액+기업어음 차환발행기업 지원
 특별대출보증 금액+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 건 포함) 기준

● 발행금리

- 중소기업: 신용등급별로 2.82%(K1등급) ~ 5.42%(K10등급) 수준
 - 중견기업: 신용등급별로 2.32%(AAA등급) ~ 4.72%(BB- 등급) 수준
 - 대기업: 신용등급별로 2.32%(AAA등급) ~ 10.91%(BB- 등급) 수준
- 상기 금리는 2021.11.29일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채권금리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발행 시점의 채권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후순위채 연율 0.1~1.8% 범위 내에서 별도 인수

신청·접수

● 연중 상시 발행

- 중소기업: 전국 영업점
- 중견기업: 유동화보증센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쟁력, 미래성장성, 기업가치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입 여부 결정

제출서류

● 편입신청서류는 「신용보증 제출서류」 참조

처리절차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대상 기업은 몇 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하나요?

A. 신규 이용 기업은 3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하며, 조기상환할 경우 조기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응어설명

SPC(Special Purpose Company) :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특수목적의 법인

후순위채권 : 채무변제순위가 선순위채권에 비해 뒤지는 채권으로, 선순위채권의 상환이 완료되고 잉여 현금이 남아있을 경우 채권의 원리금이 지급

2-7

중소기업 벨류업 프로그램

일시적 경영위기기업 지원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경영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신보가 주도적으로 기업개선에 필요한 솔루션을 지원하여 계속기업가치를 향상시키고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재도약 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총여신 1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중 경영상태가 취약*한 제조업, 고용창출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경영상태 취약지표) 2년 연속 영업손실, 영업현금흐름 부(-), 자본잠식 상태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매출 30억원 미만 및 종업원 10인 미만인 기업, 업력 5년 이하, 부적합 업종*
- *개인서비스, 농업·육가공, 인력공급, 슈퍼마켓, 의류소매, 음식점, 건설기계 임대 등
- ▶ 직접보증잔액 5억 미만, 최근 1년 이내 신규증액보증 취급기업
- ▶ 부실사유 발생기업 등

지원내용

구 분	V(I) 프로그램	V(II) 프로그램
지원방식	신보 단독지원	채권은행과 공동지원
지원기간	3년+1년(연장가능)	좌동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보증(최고 50억원) ▶ 컨설팅(외부 경영진단) ▶ 보증료 차감 ▶ 만기연장 보장 ▶ 보험료 할인(10%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 지원 ▶ 협약은행여신금리인하 - 최대 2%p 금리인하 ▶ 만기연장
협약은행		기업, 하나, 농협, 신한

- 신청·접수**
- 담당 영업점을 통해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부실(심화)기업 등 대상 제외, 컨설팅을 통한 만성적 위기기업 선별, 심사 시 재도약평가표 및 심의위원회(외부 전문가 有) 운용

제출서류 ● 재무제표 등 보증신청 관련 서류, 경영개선계획서



지원규모 ● 연 100개 업체 이상 지원 예정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심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밸류업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심사 이전 경영상태 진단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컨설팅 종류에 따라 1~2개월의 수행기간이 필요하며, 컨설팅 완료 이후 프로그램 심사에 들어가므로 접수 이후 최소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8

매출채권보험

국가가 보장하는 외상거래 안전망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매출금)을 보험에 가입하여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 도모

지원대상

구 분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		
	규 모	업 력	업 종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
어음보험			

*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등
- ▶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등
- ▶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운용함
 -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지원내용

-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보험인수를 통해 기업의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폐업, 결제지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보험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

보험한도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0억원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보험료

- 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어음에 대하여 0.1% ~ 5.0%

상품종류

유형별	종류별	표준처리 기간	보험대상
매출채권 보험	한사랑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다사랑보험	15일	다수의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B2B PLUS+보험	8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된 매출채권 * 판매위험 보장과 동시에 B2BPLUS+보험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가능
어음보험	개별어음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신청·접수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계약자 및 구매자(어음관련인 포함)의 재무자료 등을 토대로 신용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인수금액, 구매자확정, 인수 여부 등 결정

제출서류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관련자료, 법인인감증명서 등
- 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받을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보험인수 21조원으로 운용
* '21년 지원현황 : 20조원 전망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와 시기는?

A. 아래의 네 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바로 보험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치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 폐업 또는 해산 등기된 때
- 회생, 파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
- 외상매출금을 결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2개월이 경과한 때

Q. 보험금 지급청구 시 필요서류는?

A. 보험금 지급청구시 아래의 서류를 신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지급 청구서(신보가 정하는 서식) 및 보험증권 사본
- 매출채권의 발생 관련 서류 및 실제손해금액 산정 서류 사본 (인수증, 화물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결제내역서 등)
- 매출채권이 어음상 채권인 경우 해당 받을어음 사본 (전자어음인 경우 부도전자어음 확인서)
- 기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용어설명

매출채권 : 상품·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거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보험가입 매출채권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개별 구매기업 사이에서 향후 1년간 발생될 매출채권총액에 인수비율(보험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보험에 가입될 금액

보험금액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 보험가입매출채권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산출

2-9

잡매칭(Job Matching)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서비스

중소기업의 구인난 및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 구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지원내용

- 잡클라우드
 - 신보 채용포털을 활용한 중소기업 맞춤형 무료 상시 구인·구직활동 지원
- 온라인 채용박람회
 - 채용전문포털사 연계를 통해 신보 추천기업 전용채용관을 개설하여 우수 중소기업과 우수 인재 일자리 매칭 지원
- 유관기관 협업 프로그램
 - 기업의 채용수용에 맞게 인재를 선별, 추천

신청·접수 ● 신보 홈페이지 (www.kodit.co.kr) - 잡클라우드 온라인 신청·접수

처리절차

- (잡클라우드)

회원가입	채용공고 등록(기업)	이력서 지원(구직자)	채용절차 진행
------	-------------	-------------	---------
- (온라인 채용박람회)

기업 모집 공고	신청·접수	참여기업 선정	박람회 운영
----------	-------	---------	--------
- (유관기관 협업 프로그램)

프로그램 모집공고	신청·접수(기업→신보)	인재 추천(유관기관→기업)	채용절차 진행
-----------	--------------	----------------	---------

문의처

- 기업컨설팅부 컨설팅지원팀 ☎ 053-430-4688
- 신보 홈페이지 (www.kodit.co.kr) - 잡클라우드 공지사항 참조

2-10

컨설팅

기업 경영애로 해결 지원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경영진단과 심층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신보의 보증·투자·보험기업 및 경영지도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연간 컨설팅 비용 지원금액이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기업
- ▶ 각종 인증, 투자유치, 사업계획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구축) 등 용역성 서비스

지원내용

- 경영컨설팅
 -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 재무회계, 생산관리 정보화(IT) 분야에 대한 컨설팅
- 특화컨설팅
 - 기업공개(IPO), M&A, 해외진출, 기술개발·사업화, 기업승계, 지식재산(IP) 등의 분야에 대한 컨설팅
- 데이터컨설팅
 - 신용관리컨설팅(CRC컨설팅), 거래처위험관리컨설팅(CRM컨설팅), BIR컨설팅 등
 - * CRC(Credit Risk Control)컨설팅 : 기업의 신용위험관리 능력을 배양
 - * CRM(Customer Risk Management)컨설팅 : 기업의 거래처 위험관리 능력을 배양
 - * BIR(Business Insight Report)컨설팅 : 보증심사 시 활용한 기업 분석정보를 보고서로 재구성하여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능력을 배양
- One-Point 경영클리닉
 - 경영활동 중에 겪는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컨설팅플랫폼에 질의하면 자문위원이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온라인 무료 경영자문 서비스

● 지원한도

구 분	지원 비율	최대 지원금
경영·특화컨설팅	60 ~ 100%	최대 10백만원
데이터컨설팅	100%	전액 무료

신청·접수

- (경영·특화컨설팅) 컨설팅플랫폼(www.kodit.co.kr/consult)로그인 후 신청·접수
- (데이터컨설팅)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에서 다운받은 컨설팅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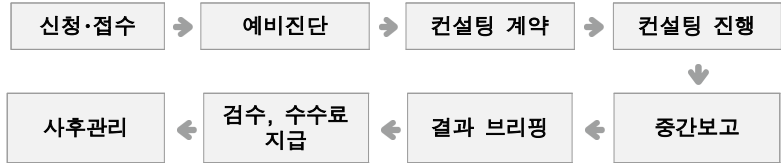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컨설팅 분야,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
 - * 신청순서, 신청사유, 애로사항,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 순서 결정

제출서류

- 컨설팅 신청서, 고객정보 활용동의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18억원 내외(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 * '21년 지원현황(10월말) : 경영컨설팅 278건, 특화컨설팅 245건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기업컨설팅부 : 053-430-4692~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컨설팅플랫폼이란?

컨설팅, 기업연수, 경영참고자료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비금융종합지원 온라인 포털사이트

2-1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경영혁신을 선도하는 기업 발굴·육성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자금, 판로 등의 연계지원으로 우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신청일 현재 설립 3년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내용

- 금융 지원
 - 보증료율 우대 (0.1%p 차감, 부분보증비율 85%)
 - 매출채권보험 우대 (보험료 15% 차감, 보험인수비율 85%)
 - 금융지원 협약보증 운용
 - * 중소기업은행: 선정 평가 수수료 지원 등
 - * 시중은행별로 보증료 차감 또는 지원(은행별 협약내용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
- 비금융 지원
 - 컨설팅 비용분담 비율 우대 (80%비용지원, 4백만원 한도)
 - * 메인비즈협회에서 인정한 '혁신역량 우수기업'의 경우 컨설팅비용 90%까지 지원

신청·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메인비즈 홈페이지 (www.mainbiz.go.kr)
- 인증발급 소요기간: 1개월 이내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정, 마케팅, 조직 부문에 있어 경영혁신 활동 여부 및 성과를 평가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자료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연간 경영혁신기업 4,000여건 선정
- * '21년 10월 말 기준 선정현황 : 3,477건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 경영혁신형중소기업협회 : 1666-5007 (www.mainbiz.go.kr)

👉 **용어설명**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여 혁신성고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

2-12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기업 상생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신보가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선지급(Factoring)하고, 결제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거래대금을 회수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구매기업이 대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판매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으로 기업의 연쇄도산 리스크를 해소합니다.

지원대상

- (구매기업) 대기업, 외감법인 이상 중견·중소기업
(판매기업) 원활한 물품 및 용역 제공이 가능한 중소기업
(매출채권) 결제기일이 30일 이상 90일 이내인 과세대상 매출채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구매기업과의 거래기간이 6개월 미만인 판매기업
- ▶ 구매기업과 관계기업인 판매기업
- ▶ 면세사업자, 해외소재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한도
신용등급, 업종, 매출액 등을 반영하여 기업별 한도 운용
(구매기업) 최고한도 30억원, (판매기업) 최고한도 10억원
- 지원효과

구 분	효 과		
구매기업	신규 결제수단	금융비용 無	보증료 차감 등
판매기업	금융기관 최저수준 할인료	신속한 현금화	상환청구권 無

신청·접수

- 신규 고객은 팩토링 전담팀을 통한 유선상담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영업점으로 문의 가능

심사·평가 주요내용

- 대표자 경영능력, 제품·서비스 경쟁력, 신용도, 미래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제출서류

- 고객정보활용동의서, 기업 재무자료(재무상태표 등), 주주명부 등

처리절차

- 구매기업의 팩토링 이용절차



* 구매기업은 결제기일 도래시, 신용보증기금에 대금을 상환

- 판매기업의 팩토링 이용절차



* 판매기업의 이용약정 및 신용보증기금과의 매출채권 양도계약 체결

지원규모

- '22년 600억원 규모의 팩토링 공급 예정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팩토링 전담팀 (☎ 02-710-4634)

Q&A

Q. 안심거래플랫폼 이용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안심거래플랫폼(www.kodit.co.kr/safe)으로 접속하시면 서류제출부터 약정 및 팩토링 신청까지 비대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품 안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단, 공동인증서(사업자용, 대표이사 개인용) 필요

2-13

녹색보증

탄소저감 효과 평가를 통한 보증지원

탄소저감 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보증을 지원하여 신재생 분야 활성화 유도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촉진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품목 등을 제조하는 기업(기술 보유 포함)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 ※ 그 외 지원대상 요건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공고문에 별도 안내

- 지원내용**
- 제도개요
 - 한국에너지공단(이하 “에공단”)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유망 기업을 신보에 추천하고, 신보는 추천된 기업에 대해 ‘기후기술평가’를 반영하여 운전·시설자금 보증지원

● 지원내용

구 분	탄소중립 특화보증	탄소중립 프로젝트보증
목 적	· 신재생에너지 설비 생산에 소요되는 운전 또는 생산자금에 보증지원	·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보증지원
대상기업	·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제품 제조 및 관련 기술 보유 기업)	·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전기·열 공급·판매 기업)
보 증 료	· 0.2%p 차감	· 0.5% 고정요율
보증요율	· 95% (전액해지 시설자금은 100%)	

- 지원한도
 - 신용등급별 최고보증한도는 중소기업 100억원, 중견기업 200억원

- 신청·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또는 신용보증기금 ESG보증팀에 신청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녹색보증사업공고 이후 신청접수 가능

심사·평가 주요내용

- 보증 신청기업의 신용평가 외에 탄소저감 효과 등을 추가로 평가하여 보증심사에 반영

-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신보가 직접 수집이 불가능한 자료(사업계획서, 발전사업 허가증 등)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처리절차



- 지원규모**
- 연간 1,750억원 수준(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52-920-0783~4)

Q&A

Q. 녹색보증은 일반영업점에서 취급하나요?

A. 아닙니다. 녹색보증은 일반보증과 달리 전국의 8개 영업본부내 별도 설치된 'ESG보증팀'에서 전담하여 취급하고 있습니다.

용어설명

기후기술평가 :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거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기후 변화대응기술)에 대해 사업화 역량, 기술경쟁력 등을 평가

2-14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신용보증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출연받아 신용보증기금이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제작사는 문화콘텐츠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문화콘텐츠를 유통하려는 자와 유통계약(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
 - 지원 장르(10개) :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 콘텐츠, 음악, 만화, 출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지원내용

- (대상채무)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운전자금
- (보증한도) 같은 기업 당 최대 30억 이내
 - 주요 유통사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콘텐츠 종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같은 기업 당 30억 한도로 우대하고, 일반적으로는 같은 기업 당 15억

구분	주요 유통사
배급사	씨제이이엔엠(주), (주)미디어플렉스, 롯데컬처웍스(주),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메가박스중앙(주)
방송사업자	방송 관련 국내·외 OTT사업자 포함
티켓판매사	(주)인터파크, 에스이십사(주), 엔에이치엔(주), 십일번가(주), (주)베이코리아
퍼블리셔	최근 3년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게임백서」의 국내·외 상위 10위 이내 유통사 및 플랫폼운영사업자

- (보증료율) 문화콘텐츠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보증료율 최대 0.8%p 차감

신청·접수

-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에 신청 및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작 인프라 역량, 콘텐츠 역량, 사업화 역량 등 장르별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콘텐츠를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 보증신청 기본 서류 및 선판매계약서 등

구 분	수 집 (제 출) 자 료
신보 직접 수집 (보증신청기업이 동의를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납세사실증명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재무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확인서
고객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 주주명부 • 기업개요표 • 선판매계약서

처리절차

보증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사) 보증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 (신 보) 문화산업 완성보증 지원 대상 요건 검토 · (콘진원) 심사 및 추천
보증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보) 콘텐츠 평가 및 보증심사 · (은 행) 여신심사
보증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보) 보증서발급 · (은 행) 제작사에 대출 실행
보증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사) 제작물 인도 · (유통사) 대출금 상환

- 지원규모** ● 연간 600억 수준(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02-710-4562)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글로벌게임허브팀 (031-725-6802)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금융팀 (061-900-6268)

Q&A

Q. 기술보증기금의 완성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완성보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완성 보증을 포함하여 보증한도를 계산합니다.

Q. 문화산업전문회사도 완성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문화산업전문 회사로 등록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특수목적회사도 금융회사가 완성보증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면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선판매계약 : 제작기업과 유통업체(배급사, 방송국, 퍼블리셔, 티켓판매사, 판권사업자 등)간 제작 완성 후 인도 예정인 문화콘텐츠의 판매조건 등이 명시된 문서 (특성에 따라 명칭은 달리 운용)

선판매계약금액 : 제작사가 문화콘텐츠 제작 완료 전에 선판매계약에 의해 유통사에게 판매하기로 한 판매금액(부가가치세액 제외)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3부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1

2022년 보증지원계획(총괄)

2022년 보증지원계획

'22년도 총보증 규모는 24.8조원으로, 신규보증 4.2조원을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지원규모 ● 전체 보증규모 및 보증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11월)		
보증잔액	270,000	267,663	265,000	△5,000
기술보증	268,000	265,418	263,000	△5,000
유동화회사보증	2,000	2,245	2,000	-
보증지원	244,000	241,889	248,000	+4,000
기술보증	243,000	240,707	247,000	+4,000
신규지원	47,000	48,243	42,000	△5,000
유동화회사보증	1,000	1,182	1,000	-

* 신재생에너지보증 계정 및 기후대응보증 계정은 미포함

● 중점지원분야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11월)		
혁신성장산업	50,000	87,151	55,000	+5,000
DNA+BIG3*	7,000	10,671	9,000	+2,000
비대면·디지털기업	6,000	8,564	10,000	+4,000
스마트제조·서비스	4,000	4,174	4,000	-
소재·부품·장비산업	2,500	2,802	2,500	-
수출중소기업	32,000	31,885	32,500	+500

* Data, Network, AI,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3-2

기술보증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신기술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지원내용

-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는 각종 자금을 대한 보증
-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어음상 채무에 대한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의 공사·물품공급·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 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등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 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융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이 아닌 구매기업에 직접 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 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지원대상 기업을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 (상시종업원 요건 폐지)하여 폭넓은 보증지원
- * (기준) 상시종업원 1천명 이하 & 총자산액 1천억원 이하인 기업

지원규모 '22년 24.7조원 공급 예정(유동화회사보증 0.1조원 별도)

신청·접수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 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 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처리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		
상담	영업점 담당자 →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		
서류 제출	신청기업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하여 기술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용어설명

기술사업타당성평가 :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의 기술성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것

3-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예비창업자 지원을 통한 창업활성화 도모

우수기술 보유 예비창업자의 창업자금 조달 가능성을 창업준비단계에서부터 예측 가능토록 하여 '준비된 창업'을 통해 성공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우수 기술·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전문가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지원내용

주요 내용	우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전 보유 기술·아이디어를 평가하여 창업자금의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창업멘토링을 통해 창업정보 제공 • 창업 즉시 창업자금 보증지원 및 사후관리 멘토링을 통해 사업성과와 애로사항 등 점검 • 지원한도 : 최대 10억원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우대(전액보증) • 보증료 0.7%p 감면 • 1억원 이하 기술평가료 면제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 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처리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Q&A

Q.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으로 창업자금 지원 결정 후 언제까지 창업해야 하나요?

A.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창업자금 지원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창업해야 합니다.

3-4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미래성장기반인 창업기업을 우대지원

기술력 기반의 창업을 유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우대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구 분	대 상 기 업
맞춤형 창업기업보증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창업후 7년 이내인 중소기업으로, 맞춤형 창업육성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청년 창업기업보증	• 청년창업기업(창업후 7년 이내로 실제경영자가 만 17~39세인 기술 창업기업)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 (숙련형)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실제경영자)가 만 40세 이상의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예비)창업기업 • (세대융합형)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를 포함한 경영진이 '중장년+청년'으로 구성된 창업후 3년 이내 (예비)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지원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우 대 사 항				
맞춤형 창업기업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별로 구분된 4대 맞춤형 창업육성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지원 *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첼린저창업, 기술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우대(90%~100%) 보증료 0.3~0.4%p 감면 (1억원 이내 1.0% 고정보증료) 지식재산권 건당 운전자금 추가 한도가산(2억원 이내) * 특허권 건별 30백만원 등 				
청년 창업기업 보증	기본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우대(95%) * 창업후 1년 또는 1억원 이내인 경우 전액보증 보증료 0.3%p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우대(95%) 3억원 이내 0.3% 고정보증료 				
	추가 우대	<table border="1"> <tr> <td>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td> <td>창업후 5년 이내 청년창업기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우대(95%) 3억원 이내 0.3% 고정보증료 </td> </tr> <tr> <td>청년 테크스타 보증</td> <td>최근 3년 이내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수 청년창업기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우대(100%) 3억원 이내 0.3% 고정보증료 * 상품에 따라 6억원까지 적용 가능 </td> </tr> </table>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창업후 5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우대(95%) 3억원 이내 0.3% 고정보증료 	청년 테크스타 보증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창업후 5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우대(95%) 3억원 이내 0.3% 고정보증료 					
청년 테크스타 보증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수 청년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우대(100%) 3억원 이내 0.3% 고정보증료 * 상품에 따라 6억원까지 적용 가능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에 대해 우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우대(95%) 보증료 최대 0.7%p 감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대상 창업후 5년에서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 및 세부 지원 대상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사업계획서 주주명부 신분증 사본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거주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대법원 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기금 수집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처리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Q&A

Q. 4대 맞춤형 창업육성분야 지원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4대 맞춤형 창업육성분야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식문화창업	• 혁신형지식서비스업 또는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이공계챌린저창업	• 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전문가 포함)인 제조업 영위기업
기술경력·뿌리창업	• 대표자가 만40~59세로서 동업계 종사경력 10년 이상인 제조업(뿌리산업 포함) 영위기업
첨단·성장연계창업	• (첨단산업) 첨단기술·제품 확인기업, 지식기반 제조업 영위기업,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 (유관기관 선정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선정되어 2년 경과하지 않은 기업

3-5

일자리창출 지원 프로그램(굿잡보증 등)

일자리창출을 유도하는 굿잡보증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창업기업 및 지식서비스·신성장산업 영위기업 등에 중점 보증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굿잡보증

- 고용유형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구 분		대 상 기 업
고용창출 (Track1)	점핑잡 (Jumping-J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1년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20% 이상 고용증가
	쉐어링잡 (Sharing-J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직전환)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성고용)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지방고용) 지방 중소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 증가 (장애인고용)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고용 (특성화고)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고용 (일자리안정)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단,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인 기업 제외)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고용유지 (Track2)	베스트잡 (Best-J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유지 * 과거 1년전 대비 고용감소시 제외

● 일자리창출 한도가산

- 보증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신기술사업자의 경우 운전자금 보증에 대해 신규고용인력별 보증지원 한도가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업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지원내용

● **굿잡보증**

구 분	주 요 내 용	우 대 사 항
고용창출 (Track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원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과 공장신축, 설비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우대(95%) 보증료 0.4%p 감면
고용유지 (Track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우대(90%) 보증료 0.3%p 감면 인건비 증가금액에 대해 운전자금 3억원까지 지원

● **일자리창출 한도가산**

- 한도가산은 최고 5억원 이내로 하며, 신규고용인력 1인당 가산금액은 신규고용인력의 나이, 기술자격에 따라 차등 결정

구 분	한도가산금액(1인당)
만 39세 이하 중급기술인력 이상	50백만원
만 30세 이하 초급기술인력	40백만원
그 밖의 인력	30백만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셰어링잡(Sharing-Job) 대상기업 확대 :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지원규모

- '22년 지원규모 : 1.15조원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사업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명부 신분증 사본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거주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처리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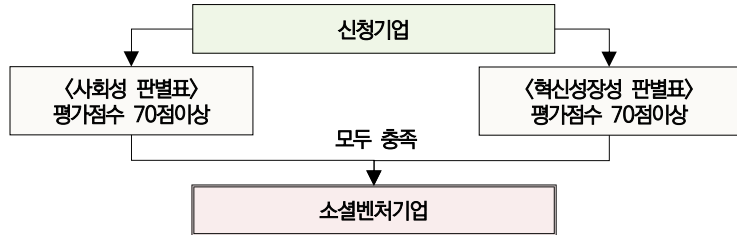
3-6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기업 지원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소셜벤처기업에 대하여 우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에 따른 사회적 및 혁신성장성 판별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각각 70점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4에 해당하는 기업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 ▶ 사회적과 혁신성장성(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포함) 위주로 종합평가하며, 보증 심사시 소셜벤처 판별 동시 검토

지원내용

구 분	우 대 사 항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사정특례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보증금액 2억원이하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	0.5%p 감면
지원계획	(‘21)1,350억원 → (‘22)1,500억원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처리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Q&A

Q. 우리 기업이 소셜벤처기업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기금은 기업 스스로 판별표를 작성하여 소셜벤처 판별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가진단 결과, 사회성·혁신성장성 점수가 각각 60점 이상인 경우 소셜벤처 판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https://sv.kibo.or.kr>) → 소셜벤처 판별 → 소셜벤처 자가진단

3-7

혁신성장산업 및 제4차 산업혁명 지원 제도

미래의 신성장산업 중점 육성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초연결성(인간↔인간, 인간↔사물, 사물↔사물), 초지능성(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관련 기술 및 기업을 육성하고, 제조·서비스혁신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을 우대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구 분	대 상 기 업
제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T, AI, 바이오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기술) 영위기업과 정부 추진 6대 핵심분야(DNA+BIG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ta, Network, AI,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핵심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또는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 • (일반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
스마트제조·서비스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 스마트서비스 기업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스마트공방 포함) 보급사업 참여기업 - 정부의 구축수준 확인제도를 통한 스마트공장구축확인 기업 - 기업의 자체구축 스마트공장 판별표상 요건 충족기업 - '첫 공장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유망 제조 스타트업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 정부의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 스마트서비스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성장산업 중 스마트서비스 분야 관련품목을 생산하며 별도 판별기준충족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업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고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지원내용

- 제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 ▶ (핵심기업) 보증비율 95%, 보증료 0.3%p 감면
 - ▶ (일반기업) 보증비율 90%, 보증료 0.2%p 감면
- 스마트제조·서비스 보증
 -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보증비율 90~100%, 보증료 0.3~0.5%p 감면
 - * 구축단계에 따라 0.5% 또는 0.7% 고정보증료를 적용 가능
 -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보증비율 90%, 보증료 0.3%p 감면
 - ▶ (스마트서비스 기업) 보증비율 95%, 보증료 0.3%p 감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스마트서비스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추가

지원규모

- '22년 지원규모 : 1.4조원(정부 예산규모에 따라 변동가능)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 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처리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		
상담	영업점 담당자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		
서류 제출	신청기업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하여 기술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Q&A

Q. 혁신성장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혁신성장산업이란 정부의 육성분야 및 시장수요와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선정한 것으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서 정하는 ‘9대 테마, 45개 분야, 300개 품목’을 말합니다.

* 9대 테마: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3-8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비대면·디지털기업 육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 영위기업'과 비대면을 위한 기반기술인 '디지털 기술 관련 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정부 집중육성 분야이자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비대면기업 및 디지털기업
 - (비대면기업) ICT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제조 생산·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감소시킨 비즈니스 모델 영위기업
 - (디지털기업) 쉼 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핵심 인프라 분야인 DNA* 및 ICT를 이용하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영위기업

* Data, Network, AI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고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지원내용

-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Two-Track) 지원
 - (핵심기업) '비대면기업' / '디지털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 ▶ 보증비율 95%, 보증료 0.3%p 감면
 - (일반기업) '디지털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
 - ▶ 보증비율 90%, 보증료 0.2%p 감면

- 최근 6개월 이내 ICT 인력 신규 고용기업에 대해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5억원의 보증지원 한도가산(고용인원 1인당 최대 75백만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ICT 인력 신규 고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한도가산

지원규모

- '22년 지원규모 : 1조원(정부 예산규모에 따라 변동가능)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공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공이용 시 대표자· 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처리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		
상담	영업점 담당자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		
서류 제출	신청기업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하여 기술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Q&A

Q. 비대면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중기부가 선정한 “①웨어러블 ②원격의료(진단, 치료), 병원·의료 관련 플랫폼 ③온라인 교육시스템 ④온라인 교육콘텐츠 ⑤원격근무, 화상시스템 ⑥온라인 홍보, 고객응대 ⑦스마트 금융 ⑧온라인 소비재(식품 등) 제조판매 ⑨생활중개 플랫폼 ⑩스마트 상점 ⑪전자상거래 ⑫게임 ⑬콘텐츠 ⑭소통 ⑮여행·숙박·장거리이동 ⑯물류 플랫폼, 배송대행 ⑰드론·무인기, 자율차 ⑱빅데이터, AI ⑲가상현실(AR/VR) ⑳클라우드 ㉑로봇 ㉒사물인터넷(IoT) ㉓지능형/차세대 반도체 ㉔5G ㉕정보보안” 분야를 말합니다.

3-9

클린플러스 보증

자금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한 보증상품

별도의 중개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용자기반의 간편하고 안정적인 운영자금 집행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자금사용의 투명성과 고객의 보증부대출 이용 편의성을 모두 향상한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 정상적인 사업영위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용역 대금(외주비 포함), 인건비, 임차료 등의 결제 목적 회전성 운전자금에 대해 보증지원(근보증)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기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한 근보증 채무에 대해 우대지원
 - ▶ 보증비율 95%(최초 취급후 5년간)
 - ▶ 보증료 0.5%p 감면(최초 취급후 5년간)
 - ▶ 협약체결기관 :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단, 하나은행은 '22.1월 이후 시행 예정)
- 모니터링 실시
 - (자금집행 모니터링) 중개사업자는 보증기업이 플랫폼에 입력한 자금용도 정보와 자금용도별 증빙자료를 대조하여 일치여부 등을 검증
 - (이상거래 모니터링) 기보는 중개사업자로부터 전송받은 대출요청 정보에 대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정보를 차단하며, 필요할 경우 사전 통제

지원규모 ● '22년 지원규모 : 1,500억원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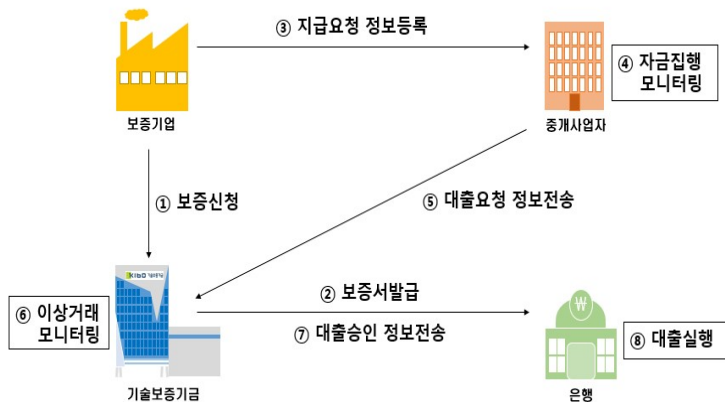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제출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서식 -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기금 수집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처리절차



- (보증기업) 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직접 대출요청 정보 입력
- (중개사업자) 보증기업이 입력한 정보의 이상여부 사전점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기금 및 은행에 대출요청 정보 전송
- (은행) 대출요청 정보에 따라 지급상대처에 대출실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용어설명

클린플러스보증 플랫폼 : 기업이 대출요청 정보를 입력하고 그에 따라 자금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웹 또는 모바일 형식의 시스템

3-10

원클릭보증

간편하고 신속한 보증지원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마우스 클릭만으로 보증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빅데이터 기반 고객지향적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잔액 없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지원내용 ● 빠르고 간편한 온라인 신청 및 온라인 자가진단을 통한 보증가능여부 확인

- 건별 운전자금 1억원까지 신속한 기술평가 및 보증지원
 - ▶ 보증비율 100%(최초 취급후 3년 초과시 단계적 인하)
 - ▶ 보증료 0.3%p 감면
- 운영한도 :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원클릭보증 외 기금 보증금액 포함)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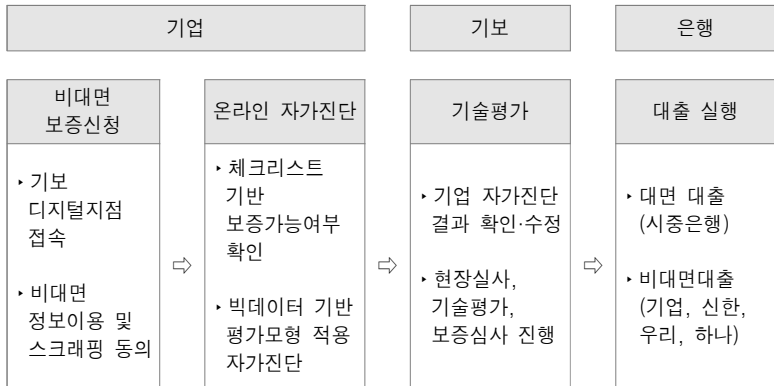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 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처리절차

- 고객은 영업점 방문없이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기술력 자가진단을 통해 보증결과를 예측하고, 자동으로 보증신청 진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3-11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보증지원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의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 문화상품은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 출판에 한함
- 신청요건 : 선판매계약금액 이내 보증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화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선판매계약금액 이내	•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선판매계약금액 초과	• 제작비의 5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 단,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
1억원 이하	• 제작비 대비 자금조달 요건 적용 생략

* 자금조달 확정: 자기자금, 선판매계약금액, 투자계약금액, 크라우드펀딩 모집금액, 차입금 등

* 선판매계약금액: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 전에 선판매계약에 의해 유통사에게 판매하기로 한 판매금액(부가가치세액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프로젝트당 최대 지원한도 30억원 이내
 - * 혁신성장 공동기준 문화콘텐츠 분야(한류콘텐츠 포함) 제작기업의 경우 최대 50억원 이내
- 보증금액 결정(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지원)

- 아래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하되, 제작비의 50%이상(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 이상) 자금 조달 확정된 경우에는 ① ~ ③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 지원 금액 결정

① 보증신청금액
② 제작비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가감비중 반영)
③ 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④ 선판매계약금액 중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부가가치세액 제외)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최저 20% ~ 최고 70%)

기술사업평가등급	제작비 지원비중	가 감 비 중
A 이상	6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10%) : 혁신성장공동기존 문화콘텐츠분야, 한류 콘텐츠, 융복합콘텐츠, 유통사가 국내 OTT인 콘텐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콘텐츠
BBB	50% 이내	
BB	4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감(-10%) : 채권양수도계약 제3자 대항요건 미충족
B	30% 이내	

- * 혁신성장공동기존 문화콘텐츠 : 영화, 방송, 케이팝, 애니메이션, 웹툰, 특수효과
- * 한류콘텐츠: 수출계약서 등에 의거 수출을 전제로 제작하는 문화콘텐츠
- * 융복합콘텐츠: 기존 콘텐츠 영역에 기술, 타장르, 타산업와의 다각적인 융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 * 유통사가 국내 OTT인 콘텐츠: 국내 자본이 50% 이상인 OTT 사업자에 유통하는 문화콘텐츠
-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콘텐츠: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문화콘텐츠

지원규모 ● '22년 지원규모 : 1,400억원

-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문화콘텐츠금융센터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2-3215-5972)
 -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31-725-7857)
 -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51-726-1300)
 - 대전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42-480-1322)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금융팀 (☎ 061-900-6267)

Q&A

Q. 선판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 A. 문화콘텐츠의 판매계약 체결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선판매계약이 없더라도 완성보증 신청·접수하여 보증심사하고, 판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보증취급 가능합니다.

3-12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수행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서비스 용역 수행기업이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서 등에서 정한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공급을 완료하도록 필요자금에 대해 보증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고도의 창조력이 체화되고 지식집약도와 경제적·문화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및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중 고부가서비스 용역계약 체결 기업 또는 체결 예상 기업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선도콘텐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연구개발업 / 전문디자인업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교육지원 서비스업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중개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산업/공연산업/광고산업 ▶ 방송산업 ▶ 음악,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산업 ▶ 정보서비스산업 ▶ 출판산업/캐릭터산업

● 대상자금

-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프로젝트성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획·제작·마케팅 비용 등

* 용역공급계약前이라도 창작자금 등 기획·개발 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 보증지원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같은 기업당 최대 30억원 이내
 - 유통공급계약 체결 이전에는 최대 10억원 이내
- 보증금액 결정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하되, 총제작비의 60% 이내에서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적용

- ① 보증신청금액
- ② 제작비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가감비중 반영)
- ③ 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 ④ 선판매금액 중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부가가치세액 제외)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기술사업 평가등급	유통계약前 지원		유통계약後 지원
	총제작비 지원비중	보증지원 가능금액	총제작비 지원비중
A이상	20% 이내	10억원	60% 이내
BBB		8억원	50% 이내
BB		6억원	40% 이내
B이하		2억원	30% 이내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문화콘텐츠 금융센터
 - * 방송, 영화 등 10개 장르 영위 기업은 유통계약 전이라도 "문화콘텐츠금융센터"에서 전담 취급하고, 그 외에는 기술보증기금 전국 영업점에서 취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2-3215-5972)
 -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31-725-7857)
 -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51-726-1300)
 - 대전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42-480-1322)

3-13

기후환경보증

기후·환경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

기후·환경산업 등 영위기업의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환경보전과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환경산업 등 영위기업에 필요자금을 보증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기후변화 적응,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산업 등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자

구 분	대 상 기 업
녹색성장산업	•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산업 영위기업
환경산업	• 물, 환경복원·복구, 환경안전·보건, 자원순환 등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영위기업
에너지산업	• 청정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의 생산, 공급 및 이용과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과 연관된 산업 영위기업
기후기술기업	• 기후변화에 대응·적응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친환경에너지 자원을 개발·확보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저탄소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는 기술(이하 "기후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기후·환경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운전 또는 시설자금 우대지원
- 보증비율 상향(최대 95%), 보증료율 감면(0.2%p)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3-14

신재생에너지보증

탄소중립 전환 지원

신재생에너지보증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보증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 분야 ①발전사업 영위 기업(발전기업) 또는 ②관련 기술 보유·품목 생산 기업(산업기업)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 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
 -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 사업 등 에너지(전기, 열)를 공급·판매하는 기업 (시설자금 지원)
 - ②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운전/시설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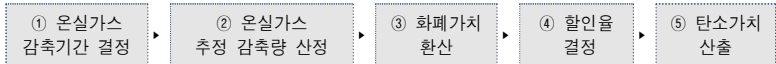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평가방법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기술보증기금의 전용 평가모형(탄소가치평가 모형·기후기술평가모형)을 활용하여 기술평가 후 보증

* 【탄소가치평가모형】 기금이 개발한 고난도 가치평가체계로서 기업이 기후환경기술·프로젝트의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하는 모델



지원내용

- 추가 한도지원 : 기존 운전자금 산정 한도금액에 탄소가치평가금액을 가산

* 시설자금은 해당 소요자금한도 이내 지원

500백만원 (온실가스 감축 소요자금)	+	200백만원 ^{탄소가치} (탄소가치 산출액)	=	700백만원 ^{↑200백만원} (지원 가능금액)
--------------------------	---	--------------------------------------	---	--

● 기타 우대사항

- 보증료 : (발전기업) 0.5% 고정보증료를 적용 (산업기업) 0.2%p 감면 적용
- 보증비율 : 95% 적용

처리절차

구 분	단 계 별	주 요 내 용
한국에너지공단(센터)	녹색보증사업 신청/접수	녹색보증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기업 확인, 보증기관에 추천
보증기관	보증 상담	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기술사업내용, 보증금지·제한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및 서류 제출 안내
	현장조사	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조사 실시
	심사·승인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탄소가치(기후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보증서발급	보증약정 후 은행 등 금융기관(채권기관)에 전자보증서 발송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약정/실행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자보증서 수신 후 대출 약정/실행 취급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신청·접수 : www.knrec.or.kr
 (공지사항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접수 안내” 참조)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탄소중립추진단 신재생금융팀 (☎ 051-606-7383, 7392, 7359)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052-920-0783~4)
- ※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사업 공고문 참조

용어설명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수력, 수열, 지열 등 산·재생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산·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 한국에너지공단 산·재생에너지센터에서 공고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해당하는 설비

기후기술평가모형(CTRS)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제반 기술로서 해당 기술·사업이 창출 가능한 경제적 가치(매출성장, 고용창출 등 미래성장가능성)를 기술사업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모델

3-15

R&D 보증

중소기업 R&D 투자 활성화

정부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자체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R&D전주기에 걸쳐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R&D를 개발·사업화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과 소요자금 사정기준을 적용하여 R&D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R&D 개발 및 개발된 과제의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지원내용

- R&D과제의 개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개발단계 자금
 - R&D 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인정'된 기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발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과제 : 신청일 현재 2년 이내에 개발이 완료되는 과제 • 대상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자금)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자금 - (개발완성자금) 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사업화단계 자금(기업단위)

- KTRS(KTRS-SM)평가표에 의한 '사업화타당성'이 인정된 개발완료 과제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의 기업자체 R&D 과제 - 최근 3년 이내 개발성공 판정을 받은 정부출연 R&D 과제 - 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을 받은 공공연이전 R&D 과제 • 대상자금 : R&D 성공과제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 사업화단계 자금(과제단위)

- 과제단위 R&D사업화모형 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인정'된 기업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부처 전담기관의 R&D과제 : 중기부 R&D과제(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中 최근 3년 이내 최종평가결과 "우수" 또는 "보통(완료)" 판정을 받은 과제 • 대상자금 : 과제단위 사업화 또는 공정개선에 소요되는 (초기)운전자본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혁신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기업단위의 기본증금액에 불구하고, R&D과제단위로 평가를 수행하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원
* (현행) R&D의 개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단위로 지원

지원규모 ● '22년 지원규모 : 5조 8,000억원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		
상담	영업점 담당자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		
서류 제출	신청기업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 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하여 기술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 발급	영업점 담당자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Q&A

Q. 대출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 A. 금융거래확인서를 대상으로 동 확인서의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이내에 10일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용어설명

KTRS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평가표 : 기술보증기금의 대표적인 기술평가시스템으로, 기술 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타 경영환경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R&D모형 평가표 : R&D개발과제기술의 핵심역량수준과 지속가능수준(기술개발성공가능성, 사업화성공가능성, 부실위험)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과제단위 R&D사업화모형 평가표 : 사업화 주체에 대한 평가항목을 최소화하고, R&D 과제 자체의 기술성·시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제의 사업화 성공가능성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3-16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특허권의 사업화 촉진 보증지원

특허청과의 「우수특허기술 사업화지원 협약」에 의해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허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금융을 지원 합니다.

지원대상

-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자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내용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
 -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산출된 기술가치금액 이내에서 같은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지원
- 특허청의 기술평가수수료 지원결정 시 기술평가료 5백만원 중 3백만원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이 지원하며, 지원금을 제외한 평가비용 2백만원은 금융기관 또는 신청기업이 부담
 - 보증비용 (90%~95%), 보증료(0.3%p~0.5%p 감면) 등 우대 지원
 - 금융기관(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대구, 광주은행)과 협약에 의한 보증의 경우 평가료 지원

유의사항

- ▶ 보증지원은 등록된 특허권에 한하여 운용되며, 여타 지식재산(심사청구된 출원 특허, 저작권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IP)평가보증으로 취급 가능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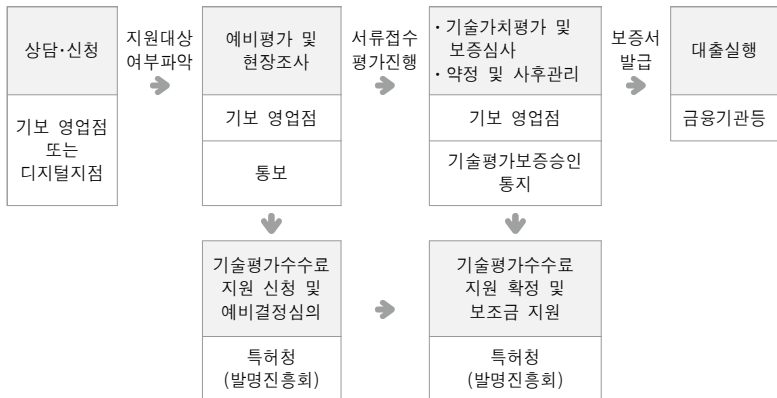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처리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Q&A

Q. 특허출원중인 경우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은 등록된 특허권이 보증 대상이며, 여타 지식재산(출원중 특허, S/W,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평가보증으로 보증 취급 가능합니다.

3-17

지식재산(IP) 평가보증

지식재산(IP)의 사업화지원

우수 지식재산(IP)의 창업·인수·사업화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로, 등록된 지식재산(IP) 및 미등록 지식재산(IP)에 대해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기술가치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가치금액 범위내에서 사업화 또는 인수자금을 보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지식재산(IP) 기반 창업·인수·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이상인 기업
 - 등록된 지식재산(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및 미등록 지식재산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내용

- 지식지식재산(IP)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보증 지원
-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신청기술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전용실시권자 포함)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이상
 -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완료', '양산준비', '양산' 단계에 있는 지식재산
 - 보증비율 (90%~95%), 보증료(0.3%p~0.5%p 감면) 등 우대 지원
 - 금융기관(국민, 기업, 대구, 신한, 우리, 하나, 수협, 경남은행)과 협약에 의한 보증의 경우 평가료 지원
- 지식재산(IP) 인수보증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하는 기업에 지식재산(IP) 인수자금, 기술 완성화자금, 양산자금을 지원

- 지원범위 : 착수금, 기술료 또는 기술매매대금
- 보증비용 (95%), 보증료(0.3%p 감면) 등 우대 지원

지원규모 ● '22년 지원규모 : 1조 5,0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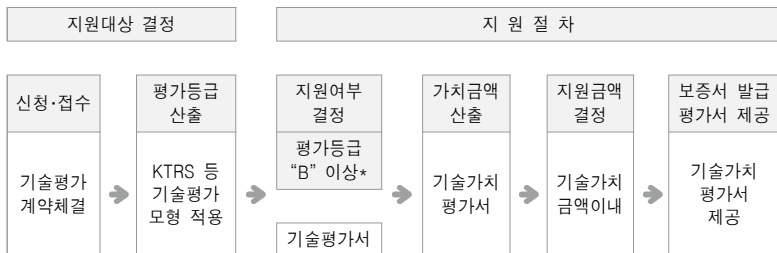
-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처리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Q&A

Q. 지식재산(IP) 평가보증의 지원대상인 '신청기술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개발 진척도가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나요?

A.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 완료', '양산준비' 또는 '양산' 단계에 있는 기술을 포함합니다.

용어설명

지식재산(IP) 보증 대상기술

- 산업재산권	특허권,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저작권	저작권	문학예술분야 창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인접권	실연가·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 신지식재산권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정보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 임치된 지식재산	우리 기금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임치된 지식재산 그 밖에 영업점장이 지적창작물로서 권리성 가치를 인정한 지식재산	

3-18

기술평가

기술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그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금액, 등급,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로써,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으로 분류하며 평가목적,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권리
-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권리
-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
- 저작권법에 의하여 등록된 프로그램
- 신기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술의 권리 등에 관하여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내용

종 류	주 요 내 용
기술가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외국인 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기술의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 • 기술의 이전·거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 • 기술관련 사업의 이전, 양수도 등을 위한 평가 • 기타 기술 또는 기술사업 관련 가치평가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기업 선정 평가 • 발명의 사업성 평가 • 기술개발관련자금, 창업자금 또는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평가 • 금융기관 등의 여신심사용 기술평가 • 기술이전·거래 등을 위한 타당성 평가

종 류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평가 • 소선편채기업 지원을 위한 평가 • 보증지원을 위한 평가
종합기술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용 평가 •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평가 • 주식이차평가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제출서류

-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기술가치평가용, R&D평가용 등)

처리절차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을 보유한 자 ◦ 투·융자,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등
예비평가	<p>본 평가에 앞서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아래 사항을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자료의 적정여부 ◦ 특정자금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요건 여부 ◦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에 관한 개략사항
본 평가	<p>예비평가를 기초로 현장실사 및 보완조사 방법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검토</p> <p><현장(면담)실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 기술개발실적 등 기술개발능력 확인 ◦ 제품개발계획 및 진척도, 완성도 등 제품화능력 확인 ◦ 생산설비 보유상황 및 가동상태 등 생산화능력 확인 <p><보완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관련자료 수집 ◦ 거래처, 동업계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한 조회 ◦ 대내외 각종 기술정보 및 산업동향정보의 조회
기술자문/평가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기술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기술자문 실시 및 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의결 실시
평과결과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평가서 또는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인 등에게 통보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3-19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사업재기 자금지원

실패하였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있어 재기가능성이 높은 기업(기보 단독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과 신규보증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실패기업 및 재도전 경영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인 기업
 - * 실패기업 : 기보가 대위변제 후, 기보에 대한 구상채무의 변제유무가 남아있는 기업
 - ** 재도전 경영자 : 실패기업의 대표자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실패기업 또는 재도전 경영자가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보유한 경우
- ▶ 재기지원보증 신청기업이 기금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무 보유한 경우 (다중채무자)
- * 기타 상세내용은 영업점 문의

지원내용

- 경영자의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과 신규자금 지원
- 채무조정: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
- 회생지원보증: 구상채무를 정상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 보증한도: 최대 30억원(회생지원보증 포함)
 - ▶ 신규 운전자금보증은 10억원 이내

지원규모

- 기보의 기본재산을 활용한 운용배수 방식으로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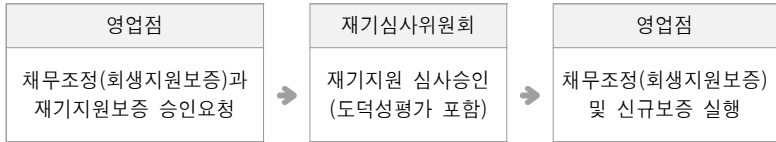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제출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등(세부사항은 영업점 문의)

처리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Q&A

Q. 재창업 재기지원보증과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재창업 재기지원보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함께 중진공의 사업 자금 대출에 대하여 기보와 신보가 보증을 하고,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은 기보 단독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조정(또는 희생지원보증)과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으로, 보증대상 및 요건,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Q. 희생절차·신용회복지원절차 정상변제중인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가 있고, 이를 포함해 희생절차 또는 신용회복 절차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실패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절차의 변제 계획에 따라 정상 변제 중이어야 하는 등 세부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20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우수 기술력 보유 성실실패자 재창업지원

실패하였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있어 재기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던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로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재창업 예정인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중소기업정책자금 용자제의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재창업 신청전 실패한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업체

지원내용

- 경영자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 지원
-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보유한 상각채권 및 대지급일 또는 연체기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의 원금은 최대 75% 감면
- 재창업자금지원
 - (자금보증 :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 자금집행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대출한도 : 최대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의 재창업중소기업

지원규모

- '22년 지원규모 : 자금집행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

-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제출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등(세부사항은 영업점 문의)

처리절차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Q&A

Q. 신청후 평가진행시 성실경영평가 기관과 사업성 평가기관을 신청인이 지정할 수 있나요?

A.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자금 지원기관(기보, 신보, 중진공) 중에서 선택하신 1개 기관이 수행하며, 사업성 평가기관은 기보, 신보, 중진공 및 민간평가기관(NICE, KED)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관련된 기관이 많은데 처리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채권기관의 채무조정 절차와 성실경영평가자를 선별하는 절차가 수반되는 지원사업으로 처리기간은 2~3개월 가량 정도 소요됩니다.

3-21

지식재산공제사업(舊 특허공제사업)

지식재산(IP) 비용 부담 완화

기업의 납부 부금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동 재원으로 국내외 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등 발생시 해당 비용을 대출받아 활용함으로써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공제계약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가입) 약관 위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행위로 공제대출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 (가입) 담배·주류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육탕업 및 마사지업 제외
 - ▶ (대출) 부금납부 월수가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대출신청일 현재 부금의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경우
 - ▶ (대출) 규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 ▶ (대출)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연체중이거나 휴업, 폐업, 해산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때 등
- *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공제 약관을 참고 하실 것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공제대출 사유(지식재산 국제출원, 소송 등) 발생여부 및 소요비용의 적정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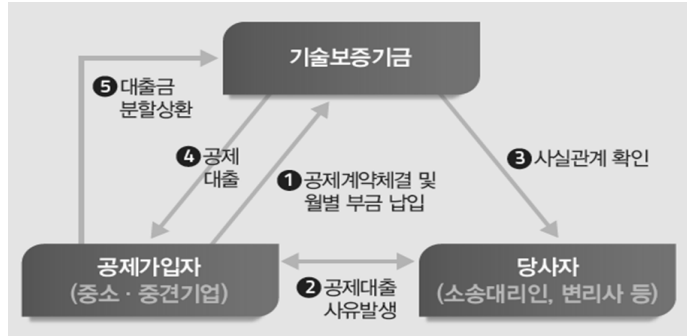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식재산비용대출
 - 산업재산권의 국내외 출원, 국내외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취소 소송,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지식재산 이전 및 사업화 사유 발생시 납부 부금액의 최대 5배까지 대출
- 경영자금대출
 - 일시적으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납부 부금액의 90% 한도 내에서 대출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홈페이지(www.ipmas.or.kr) 및 전국 영업점

처리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운영센터 (☎ 02-3484-8900 / www.ipmas.or.kr)

Q&A

Q. 지식재산공제사업인데 지식재산권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지식재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단, 제외업종은 가입 불가)

Q. 부금 이자율은 고정금리 인가요?

A. 아닙니다.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2021년 12월 현재 연 단리 1.75%)

용어설명

지식재산권 :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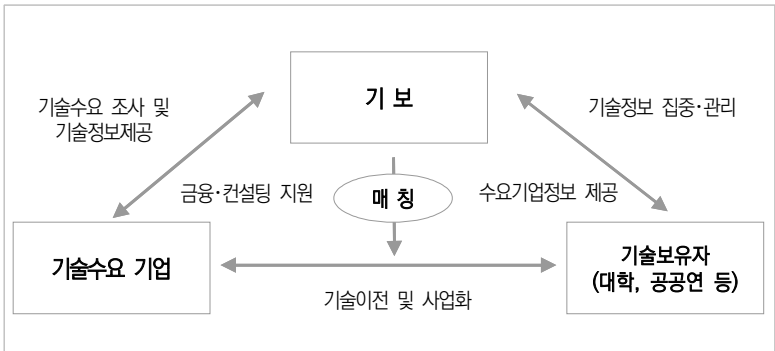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기술보증기금은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관련 산업 재산권 등의 정보제공, 기술보유자-기술수요자 간 거래 알선, 협상 및 기술사업화 필요 자금에 대해 기술금융을 통해 One-stop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 R&D성과 등 우수기술을 도입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기술수요 진단 및 필요기술 매칭지원
- 공공연구기관 및 신청기업 간 기술이전 중개지원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 및 컨설팅 지원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테크브릿지(tb.kibo.or.kr) 및 전국 영업점/기술혁신센터

제출서류 ● ①기술이전 신청서, ②기타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지식재산 인수보증을 위한 서류(필요시 별도 안내)

처리절차



- 상담 및 신청(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 전국 모든 영업점(기술혁신센터 포함) 또는 테크브릿지(tb.kibo.or.kr)를 통해 신청
- 기술수요조사, 예비검토 (기보 기술혁신센터)
 - * 도입희망기술에 대한 기술수요조사, 거래조건, 기술거래 성사가가능성 등 검토
- 기술탐색 (기보 기술혁신센터, 대학·공공연 등)
 - * 기업·기술매칭 시스템인 KTMS를 이용하여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맞춤형기술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 제공
-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체결 (신청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기보 기술혁신센터, 대학·공공연 등)
 - * 협상전략 수립 후 기술이전조건(거래금액, 계약형태 등)에 대해 협상·중재
- 자금지원 (기보 기술혁신센터)
 - * 지식재산 인수보증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료, 추가개발자금, 양산자금을 지원
- 사후관리, 컨설팅 (기보)
 - * 기술경영지도 등을 통해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지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용어설명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 : 키워드 추출 및 유사도 측정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맞춤형으로 탐색하여 매칭하는 IT분석 모듈

지식재산 인수보증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지식재산 인수자금, 기술완성화 자금, 양산자금을 Package방식으로 단계별 보증지원하는 제도

3-23

기술신탁관리

공정한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중견·대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기술을 신탁받아 특허관리, 기술이전중개, 특허전략 수립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위탁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본 계약의 체결 및 그로 인한 권리, 의무를 이행할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 ▶ 위탁자가 파산, 회생절차, 청산절차 등이 개시되었거나 위 절차들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 ▶ 위탁자가 신탁기술의 적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
- ▶ 기타 위탁자의 대상으로 부적합한 경우

지원내용

- 연차등록료 납부기일 관리, 대행 및 비용 지원
 - *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등록료의 최대 70% 지원(최대 연간 30만원)
- 신탁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중개 및 기술료 징수 서비스 지원
- 신탁기술에 대한 특허심판, 특허침해소송 등 분쟁 법적 대응
 - * 소송비용은 위탁자가 부담
- 특허전략컨설팅 비용 지원
 - * 예산범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최대 지원한도 450만원)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부 R&D과제 신청시 평가가점 부여
 - *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경우
- 신탁기술이전에 대한 지식재산 인수보증 지원시 보증비율 우대
 - * 전액보증(보증비율 100%)으로 우대 지원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테크브릿지(tb.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제출서류

- ①신탁신청서류, ②정보이용동의서 등

처리절차



- (사전체크리스트) KPAS(기보 특허자동평가시스템) 등급 등 필수요건 확인
- (선별평가) 기술/시장성, 기술이전 가능성 등 타당성 평가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Q&A

Q. 기술신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A. 신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운영하며 최대 2년까지 계약하실 수 있으며, 신탁기간 종료 전 1회에 한해 1년 범위 이내에서 신탁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KPAS(Kibo Patent Appraisal System, 특허자동평가시스템) : 빅데이터(국내 전체특허 DB) 처리 기술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특허기술(IP) 등급을 평가하는 모형

3-24

기술입치

비공개 기술 노하우를 위한 보호수단

핵심 영업비밀 등을 특허와 같이 공개하지 않고 제3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함으로써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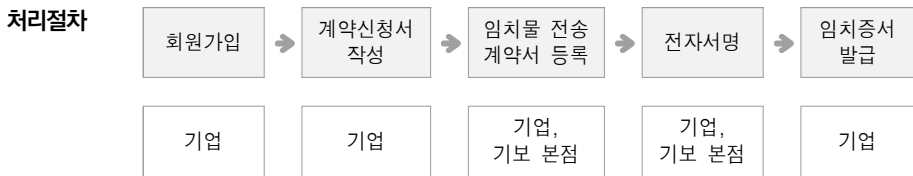
지원대상 ●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기술·경영상 비밀을 보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술상 정보
 -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 물질의 배합 방법
 -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등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등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s.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Q&A

Q. 특허와 비교했을 때 임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기술공개에 대가로 받게 되는 특허권과 같이 청구항이라는 일정범위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권한은 없지만, 임치제도는 기술정보에 대해 개발기업을 제외하고 열람이 불가하며, 기술이 유출되지 않는 한 영구적 기술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허출원 및 등록을 위한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Q. 기술임치제도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A. 임치된 기술은 '상생협력법 제24조의3제2항'(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중략>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에 따라 법적 추정력이 부여되어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3-25

TTRS(증거지킴이)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 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보에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서비스
 - 제안서, 거래 요청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자료
 - 거래상대 담당자의 근무부서와 이름
 - 자료 피요구시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
 - 임치한 기술의 거래 관련 TTRS* 서비스 이용 시 등록비용 전액 지원

* TTRS : 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s.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Q&A

Q. TTRS는 어떤 때 이용해야 하나요?

A. 다음과 같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거래처(대기업)로부터 자동차 부품 개발 오더를 받아 약 1년간 2억원을 투입해 부품과 설비를 제작했고, 납품제안 단계에서 설계도면 등 특허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제공했는데, 일방적으로 거래 불가 통보를 받았고, 알고보니 상대기업이 다른 업체에 우리 기술자료를 넘겨 그 회사가 전량 납품하기로 계약이 체결됨(18.9월 중기중앙회, 기술탈취 실태조사)

Q. TTRS와 기술임치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물입니다. 기술임치제도는 외부로 유출이 우려되는 핵심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이 기술 및 경영상의 중요한 정보를 목적물로 임치함으로써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라면, TTRS는 다른기업과 거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유출당하지 않도록 거래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자료(이메일, 녹취록, 거래 요청 의향서, 거래 당시 정황) 등을 목적물로 등록함으로써 향후 소송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3-26

보증연계투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유가증권 등을 직접 인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기보와 보증 거래중이거나 보증과 투자를 동시에 신청하는 기업법인 설립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 단, R&D기업,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력 제한 적용 배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술평가 및 투자심사

지원내용

- 투자종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투자방식
 - * 주식(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
- 투자한도
 - 업체당 최대 30억원(보증금액 포함 200억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투자방식 다양화를 통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 도입
- ▶ 업체당 투자한도 제한(보증금액의 2배이내) 폐지 및 통합한도 확대

지원규모

- '22년 지원규모 : 500억원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벤처투자센터/기술혁신센터

처리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용어설명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자금을 지급하고 투자에 따른 지분율은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산정에 따라 결정되는 투자 계약방식

3-27

벤처투자연계보증

민간투자자 보증물 연계

민간벤처캐피탈 등이 투자한 기술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후속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Scale-up을 지원하는 우대보증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벤처투자기관(개인투자자 제외)이 투자한 기술혁신선도형기업

구 분	종 류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외국투자회사
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 (지원대상 투자) 주식회사의 주식(보통주식, 종류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또는 유한회사의 출자

* 단,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하는 신주(유한회사의 경우 신출자) 또는 신사채 인수에 한하며, 구주(유한회사의 경우 구출자지분) 또는 구사채 인수분은 투자로 불인정

● 벤처투자연계보증 지원 구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지원내용

지원항목	투자옵션부보증으로 취급시	투자옵션부보증 미취급시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기술창업기업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보증료	1% 고정보증료를 적용	0.3%p 감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투자옵션부보증으로 취급시 1% 고정보증료 적용 및 100% 전액보증

지원규모

- '22년 지원규모 : 3,0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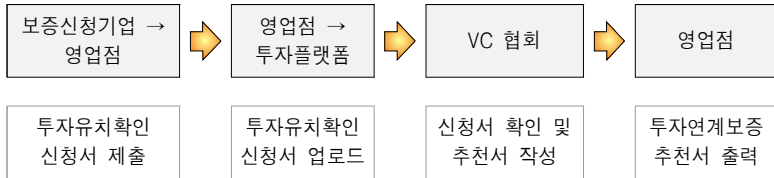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용어설명

투자옵션 : 기금이 기업에게 보증을 지원하고, 그 보증부대출 상환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이 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인수를 위해 납입하는 주권납입금으로 총당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28

엔젤투자연계보증

엔젤투자자와 보증을 연계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신속한 성장 및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최근 3년 이내에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3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기보엔젤파트너스가 추천한 기업
 - (3년이내) 엔젤투자기업의 자본금 변동 등기일로부터 보증신청일자까지의 기간
 - (3천만원 이상 투자) 3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미만인 기업**
 - * 보통주, 우선주에 한하며, 구주인수 및 현물투자는 제외
 - ** 법인설립일자로부터 보증 접수일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 * 보증신청기업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를 실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대상기업(요건) 미충족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가장납입 또는 엔젤투자자와 엔젤투자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엔젤투자금액의 2배 이내(최대 3억원)에서 지원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 : 0.3%p 감면, 투자옵션부보증으로 취급시 1% 고정보증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투자옵션부보증으로 취급시 1% 고정보증료 적용

- 지원규모**
- '22년 지원규모 : 200억원

-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엔젤투자한 기보엔젤파트너스가 기보에 추천한 이후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에서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Q&A

Q. 기보엔젤파트너스가 아닌 엔젤투자자의 투자금액도 인정되나요?

A. 기보엔젤파트너스의 투자금액만 인정됩니다.

Q. 투자실적 확인 기준시점은 투자계약일자인가요?

A. 투자계약 후 투자금 입금 및 자본금변동등기가 완료되어야 하며, 법인등기 사항 전부증명서의 자본금 변경 등기일자를 기준시점으로 봅니다.

용어설명

기보엔젤파트너스 :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전문개인투자자 중에서 선정한 엔젤투자전문가 그룹

투자옵션 : 기금이 기업에게 보증을 지원하고, 그 보증부대출 상환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이 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인수를 위해 납입하는 주금납입금으로 총당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29

VC투자매칭특별보증

VC 투자시 유사 규모의 보증지원

민간 VC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에 유사 규모의 보증을 레버리지방식으로 매칭 지원하여 스케일업을 가속화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기보VC파트너스가 추천한 기업
 - (투자요건) 보증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2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중소기업
 -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의 투자만 인정,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등기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등급요건)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 * 신청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를 실시
-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에 선정된 기업 (협약기간 이내)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대상기업(요건) 미충족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가장납입 또는 엔젤투자자와 엔젤투자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최대 50억원 (기보증금액 포함)
- 특례지원 : 운전자금보증금액 20억원까지는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1/2까지 지원 가능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 : 1%(고정보증료)

- 투자유선부보증으로 운용
 - (유선내용) 보증금액의 10% 이내에서 기보가 신주인수권을 취득
 - * (행사기간) 보증일로부터 3년 이내, (행사가격) 행사 직전 투자 단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투자유선부보증으로 취급시 100% 전액보증

지원규모

- '22년 지원규모 : 1,000억원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벤처투자센터

제출서류

- 투자확인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Q&A

Q. 기보VC파트너스로부터 투자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기보VC파트너스인 VC로부터 투자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최근 6개월 이내 20억원 투자요건이 있는데, 기보VC파트너스 투자실적만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벤처투자기관의 투자실적이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전체 투자유치건 중 기보VC파트너스의 투자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용어설명

기보VC파트너스 : 벤처투자 활성화로 위해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벤처캐피탈 (VC) 중 기보에서 선정한 투자 전문가 그룹

투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투자” 중 신규발행 주식(보통주, 우선주), CB, BW를 말함 (단, 현물투자 제외)

투자유선 : 기금이 기업에게 보증을 지원하고, 그 보증부대출 상환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이 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인수를 위해 납입하는 주금납입금으로 총당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30

벤처확인평가

벤처특별법에 따른 확인평가

기술보증기금은 '98년부터 벤처기업확인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도개편 후 '20.12월 벤처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혁신성장기업, 연구개발기업, 예비벤처기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벤처확인평가유형 및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유형	요건
공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혁신성장 기업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연구개발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업 전담부서 중 하나를 보유하고,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 신청일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 이상 (창업 후 3년 미경과 기업 및 매출액이 없는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 ▷ 사업성 평가 우수
예비벤처 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순번	업종명	표준산업분류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6	무도장 운영업	91291

*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통계청장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름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기술평가보증·대출유형 폐지 및 혁신성장유형 신설
- ▶ 벤처기업확인업무 이관(기보·중진공·벤처캐피탈협회 → 벤처기업협회)
- ▶ 평가를 전담하는 전문평가기관 지정 (기보 외 9개기관)
- ▶ 유효기간 연장 (2년 → 3년)
- ▶ 벤처확인평가 수수료 변경 (30만원 → 유형별 30~45만원)

수수료

- 벤처 신규, 연장 수수료 동일

구 분	벤처확인 수수료 ¹⁾
혁신성장유형	45만원
이노비즈 연계 ²⁾	30만원
연구개발기업	35만원
예비벤처기업	35만원
벤처 재확인 ³⁾	30만원

- 1) 부가가치세 별도
- 2) 이노비즈 인증보유 기업이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평가 신청한 경우
(이노비즈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벤처확인 신청)
- 3) 예비벤처확인 이후 1년 이내 벤처재확인 신청한 경우(혁신성장유형 신청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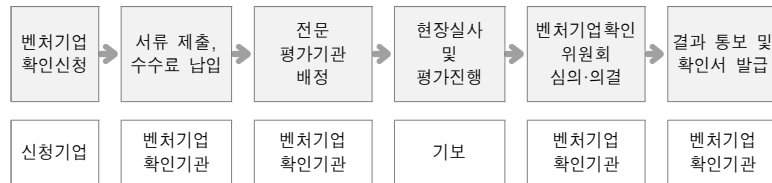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제무제표 등
- * 제출서류 목록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 자료실에서 확인가능

처리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벤처기업확인기관 ☎ 1566-6487

Q&A

Q. 벤처확인제도 개편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21.2월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시행 후 기술보증기금은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벤처확인평가만을 전담하고 있고, 벤처기업확인기관(벤처기업 협회)이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여부 결정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전문평가기관의 벤처확인평가 등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합니다.

*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벤처기업 관련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 공개, 벤처기업 확인 수수료 수납, 벤처기업 확인 취소 등

3-31

이노비즈(Inno-Biz) 인증평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평가

이노비즈(Inno-Biz)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 의한 평가기관으로, 이노비즈 인증평가를 수행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자가진단결과 650점 이상인 기업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고, ▶ 설립 후 3년 이상이며 정상 가동중인 기업
선정절차	▶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시스템에 의거 평가 실시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이고, ▶ 개별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이노비즈 신청 가능)
- ▶ 이노비즈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영위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별표2])

평가료

- 신규 평가료 70만원, 연장 평가료 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이노비즈 인증평가를 받은 기업이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벤처기업확인(혁신성장유형)을 신청하는 경우 15만원 감면

- 이노비즈 인증평가를 받은 기업이 60일 이내 보증신청하는 경우 기술 평가료 20만원 감면
-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이 기보 이노비즈 신규 및 연장 평가완료일 전·후 30일 이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20만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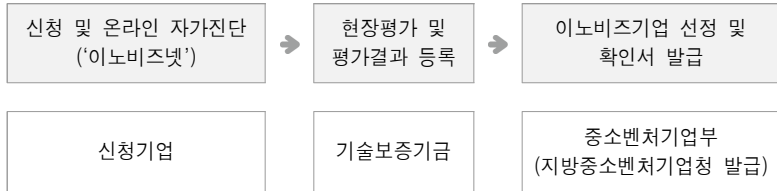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제출서류

- 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각종 인증서 및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이노비즈넷 (☎ 031-628-9600 / www.innobiz.net)

Q&A

Q. 이노비즈 심사 시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A. Inno-Biz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차 온라인 자가진단 후 2차 현장평가를 통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Inno-Biz로 선정됩니다. 2차 현장평가에서는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자체 평가했던 내용에 대하여 기업이 사실대로 평가를 했는지의 신뢰성 유무를 확인하며, 기업이 보유한 개별기술에 대한 현황과 보유기술에 대한 혁신성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하므로 심사기업은 이에 따른 검증자료와 기술에 대한 일련의 서류 및 설명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4부
기업은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1

2022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기업의 규모, 형태, 소요자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합니다.

주요상품

주요 대출상품	상 품 개 요	비고
스마트동산 담보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IoT(사물인터넷) 기술로 동산담보 가치를 제고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대출한도 및 금리를 우대 지원 	
IP사업화 자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보력은 약하나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IP를 담보로 자금지원 	
IBK강소 기업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기술·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자금 지원 	
수출입기업 유동성지원 자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채산성 및 가격경쟁력 약화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IBK문화 콘텐츠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지원 	
IBK시설 투자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IBK토지분양 협약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은행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산업단지 시행사가 분양하는 토지의 수분양자에 대하여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 또는 타행 토지분양협약대출의 대환자금을 대출 	
중기부R&D 사업화자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추천 R&D 과제 성공기업 및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지원 	

4-2

스마트동산 담보대출

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담보로 자금지원

IoT(사물인터넷) 기술로 동산의 담보자산 가치를 제고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대출한도 및 금리를 우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본인 소유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할 예정인 기업

지원분야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한도 ● (운전자금) 담보감정평가액의 100% 이내
● (시설자금) 소요시설자금의 최대 90% 이내

대출기간 ● 상환방식에 따라 최장 4년 이내

담보운용 ● (대상) IoT 디바이스로 관리 가능한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 (주담보) 유형자산 최대 60%, 재고자산 최대 55% 이내 운용

우대사항 ● 최대 연 1.0%p 이내 추가 금리감면 가능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64

4-3

IP사업화자금대출

기업이 보유한 IP를 담보로 자금지원

담보력은 약하나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IP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받은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점검항목' 및 '기술등급'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지원대상 점검항목)

- ▶ IBK기업은행 신용평가등급 BBB+ 등급 이상 기업. 단, IBK테크기업*은 IBK기업은행 신용평가등급 BB 등급 이상
- * IBK기업은행 평가 전문인력이 기술력 심층심사를 통해 선정
- ▶ 조기경보기업(예비주요, 주의, 경보)이 아닌 기업
- ▶ 부채비율 400% 미만 기업
- ▶ 최근 2년간 지속적인 결손을 시현하지 않은 기업
- ▶ 총자산 5억원 이상 기업
-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배 이상인 기업
- ▶ 전년도 또는 분기별 과거 1년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

- (기술등급) IBK기업은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의 TCB평가서 상 기술등급 T4 이상 판정 기업

- 지원분야**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대출한도**
- (운전자금)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당행 신용평가등급' 및 'TCB평가서상 기술등급'에 따라 차등 운용
 - (시설자금)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최대 5년, (시설자금) 최대 15년

* 단,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서상 내용연수 이내에서 가능

담보운용 ●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의 40%를 주담보로 인정

우대사항 ● 특허기술 가치평가 비용(500만원)지원
● 최대 연 1.0%p 이내 추가 금리감면 가능

문의처 ● IBK기업은행 혁신금융부 : 02-729-3620

4-4

IBK강소기업대출

유관기관과 연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수출·기술·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중견 기업에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

부 문	대 상 기 업
수 출	1. 수출실적이 USD 1,000,000불(연간) 이상인 수출기업 2. 상기 요건 충족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수출강소기업(IBK),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대상기업(중기부), 코스닥 라이징스타(KRX), 글로벌 전문기업(산업부), AEO 공인획득기업(관세청),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지원대상 기업(KOTRA)
기 술	IBK강소기업 등 우수 기술력 보유기업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강소기업'(IBK)

지원분야 ●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로 운용
● (시설자금) 일시상환 3년 이내, 분할상환 15년 이내로 운용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64

4-5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수출입 중소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채산성 및 가격경쟁력 약화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환율변동으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자금용도	수입결제자금, 수출물품의 원자재구입 및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등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기간	1년 이내. 다만, 분할상환식 신용보증서(부분신용보증서 포함) 담보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정한 대출기간 범위 이내
대출한도	동일인당 5억원 이내(본부 승인여신은 승인금액 범위 내)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4

4-6

IBK문화콘텐츠대출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상품입니다.

1. IBK문화콘텐츠 특례보증부대출

지원대상 ● '문화콘텐츠 업무협약에 의한 문화콘텐츠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신용보증서(90% 이상 부분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규모 ● 1,600억원(보증지원 한도 기준)

판매기간 ●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대출한도 ●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 범위 내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2. IBK문화콘텐츠 완성보증부대출

지원대상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추천위원회로부터 용자추천 및 보증기금으로부터 문화산업완성보증서(95% 부분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지원분야 ● 운전자금 (수시로대출 제외)

대출기간 ● 신용보증서 보증기간 범위 내

대출한도 ●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으로 최대 50억원 이내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 ▶ 보증비율 : 95% 부분신용보증서
- ▶ 보증료 : 0.2%p 우대

* 신용보증기금은 일반보증 기준 준용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72

4-7

IBK시설투자대출

시설 취득시 소요자금 지원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대출대상 ●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

지원내용 ●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부지자금, 사업장매입자금, 경락부동산자금, 건물자금, 기계자금, 수입기계자금, 사업장임차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사업장부지자금 : 자가사업장 마련을 위하여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 착공이 가능한 부지구입(분양포함)자금(토지정리비 및 토지조성비 포함)

■ 사업장매입자금 : 기존 사업장의 매입자금 및 건설·분양중인 사업장(아파트형공장 포함)이 분양자금

■ 경락부동산자금 : 법원(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 경매(공매 포함), 부동산(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 포함) 매입자금

■ 건물자금 : 건물(구축물 포함)의 신축 및 증·개축과 기타 이에 준하는 수선 또는 변경 등을 위한 개·보수자금

■ 기계자금 : 기계자금(중고 기계기구 포함), 설비 및 준부동산의 구입 및 설치자금

■ 수입기계자금 : 국외에서 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을 신용장방식(D/P, D/A포함) 또는 송금방식으로 수입·결제하고자 하는 자금. 다만, 수출입공고에서 관련부처 장관이 수입제한품목으로 고시한 품목은 제외

■ 사업장임차자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임차(대출취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임차사업장 입주 가능한 경우를 말함)하는 자금

용자조건 ● 용자범위 : 소요시설자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장 15년(단, 사업장임차자금은 3년 이내에서 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4-8

IBK토지분양협약대출

토지분양 관련 소요자금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은행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산업단지 시행사가 분양하는 토지의 수분양자에 대하여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 또는 타행 토지분양협약대출의 대환자금을 대출하는 여신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IBK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 또는 시행사가 공급하는 토지를 분양(전매포함)받고, 총 분양금액(계약금 포함)중 분양기관별 소정비율 이상을 납부하여 동 분양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중소·중견기업

대출한도

- 토지분양대금의 80% 이내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대출과목	• 기업 :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일반시설자금대출
대출기간	• 기업 : 15년 이내 * 일시상환방식 : 3년 이내
대출한도	• 토지분양대금의 80% 이내로 분양기관 추천서상 추천금액 이내 •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본부 승인금액 이내

유의사항

- IBK기업은행과 토지분양협약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 또는 시행사를 제외하고는 토지분양협약대출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4-9

중기부 R&D 사업화자금대출

중기부 추천 R&D 과제 성공·수행기업에 필요자금을 지원

기술력 우수 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천한 R&D 과제 성공기업 및 수행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진흥원)에서 추천한 R&D 과제 성공기업 및 수행기업

지원분야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한도 ● 최대 50억원 이내

대출기간 ● (운전자금) 1년 이내, 기한연장시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5년 이내
● (시설자금) 일시상환 3년 이내, 분할상환 15년 이내로 운용

우대사항 ● 최대 연 1.0%p 이내 금리감면 가능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64

제5부

한국수출입은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1

2022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전문적 지원 확대

수출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회복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상생금융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주요 우대프로그램
 -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 기술금융 프로그램
 - 상생금융 프로그램
 - 환위험관리 금융·비금융서비스
 - 중소기업 주요 금융상품

분 야		상 품 명
대 출	수 출	수출촉진자금, 수출성장자금, 수출이행자금
	수 입	수입자금
	해외사업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보 증	이행성보증	수출이행성보증, 수입이행성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외국환	수 출	수출환어음매입,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신용장확인
	수 입	수입신용장, 수입팩토링

5-2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뉴딜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22년 6월 30일까지 적용(단,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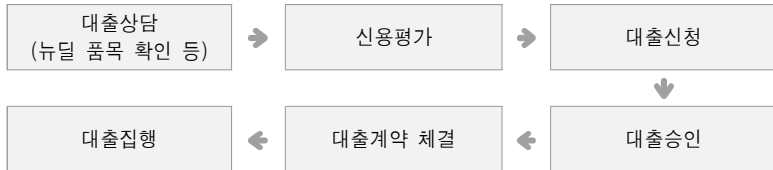
지원대상

- 뉴딜 품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 정부의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뉴딜투자 공동기준) 지정 품목

지원내용

- 뉴딜 품목에 대한 맞춤형 우대 지원
 - 대출한도* 확대(최대 10%p) 및 금리 우대(최대 △1.0%p)
 - *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입자금대출 등에 적용
 - 대출조건 : 각 여신상품별 지원조건에 따름
- 「K-뉴딜 SME 크레딧라인」설정
 - 지원상품 : 모든 대출·보증상품
 - 차주별로 금융상품을 일괄 취급하기 위한 연간 통합 한도를 설정하여 신속 지원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총괄부 : 02-6252-3416 / 02-6252-3420
 중소기업영업부 : 02-6252-3456 / 02-6252-3468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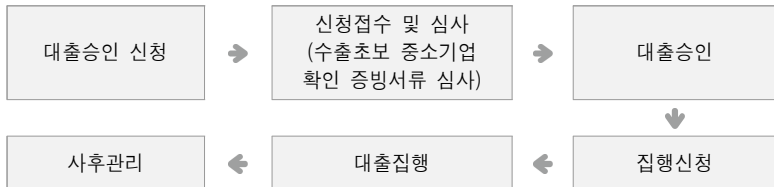
5-3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연간 해외 직수출 1백만불 이하의 수출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1월~12월) 직수출 규모가 1백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 금융서비스 및 경영컨설팅, 해외진출 지원 등의 비금융서비스 제공
 - 우대사항
 - 대출금리 : 최대 0.3%p 인하
 - 대출한도 : 수출성장자금 대출시 수출실적의 100%까지 한도 확대

처리절차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총괄부 : 02-6252-3416 / 02-6252-3420
중소중견영업부 : 02-6252-3456 / 02-6252-3468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5-4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히든챔피언 육성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금융·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 지원을 통해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여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수출유망 중소·중견기업

실행절차

- 기업신청 → 육성기업 선정 →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속 사후관리
 - 기업신청
 - * 신청자격 :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이고, 수출액 20억원 이상인 수출 중소·중견기업, 또는 월드클래스, 소부장 강소기업 등 정부 프로그램 지원대상 기업 (단, 외감법인에 한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 * 서비스산업·에너지신산업 등 일부 산업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부점 및 출장소
 - * 선정기간 : 선정시마다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
 - 육성기업 선정
 - * 선정기준 : 히든챔피언 적합도(기술력, 성장잠재력, CEO역량) + 재무안정성
 - * 선정절차 : 1차심사(서류심사) → 2차심사(기술평가, 방문심사) → 히든챔피언 운영위원회
 - 맞춤형 서비스제공 및 지속 사후관리
 - * 금융서비스 :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등 맞춤형 금융 제공
 - * 경영정보서비스 : 환위험컨설팅, 국제금융계약 법률자문,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기업의 성장활동에 필요한 경영정보서비스 제공
 - * 매년 육성기업의 경영성과 및 사업참여도를 평가하여 부진기업에 대해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선정 취소 등 지속 사후관리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총괄부 중소기업금융기획팀 : 02-6252-3418 / 02-6252-3421

5-5

기술금융 프로그램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우수성과 시장성을 평가하여 여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기술금융 지원 신청시 적격 기술신용평가기관(TCB)*에 기술 신용평가를 의뢰하여 산출한 해당 기업의 기술평가등급으로 신용등급 평가를 대체하거나, 신용등급평가지 기술력을 적극 반영하여 여신지원

* 적격 기술신용평가기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술신용조회업' 인가를 받은 기관 중,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공신력 있는 기술신용평가기관 (한국기업데이터(KED),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① 기술신용제도

- 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 지원대상거래 :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 * 기술력 평가등급 양호 이상(S,A)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 수출이행능력 점수 70점 이상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 '차세대 수출거래', '수출초보 중소기업'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상품 :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 우대사항
 - * 신용등급평가 생략 가능
 - * 정책조정률에 따른 우대금리 제공(최대 0.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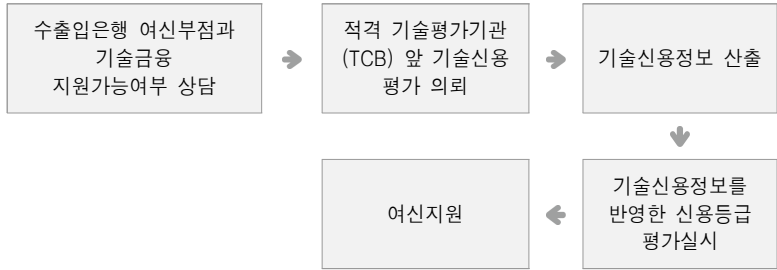
② 기술우대제도

- 지원상품 : 중소기업 대상 모든 여신(대출 및 보증)
- 우대사항 : 신용등급평가지 해당 기업의 기술력 적극 반영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지원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총괄부 : 02-6252-3416 / 02-6252-3420
중소중견영업부 : 02-6252-3456 / 02-6252-3468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5-6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기업과 해외에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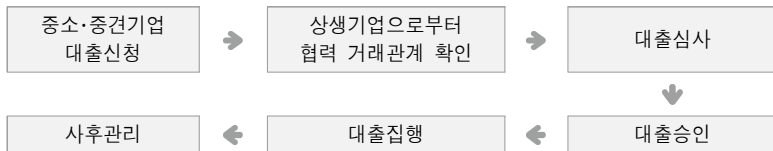
지원대상 ● 상생기업과 해외에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기업·중견기업

지원내용

- 지원상품 : 해외투자자금대출,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해외사업금융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수출팩토링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대출조건 : 각 여신상품별 지원조건에 따름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총괄부 : 02-6252-3416 / 02-6252-3420
- 중소중견영업부 : 02-6252-3456 / 02-6252-3468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대구지점 : 053-260-4100
 - 창원지점 : 055-287-6830
 - 울산지점 : 052-274-5276
 - 광주지점 : 062-232-6944
 - 전주지점 : 063-271-613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청주지점 : 043-237-0475
 - 수원지점 : 031-259-6607
 - 인천지점 : 032-235-611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5-7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기업이 추진하는 수출 프로젝트에 지원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상생기업이 거래관계를 확인한 협력 중소·중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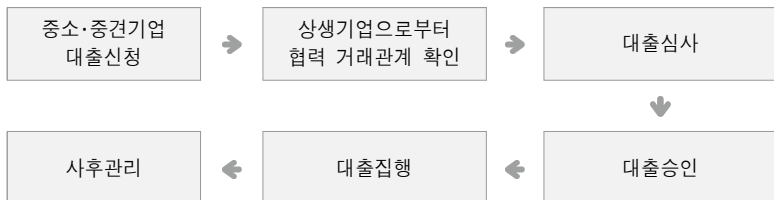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대상거래
 - 상생기업의 현지법인에 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상생기업 앞 수출물자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상생기업의 해외수주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는 거래
 - 상생기업 중 공공기관이 법률 및 마케팅 등 경영지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물자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지원상품 :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대출조건 : 각 여신상품별 지원조건에 따름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총괄부 : 02-6252-3416 / 02-6252-3420
중소중견영업부 : 02-6252-3456 / 02-6252-3468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5-8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협력대출)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기업 앞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은행이 납품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수출입은행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원청 상생기업
(실질수혜기업 :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협력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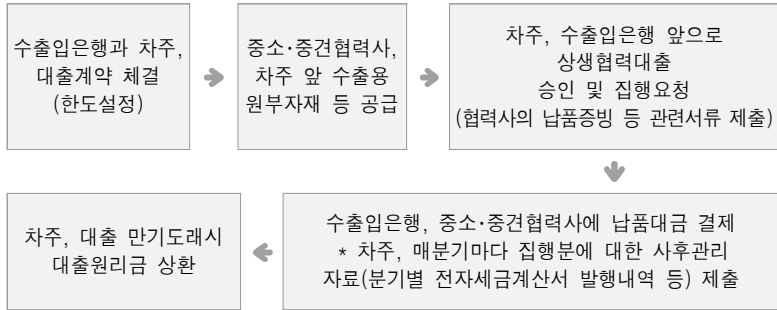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대상거래
 - 상생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중견협력기업의 수출용 원부자재 등의 납품거래
- 대출조건
 - 대출한도설정금액 : 대출신청전월기준 과거 1년동안 중소기업·중견협력사의 차주앞 수출용 원부자재 공급실적의 1/2 이내에서 설정
 - * 단, 한도설정시 개별대출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1년간 납품실적 범위내 설정 가능
 - 대출한도사용기간 : 한도설정일로부터 1년
 - * 단, 수출목적물의 제작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출입은행과의 거래기간이 2년 이상인 차주사의 경우, 한도사용기간 2년 가능
 - 대출금액 : 중소기업·중견협력기업의 수출용 원부자재 등의 납품거래에서 발생한 금액 중
 - * 대금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주사가 산정하여 신청한 금액
 - * 대출승인신청일 직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주사가 현금결제한 금액
 - 대출기간 : 건별 개별대출 취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6개월 단, 차주사의 한도사용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이내 가능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정보통신금융부 : 02-6255-5434 / 02-6255-5408
- 모빌리티금융부 : 02-6255-5426 / 02-6255-5428
- 해양금융단 : 051-922-8888 / 052-922-8875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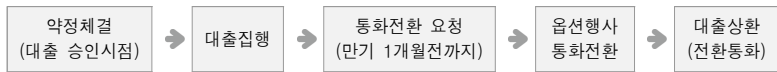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의 환위험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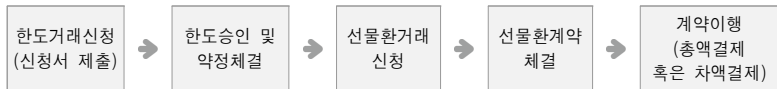
● 통화전환옵션

- 개요 : 대출 취급 후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외화 ↔ 원화' 또는 '외화 ↔ 여타 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
- 실행절차



● 선물환거래

- 개요 : 중소기업의 수출/수입계약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 (hedge)함으로써 고객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 실행절차



비금융서비스

- 환위험관리 컨설팅 : 환위험관리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기업의 환위험을 진단하고 맞춤형 환위험관리 방안 제시
- 고객기업 대상 환위험관리 설명회 개최

해외투자정보

- 국제지역정보 : 해외진출에 필요한 주요 신흥국의 경제, 산업 및 투자 환경 등의 정보 제공
- 산업경제정보 : 조선, 플랜트, 신재생에너지, IT, 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산업정보 제공
- 해외투자통계 :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현황 제공

* 관련 정보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keri.koreaexim.go.kr) 게시

문의처

- 금융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비금융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총괄부 중소기업금융기획팀 (02-6252-3418)
- 해외투자정보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02-6252-3607)

5-10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및 수출기업 인수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수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 수출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국내기업(단, 인수 이후에 수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출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 해외판매를 목적으로 콘텐츠의 제작·공급·유통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기업

지원내용

- 자금용도
 - 시설투자
 - 수출물품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단, 기술평가등급이 양호한 경우에 한함)
 - 해외시장개척활동
 - 수출기업 인수 / 제작자금 용도 등
- 대출금액
 -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 * 해외시장개척활동의 경우 대출한도 : 30억원(해외영화홍보활동의 경우 50억원)
 - * 자금용도가 수출기업 자본인수인 경우에는 실소요자금의 50% 이내(협조대출인 경우 40% 이내)
- 대출기간
 - 시설투자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5년 이내
 - 기술개발, 수출기업 인수, 제작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그 외 자금용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단, 3년 이하의 대출은 일시상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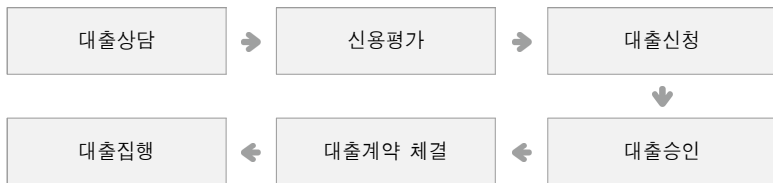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 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 협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총괄부 : 02-6252-3416 / 02-6252-3420
 중소기업영업부 : 02-6252-3456 / 02-6252-3468
 바이오서비스금융부 : 02-6255-5271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대구지점 : 053-260-4100
 - 창원지점 : 055-287-6830
 - 울산지점 : 052-274-5276
 - 광주지점 : 062-232-6944
 - 전주시점 : 063-271-613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청주시점 : 043-237-0475
 - 수원지점 : 031-259-6607
 - 인천지점 : 032-235-611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5-11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우대지원산업(서비스산업, 에너지신산업, ICT융합산업, 미래운송기기·소재산업, 유망소비재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적용 물품 등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대출금액
 -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9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실적의 7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단, 기업별 대출한도는 350억원(유예중소기업 500억원) 이내로 운용하고, 수출규모 등에 따라 500억원(유예중소기업 800억원)까지 증액가능
 - 대출기간
 - 6개월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제출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수출실적확인서류,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총괄부 : 02-6252-3416 / 02-6252-3420
중소중견영업부 : 02-6252-3456 / 02-6252-3468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대구지점 : 053-260-4100
 - 창원지점 : 055-287-6830 - 울산지점 : 052-274-5276
 - 광주지점 : 062-232-6944 - 전주지점 : 063-271-613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청주지점 : 043-237-0475
 - 수원지점 : 031-259-6607 - 인천지점 : 032-235-611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5-12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 또는 생산(해외건설공사 제외)하거나 수출 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기업

지원내용 ● 대출금액

- (수출계약금액 - 이미 수령한 금액) × 90% 이내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금액
- 단, 서비스산업 중 런닝로열티방식 판권수출계약의 경우, 순제작비(총제작비 - 홍보비용 등) × 5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에서 자금이 실제 소요되는 기간. 단, 기술신용 지원으로 신용취급이 가능한 대출의 경우 6개월 이내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대상거래 계약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증복수해방지확약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 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총괄부 : 02-6252-3416 / 02-6252-3420
중소중견영업부 : 02-6252-3456 / 02-6252-3468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대구지점 : 053-260-4100
 - 창원지점 : 055-287-6830 - 울산지점 : 052-274-5276
 - 광주지점 : 062-232-6944 - 전주지점 : 063-271-613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청주지점 : 043-237-0475
 - 수원지점 : 031-259-6607 - 인천지점 : 032-235-611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5-13

해외사업금융

해외자원개발, 해외 M&A, 현지법인 사업자금 및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자금 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해외투자자금 :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투자예정업종에 대한 사업경력 3년 이상인 국내기업
 - 해외사업자금 : 해외에서 사업(해외투자 제외)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 모기업의 해외자회사(현지법인)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해외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내기업 등

- 지원내용**
- 해외투자자금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해외사업자금 :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 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관련 거래상대방인 국내기업 등 해외사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 대출금액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 소요자금의 80% 이내. 단, 중소중견기업은 90% 이내, 자원개발 사업은 100% 이내
 - 현지법인사업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 단, 자원개발 사업은 100% 이내, 운영자금의 경우 별도의 대출한도 범위 이내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거치기간 3년(단, 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거치기간 5년,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거치기간 7년 가능)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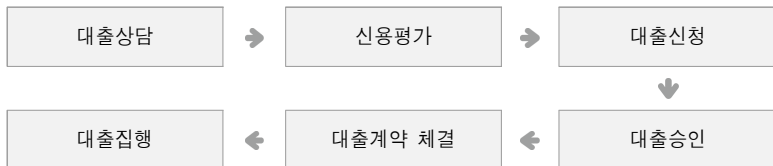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서류

- (해외투자자금 및 해외사업자금)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 계획서, 해외투자신고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 (현지법인사업자금) 대출승인신청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현지사업계획서, 국내외 관계기관 인허가서, 설립관련 증빙서류, 납품계약서 등 판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대출집행 신청서, 차입 관련 결의서, 정관,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인감 및 명판 신고서 등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대출승인신청서, 대상거래 계약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한도설정 승인신청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총괄부 : 02-6252-3416 / 02-6252-3420
중소중견영업부 : 02-6252-3456 / 02-6252-3468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5-14

수입금융(수입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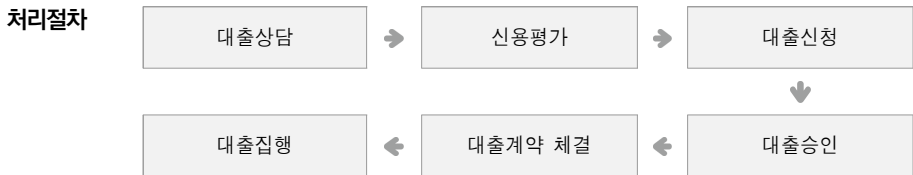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입하는 국내수입자

- 지원내용**
- 대출금액
 - 수입소요자금 총액의 80% 이내 (중소기업은 90% 이내)
 - 대출기간
 - 개발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거래 : 10년 이내
단, 시설재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이내
 - 그 외 거래 : 2년 이내(거치기간 설정불가)
 -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수입실적 확인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총괄부 : 02-6252-3416 / 02-6252-3420
중소중견영업부 : 02-6252-3456 / 02-6252-3468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5-15

이행성보증

수출거래의 수주,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 또는 해외사업 이행 등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증종류

- 입찰보증 : 국제입찰에 참여한 수출자가 입찰서상 규정된 내용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발주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보증
- 선수금환급보증 : 수출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출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지급된 선수금 환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제공 되는 지급보증
- 계약이행보증 : 수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성능, 납기 등) 대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발주자 또는 수입자에게 보상
- 하자보수보증 : 수출이행 이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
- 유보금보증 :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유보해놓은 대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유보금에 대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 기타이행성보증 : 자재선수금환급보증 및 세금유보금환급보증 등 관련 계약서에 따라 규정한 다양한 손해를 보상

보증금액 (기간)

- 보증대상거래의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금액(기간) 범위 내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총괄부 : 02-6252-3416 / 02-6252-3420
중소중견영업부 : 02-6252-3456 / 02-6252-3468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5-16

무역금융(수출관련)

수출거래를 이행한 후에(선적후) 바로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는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등 다양한 금융상품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수출환어음매입 :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과거 수출입실적 및 예상금액, 신용도, 담보제공 능력 등 감안)
- 수출팩토링 : 1년 이상 동종 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이 있는 등 동일 해외수입자와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기업
- 포페이팅 : 1년 이상 동종 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 보유기업 또는 동일 수입자와의 과거 1회 이상 거래경험이 있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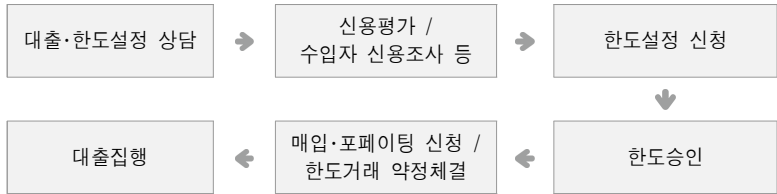
지원내용

- 대상거래
 - 수출환어음매입 :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거래
 - 수출팩토링 : 장기공급계약 및 개별 Purchase Order를 기반으로 하는 사후 송금방식(O/A) 외상수출거래
 - 포페이팅 : 일정 등급(당행 기준) 이상 국가 소재 국외은행이 개설 또는 확인한 취소불능 신용장 또는 국외은행의 지급보증에 수반된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
- 대상금액
 - 수출환어음매입 : 건당 미화 5만불 이상
 - 포페이팅 : 건당 미화 1만불 ~ 5천만불
- 대상결제기간
 - 수출환어음매입 : 수출환어음의 만기조건이 30일이상 2년미만
 - 수출팩토링 : 거래방식, 수입자 신용도에 따라 수출채권의 결제기간이 6개월 또는 1년 이내
 - 포페이팅 : 어음 또는 수출채권의 만기조건이 30일 이상 2년 미만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무역금융실), 지점 및 출장소

제출서류 ● 수출환어음매입/수출팩토링한도설정/포페이팅 신청서, 외국환거래약정서, 수출실적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 명판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무역금융부 : 02-6252-3522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5-17

해외온렌딩

중소기업(건설·플랜트, 해양기자재 및 수출형 혁신성장 영위 중견기업 포함)의 대외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중개금융기관의 지점망을 통해 공급하는 간접대출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기업 : 중소기업(건설·플랜트, 해양기자재 및 혁신성장 영위 중견기업 포함)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현지법인*

*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의 경우만 가능

- '21.12월 현재 해외온렌딩 약정 체결 중개금융기관 :
 -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신한베트남은행, 신한인도네시아은행, 하나중국은행, 우리베트남은행, 우리중국은행, 우리소다라은행, 하나브라질은행, 하나멕시코은행, 기업중국은행

지원내용

- 대상거래
 - 수출촉진자금 :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
 - 수입자금 :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 지원
 - 해외투자자금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해외사업자금 :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 대출금액
 - 소요자금 또는 수입금액의 90% 이내(단, 수출촉진자금의 경우 대상 기업별 대출한도 기준에 의해 별도산정)
- 우대프로그램
 - ①설립 7년 이내 중소기업, ②지방에 소재하면서 지방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중소기업, ③K-뉴딜 중소기업, ④유망 수출기업(유망소비재, 비대면·디지털, 방역제품 등) 앞 추가한도 배정 또는 우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수출촉진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시설자금) 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운영자금)
 - 수입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운영자금) 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그 외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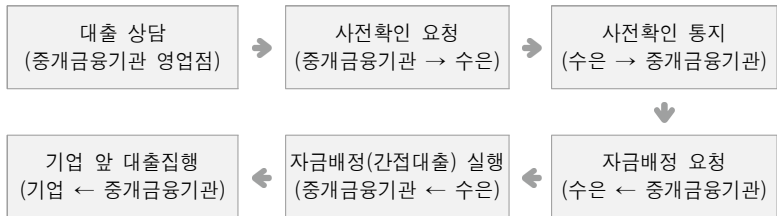
신청·접수

- 해외 온렌딩 약정 체결 중개금융기관의 가까운 지점 문의

제출서류

- 중개금융기관의 제출 필요 서류와는 별개로 해외온렌딩 대상기업 적격 검토 서류(수출입 실적 확인서 등)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무역금융부 : 02-6252-3526

[참 고]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국내지점 현황

<본 점>

대표전화 : 02)3779-6114, 02)784-1030

부 서 명	업 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중소중견 금융총괄부	상생금융프로그램, 히든챔피언 사업, 수출초보기업 및 취약산업 지원 E-mail: hjchom@koreaexim.go.kr	(02)6252-3420	(02)6252-3450
중소중견 영업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해외사업, 수입관련 대출 및 보증(해외건설·플랜트 사업 제외) E-mail: ywkim@koreaexim.go.kr	(02)6252-3456	(02)6252-3480
바이오서비스 금융부	서비스산업(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보건의료)에 대한 금융지원 E-mail: kyc@koreaexim.go.kr	(02)6255-5270	(02)3779-6779
전대금융부	국외전대은행에 대한 간접방식 대출 및 전대은행 관련 외국환 업무 E-mail: jsk0212@koreaexim.go.kr	(02)3779-6373	(02)3779-6746
무역금융부	무역어음재할인 및 외국환업무(수출환어음매입, 포페이팅, 팩토링), 해외온렌딩 E-mail: nylee@koreaexim.go.kr	(02)6252-3506	(02)6252-3540



> (150-99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한국수출입은행빌딩 / TEL:(02)3779-6114 / FAX:(02)784-1030

〈국내지점〉

지 점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도권	인 지 천 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 구월동빌딩 19층 E-mail: inchon@koreaexim.go.kr	032)235-6114	032)442-6110
	수 지 원 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9층 E-mail: suwon@koreaexim.go.kr	031)259-6607	031)259-6609
중부권	대 지 전 점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16층 E-mail: daejeon@koreaexim.go.kr	042)489-9715	042)489-9716
	청 지 주 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 지방기업진흥원 6층 E-mail: cheongju@koreaexim.go.kr	043)237-0475	043)237-0476
영남권	부 지 산 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0층 E-mail: pusan@koreaexim.go.kr	051)817-5050	051)817-6060
	대 지 구 점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11층 E-mail: daegu@koreaexim.go.kr	053)260-4100	053)754-1020
	창 지 원 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5층 E-mail: changwon@koreaexim.go.kr	055)287-6830	055)287-6831
	울 지 산 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7 유안타증권빌딩 4층 E-mail: ulsan@koreaexim.go.kr	052)274-5276	052)274-5278
호남권	광 지 주 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퀘어빌딩 13층 E-mail: gwangju@koreaexim.go.kr	062)232-6944	062)232-6946
	전 지 주 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대한교원공제회관빌딩 10층 E-mail: jeonju@koreaexim.go.kr	063)271-6134~8	063)271-6139
출출장소	구 출 장 소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중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E-mail: gumi@koreaexim.go.kr	054)462-7103	054)462-7105
	여 출 장 소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신사옥 3층 E-mail: yeosu@koreaexim.go.kr	061)643-7714	061)643-7716
	원 출 장 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0 금정타워 5층 E-mail: wonju@koreaexim.go.kr	033)748-0536	033)748-0538

제6부
한국산업은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1

온렌딩대출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자금 대출상품입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체계상 7~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개금융기관 자산건전성 기준 요주의 이하 기업
-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회사지분의 30% 이상 보유자 중 최대주주 포함)
-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 온렌딩 취급제한업종 영위기업 등

지원내용

● 상품별 지원요건

구 분		지 원 요 건
기본 온렌딩	원화일반	▶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외화자금 (USD)	▶ 해외 실수요 목적의 외화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리스자금	▶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여신전문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금융리스(승용차 제외)
특별 온렌딩	신산업육성	▶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영위 기업 등 * 당행 홈페이지를 통해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확인
	수출기업지원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선정 수출 중소·중견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환변동보험 가입 중소·중견기업

구 분	지 원 요 건
지역경제 활성화	▷ 본사나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
지방은행우대	▷ 본사나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며 지방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 벤처기업 또는 설립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인증기업 등의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 「혁신성장 공동기준」 대상 품목 관련 사업 영위 중소기업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 유형자산, 재고자산,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대상)을 담보로 제공하는 중소기업
뉴딜기업육성	▷ 한국판 뉴딜 관련 업종 및 품목을 영위중인 중소기업
소부장 경쟁력 강화	▷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저신용등급 기업 2) 창업기업 3) 일자리 창출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 유동성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개금융기관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외화자금, 지방은행우대, 소부장경쟁력강화 상품은 취급 제외

※ 상기 상품은 '21년도 기준으로, '22년도에는 일부 상품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접수

- 희망 기업은 국내 시중·지방은행 등을 통하여 온렌딩대출 신청
- '22년도 온렌딩대출 취급 가능 중개금융기관
 - 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 여신전문금융회사
현대커머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DGB캐피탈, JB우리캐피탈, 애큐온캐피탈

문의처

- 온렌딩 디지털 플랫폼(onlineing.kdb.co.kr)
-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www.kdb.co.kr) → 기업금융정보 → 온렌딩 · 간접투자 → 온렌딩대출
- 한국산업은행 온렌딩금융실 : 02-787-0570

Q&A

Q. 온렌딩대출 신청은 산업은행에 가서 직접 해야할까요?

A. 온렌딩대출은 산업은행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이용하시던 주거래은행 등 중개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서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어떤 기업이든 상관없이 다 신청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온렌딩대출은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7~11등급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에 한하여 지원되고, 취급이 제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출 가능 여부는 거래하시는 중개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7부

한국무역보험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1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입수된 국외기업 신용정보를 근거로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지원대상

- 전 세계 80여개의 신용조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5만 건 이상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
-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은 공사가 제공하는 신용조사보고서를 통해 국외기업의 기본정보,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을 확인

유의사항

- 공사 홈페이지 방문 및 사이버영업점 회원가입 후 이용

〈수수료 청구시기 및 방식〉

수납방식	청구시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납부기한
후불제	당월 중 조사 완료 건에 대한 수수료를 익월 1일자 일괄청구	수수료 청구 시 세금계산서 함께 발급(1장/월)	세금계산서 발행월의 27일까지

- *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는 매월 초 마스터 사용자 이메일로 발송, 사이버영업점에서도 직접 조회·출력하여 사용 가능
- * 신용조사완료일의 익월(세금계산서 발행 월) 27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신용조사서비스 이용불가

〈신용조사 수수료 : 중소중견기업〉

보고서종류	가격(VAT 포함)		
	일반조사	재무제표미비	신용조사불가자 or 장기소요(40일초과)
요약보고서	33,000원	22,000원	면제
Full Report	49,500원	33,000원	면제

- * 현지사정에 따라 재무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고서 내에 재무자료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는 건당 평균 7~8만원의 비용이 소요(공사부담)되는 바, 보고서의 내용이 미흡(재무자료 미비)한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 부과

신청·접수

-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공인인증서(법인: 법인용 공인인증서, 개인: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이용 시 제출서류 없음

사이버영업점 가입	▷ www.ksure.or.kr 접속 ▷ 우측의 사이버영업점 메뉴 접속 (또는 cyber.ksure.or.kr) ▷ 회원가입 → 정보입력 및 제출서류 송부 → [공사 승인]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신청 즉시 자동승인
-----------	---

로그인	▷ ID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	-----------------------

처리절차

- 신용조사 신청 → 조사 및 평가 → 보고서 조회 → 수수료 납부의 순서로 이용

신용조사 신청	▷ ‘국외기업 신용조사 - 신청/조회 - 신용조사 신청’ 메뉴 선택 ▷ 공사 DB검색 ▷ 조사방법 선택(구매/신규신청) ▷ 수입자 기본정보 입력 → 신청완료
---------	--

공사에 의한 신용조사 및 평가	▷ 보고서 접수(평균 조사기간 2~3주 소요) ▷ 접수된 보고서 검토 후 등급평가
---------------------	--

보고서 조회	▷ 사이버영업점 접속(or 신청자 E-mail로 발송) ▷ ‘국외기업 신용조사 - 신청/조회 - 신청내역/보고서 조회’ 메뉴에서 보고서 조회
--------	---

수수료 납부	▷ 가상계좌(신용조사 수수료 계좌)로 수수료 납부 ▷ 공사 담당자 확인 후 수수료수납
--------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자금 대출시 공사가 연대보증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수출유관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 | |
|--------------|--|
| 지원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
| 지원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 내국 신용장(Local L/C)개설 ● 무역협회 무역기금 ●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 및 수출이행자금 대출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개설 포함) ●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 대출 |
| 지원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 → 수출기업이 자체담보 제공 없이 수출이행 자금대출 가능 |
| 신청·접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
| 보증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전보증 : 근보증, Revolving방식 ● 개별보증 : 개별 신용장기준 수시보증 |
| 신청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주주 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임차계약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
| 보증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청약 → 신용보증 한도심사 → 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부 대출 |
| 문의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7-3

수출신용보증(매입)

수출물품 선적후, 수출채권 매입시 공사가 연대보증

금융기관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거래와 관련한 환어음 또는 선적 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기업에게 대출한 후, 그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대지급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 지원분야** ● 수출대금 결제기간 1년 이내 통관 및 비통관* 수출거래
* 수출신용보증(매입) 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
- 지원내용** ● 수출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보력을 높인 보증 상품
* 수출기업 수출통지 생략 및 연간 보증료 1회 선납
-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 신청서류** ●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거래현황표, 수출거래실적 증명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 처리절차** ●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및 평가 → 신용보증 청약 → 보증한도 책정 → 보증료 납부 및 보증약정체결 → 보증서 발급 → 선적서류 매입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4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수출물품 선적후, 수출채권 매입시 공사가 연대보증

금융기관이 수입자 구분 없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거래와 관련한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기업에게 대출한 후, 그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대지급하는 제도

지원대상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 대출기간 180일 이내 통관 및 비통관* 수출거래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약관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

지원내용

- 수출기업이 모든 수입자와의 외상 수출거래 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보력을 높인 보증 상품
* 수입자 신용조사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 및 보증료 인하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서류

- 청약서, 사업장 및 연대보증인 현황, 주주현황표, 고객정보이용조회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 수출자 신용평가 → 신용보증 청약 → 보증한도 책정 → 보증료 납부 및 보증약정체결 → 보증서 발급 → 선적서류 매입

취급은행

- 6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부산) ('21.12월 기준)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5

단기수출보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담보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대금미회수위험 담보
 - 단기수출보험은 건전한 수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수출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며, 특히 대량의 수출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수출기업에 있어서 대금미회수위험에 대한 관리장치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
- 지원분야**
- 신용위험 : 수입기업(또는 L/C개설은행)의 지급불능, 지급지체, 수입화물에 대한 인수거절 등
 - 비상위험 : 전쟁위험, 송금위험, 환거래 제한 등

지원내용

가입대상 거래

구 분	내 용
일반수출	•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
위탁가공무역	•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거래
구 분	내 용
중계무역	•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여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방식
재 판 매	• 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운영방식

- 개별보험 : 수출자와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방식
- 포괄보험 : 사전에 보험계약자(수출기업)와 보험자(무역보험공사)가 포괄보험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상품 또는 결제조건 등 미리 대상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방식
-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의 장단점

구 분		개 별 보 험	포 괄 보 험
장점	수출자	•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만 선택적 보험부보 신청 가능	• 고위험거래에 대한 보험부보 용이
	공 사	• 고위험거래에 대한 인수거절 가능	• 위험분산 용이
단점	수출자	• 고위험거래 부보 곤란	• 저위험거래·부보 의무
	공 사	• 위험분산 곤란	• 고위험거래 인수 의무

● 인수한도 및 보상한도

구 분	개 별 보 험
인수한도	• 특정 바이어와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 (최대보험계약 체결 가능한도) ① 다만, 예외적으로 수출입자간 수출계약 건별로 보험계약 체결 가능
보상한도	• 포괄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수출입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최대 누적액 ② 개별보험에 있어서 인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부보가 불가능하나, 포괄 보험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보험관계는 성립되나 사고발생시 보상한도 범위내에서 보상

● 보험 조건

구 분	내 용
보험가액	수출대금
부 보 율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 • 중계무역 : 95% 이내 •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험금액	보험가액×부보율
지급보험금	손실액×부보율

보 험 료

-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입자 신용등급(신용장거래인 경우 신용장 개설 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에 따라 결정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보험으로서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거나 수출 계약이행과정에서 귀책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음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서류

수출자 평가

- 수출자 신용조사 의뢰서,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최근3년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 사이버수출보험 미가입 업체의 경우, 마스터 대표사용자 지정(변경)신청서

수입자 신용평가

- 온라인 신청이므로, 서류제출 필요없음 (사이버영업점 가입 및 로그인 후, 신용조사신청에서 수입자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기재)
- 요약보고서 선택시 수수료 33,000원(부가세 포함)

단기수출보험 청약서

- 사이버수출보험에서 온라인 청약
- 필요시 거래경위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등 첨부 가능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6

중소중견Plus+보험

중소중견기업 전용상품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공사는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합니다.

- 지원내용**
- 해외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지급시 수출 중소기업에게 해당 손실 보상
 - 1년간 최대 50개 수입자와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최대 중소기업 100만불, 중견기업 300만불까지 손실 보상(개별 수입자당 최대 U\$30만 이내 보상)

담보내용 및 책임한도

담보위험	기본 (필수가입)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수입자 미결제위험[신용위험]
	선택	수입국 위험 [비상위험], 클레임 위험[중소기업 限]
책임한도	기본 (필수가입)	중소 최대 1백만불 (중견 최대 3백만불) [개별 수입자당 최대 U\$30만 이내 보상]
	선택	최대 1백만불 [클레임 위험의 경우 최대 5만불]
수 출 자	최근1년간 수출실적 U\$50백만 이하의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중소·중견기업	
수 입 자	고위험인수제한국 및 이란 소재, 수입자 R급, 30일 이상 결제지연 제외 [최대 50개사]	

-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 처리절차**
- 수출자 신용조사 → 청약서류 제출 → 책임금액·거래수입자 선택 → 한도책정 → 보험료 납부 및 증권 교부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7

환변동보험

환위험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수출, 수입 및 해외투자에 따른 외화획득 또는 대금지급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위험을 커버하는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 수출입기업

* 수입의 경우 수출용원자재 등 수입보험 지원대상 물품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업체도 지원

지원내용

- 환변동보험은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보험상품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통화 : USD, JPY, EUR, CNY)
- 시중은행을 통한 환위험 헤지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손쉽게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축소
- 환변동보험은 기본적으로 환율하락시에는 손실을 보상하지만 환율상승시에는 이익금을 환수 (일반형 기준)

〈 환변동보험 상품 안내 〉

구 분	내 용	특 징
일반형 (수출형 기준)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환율 상승시 이익금 납부	환율 하락시 보장 탁월하나, 환율 상승시 이익금 부담이 큼
완전보장 옵션형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이익금 납부 없음
부분보장 옵션형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단, 통화당 최대 80원까지 보장)	이익금 납부 없음
범위선물환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환율 상승시 이익금 납부	일정범위 내 환위험 노출
범위제한선물환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환율 상승시 이익금 납부	보험금과 이익금을 일정범위 (±50원) 내로 제한

* 자세한 상품 설명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www.ksure.or.kr/fx/index.do)에서 확인가능

신청서류

- 인수한도 책정 신청서 및 헷지수요 조사표
 - 최근 1년(또는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 증명서(무역협회 또는 은행 등 확인)
 - 외환파생상품 거래내역확인서 (은행별 고유양식 제출가능)
 - 약정서 및 주주현황표
 - 법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 *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처리절차



보험료

일반형	보험료율=기본요율 x (1-중소·중견기업 할인율*)
옵션형	기본 요율(0.005%) + 시장요율(옵션 프리미엄**)

*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할인율 적용

** 옵션의 시장가격으로 중소중견기업 할인율 배제(매일 일자별 홈페이지 고시)

※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산무역협회, 지자체 등에서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중
(공사 홈페이지 내에서 세부요건, 지원 내역·절차 확인 가능)

청약및결제

- 사이버영업점 홈페이지(cyber.ksure.or.kr)에서 청약 및 결제신청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수출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또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최대 100%범위내에서 수출기업의 신용등급, 실수요 헷지금액 등을 감안하여 책정됩니다.

Q. 보장되는 환율과 정산의 기준이 되는 결제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A. (보장환율) = 청약일의 시장평균환율 + 결제일의 월말기준 SWAP POINT (결제환율)

- ① 결제일 월말지정 = 결제일자의 최고고시 매매기준율
- ② 결제일 월중지정 = 결제일 전영업일 시장평균환율 + 해당월 최종영업일 까지의 SWAP POINT
- ③ 조기결제 신청시 = 조기결제신청일 시장평균환율 + 만기일이 속한 월의 최종영업일까지 SWAP POINT

7-8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글로벌공급망)

수입거래 지원

장기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 수입을 요하는 원유, 원목, 광물, LNG 등 주요자원, 시설재 및 첨단제품 등의 수입거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분야

- 수입자용 : 국내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 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
- 금융기관용/글로벌공급망 : 금융기관이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

수입 품목

(수입자용, 금융기관용)

- 주요자원(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및 시설재 등

* 품목 해당 여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 보험종목 → 수입보험 화면 내 대상거래를 통해 확인

(글로벌공급망)

- 소재·부품·장비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 (소비재, 사치성 물품 제외)

보상 한도

- 수입자용 : 선급금 비율은 수입계약금액의 30% 이내로 하며, 부모율 100% (중견기업은 97.5%, 대기업은 95%)
- 금융기관용 : 대출(지급보증)원금 + 약정이자
- 글로벌공급망 : 금융기관 손실액의 90%

지원대상

- 수입자용: 선급금 지급후 2년 이내 선적되어야 하는 지원대상물품의 수입거래(중계무역 제외)

* 국내 수입자(보험계약자) 공사신용등급 E급 이상 제조업체, 해외 수입계약상대방 공사신용 등급 D급 이상

- 금융기관용 : 대출기간 1년 이내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중계무역 제외)
 - *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 글로벌공급망 : 대출기간 1년 이내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중계무역 제외)
 - *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D등급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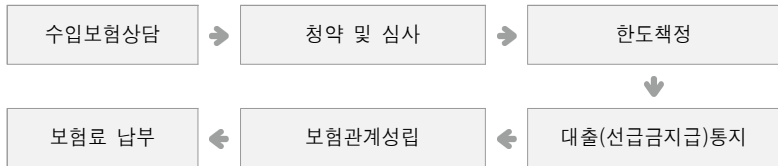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국내지사

제출서류

- 수입보험청약서, 상사현황표, 수입실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 보험종목 → 수입보험 → 신청서류

처리절차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9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해외 미수채권 회수

수출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수출기업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채권 회수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해외채권 회수컨설팅(무료) 및 회수대행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해외 미수채권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수출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채권자의 공사 신용등급이 R등급*, 공사가 청구한 수수료 등 미납 시, 수입관련 선수금, 사인 간 금전거래 채권
- *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공사가 책정한 불량등급

지원내용

- 해외채권 회수컨설팅
 - 해외 미수채권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 되는 수출기업 과 공사의 채권회수 노하우를 공유하여 자체회수 지원 등 회수컨설팅 서비스 무료 제공
- 해외채권 회수대행
 - 수출기업의 해외 미수채권에 대해 공사가 보유한 추심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채권회수 대행

* 40개국 104개기관 해외추심기관과 협약 체결

유의사항

- 채무자 앞 채권추심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채권추심의뢰가 가능하며 성공수수료 수준은 채무자 소재지에 따라 상이하나 추심기관 수수료 약 25% 및 공사수수료 4% 내외 수준(부가세 별도)
- 추심대행 약관 등에 따라 회수대행 수임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클레임 제기 건, 채무자 파산·회생절차 신청이 완료된 건 등
- 해외채권 회수율은 1년만 지나도 급격히 감소하는 점을 감안 조기 회수상담 권장

신청·접수

- 공사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
* 「해외채권 회수지원 센터」로 신청 접수 시 순차적으로 상담 진행(상시 접수 가능)

상담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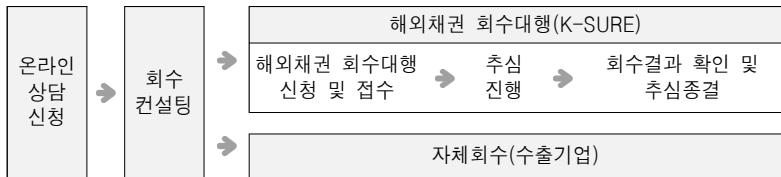
- 해외채권 회수대행 절차 안내 및 회수컨설팅

신청서류

- 채권자 관련서류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 채권관련 서류
 - 채권추심위임장(공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계약서, 선적서류, 환어음, 수출입자간 서신, 기타 참고서류 등

이용절차

-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이용절차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공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 권한을 위임받아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로 공사의 보험사업과는 무관하며 채권회수를 보장하거나 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Q. 회수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채권의 예상 회수기간은 채권의 상태와 채무자의 태도에 따라 다릅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진행되며 진행경과에 따라 추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공사가 위임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 2 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1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1

R&D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R&D지원 공통사항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R&D과제 지원 시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이 안되는 기업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7년 이하이며 매출액 20억원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세부 자격기준은 공고문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별 공고문에 명시

- 지원내용**
- 세부사업 설명 확인요망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 <http://www.smt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 관리 → 과제신청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입력

* 사업별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 기술개발 방법 구체성,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 기술개발역량 : 기업의 R&D역량 및 연구윤리
- 파급효과 : R&D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
- 자금집행계획 : 연구개발 집행계획의 적정성

문의처

- 세부사업 설명 확인요망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국가 R&D를 처음 도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어떤 사업이 신청가능한가요?

A. R&D를 처음하는 경우 대학, 연구기관과 같이 R&D를 수행하는 산학연 Collabo R&D사업이 있습니다. 1단계 예비연구 후 2단계 사업화 R&D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Q. 2021년 창업한 기업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작는데 R&D과제 지원이 가능한가요?

A. 7년 미만의 창업기업 전용R&D인 창업기술개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창업 지원사업내 디딤돌, 전량형, TIPS로 나누어져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이 다르니 세부공고를 참조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설명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연구책임자 :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 책임자

1-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의 Scale-up 성장 촉진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시장검증 단계별 기술개발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출지향형(130억원) :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 기업군 집중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761억원) : 디지털·그린, BIG3분야 등의 기술 및 민간투자 유치실적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시장대응형(534억원)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강소기업100(85억원) : 소재·부품·장비 강소100 선정기업의 기술 개발과 기술자립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 전략(116억원) : 소부장분야 혁신역량을 보유한 소부장 전문 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 일반(95억) :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혁신역량 수준별 3개 내역으로 구분하여 최대 2~4년, 5~20억원 지원
 - 수출지향형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예비 중견 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 기업군 집중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 : 민간투자 유치실적 보유기업 또는 BIG3 등 중점전략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시장대응형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강소기업100 : 강소기업100 선정기업의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전략 : 소부장분야 혁신역량을 보유한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일반 :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 비 지원비율	지원방식
일반 회계	수출지향형	최대 4년, 20억	80% 이내*	자유공모
	시장확대형	최대 2년, 6억		자유공모(품목지정)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		자유공모(품목지정)
소특 회계	강소100	최대 4년, 20억		자유공모
	소부장 전략	최대 2년, 6억		자유공모(품목지정)
	소부장 일반	최대 2년, 5억		자유공모(품목지정)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중점분야 신설) BIG3 및 비대면과제 등 중점 지원기술을 지정하여 우선지원
 - ▶ (자격요건 강화) 민간투자자연계과제 민간투자 최소금액 상향(5억→10억)
 - ▶ (지원시기) 신속한 과제지원을 위해 지원시기 조정(6월→4월, 9월→7월)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520~0537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업력 7년 초과하나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시장대응형 및 소부장일반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재도약과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강소100과제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강소100과제는 소부장 강소기업100 전용R&D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소기업100으로 선정한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1-3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7년 이하이며 매출액 20억원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세부 자격기준은 공고문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디딤돌(신규 810억원) : R&D저변 확대를 위해 R&D 첫수행, 유관기관 추천 등을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R&D지원(1년, 1.2억원 이내)
 - 전략형(신규 533억원) : 디지털, BIG3, 백신 원부자재, 그린 분야, 소부장 등 고기술·유망기술 분야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2년, 3억원 이내)
 - TIPS(신규 738억원) : 창업기획자 등 팀스 운영사가 발굴·투자한 기술 창업기업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지원(2년, 5억원 이내)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지원방식
디딤돌	최대 1년, 1.2억 원	80% 이내	자유공모
전략형	최대 2년, 3억 원		품목지정
TIPS	최대 2년, 5억 원		자유공모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제별 공고 참조, '21.12월 중 공고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541, 0543, 0546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지원조건에 있는 매출액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 A. 직전년도(2021년) 재무제표의 결산 매출액 기준입니다.(단, 전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 디딤돌의 R&D첫걸음 기업은 어떤 의미인가요?

- A. 중소벤처기업부의 R&D사업을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의미 합니다.

용어설명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7년 미만의 기업
BIG3 :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분야의 과제

1-4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소상공인 육성

새로운 BM개발, 제품·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소비·유통·트렌드 변화 등)에서 소상공인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 BM개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대학·연구소, 민간컨설팅기업 및 기술전문기업 등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생활혁신개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BM개발과제) 1단계 BM기획(3개월) + 2단계 BM개발(2년)
 - 다수 소상공인의 매출확대 및 서비스 혁신·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BM) 기획·개발 지원
- (생활혁신개발과제) 1단계 진단·기획(2개월) + 2단계 기술개발(6개월)
 - 자체 기술개발 수행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권역별 대학을 연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제품 기획·컨설팅·기술 개발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지원비율	지원방식
BM개발	BM기획	3개월, 14.5백만원	80% 이내	자유공모
	BM개발	2년, 4억원		
생활혁신 기술개발	진단기획	2개월, 5백만원	80% 이내	
	기술개발	6개월, 30백만원		

신청·접수

- 사업공고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BM개발과제) BM의 보급 확산 및 구체성·실현가능성
- (생활혁신개발과제) 권역별 진단기획기관 자율운영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549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생활혁신형개발 과제 신청은 어디에 하면 되나요?

A. 공고상에 기재된 권역별 진단·기획기관에서 접수합니다.

Q. 권역별 진단기획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요?

A. 자체 기술개발 수행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진단 기획 컨설팅 하며 진단기획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응어설명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BM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1-5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수요기반 상용화 R&D 지원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 해외기업 등의 구매 및 투자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요처(투자기업)로부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 계약서’(투자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지정공모) 정부에서 수요처(투자기업)가 구매(투자)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 수행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자유공모) 중소기업이 수요처(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기술개발제품의 구매(투자)를 약속 받은 경우 과제를 선별하여 기술개발자금 지원

지년해와 달라진 내용

- ▶ 구매연계형(조달혁신) : (‘21년) 5억원 한도 → (‘22년) 10억원 한도
 - 수요처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구매연계형(조달혁신) 과제의 경우 최대 10억원 한도로 확대 지원 가능

신청·접수

- 과제별 공고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적합성 검토
-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651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구매연계형과 공동투자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A. 구매연계형은 수요처의 구매의사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여 구매의무가 있고, 공동투자형은 투자기업의 투자의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매의무가 면제됩니다.

Q. 해외수요처의 신용조사 보고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 A. 해외수요처의 경우 과제 신청 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한 국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는 필수제출 서류입니다. 해외신용조사보고서는 발급시까지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용어설명

수요처 : (국내) 정부, 지자체,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해외)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기업(E등급 이상)

투자기업 :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투자기업 출연금 : 총 사업비와 별도로 투자기업이 정부출연금에 대응하여 투자하는 금액으로 주관기관이 개발 및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 가능

조달혁신 : 구매연계형 중 수요처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과제

BIG3 : 공동투자형 중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분야 과제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과제(국내 수요처에 한함)

1-6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네트워크 협력체의 공동기술개발

3개이상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시장주도형 R&BD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중심의 네트워크 협력체*(3개 기업 이상)
 - * 개발기업, 생산기업, 유통 및 판매기업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 혁신형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 불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1단계 : 네트워크 기획지원)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기관의 탐색, 매칭을 지원하고, 기업이 제안한 아이템의 타당성 검증 및 R&BD기획 상세화, 상호협력계약 체결 지원
 - (2단계: R&BD) 연구개발계획,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R&BD 자금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네트워크 기획 연구개발계획서 개선으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
 - 네트워크 기획 연구개발계획서에 최소 필요 사항만 작성 및 30페이지로 제한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신청·접수

- 과제별 공고 참조
 - 중소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통)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적합성 검토
- (네트워크 기획지원) 제출된 개념요약서(기술개발 주제, 구현방법, 네트워크 구성계획 등)를 기준으로 기획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
- (R&BD) 연구개발계획서(네트워크 벨류체인 등),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기술성, 사업성, 네트워크 구성의 적정성 및 우수성 등을 평가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651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A. 네트워크 협력체는 주관연구개발기관(1개), 공동연구개발기관(2개 이상) 등 총 3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됩니다.

Q. 네트워크 기획(1단계) 신청 시 3개 이상의 기업이 다 구성되어 있어야 하나요?

A.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은 2단계 R&D 신청 전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1단계 네트워크 기획지원 신청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만 구성되어 있으면 되며, 기획 진행 중에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용어설명

기획 운영기관 : 네트워크 기획을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여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하는 기관

상호협력 표준계약서 : 네트워크 구성 기업들의 수행역할 및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구성 기관별 의무사항, 성과배분 방식 등을 정의하고, 변호사 공증을 진행하여 공신력 및 구속력을 확보한 계약서

사업화 부속계약서 : 상용화를 통한 사업성과 창출 및 지속가능한 상호 신뢰형성을 위해 R&BD 완료 후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역할, 비용 분담 내용 등을 포함하고, 변호사 공증을 진행하여 공신력 및 구속력을 확보한 계약서

기획연계과제 : 당해 연도 네트워크 기획을 수행하고 R&BD 과제에 신청한 과제

1-7

산학연Collabo R&D

산학연 협력R&D를 통한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확대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이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
- 2단계 사업화 R&D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비영리 연구기관

* 유의사항 : 예비연구 신청 시, 공동개발연구기관 과제책임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 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 및 위탁연구 실적이 없어야 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①예비연구(PoC) → ②사업화R&D
- 산학협력 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를 지원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 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지원내용 및 한도>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지원 방식
산학협력	(1단계) 예비연구	최대 8개월, 0.5억원	80% 이내	자유 공모
	(2단계) 사업화R&D	최대 2년, 4억원		
산연협력	(1단계) 예비연구	최대 8개월, 0.5억원		
	(2단계) 사업화R&D	최대 2년, 4억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예비연구) 요건검토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산학연협력의 필요성, 고용 친화도, 예비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예비연구방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기간 단축을 위해 평가단계 조정 가능
- (사업화 R&D)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예비연구 목표달성도, 사업화 기술개발계획, 사업성, 산학연협력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676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1단계 예비연구 선정기업은 모두 2단계 사업화 R&D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 예비연구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50% 내외의 과제만 2단계 사업화 R&D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1단계 신청없이 바로 2단계(사업화R&D)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예비연구) 수행 과제만 2단계 신청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예비연구(PoC, Proof of Concept) : R&D를 통한 기술 검증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단계로 사업화 아이템·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1-8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

산학연 플랫폼기반 협력R&D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산학연 플랫폼을 통해 혁신역량 초기 중소기업 발굴 및 협력 R&D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지원 전담 조직을 보유하고 산학연 협력체계(네트워크)를 통하여 패키지 형태로 제공해주는 대학·연구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혁신역량 초기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대학, 연구기관을 거점으로 하는 협력 R&D 지원
 - (산학협력 플랫폼 R&D) 대학 보유 기술, 인력, 교육 등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혁신역량 초기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및 기술개발 지원
 - (산연협력 플랫폼 R&D) 연구기관의 전문기술을 활용, 신기술개발, 사업화 등 혁신역량 초기기업의 신기술 개발 지원
 - 9개 기술분야별 플랫폼 선정(①바이오헬스, ②반도체/센서, ③그린에너지, ④탄소중립, ⑤인공지능/빅데이터, ⑥5G/6G, ⑦실감형콘텐츠(AR/VR/메타버스), ⑧미래교통(자동차, 드론, 선박), ⑨스마트제조)
 - 과제당 최대 2년 4개월, 4.2억원 이내 지원

〈지원내용 및 한도〉

구 분	지원기간 및 한도	정부지원 연구비 비중	지원 과제수	지원 방식
산학협력 플랫폼	(유형 ①) 협력R&D(2년, 3억원 이내) (유형 ②) R&D기획(4개월, 0.2억원) +협력R&D(2년, 3억원 이내)	기획 : 80% R&D : 80%	유형① 80개 유형② 20개	자유 공모
산연협력 플랫폼	(유형 ①) 협력R&D(2년, 3억원 이내) (유형 ②) R&D기획(4개월, 0.2억원) +협력R&D(2년, 4억원 이내)	기획 : 75% R&D : 80%	유형① 60개 유형② 20개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22년 신규 공고

신청·접수

- 사업공고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플랫폼 선정) 요건검토→심층평가→최종선정
- 기술분야별 강점을 갖춘 대학·연구기관 중심으로 중소기업 윈스톱 지원거점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적합한 기관을 선발하며, 기술개발 전문성” 뿐만 아니라, “기업 지원 경험과 역량 및 거점 인프라”등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평가
- 선정된 플랫폼이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공고 및 후보기업 선정
- (유형1 및 유형2) 요건검토 → 선정평가 → 최종선정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676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유형1과 유형2는 연구자가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과제를 신청시, 유형1과 유형2를 산학연 플랫폼과 중소기업이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Q. R&D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학연 플랫폼 주관연구개발기관하고만 협력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선정된 플랫폼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한 R&D만 지원가능합니다.

1-9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해외 협력을 통한 원천기술 상용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원천·혁신기술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ICT·생산기술을 결합한 후속 상용화 제품 개발 및 신복합 新시장 개척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 RFP 제안사로 부터 “기술협력의향서*”를 확보한 중소기업

* 현지 기술 도입 증빙을 위해 국내로 도입되는 기술의 범위, 기술료 등이 명시된 기술이전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필수 제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상용화 R&D) 해외 기술협력국(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우수한 원천·혁신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 (국제협력) 상용화지원기관*을 통해 해외국가와 기술협력 과정에서 발생 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지원

* 러시아 :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러 혁신센터), 우크라이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구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상용화기술개발	2년 이내, 4억원 이내	80%이내	품목지정

- 신청·접수**
- 사업공고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연구개발계획의 기술성(창의·도전성, 국제협력 기술개발방법 구체성, 기술보호역량 및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사업성(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고용친화도), 정책부합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612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기술협력 의향서 등 LOI'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현지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협력을 위한 사전협의 여부 등의 증빙으로 활용되므로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Q. 해외원천기술보유국(러시아)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현지기관 간의 기술협상, 기술 도입 및 기술개발,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상용화지원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였습니다.

용어설명

(공급)기술협력의향서 : 공급기술명, 내용, 범위, 기술이전 예정일 및 조건, 각 기관장의 날인 등이 포함된 문서

(수요)기술협력의향서 : 수요기술명, 내용, 범위, 기술도입(또는 제품구매) 예정일 및 조건, 각 기관장의 날인 등이 포함된 문서

1-10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R&D

협동조합 등 중간조직을 활용하여 산업현장에서 공동활용이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업 간 성과공유·확산 및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설립을 인가 받은 협동(연구)조합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1단계, 과제기획) 산업분야에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통기술 R&D 및 사업화 방안 기획 구체화 지원
 - (2단계, R&D) 공통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
 - (3단계, 성과확산) 공통기술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성과공유 확대 등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구 분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 한도	총사업비 구성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업부담 연구개발비
(1단계)	과제기획	3개월, 최대 2천만원	100%	-
(2단계)	공통기술R&D	2년, 최대 10억원	80%	20%
(3단계)	성과확산	1년, 최대 1.5억원	80%	20%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22년 신규 공고

신청·접수

- 사업공고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 참조 ('22.1월 중 공고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통기술의 수요 및 필요성, 보급·성과확산 가능성 및 파급효과, 협동(연구)조합의 개발역량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 중복성, 연구개발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520~0531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1단계 과제기획 선정기업은 모두 2단계 전략협력 R&D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 과제기획 결과를 평가하여 기술개발 필요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2단계 R&D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Q. 3단계 성과확산에는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개발된 기술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시험·인증, 장비활용, 특허 분석 및 사업화 컨설팅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어설명

(공급)기술협력의향서 : 공급기술명, 내용, 범위, 기술이전 예정일 및 조건, 각 기관장의 날인 등이 포함된 문서

(수요)기술협력의향서 : 수요기술명, 내용, 범위, 기술도입(또는 제품구매) 예정일 및 조건, 각 기관장의 날인 등이 포함된 문서

1-11

그린뉴딜유망기업100(R&D, 사업화)

녹색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색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육성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①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녹색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 10개 대분류, 93개 중분류, 428개 소분류로 구성
 -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그린벤처 기업이 신속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동시 지원
 - (R&D) 기술개발 자금 지원 (3년·12.5억원 내외)
 -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10%↑+현물90%) 이상
 - (사업화) 기획 컨설팅, 시장조사, 시제품 제작, 테스트 장비 이용, 인·검증, 수출지원 등 사업화 자금 지원 (3년·17.5억원 내외)
 -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50%↑+현물50%) 이상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추가) 지원분야 내 9대 분야 25개 중점분야에 대해 우대 지원
 - * 중점분야는 세부공고에서 확인가능
- ▶ (변경) 사업화 과제 1차년도 정부지원금 7.5억 → 4억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세부 공고 참조, '21.12월 중 공고 예정)
- 공고일 ~ '22.1월 중순 접수마감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전검토) 공고 내용에 부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적합여부 검토
- (선정평가) 서면평가(필요시) → 심층대면평가 → 심층현장평가 → 최종선정
-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술성, 성장성, 정책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529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R&D와 사업화를 동시에 동일 아이템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A. 사업화의 경우 기존 보유기술의 결과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동일 아이템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R&D는 기 개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유사성정도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Q. R&D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사업화만 추진하려고 하는데 R&D 지원하지 않고 사업화만 지원할 수 있나요?

A. 동 사업은 R&D와 사업화를 동시에 지원하므로 둘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여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Q. 저희는 이노비즈, 벤처기업에는 해당하지 않고 연구소 전담부서만 있습니다. 신청가능한가요?

A. 동 사업 지원대상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이노비즈 인증, 벤처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중 1개 이상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연구소 전담부서 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사업화 지원 부문에 양산을 위한 비용을 집행해도 되나요?

A. 양산자금은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사업화 자금은 실증 단계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사업화 계획서 및 사업비 소요명세서 서식을 확인 바랍니다.

용어설명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녹색기술분야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선박수송기계,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수산물품 및 시스템, 환경보호 및 보전

☞ * 10개 대분류, 93개 중분류, 428개 소분류로 구성

** 세부 내용은 녹색인증 홈페이지 <https://www.greencertif.or.kr> 참조

혁신형 중소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기업

1-12

중소기업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22년 신규)

탄소중립형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동일·유사업종 내 중소기업 공정에 공통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개발·보급하여 탄소중립형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지원대상

- 탄소 다배출업종을 영위하는 수요기업(중소기업)과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역량을 갖춘 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포함)의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①) 선도모델 개발을 공동 수행할 기관(학·연)
 - (공동연구개발기관 ②)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실증할 Test-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선도모델을 적용할 수요기업(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중소기업 탄소다배출 업종*을 영위하는 수요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동일·유사업종 내 중소기업에 공통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지원

* (중소기업 탄소다배출업종) 300인 미만 사업장 배출량 상위 업종으로 식료품제조업, 제지업, 금속가공업,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1차금속 등

〈지원내용 및 한도〉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최대 2년, 20억원	80% 이내	지정공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금액은 예산 및 지원과제 수에 따라 조정 가능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22년 신규 공고

신청·접수

- 사업공고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R&D 선정평가)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연구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에 대한 평가 실시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660, 0657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탄소다배출업종은 무엇인가요?

A. 300인 미만 사업장 배출량 상위 업종으로 제조업 중 배출량기준 상위 10개 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지원합니다.

Q.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선도모델 개발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만 참여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개발역량을 갖춘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산학연), 선도모델을 적용할 수요기업(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야 하며, 동일·유사업종에 공통적용 가능한 기술개발 진행되어야 R&D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13

중소기업Net-Zero기술혁신개발('22년 신규)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술경쟁력 확보

저탄소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저탄소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대상

- 중소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공공연구개발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하는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 필수공동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추가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기관유형에 따른 참여제한 없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탄소중립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으로 탄소중립 신산업 미래유망기술 개발을 주도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이전법 제2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공공연구기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기관
 - * 기술이전법 제2조 제6호 : “공공연구기관이라함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것”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중소형 규모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탄소저감, 탄소자원화·활용 분야 미래 유망기술* 개발지원
 - * (미래유망기술) 이차전지, 저전력반도체, 바이오, 그린수소, 그린서비스, CCUS

〈지원내용 및 한도〉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지원방식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 개발	최대 3년, 15억원	80% 이내	품목지정
	최대 3년, 30억원		지정공모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예산 및 지원과제 수에 따라 조정 가능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22년 신규 공고

신청·접수

- 사업공고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R&D 선정평가)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연구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에 대한 평가 실시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660, 0657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컨소시엄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A. 컨소시엄 구성은 주관연구개발기관(1개),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총 2개 이상의 중소기업 및 공공 연구기관으로 구성됩니다.

Q. 미래유망기술은 무엇인가요?

A.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저탄소 신산업을 선정하였으며, 각 부처별 역할 분담을 통해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개발 가능한, 중·소형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분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14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

소재부품장비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인프라·인력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플랫폼화)하여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개발 촉진

지원대상

- (운영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관으로 과제발굴, 공동R&D 수행 및 기술, 인력, 인프라 제공이 가능한 기관
 - * 운영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공동연구개발기관)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 전략품목 內 요소기술관련 연구개발 수행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운영기관에서 발굴·기획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할 중소기업 매칭, 과제기획 및 기술개발 등 단계별 지원
- 1단계 : 운영기관 에서 발굴한 RFP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한 중소기업과 사전연구 등 과제기획 지원
- 2단계 : 1단계 지원기업 중 과제기획의 충실성, 연구개발 필요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협력R&D 지원

〈지원내용 및 한도〉

내역사업	단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지원 방식
소재부품 장비 전략협력 과제	1단계 과제기획	최대 2개월, 15백만원 이내	100%	지정 공모
	2단계 협력R&D	최대 2년, 8억원 이내	75% 이내	지정 공모
	운영기관 운영비	기관당 1.5억원	100%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금액 예산 및 지원과제 수에 따라 조정 가능

신청·접수

- 사업공고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1단계(과제기획) 요건검토 → 운영기관평가 → 대면평가→ 최종선정
-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개발방법 구체성, 산학연협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운영기관의 RFP 적합성 검토를 통한 추천과제에 한하여 1단계 신청 가능
- 2단계(전략협력R&D) 대면평가 → 최종선정
- 기술개발의 적정성, 산학연협력 적합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675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1단계 신청없이 바로 2단계(전략협력R&D)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과제기획) 수행 과제만 2단계 신청 가능합니다.

Q. 1단계 과제기획 선정기업은 모두 2단계 전략협력 R&D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 과제기획 결과를 평가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20개 내외 과제가 2단계 전략협력 R&D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15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공공기술 이전을 통한 수입대체기술 확보

Tech-Bridge 플랫폼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후속 R&D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재·부품·장비분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 과제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4개월 이내 계약체결 예정 포함,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거래예정확인서 필수 제출)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기술을 이전하는 대학연구기관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Tech-Bridge 기술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기술이전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 필요시,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용 중인 IP인수보증 및 사업화 양산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

기술이전 (기술보증기금)	+	후속 상용화 R&D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화 자금 (기술보증기금)
IP인수 보증 금융지원		상용화 기술개발지원		사업화 설비·양산 자금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 방식
수요기반 기술이전	최대 2년, 8억원	80% 이내	지정공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RFP 상시 발굴

신청·접수

- 사업공고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연구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660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테크브릿지 플랫폼에 등록된 공공기술이면 모두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동 사업은 소재·부품·장비의 조속한 국산화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소재·부품·장비 전용예산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만 가능합니다.

Q. IP R&D연계는 필수인가요?

A. 네, 동 사업은 소재·부품·장비의 조속한 국산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이슈해결을 위해 IP-R&D전략 수립 참여가 필수입니다.

용어설명

테크브릿지(Tech-Bridge) :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공공기술과 기술보증기금이 발굴한 수요기술을 매칭 지원하는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

1-16

공정품질기술개발

제조기업 공정혁신 지원

국내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 향상(불량률 감소·원가 절감 등)을 위해 제조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 혁신형 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
- (현장형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혁신형 R&D
 - 일반과제 :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학·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고도화과제 : 국내 높은 생산비용으로 이미 해외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 중소기업의 노동집약적·고위험 공정을 자동화·지능화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술개발 지원

● 현장형R&D

-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과 단기 애로기술 해결 수준의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원한도	지원방식
혁신형 R&D	일반과제	최대 2년, 2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고도화과제	최대 2년, 10억원	80% 이내	지정공모
현장형R&D		최대 1년, 5천만원	80% 이내	자유공모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혁신형R&D_일반과제) 스마트화저 저변확대와 스마트 수준고도화를 위해 과제 접수 시 생산현장 확인자료를 추가 접수하여 대면평가 시 활용
- (혁신형R&D_고도화과제) 지정공모 방식으로 개선하여, 리쇼어링 목적에 부합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 5인 및 간사 1인 총 6인의 평가자가 현장평가 진행
- (현장형R&D) 공정기술개발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과제 접수 시 생산 현장 확인자료를 추가 접수하여 서면평가 시 활용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671, 0678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자동화 장비 구매 및 설치하는 것도 본 사업으로 가능한가요?

- A. 아닙니다. 공정품질은 R&D사업으로 단순 장비구매, 조립은 불가능하며, 공정개선을 위한 연구개발행위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Q. 1년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아니요, 탈락기업(후보기업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17

스마트서비스ICT솔루션개발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스마트화를 위한 ICT솔루션 개발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생산성 향상, 서비스 고도화 및 신사업 창출을 위한 솔루션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 기반 구축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ICT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의 서비스 혁신 기반구축을 위해 솔루션 개발 중소기업의 솔루션 고도화 및 신규 솔루션 개발, 신규BM 창출 지원
 - (수요기업매칭형) 특정 수요기업들의 공동 수요에 기반한 신규 솔루션 개발(또는 고도화) 지원
 - (공급기업 단독형)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보편적으로 사용가능한 솔루션개발(또는 고도화) 지원
 - (컨소시엄형) 과제의 대규모성 등으로 인해 기술 간 융·복합이 필요한 경우 공급기업 간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지원한도	지원방식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최대 2년, 5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 신청·접수**
- 사업공고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목적과 내용, 기술 분야 등과의 부합성,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 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02, 0503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상,하반기 모집공고 중 한번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탈락기업(후보기업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18

제조데이터공동활용플랫폼기술개발

제조현장에서 다수 사용 가능한 플랫폼 및 솔루션 개발 지원

제조현장에서 다수 사용 가능한 AI공동활용모델* 확보를 위해 출연연·대학의 전문 인력과 중소기업의 공동 R&D 추진

* AI공동활용모델(예시) : 자원최적화, 시뮬레이션, 데이터 자동관리, 스마트작업보조, 공정자동화, 스마트유지보수

지원대상

- 플랫폼 개발역량을 보유한 연구소, 대학교, 중소기업과 데이터 활용 및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교 중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Korea 구현을 위해 제조데이터 공동 활용플랫폼* 및 관련 기술개발 지원
 - (플랫폼 기술개발) 제조 중소기업 플랫폼 기준 모델을 구축하여 제조 데이터의 빅데이터화, AI공동활용모델 등 플랫폼 개발 지원
 - * 공동활용플랫폼 : AI표준모델들의 개발·제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공통·공용의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틀이 되는 기술
 - (솔루션 기술개발) 플랫폼 목적과 연계한 솔루션 기술개발
 - ** 플랫폼 특징
 - 범용·응용성 :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또는 응용될 수 있는 기반 기술
 - 공용성 : 한 기업에 전유되지 않으며 여러 기업이 공용으로 활용 가능 기술

- 통합·파생성 : 단위요소 기술이 아닌 요소 기술의 통합된 형태로서 추가적인 맞춤형 기술 개발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되거나 파생될 수 있는 기술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최대 2년, 24억원	80% 이내	품목지정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신청·접수

- 사업공고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943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컨소시엄의 구성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A. R&D를 주관할 연구소, 대학교 또는 중소기업이 플랫폼 및 솔루션 기술개발을 수행할 중소기업, 연구소 또는 대학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합니다. 단, 컨소시엄 구성 시, 1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19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22년 신규)

스마트제조 핵심기술 기반 기술개발지원

D.N.A(Data, Network, AI) 기술 기반의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제조 공급기술 개발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술개발)과 공동연구개발기관(실증)이 컨소시엄 구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스마트 제조 3대 분야의 핵심 공급기술 개발

* (첨단제조) 대·중소기업 간 데이터와 기술을 공유하는 "한국형 미래/첨단 스마트공장 모델"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22~'25년)

- 대·중소기업 간 데이터 공유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 및 핵심 주력산업 특화 기업 연계 플랫폼 등 개발

* (유연생산) 고객 맞춤형 다품종 유연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공장 내 제조자원의 탄력적 운용 ('22~'25년)

- 초연결 협력제조를 위한 가치사슬 통합 플랫폼 기술, 공장 운영 정보를 활용한 유연생산 최적화 기술, 산업용 엣지 기술 등 개발

* (현장적용)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 개발 ('24~'26년)

- 현장맞춤/안전중심형 설비 적용기술, 경험제조 지식화 적용기술, 사람 중심 노동/환경친화 적용기술 등 개발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22년 신규 공고

신청·접수

- 사업공고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971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20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22년 신규)

고부가 K-건기식 선도기업 육성

건강기능식품 R&D 전주기 밀착지원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 성공률 제고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개별인정형 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①사전검증(PoC) → ②사업화R&D → ③임상지원(Track 1단계의 후속)
- (1단계) PoC지원 :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지원단(식약처 협업)을 활용한 사전 검증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및 기획 지원
- (2단계) R&D지원
 - (Track 1) 새로운 원료 발굴 혹은 기능 개발 R&D 지원(3+2년)
 - (Track 2) 기존 기능성 원료의 흡수율 증진, 추출효율 개선, 제조방법 다양화로 新부가가치 창출하는 연구 수행을 위한 R&D 지원(2년)

<지원내용 및 한도>

구 분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지원방식	예산(백만원)	
PoC 지원	최대 8주, 10백만원	100%	자유	400	
R&D 지원	Track 1	최대 3년, 연 2억원	75% 이내	자유	1,400
	임상지원	최대 2년, 연 1억원	50% 이내	자유	
	Track 2	최대 2년, 연 2억원	75% 이내	자유	600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22년 신규 공고

신청·접수

- 사업공고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전검증) 핵심 기술력과 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지원하기 위해 PoC 단계 도입 (연구개발지원단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검증)
- (R&D-2Track)과제특성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세분화 지원
-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528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지원단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지원단은 식약처 협업으로 구성되어 PoC단계의 사전 검증과 R&D수행에서의 전주기 밀착지원을 하며 컨설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Q. 1단계 PoC가 무엇인가요?

A. PoC는 R&D 초기 기획 단계부터 기술·성능 검증, 규제기준의 적합성, 제품화 가능성을 진단·평가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용어설명

POC(Proof of Concept) : 주요 규제 내용과 절차를 검토하고 해당 과제에 적합한 R&D와 시험평가 방법에 대한 설계 및 기획을 지원하는 단계

1-21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구축

경쟁력을 잃어가는 전통시장·상점가에 첨단 ICT 기술 접목을 통해 스마트 전통 시장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

지원대상

- 인프라/기반기술 중심의 선행기술을 보유한 연구소·대학교, 응용 서비스 솔루션을 보유한 ICT 전문 중소기업, 지역 시장 상인회,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수요 분석과 맞춤형 서비스 기획을 통한 ICT 기반 인프라/기반/서비스의 개발 및 확산을 지원
 - (인프라기술) 전통시장의 시설 및 장비를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 데이터 수집 및 축적을 위한 센서, IoT 디바이스 기술 개발 지원
 - (기반기술) 인프라 연결 표준화 기술, 데이터 허브 기술 및 외부 침입 방지를 위한 인증·인가 등 보안 기술 중심 지원
 - (응용서비스) 전통시장 상인 및 고객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기술 개발 지원
 - * 운영/관리, 물류/유통, 편의/안전과 관련된 응용 서비스 개발 등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	최대 2년, 20억 원	80% 이내	자유공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22년 신규 공고

신청·접수

- 사업공고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자격, 과제 중복성,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등 적합성 검토
-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09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22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지원

“기획 → 개발 → 실증 → 확산” 전 단계에 소비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리빙랩을 활용하여 R&D를 지원함으로써 사업화 성과 촉진

- 지원대상**
- 리빙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지역 기반 창업지원 비영리 기관 또는 비영리기관 협력 컨소시엄
 - 리빙랩활용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세부 자격기준은 공고문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리빙랩 플랫폼 구축 및 운영(10억원) : 리빙랩 플랫폼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사용자 패널 모집 및 관리, 아이디어 발굴, 사용자 실증, 성과 확산 등 플랫폼 구축·운영 지원
 - 리빙랩활용R&D(17.5억원) :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R&D에 적용하는 R&D 계획 고도화와 시제품 실증과 검증 중심의 R&D 지원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율	지원방식
리빙랩플랫폼 구축 및 운영	10억 원	100%	자유공모, 지정공모
리빙랩활용R&D	최대 2년, 5억 원	75%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22년 신규 공고

신청·접수

- 사업공고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 참조('21.12월 중 공고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연구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548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리빙랩 운영기관 주요역할은 무엇인가요?

- A. 온·오프라인 리빙랩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용자 패널 구성 및 교육, 사용자 패널과 기업 간의 협업 증대 및 촉진, 사용자 수요의 발굴 및 구체화, 실증 및 개선의견 발굴로 전반적인 R&D계획→실증→사업화 지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Q. 리빙랩R&D 지원분야가 있나요?

- A. 소비자·주민 참여의 용이성, 시장 친화적이고 리빙랩 활용성이 높은 '친환경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용어설명

리빙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1-23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시장성이 유망한 해외인증 선별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가의 인증/규격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스펙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예정)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단계부터 타겟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R&D 지원
 - 해외 시장규모, 진입 가능성, 중소기업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의 해외인증 및 규격을 선정
 - 선정된 해외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 과제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지원 방식
해외인증 규격 적합제품 R&D	최대 1년, 1.5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신청·접수 ● 사업공고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R&D 선정평가)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연구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인증획득의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663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수출시 해외인증규격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예,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수출시 CE, UL 등 다수의 국가에서 환경, 안전, 위생 등 분야별로 다양한 기술 인증제도(국가인증, 강제인증 등)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Q. 해외규격인증의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A. 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제품 생산 전 해외인증/규격에서 요구하는 스펙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D 사업입니다.

1-24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연구기반 강화

중소기업의 효율적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 공유·확대 촉진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봉한 연구시설장비 및 종합서비스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이용료 지원
 - (기업선도형) 중소기업이 시험·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지원
 - (기반플러스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지원
 - 지원 방식(자유공모)

내역사업명	지원비율	지원한도(정부지원) (A)	기업부담금 (B)	바우처 발행한도 (A+B)
기업선도형	70%	10,000천원	4,285천원	14,285천원
기반플러스형	70%	50,000천원	21,428천원	71,428천원

신청·접수 ● 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 : 044-300-0690
- 한국산학연합회(관리기관) : 044-410-3321, 3322
- 전용정보사이트 : rss.auri.go.kr(연구기반공유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기업선도형과 기반플러스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기업선도형은 시험·분석서비스 등 단순 목적의 연구시설·장비이용을 지원 하지만 기반플러스형은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의 종합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 연구기반 플러스 바우처 구매 및 장비 예약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A. 연구기반 플러스 사업 전용 사이트 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에서만 신청 및 사용 가능합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시스템인 smtech와 별도 운영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중소기업R&D역량제고

사업화 성공을 위한 R&D기획 지원 및 현장 기술애로 해결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지원 및 기술애로 해결, Scale-up R&D 지원을 통해 기획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R&D 기획지원사업
 - 중기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학컨설팅센터로 지정된 대학 및 출연연
 -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위기지역 소재 시도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R&D기획지원) R&D연구개발계획서 작성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R&D기획전문가를 매칭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 기획 지원
- (맞춤형기술파트너)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공학컨설팅 센터의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 (위기지역 중소기업 R&D지원) 위기지역·위기업종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제품고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진단과 R&D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지원 방식
R&D 기획지원	R&D 기획	최대 3개월, 8.5백만원	90% 이내	자유 공모
	R&D기획역량강화교육	-	100%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최대 9개월, 30백만원	90% 이내	자유 공모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Scale-up R&D지원	최대 1년, 100백만원	90% 이내	자유 공모
	현장수요형 R&D	최대 2개월, 4백만원	100%	자유 공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공학컨설팅센터 신규 선정('21년.1월 선정 예정)
- ▶(R&D기획지원) 연계지원 추천 횟수를 ('20)1회→('21)2회로 확대 실시

신청·접수

- 사업공고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545, 683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에서 공학컨설팅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공학컨설팅센터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권역별로 선정된 대학으로 과제 신청·접수·추천 및 과제관리 등의 역할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Q.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A.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 지역입니다.

위기업종은 위기지역 소재 시·도 내 조선·자동차 업종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R&D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R&D기획이란?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기술개발 3단계(기획→R&D→사업화) 중 성과제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핵심단계

기술애로란? : 기업이 가진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 본 사업에서는 연구개발 기반을 중심으로 사업화 자문, 기술교육, 특수감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

Scale-up이란? : 사전적으로는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뜻하며, 기술, 제품, 서비스, 생산, 기업 등의 규모를 확대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

1-26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기업의 시제품 제작 등 기술사업화 지원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가 선정한 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에게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지원대상

- (주력산업 기업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소, 테크노파크 등 지역 혁신기관) 선정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해당 지역기업 별도 모집·지원
- (지역혁신 바우처) 지역별 테크노파크에서 해당 지역기업 별도 모집·지원
- (시군구 연고산업) 시군구 혁신기관 선정 후 사업화 지원
-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역별 테크노파크에서 해당 지역스타기업 지원
- (수출새싹기업지원) 지역별 테크노파크에서 해당 지역 수출새싹기업 모집·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등
- ▶ 타 기업지원사업에서 동일품목 동일내용을 지원받은 기업
- ▶ 자본전액 잠식, 부채 1,000% 이상 기업
- ▶ 이외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 그 외 시·도 기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주력산업 기업지원
 - 지역혁신기관의 기술자원, 사업화자원, 마케팅 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력산업분야 수혜기업에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수혜기업당 최대 3천만원 내외)

〈사도별 지역주력산업 현황〉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부산	첨단융합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친환경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대구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광주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급형, 디지털생체의료	울산	저탄소에너지, 스마트조선,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대전	차세대무선통신융합, 바이오메디컬, 지능형로봇	강원	천연물바이오소재, ICT융합헬스, 세라믹복합신소재
충북	바이오헬스,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충남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북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전남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그린에너지,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경북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 부품가공, 라이프케어뷰티, 친환경융합섬유소재	경남	첨단항공,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향노화메디컬
제주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세종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 지역혁신 바꾸처
 -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통해 사업화에 애로를 겪는 지역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공급기관을 통한 수혜자 맞춤형 상시 지원 (수혜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이내, 600개 기업 내외)
- 시군구연구고산업
 - 지역 시·군·구내 연구산업을 활용하여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제품의 사업화 지원 (과제당 최대 5억원, 35개 과제 내외)
- 지역스타기업육성
 -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통해 지역스타기업을 연간 200개사 선정·지원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수출새싹기업지원
 - 지역주력산업 내수 중심 지역 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해 수출전문 역량을 활용한 밀착형 수출 전주기 지원(수혜기업의 경우 최대 2천만원 내외, 100개 기업 내외)

신청·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혁신기관) : SMTECH 홈페이지(www.sm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수혜기업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rip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시·도별 주관기관(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주관연구개발기관(지역혁신기관)
 - (주력산업기업지원) 사전검토 → 현장실태조사 → 발표평가
 - * 사업수행 내용, 추진체계, 기업지원역량,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 (지역혁신마우처) 지역별 테크노파크 정책지정
 - (시군구 연고산업) 사전검토 → 현장실태조사 → 발표평가
 - * 사업수행 내용, 추진체계, 기업지원역량,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역별 테크노파크 정책지정
 - (수출새싹기업지원) 지역별 테크노파크 정책지정
- 수혜기업
 - 지원필요성, 지원내용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851~9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877-2041,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주력산업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주력산업 기업지원의 경우,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특허, 인증 등 기술지원 프로그램과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 및 브랜드 개선, 상품기획, 마케팅 등 사업화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수혜기업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본 사업은 기업지원이 가능한 지역혁신기관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 후,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수혜기업을 모집하게 되는데, 2월경부터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rips.or.kr)을 통해 지역별로 통합공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시군구 연고산업 기 자원 및 산업도 지원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기존 지원내용과 성과에 대한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하며, 후속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 구비해야합니다.

Q. 지역스타기업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영위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 내 매출액 50~400억 이면서, 시·도별 자체 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용어설명

지역혁신기관이란?

TP,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출연연 지역 분원 등

1-27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중소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상용화R&D 지원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대상**
- (지역주력산업육성)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에서 지정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자체에서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지역스타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종인 자 또는 기업(법인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종인 자 등(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잠식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 그 외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지역주력산업육성) 시·도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 지원(자유공모/품목지정, 2년 이내, 연 2억원 내외)
 - (지역스타기업육성) 신규고용, R&D투자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상용화R&D 지원(자유공모, 2년 이내, 연 2억원 내외)

< 시도별 지역주력산업 현황 >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부산	첨단융합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친환경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대구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광주	지능형기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디지털생체의료	울산	저탄소에너지, 스마트조선,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대전	차세대무선통신융합, 바이오메디컬, 지능형로봇	강원	천연물바이오소재, ICT융합헬스, 세라믹복합신소재
충북	바이오헬스,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충남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북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전남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그린에너지,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경북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뷰티, 친환경융합섬유소재	경남	첨단항공,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향노화메디컬
제주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세종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신청·접수

- 사업공고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전검토 → 현장조사 → 발표평가
*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추진체계, 사업화계획 및 매출효과, 고용효과 등을 종합평가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831~9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877-2041,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해당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해야 하나요?

A.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등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으로는 타 지역 중소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지역스타기업은 무엇인가요? 지역스타기업육성사업은 반드시 지역스타기업만 참여가 가능한가요?

A. 지역스타기업은 지자체에서 고용 및 매출성장, R&D투자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성장가능성 높은 유망기업을 의미합니다. 지역스타기업육성사업은 지자체를 통해 지역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만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참여기관은 지역스타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28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R&D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산업단지 활성화 유도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협업활동 촉진을 위해, 개방형혁신 바우처 R&D, 공동활용R&D, 융복합R&D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으로 선정된 5개 산단(거점·연계산단) 입주 중소기업

* 산업단지 대개조 5개 지역 : 경북(거점산단: 구미국가산단, 광주(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성서일반산단), 인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 국가산단)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인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등(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잠식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①(바우처R&D) R&D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R&D 바우처를 제공하고, 기업은 희망하는 혁신기관에 바우처를 근거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제품 상용화 촉진
 - ②(공동활용R&D) 지역대학, 연구소, TP 등이 산업단지 내 동종업종 중소기업간의 공통 기술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고, 신제품 개발 촉진
 - ③(융복합R&D) 스마트 산업단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이중업종간 융복합 기술개발 추진

신청·접수

- 사업공고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 참조
- 수혜기업 : 온라인 신청·접수, 지역별 주관기관(테크노파크, 대학, 지역 혁신기관 등)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주관연구개발기관(지역혁신기관)
 - 수행 내용, 산단별 입주기업 현황 및 특성 분석, 추진체계, 기업지원 역량 등 평가
- 수혜기업
 - 지원필요성, 지원내용 타당성, 사업·업종 다각화 계획,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851~9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877-2041,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해당 산업단지에 사업장을 보유해야 하나요?

A.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에 본사, 공장 등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는 타 지역 중소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1-29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양성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기업 중심의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 지원

지원대상

-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 (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 고경력 채용지원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 (인력) 이공계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공공연 연구인력파견지원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개발인력양성 지원: 대학-중소기업(참여기업)간 컨소시엄
 - * 이공계 관련학과 2개 이상, 10개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R&D산업인턴 지원 : (컨소시엄) 광역권역별* 2개 이상 국내 대학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또는 정부R&D 참여 중소·벤처기업
 - (산업인턴) 공대생 4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취업대상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연구인력의 채용·파견·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구 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 사	2,7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1,350만원	1,500만원	1,650만원
석 사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박 사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2,25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 고경력 채용지원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구분	연봉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제한 없음	연봉의 50%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공공연 연구인력파견지원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 기준연봉의 50% 지원

구분	정부지원금
최초 기업파견 지원 3년 이내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 (한도 제한 없음)
추가연장 지원* 3년	

- 연구개발인력양성 지원 : 컨소시엄당 3+2년(연차평가 후 계속 결정), 컨소시엄당 연간 3억원 이내, 정부지원비율 90% 이내
- R&D산업인턴 지원 : 컨소시엄에 참여한 학생의 교육수당 월 150만원을 4개월간 지원

신청·접수

● 사업공고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진·고경력 채용지원, 공공연 파견 지원)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연구개발역량, 지원인력 활용계획 중심으로 평가
- (연구개발 인력양성 지원) 사업계획의 충실성, 연구인력 양성역량 목표 설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 중심으로 평가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411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채용사업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기업 재무제표 및 연구소, R&D계획 등의 정보열람을 통한 사업지표 평가와 일자리평가로 구성되며, 해당 정보는 신청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됩니다. 따라서 신청기업이 제출한 기업정보, 우대사항(가점)의 오류 및 필수서류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정보(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등)는 반드시 본점기준으로 신청

Q.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A. 네 있습니다. 신진·고경력 채용지원사업 및 공공연 연구인력파견지원사업은 인건비의 50% 이상, 연구개발인력양성과 R&D산업인턴지원사업은 1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용어설명

지원기업 : 신진·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하고 사업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인력 : 지원기업에 연구인력으로 채용되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연구자

1-30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의 솔루션 도입 지원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 등 서비스 혁신 도모

지원대상

- 국내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유흥·향락업
- ▶ 담배중개업, 주류 및 담배도매업
- ▶ 숙박업 및 주점업

지원내용

- 기업혁신,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등을 위한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50% 이내, 최대 6천만원)
 - AI, 빅데이터, IoT,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솔루션 구축
 - *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하는 단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
 - * 인공지능(AI) 초입 단계인 자동화 기술
 - *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데이터마이닝

신청·접수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 신청방법 : www.smt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현장실사, 대면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계획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 현장실사를 통한 점검 및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 전문가평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06~7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기 구축한 솔루션을 업그레이드(고도화) 하는 것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동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가능하지만,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이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을 고도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31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지원사업

중소기업 R&D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을 통한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대상

- (혁신제품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최근 5년 내 성공(완료)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R&D지원사업 성공(완료) 판정 이력이 없는 기업
- ▶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
- ▶ 성공(완료)판정 받은 중소기업 R&D지원사업과 기술적 연관성이 없는 제품을 신청한 기업

- (혁신제품 시범구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적용 가능한 혁신제품

지원내용

- (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기술 혁신성, 사회적 필요성 등을 평가·심사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 *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과 계약 시 수의계약 가능(3년간)
- (혁신제품 시범구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시범 활용을 위한 구매 지원

신청·접수

- (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22.2월 중 공고 예정)

평가·심사 주요내용

- 기술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조달적합성 검토 및 심사
- 시범구매 적합성, 파급효과 등 수요매칭심사 및 시범구매 적정성 검토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751, 0756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내선 2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이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공고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시어 나라장터를 통해 해당제품의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은 후,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1-32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지역기업 위기극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자동차, 조선업 등 주요산업 침체로 인해 지정된 위기대응지역(전북 군산,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의 중소기업 위기 극복과 지역산업 회복을 위해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에서 문제해결 서비스 까지 One-stop 패키지로 지원

지원대상

- 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위기업종 및 관련 전·후방 연계업종 중소기업 (협력업체 포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등
- ▶ 타 기업지원사업에서 동일품목 동일내용을 지원받은 기업
- ▶ 자본전액 잡식, 부채 1,000% 이상 기업
- ▶ 이외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 그 외 시·도 기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수혜기업 대상 밀착 컨설팅 이후 외부혁신기관 연계 후속 사업화지원
 - (컨설팅지원) 기업이 당면한 중단기 기술애로 해소, 제품개발 지도, 사업 다각화 및 기술고도화 등 애로해결을 위한 기업진단 및 지원 전주기 전문가 컨설팅
 - (사업화지원)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문제점 및 수요에 따라 시 제품 제작, 공정개선, 제품디자인, 특허출원, 인증, 바이어 초청 등 기업지원을 실시하여 기업 신규거래선 발굴 또는 제품 다변화 촉진 등 사업(다각)화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통영·고성, 창원진해, 거제, 울산동구, 목포·영암·해남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21.5.29.~'23.5.28.)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에 추가

신청·접수 ● 시·도별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주관기관(TP)) 정책지정(사업공고) → 발표평가 → 현장실사(필요시)
- (수혜기업) 지원필요성, 지원내용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851~9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A.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위기기업의 사업분야 다각화·판로개척을 위한 컨설팅에서부터 시제품제작, 마케팅, 인증, 특허, 공정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지원예산은 컨설팅 6백만원, 사업(다각)화지원 5천만원이며 사업(다각)화지원은 기업부담금 10% 이상이 필수조건입니다.

Q. 기업수요기반으로 진행되는 경우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가능합니다. 기업의 사업다각화 및 新판로개척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성격에 따라 R&D, 장비구축, 인력지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기업 소재지가 위기대응지역에 속한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지원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동 사업은 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검토·심사 단계를 거쳐 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기지역에 소재하였더라도 관련업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2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 도모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지원, 상거래 어음·수표의 조기 현금화 지원 및 단기 운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담배·주류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육탕업 및 마사지업, 기타 중소기업중앙회장 지정업종은 제외

지원내용

- 대출종류 및 지원 한도(신용도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대출종류	대출사유	지원 한도
부도매출채권대출	• 상거래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외상매출채권이 회수불능상태가 되었을 때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7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어음·수표대출	• 상거래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현금화 하고자 할 때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7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단기운영자금대출	• 단기 및 긴급한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3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 대출조건

구분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대출이율	대출금의 1/10을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	신용등급별로 연3.5~8.38%	신용등급별로 연3.5%~9.63%
대출기간	3년	180일 이내	1~3년
담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 지배주주 연대 입보 • 부동산담보 및 지역신보보증서 제공시 : 대출한도상향 및 이자율 인하 		

- 중소기업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 의거 이차보전사업대상의 대출이율 : 연1.0~3.0% 감면
- 지자체별 지원금리 및 지원기간이 다르므로 대출 시 확인 요망

**공제부금
납부 등**

- 부금종류 (총 납부액 1억원 한도)
 - 10만원 단위로 10종(10~100만원), 기타3종 :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부금납부기간
 - 20, 30, 34, 40, 42, 50, 60개월
- 지급이자 등
 - 부금납부종료일 후 미해지 시 3개월마다 소정의 장려금 지급
 - 중도 해지시 부금납입 회차가 - 12회 미만인 경우 원금만 지급
 - * 12회 이상 납부시 소정의 이자 지급

**가입 및
대출신청**

- 가입 : (인터넷, 방문, 팩스)
- 대출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부 및 각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
(부금내 대출인 경우 인터넷 원클릭대출 가능)

제출서류

- 가입신청 :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
- 대출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담당세무사 확인필), 대표자 재산세과세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지원규모

- 2021년 대출 5,000억원, 가입 업체 수 17,000개 목표

대출종류	대출목표(연간)
부도매출채권대출(제1호)	25억원
어음·수표대출(제2호)	250억원
단기운영자금대출(제3호)	4,725억원

* 대출 4,570억원, 가입 업체 수 15,960개('20. 11월말 기준)

문의처

- 가입 및 대출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1666-9988, ARS 2번)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홈페이지 (<http://fund.k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대출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공제기금 가입 후 3개월(부금 납부 4회 이상)이 경과되는 날부터 대출 가능합니다.

Q. 공제기금대출을 받은 후에도 부금납부를 계속해야 하나요?

A. 부금은 대출유무에 상관없이 공제가입(계약) 당시 정한 부금납부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후 연속해서 3회 이상 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제기금 제규정」에 의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도매출채권 대출업체가 다른 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부도매출채권대출(1호), 어음·수표대출(2호), 단기운영자금대출(3호)을 총 대출한도액(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부금잔액 10배 이내에서 차등 적용)내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개인발행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정상적인 상거래로 받은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지급장소가 은행인 경우)은 대출대상이 되며 대출실행일 현재 지급기일이 180일 이내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Q. 단기운영자금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단기운영자금 대출기간은 1~3년이며 대출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 또는 대출기간 내 매월 균등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대출기간 내 매월 균등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Q.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지원은 항상 받을 수 있나요?

A. 지자체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 대출의 경우 이차 일부(연1~3%이내)가 지원될 수 있으며, 지원예산 규모에 따라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2-2

사업조정제도

대기업 진출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최대 6년)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

지원대상

- 모든 업종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방위사업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통산업보존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신청요건

- 형식적 요건
 - (신청인)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서 구성원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민법 외 법령에 의한 법인으로서 구성원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가 되며,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을 경우에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내 동종업종 중소기업자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 (피신청인) 중소기업이 아닌 영리사업자로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상생법 제2조 및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실질적 요건
 - 대기업 등이 ①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②해당지역·해당업종의 ③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④수요를 감소시켜 ⑤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인정될 때 유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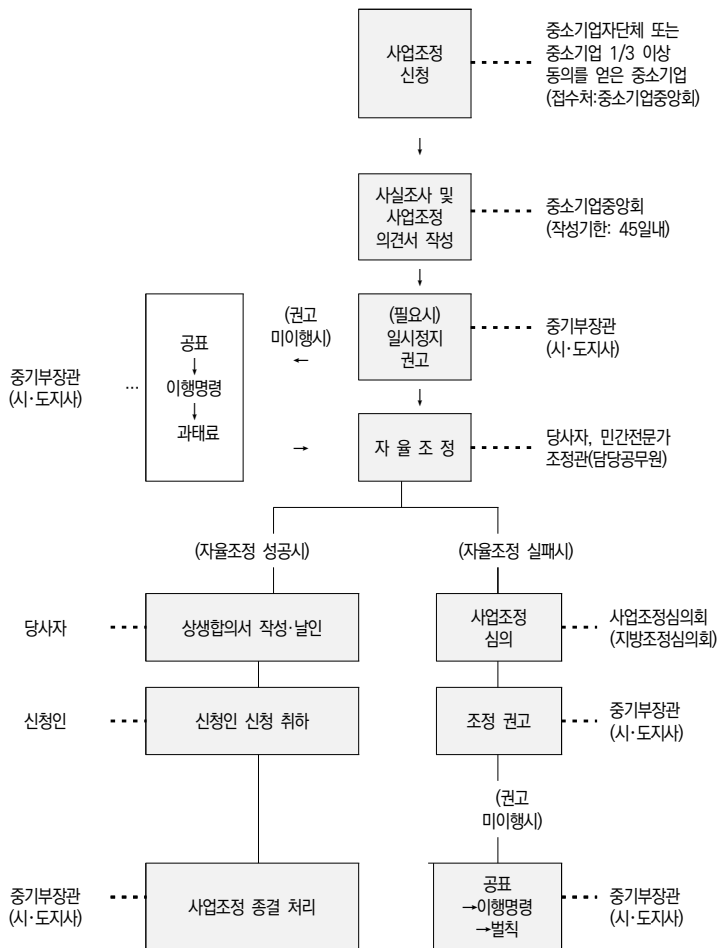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우편 접수
 -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부(우 07242)

제출서류

- (단체 신청 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사업조정신청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결의서 또는 회의록, 대기업(SSM) 진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명단, 기타 피해 입증 관련 서류
- (개별중소기업인 신청 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대기업 진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1/3이상 동의서, 기타 피해 입증 관련 서류 등
 - * 개별중소기업인 신청은 해당지역 내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

처리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창업부 상생협력지원과 : 042-481-4477
-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업) 소상공인정책부 : 02-2124-3173
제조업) 상생협력부 : 02-2124-3133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A

Q. 사업조정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당업종 대기업 입점 전 또는 입점 후 180일까지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대기업 SSM은 모두 사업조정 대상이 되나요?

A.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이 직영하거나 혹은 총 개점비용의 51% 이상 대기업이 부담한 점포만 가능합니다. 상품 공급점, 대기업 지분이 49% 이하일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대기업의 진출을 막을 수 있나요?

A. 동 제도는 일정기간 대기업 진출을 유예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상되는 사업조정의 형태는 사업진출 연기, 판매량 혹은 면적 제한, 취급 품목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이 있습니다.

Q. 대기업이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권고 미이행 시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대기업이 사업조정심의회 권고를 미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권고 미이행 시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명령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응어설명

일시정지 권고란? : 사업조정 신청 시 대기업이 사업인수·개시 전일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반입 및 간판설치 등 사업을 위한 직접적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3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

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Role Model) 제시로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장기간 건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경제적 기여도가 높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중소기업 성장의 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명문장수 기업이란

- 장기간 건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 장수(60점)
 - 45년 이상 업력 유지
- 명문(40점)
 - 경제적 기여, 사회적 기여, 기업역량 및 기업혁신(지속발전 가능성) 등 평가
 - * 필수요건(법인세 납부실적, 법규 준수, 연구개발) 및 항목별 최저 점수기준을 통과하고, 8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명문장수기업 확인대상 제외 업종

- ▶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명문장수 기업지원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 및 현판제작 부착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기업 홍보에 활용)
- 정부포상 등 우선추천 및 방송·신문매체에 기업 홍보
- 중기부의 금융,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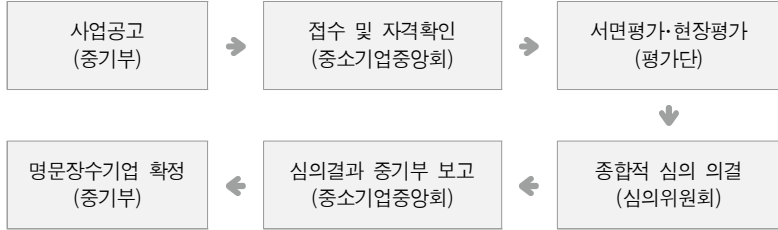
- 연중 (개별 사업별로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처리절차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 02-2124-3145~7
- 관련 홈페이지 : www.succes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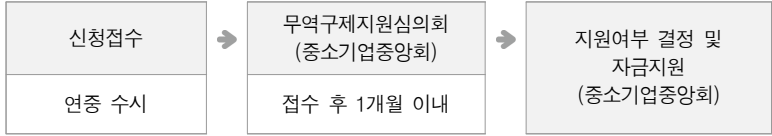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최대 5,000만원 한도

외국의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 |
|--------------|---|
| 지원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한도 내 |
| 지원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 지원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한도 내 |
| 신청·접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수시 |
| 제출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 계좌통장사본 1부 ● 대리인 수입비용지출 증명서류(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원규모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 02-2124-3161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044-203-5852

용어설명

무역구제제도란? : 불공정무역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수입, 특정외국 물품의 수입 급증 등에 대응하여 관세부과, 수량제한 등으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무역구제 유형(부과요건)

- 덤핑방지관세제도 :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계관세제도 : 외국정부의 직·간접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세이프가드제도 : 외국물품의 수입급증에 따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발생 또는 우려의 경우
- 불공정무역행위 :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위반 및 기타 건전한 수출입질서 저해로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2-5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최대 1,500만원 한도

코로나19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목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상사분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한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대리인 선임비용의 최대 50% (최대 1,500만원 한도)
 - 법무부 훈련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
 - * (대리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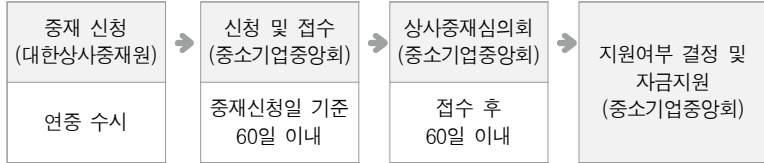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 (접수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 (07242)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 비용지출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코로나19 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개인)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
-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 중소기업확인서
- 계좌통장 사본

처리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 02-2124-3161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협력팀 : 02-551-2029

Q&A

Q. 신청 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 A. 귀 사(조합)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 기업과의 거래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상대기업과의 계약서 상 중재조항이 있거나, 별도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대리인(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선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50%(최대 1,500만원 한도)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원해주는 것이며,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중앙회에 관련 서류를 준비 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중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①중재합의(분쟁 당사자 간 계약서에 중재조항 또는 별도의 중재합의), ②중재신청(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서 제출, 중재비용예납, 사무국 중재 절차 개시), ③중재판정부 구성(중재합의 또는 신청금액에 따라 1인 또는 3인의 중재판정부를 해당분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④중재심리(중재인이 당사자 주장 청취, 필요시 감정·증거조사), ⑤중재판정

용어설명

중재제도란? :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2-6

수출컨소시엄 사업

품목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동일·유사 중소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구성,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체결까지 사전, 사후관리 현장밀착 지원을 통한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주관단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및 수출유관기관 등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경우
-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 휴·폐업중인 경우

지원내용

- 사업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일부지원
- 지원비율 : 사업단계별 공통비용의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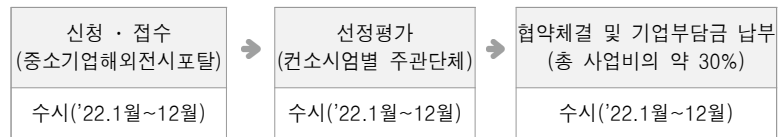
- 신청·접수**
- (온라인)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www.smes.go.kr/sme-expo/)을 통한 신청
 - 주관단체: 로그인 후 메뉴 중 “사업신청→주관단체 사업모집”
 - 참여기업: 로그인 후 메뉴 중 “사업신청→수출컨소시엄(전시회)/(상담회)”
 - (오프라인) 사업모집공고 신청 서식 및 관련 붙임서류 우편 제출
 - 주관단체: 중소기업중앙회로 제출
 - 참여기업: 각 세부사업의 주관단체로 제출

- 제출서류**
- (주관단체)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영계획서 등 (공고 참조)
 - (참여기업)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 실적 등 각 주관단체별 요구 자료

- 처리절차**
- 전체일정



- 참여기업



- 지원규모**
- 약 100개 컨소시엄 내외, 141.12 억원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 02-2124-3291~6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 (www.smes.go.kr/sme-expo.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제품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운영합니다.

지원대상

목적	제도의 종류
중소기업 수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간 과당경쟁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 직접생산 확인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 ▶ 중소기업제품 성능보험 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운영('22~'24년 적용)
 -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입찰정보, 구매담당부서 등 정보제공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해당제품 생산정보, 신용평가 등 재무정보, 기술 및 품질인증 정보 등 제공
-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국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 / 유효기간 : 2년
- 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운영
 - 中소간 경쟁제품 계약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아 수의계약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운영
 - 협동조합이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 공공구매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홍보 및 교육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지원제도 운영현황 및 구매실태 조사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정책부 : 02-2124-3241~3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공동사업이란?**(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 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2-8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언론매체 및 뉴미디어 활용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개선

국민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도를 우호적으로 개선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부정적 편견을 해소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대국민 중소기업 이미지 제고
- 추진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중소기업중앙회업무) 제1항 제23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인식개선사업
- 사업내용**
- 중소기업 편견 해소 및 인식도 제고
 - ① 중소기업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운영
 - (유튜브)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홍보
 - (인스타그램) '19.6. 신설, 총 게시물 108개, 팔로워 2,801명(21.12.3. 기준)
 - (블로그) 누적 방문자 678만명 달하는 파워블로그, 연간 콘텐츠 300여개 지속제작 중
 - ②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 전국민 대상 중소기업 관련 동영상, 포스터, 수필, 지도자보고서 부문 콘텐츠 접수 및 수상
 - 서울경제신문 공동 행복한중기경영대상 시상
 - 법인/개인 부문 연간 우수 중소기업 포상(고용안정·창출, 성장성, 복리후생, 연구개발 등)
 - 중소기업 이미지 개선실태 조사 및 언론 모니터링
 - TV·신문 등 언론에 비친 중소기업 이미지 실태 연구 통한 정책방향 제언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부 : 02-2124-4014

2-9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 사업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일자리정보 통합제공

청년친화적 일자리 특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찾고, 널리 홍보하여 청년-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민관 일자리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DB를 구축하고, 지역별 우수 중소기업 현황과 다양한 중소기업 일자리정보를 직관적 제공하여 중소기업 우수인력 유입 촉진

사업내용

- 정부·지자체에서 인정받은 괜찮은 중소기업 3만개 발굴
 - 재무성과, 신용등급, 영업이익, 낮은 퇴사율, 종사자수 10인 이상 등 기준
- 위치 기반 지역별 우수 중소기업 소개와 채용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 주변에 있는 우수기업 지도상 확인, 지역·업종·복지 등 중소기업 맞춤형 검색 가능
- 중소기업 일자리정보 DB 구축 및 제공
 - 인증내역·재직자 평가/리뷰·임금·복지·재무·채용공고 등
 - 정보제공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통한 일자리정보 상시 업데이트
- 우수 중소기업 채용공고 선별 및 일자리 매칭지원
 - “신입/정규직/연봉 2,700만원 이상”의 우수공고 전용채용관 구축
 - 타 기관 플랫폼과의 연계 통한 일자리 알선, 인재 추천 등 매칭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부 : 02-2124-4011

2-10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 제조업종 외 농축산업은 농협중앙회, 어업은 수협중앙회, 건설업은 건설협회를 통해 지원

지원내용

- 각종 행정 신청대행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 근로계약 체결 지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등
 - 고용변동신고 및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안내
 - 업무상 재해 시 산재·사망신고 지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 취업교육
 - 산업안전, 이탈방지, 기초기능, 한국문화 등 취업교육
 - 건강검진 및 마약검사
- 고충상담 및 편의제공
 - 통·번역 지원 (사업장 방문 및 유선 통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본부) 및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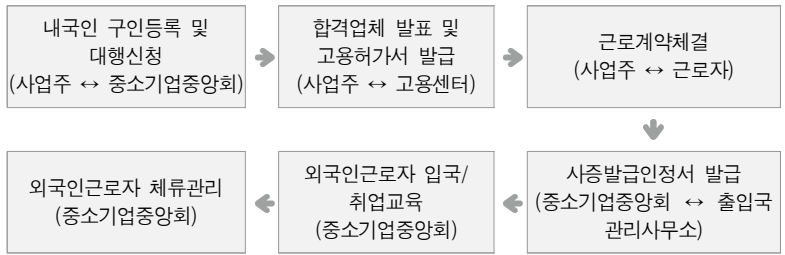
-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고용인원 등 4가지 기본항목 점수(100점) 및 가점 항목과 감점항목에 따른 점수제 운영으로 업체를 평가하여 지원대상 업체 선정

-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등 7가지 요건에 의한 가점항목 부여
- 출국만기보험 체납 등 8가지 요건에 의한 감점항목 부여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 기숙사를 사업장 건물 등으로 제공할 경우 건축물대장(용도: 기숙사) 추가 제출
 - 기숙사를 가설건축물로 제공할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추가 제출
-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사진(사업장 전경, 근무장소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습)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전경, 침실 내부, 화장실 내부, 세면실 내부 등)
 - * 신청서식 : 중소기업중앙회(<http://fes.kbiz.or.kr/> → FAQ)
 - '외국인근로자 활용과 관련한 서류양식은 어디 있나요?' 클릭)

처리절차



지원규모

- 2021년도 제조업 지원 규모는 28,966명

구 분	배정인원	비 고
신규 외국인근로자	18,666명[=16,710명+ α(1,956명)]	2, 4, 9월 신청
재입국특례자	10,300명	수시접수
합 계	28,966명	

*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외국인근로자 규모 10,690명 축소(당초 28,966명 → 18,666명)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 : 02-2124-3281, 3284, 4390~3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http://fes.kbiz.or.kr/>)

Q&A

Q.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3년 동안 고용하고 추가로 1년 10개월 동안 고용할 수 있으며 재입국 특례자(舊 성실근로자)도입 등으로 최대 9년 8개월 고용이 가능합니다.

Q.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국가는 몇 개국이나 되나요?

A. 아시아 16개 국가의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입니다.

Q. 외국인근로자 고용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A. 내국인 고용 규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이 상이하하며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가능 총 인원	신규 고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가능 총 인원	신규 고용인원
1인 이상 5인 이하	5인 이하	3명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5명
6인 이상 10인 이하	7인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11인 이상 30인 이하	10인 이하	4명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6명
31인 이상 50인 이하	12인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하	
			301인 이상	40인 이하	

〈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인원 상향 조건 〉

조건	구 분	상향 정도
인력부족 업종	(10)식료품 제조업	·고용 총 한도 20% 상향
	(13)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뿌리산업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뿌리기업확인서를 발급한 사업장 *Tel) 02-2183-1647	·고용 총 한도 20% 상향 ·신규 한도 1인 상향
특정지역	지방소재 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군 지역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벽지에 해당하는 지역 등	·고용 총 한도 20% 상향
노동시간 단축확인 사업장	내국인 피보험자수가 5명 이상 49명 이하인 사업장	·고용 총 한도 20% 상향 ·신규 한도 30% 상향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50명 이상 299명 이하인 사업장	·고용 총 한도 20% 상향 ·3개월 전 대비 내국인 추가 인원만큼 신규 한도 상향

* 최대 3가지 조건 중첩가능

용어설명

재입국특례자 제도(舊 성실외국인근로자) : 중소기업의 숙련외국인근로자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이 없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류기간 외에 추가로 4년 10개월의 취업기간을 재부여하는 제도

방문취업제(H-2) : 중국, 구소련 국적의 무연고 동포에게도 국내 취업을 허용하고 취업업종을 확대하며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

2-1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제도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마련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업종분류에 따른 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 전기·가스·수도사업 	매출액 12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농업·임업 및 어업, 금융·보험업 	매출액 8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도·소매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매출액 3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업종분류에 따른 소상공인 범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가입제한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 주점업, 무도장·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 * 사업자등록증 기준

지원내용

- 폐업, 사망, 퇴임, 노령시 공제금 지급(연복리 이자율 적용)
 - 폐업, 사망, 질병·부상에 의한 법인대표 퇴임시 가입기간에 관계없음
 - 노령사유 발생 시(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만 60세 이상) 공제금 신청하면 지급

● 수급권의 보호

-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부도 등 사업 실패시에도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금 지급

●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가입자의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
- 공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실효세율 약 3%내외)로 저율과세

〈 소득금액별 소득공제 한도액 〉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이하	300만원	4천만원~5,675만원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총급여 7천만원의 근로소득금액(5,675만원) =7천만원(총급여)-1,325만원(근로소득공제)	

*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공제대상인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소득은 제외되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

〈 노란우산 가입에 따른 절세효과 예시 〉

과세표준	세율(%)	노란우산 절세가능액
12백만원 이하	6.6	500만원×6.6%= 330,000원
12백만원 ~ 46백만원 이하	16.5	500만원×16.5%= 825,000원
46백만원 ~ 88백만원 이하	26.4	300만원×26.4%= 792,000원
88백만원 ~ 1억 5천만원	38.5	300만원×38.5%= 1,155,000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41.8	200만원×41.8%= 836,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4.0	200만원×44.0%= 880,000원
5억원 초과	46.2	200만원×46.2%= 924,000원

* 과표구간별 최대 소득공제 한도 적용 가정,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관련 세법개정시 변경 가능

● 상해보험 가입 지원

- 공제 가입 후 2년 내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 발생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 이내 보험금 지급

● 납부 부금 내 대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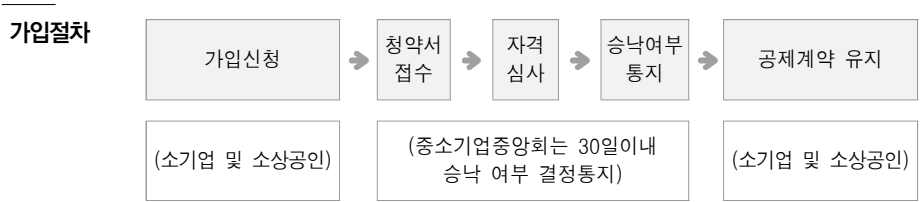
- 일반대출, 의료대출(무이자), 재해대출(무이자)

- 희망(가입)장려금 지원
 - 지자체별 월 1~5만원 적립 지원(1년간)
- 교육지원 및 심리상담
 - 사업유지(힐링, 경제캠프)교육, 재기지원(폐업 및 전직)교육, 심리상담 지원
- 경영지원단 운영
 - 법률·노무·회계 등 8개분야 전문가 상담을 통한 경영지원
-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
 - 휴양시설, 복지물, 문화공연, 건강검진, 장례식장 및 웨딩홀 등 전문업체 제휴할인 서비스

가입기간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월부금 월 5만원 ~ 100만원(분기납 300만원까지 가능)

가입방법 ● 청약서를 제출하여 청약금(1회차 부금)을 납입
 * 자동이체 지정예금계좌는 청약자 본인 개인명의로 한함



- * 계약의 승낙 : 중앙회는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 접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 결정
- * 계약의 철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순한 변심 등으로 인해 청약철회 가능
- * 계약의 취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을 경우 등으로 인해 계약취소가 가능

가입서류 ● 노란우산 가입청약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전 3년간 매출액 확인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문의처**
- 노란우산 콜센터 : 1666-9988
 -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 노란우산 스마트앱(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노란우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12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제도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보증서 발급비용 경감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납품시 필요한 보증보험을 민영보증보험사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영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교육청 학교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요기관 일체)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시 제출하는 '보증서'를 담보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

보증 종류	보증 내용
입찰보증	입찰참여자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계약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선금금보증	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금(선금금, 중도금, 착수금)의 반환의무를 보증
하자보증	계약완료 후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이행지급보증	기타 공공조달계약 관련한 제반 의무이행과 관련된 보증

〈 공공기관과 조달계약 체계 〉



-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손해운영부, 한도거래약정체결 후 중소기업보증공제 홈페이지(www.gbiz.or.kr)를 통해 청약 신청(www.gbiz.or.kr)를 통해 약정 및 청약 신청인터넷 이용 가능

- 제출서류**
- 한도거래보증약정서(본회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자세한 신청서류는 홈페이지(www.gbiz.or.kr)에 게재된 보증안내-구비서류 참조

처리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보증손해운영부 : Tel. 02-2124-4341~2 Fax. 0502-397-0000
 - 홈페이지 : 중소기업보증공제(www.gbiz.or.kr)

Q&A

Q. 업체별 보증한도(보증가능금액) 산정 방법?

- A. 업체의 보증한도는 계약자의 기업규모, 영업 활동성 및 신용등급에 의하여 산출하는 기본보증한도와 부금 납부액에 의한 부금보증한도로 구성됩니다.
- 기본보증한도 : 보증계약자인 기업의 매출액 및 자기자본 규모액과 신용 등급을 감안하여 산정
 - 부금보증한도 : 기업이 보증부금을 납입한 경우 부금잔액의 일정배수를 추가로 한도 인정
→ 보증한도 및 보증료는 중앙회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3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제도

단체보험 할인 혜택으로 중소기업의 비용 경감

기업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PL보험을 일반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영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완성품 제조업체, 원재료·부품 제조업체, OEM업체, 수출입업체, 유통 판매업체, 제품이나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 등
 - PL대상 제조물 : 모든 형태의 공업생산물, 농수축산 가공식품 (부동산은 제외, 단 부동산을 구성하는 부속품은 가입대상임)
- 지원내용**
- 일반보험사 대비 2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상서비스 제공
 - 공동구매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괄 단체가입
 - 서울, 부산, 광주,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지역 '중소기업 PL보험료 지원'
 - 보험료의 최대 20~30% 이내 환급(업체당 최대 100~200만원), 예산소진시까지
 - 중소기업 PL리스크 예방 대책 지원
 - PL리스크 관리방안 설명회 개최, PL사고사례집 배포 등
-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홈페이지(www.plkorea.com)를 통해 산출질문서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 PL단체보험 산출질문서, 매출액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자세한 신청서류는 홈페이지(www.plkorea.com)PL자료실)PL단체보험 산출질문서) 참조

처리절차



* 참여보험사(6개사) : 삼성화재(주간사), 한화손보, 롯데손보, DB손보,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손해운영부 : Tel. 02-2124-4351~4,
Fax. 0502-397-0200, 이메일 : PL@kbiz.or.kr
- 홈페이지 : 중소기업 PL단체보험(www.plkorea.com)

Q&A

Q. PL보험료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 A. 가입대상 품목, 매출액, 보상한도, 공제금액(자기부담금), 담보지역, 사고 경력, 인증마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가입품목 : 여러 가지 생산품목 중 선택적(전체품목/일부품목)으로 가입
 - 보상한도 : 예상 사고피해의 크기, 발생빈도, 수출국가 등을 고려
 - 인증마크 할인 : 싱글PPM, Q마크, K마크, S마크, 조달청 우수제품 등
→ 산출질문서 작성 시 어렵거나 궁금한 사항은 중앙회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2-14

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제도

기업 경영상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보장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

중소기업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화재, 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도록 공제(共濟) 서비스를 일반보험사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경영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장, 판매장, 사무실, 창고 시설장치 등
 - 시설소유자, 임차자 등 배상책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개인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지원내용

구 분	보장내용
화재공제	공장 및 일반물건 등에 대한 화재위험 보장
기업종합공제	하나의 공제증권으로 화재손해 뿐만 아니라 기계, 기업휴지 및 배상책임손해 등을 담보함으로써 기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통합 보장
재산종합공제	화재와 같은 개별 위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재물손해, 기계적 손해 및 조업중단 등 사업장내 모든 위험 보장
영업배상책임공제	영업상 발생한 제3자의 신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상 (대상 : 시설소유(관리)자, 도급업자, 주차장, 임차자 등)
근로자재해공제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산재보상금이나 선원법상의 보상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초과한 손해를 보상
소상공인 간편실손 화재공제	사업장 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시설 및 음식물 배상책임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가입한도 내에서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 보상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지진·태풍·홍수·호우·강풍·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실손비용을 보장

- 일반보험사 대비 2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상서비스 제공
 - 공동구매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괄 단체가입
- 사고다발 위험업종의 보험 인수 확대
 - 도금, 비발포 플라스틱, 목재가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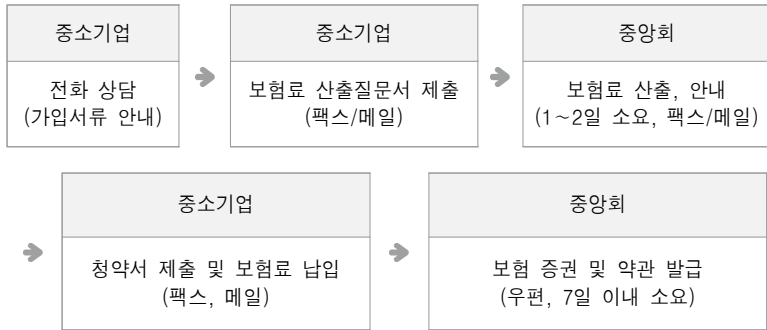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파란우산 손해공제 홈페이지(www.insbiz.or.kr)를 통해 설문서 받아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제출서류

- 공제상품별 설문서, 건축물 대장 등
 - * 자세한 신청서류는 홈페이지(www.insbiz.or.kr)자료실/설문서) 참조

처리절차



* 참여보험사(6개사) : 삼성화재(주간사), 한화손보, 롯데손보, DB손보, 메리츠화재, KB손보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Tel. 02-2124-4357~8,
Fax. 0502-397-0050, 이메일 : insbiz@kbiz.or.kr
- 홈페이지 : 중소기업 파란우산 손해공제(www.insbiz.or.kr)

2-15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

구매자금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는 대출보증 상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금 고민없이 원부자재를 구매'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지역신보재단)이 보증서를 우대 발급하여 중소기업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B2B대출보증

지원대상

- 원부자재 구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단, 신용보증기관의 신용평가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만 활용이 가능한 제도

지원내용

-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원부자재를 현금부담없이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 * 지역신보재단 : 경기인천대구부산경남충남제주
 - 전용보증 차별성
 - 5년간 보증발급 수수료 0.5%p 인하
 - 금융기관 할인수수료(대출금리) 최대 2.0%p 인하
 - 업체별 보증한도(대출액의 최대 1/2), 신용평가, 보증비율(95%) 등 우대 적용
 - * (참고) 국내 구매만 이용 가능(해외구매는 사용 안됨)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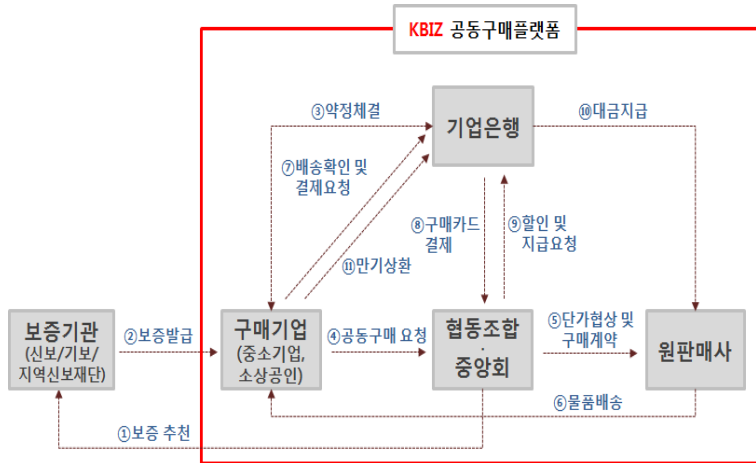
- kbiz.e-sang.net > 제도안내둘러보기 > 1:1상담신청하기 > 보증상담신청서 작성 후 저장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 된 보증상담신청서 검토 후 업체에 개별 안내

처리절차

- 참여신청(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협동조합) ⇒ 참여기업 추천(중소기업중앙회→신용보증기관) ⇒ 참여기업 보증심사 및 발급 ⇒ 기업은행 약정 ⇒ 원·부자재 구매 ⇒ 기업은행을 통한 대금결제 ⇒ 결제일에 기업은행 상환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부 : Tel. 02-2124-3221
Fax. 02-780-9785, 이메일 : youn0202@kbiz.or.kr
- 홈페이지 : KBIZ공동구매플랫폼(kbiz.e-sang.net)

2-16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삼성전자)

대기업의 제조 노하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한 대기업의 제조 노하우 전수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체질개선 및 기반강화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 사업신청은 공장별(사업자등록번호)로 가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 우대사항 : 위기관리지역기업, 장애인기업, 뿌리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도입기업)동일 사업기간내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 기신청한 기업
- ▶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이후에도 임의취소 가능 하며, 사업 취소시에 사업비는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내용

-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유형		지원대상	기업당 지원금액	비고
유형1	A	스마트공장 구축목표 중간1 수준 이상	최대 1억원	정부·대기업 : 참여기업 6 : 4 매칭
	B	스마트공장 구축목표 기초 수준 이상	최대 6천만원	
유형2	C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소기업 대상 지원	최대 2천만원	정부·대기업 100% 지원

* 기업당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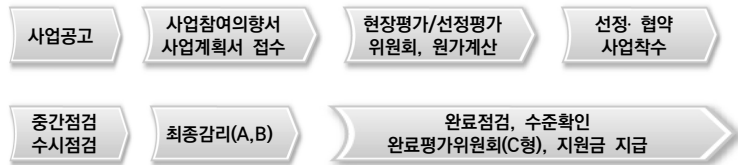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기간) 사업공고기간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https://kbiz.or.kr>)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증견·중소기업 확인서, 우대사항 증명서류 등
- * 사업계획서 접수 전 사업의향서 제출

처리절차



지원규모

- 200억원(정부 100억, 삼성전자 100억)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홈페이지(<https://kbiz.or.kr>)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02-2124-3392, 4373, 4314)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1:1 문의)

Q&A

Q. 중앙회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A. 중앙회 대중소 상생형 사업은 대기업의 협력기업 뿐 만 아니라 비협력기업 까지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3정5S, QSS 등과 같은 제조현장 혁신 활동, 판로지원,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을 통해 그동안 쌓아 온 대기업의 노하우를 중소기업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특징

Q. 공급기업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A. 도입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공급기업 선택에 대한 책임은 도입기업에게 있음). 단, 사업 진행중에 공급기업 변경은 사업 재참여와 동일하므로 처음 사업신청부터 다시하여야 함.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 공급기업 매칭플랫폼’ 활용 가능

2-17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포스코)

대기업의 제조 노하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한 대기업의 제조 노하우 전수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체질개선 및 기반강화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 사업신청은 공장별(사업자등록번호)로 가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 우대사항 :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기업
- ▶ (도입기업)동일 사업기간내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 기 신청한 기업
- ▶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이후에도 임의취소 가능 하며, 사업 취소시에 사업비는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내용

-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유형		지원대상	기업당 지원금액	비고
유형1	A	스마트공장 구축 후 시스템 고도화 기업	최대 1.8억원	정부·대기업 : 참여기업 6 : 4 매칭
	B	스마트공장 구축목표 기초 수준 이상	최대 1.2억원	
유형2	C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최대 2천만원	정부·대기업 100% 지원

* 기업당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신청기간) 사업공고기간
 - (접수방법)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https://kbiz.or.kr>)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유효기간 이내), 사업자 등록 증명원, 증견·중소기업 확인서 등
 - * 사업계획서 접수 전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제출



- 지원규모**
- 30억원(정부 15억, 포스코 15억)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홈페이지(<https://kbiz.or.kr>)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02-2124-4313, 4371)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1:1 문의)

Q&A

Q. 중앙회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A. 중앙회 대중소 상생형 사업은 대기업의 협력기업 뿐 만 아니라 비협력기업 까지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3정5S, QSS 등과 같은 제조현장 혁신 활동, 판로지원,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을 통해 그동안 쌓아 온 대기업의 노하우를 중소기업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특징

Q. 공급기업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A. 도입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공급기업 선택에 대한 책임은 도입기업에게 있음). 단, 사업 진행중에 공급기업 변경은 사업 재참여와 동일하므로 처음 사업신청부터 다시하여야 함.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 공급기업 매칭플랫폼' 활용 가능

2-18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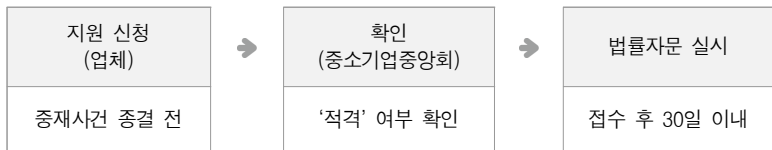
법률자문 2시간

중소기업이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는 국제중재사건의 경우, 정보력·행정력 미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을 통한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 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사건 종결 전까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상사중재를 신청한 중소기업 등이 국제중재 사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국제중재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2시간 기준)

- 신청·접수**
-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사건 종결 전까지
 - (제출서류)
 - 법률자문 지원신청서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처리절차)



- (접수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07242)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 02-2124-3161

2-19

중소기업 승계 세무 자문 프로그램

중소기업 승계 지원

중소기업 승계 지원제도(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세무사 등과 기업을 매칭하여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승계를 진행(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상담 및 자문내용 : 무료
 -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설명
 -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기본요건 충족여부 및 세액 추정 등
- 상담방식
 - 온라인 : 매칭 후 3일 이내 답변
 - 전 화 : 매칭 후 3일 이내 답변
 - 대 면 : 기업이 자문위원 사무실(또는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 방문하여 상담
- 현장자문
 - 매칭 후 7일 이내 자문위원이 기업 현장 방문(1일 원칙)하여 자문
 - * 필요시 2일 연장 가능

신청·접수

- 온라인 또는 전화
 - 온라인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접속 → 상담센터 → 중소기업 승계자문에서 신청
 - 전화 : 기업 기본정보 및 자문요청 내용 확인, 세무사 매칭
(☎ 02-2124-3146~7)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 02-2124-3146~7)

2-20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자금지원 공통사항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용자대상 및 절차, 용자제한기업, 용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다음의 중점지원분야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 중점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용자제의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 용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실전창업교육 및 자율특화프로그램)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및 일반인
- 창업아이템 사업화
 - 시제품 개발, 지적권 출원·등록, 마케팅활동 등 창업사업화에 소요 되는 자금을 지원(업체당 최대 1억원, 850개사 내외)
 - * 후속지원 : 창업아이템사업화에 참여한 기업 중 우수 창업자를 대상으로 성능개선, 홍보·마케팅 등 사업 고도화 자금지원(업체당 최대 3천만원, 200개사 내외)
- 실전창업교육 및 자율특화프로그램
 - 대학생 및 일반인 실전창업교육, 창업한마당축제, 지역창업 경진 대회, 투자유치 연계 등 대학별 자율특화프로그램 운영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창업선도대학 추가 선정('19.2월 선정 예정)

신청·접수 ● 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문의처

구분	내 용
사업 전환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 기업당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5년 포함 ※ 무역조정자금 - 2%고정금리
구조 개선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5년, 거치 2년 포함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 2%고정금리, 운전(5년, 거치 2년포함) 및 시설자금 (10년, 거치 4년 포함) 지원
재창업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4년 포함

Q&A

Q. 창업아이템사업화 사업신청 시 거주지역 이외의 창업선도대학을 선택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K-Startup(www.k-startup.go.kr)에 등록된 창업선도 대학 소개 자료를 확인하시어 본인이 희망하는 창업선도대학을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창업아이템사업화 사업신청은 대학생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창업아이템사업화는 나이, 학력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용자잔액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2-21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운영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중앙회가 위탁기업과 조정협의 진행

공급원가(원재료비, 노무비, 경비등) 상승시 영세한 수탁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모든 수·위탁기업간 거래관계에 적용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음

- 청기업 : 협동조합 가입 수탁기업
- 협의대상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 신청요건 : 아래 ①, ②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
 - ① 기본요건 : 모두 해당해야 함
 - 수위탁거래를 체결한 수탁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
 - 위탁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 이상
 - ② 공급원가 신청요건 :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특정 재료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원재료 가격이 10%이상 상승
 - 재료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 노무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 경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최저임금 인상율이 3년 평균 이상

중앙회(협동조합)를 경유하지 않고,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협의 진행 시 별도 요건 및 절차 불필요

지원이 안되는 경우

-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동시에 가입해 있을 경우
- ▶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소기업일 경우

지원내용

- 납품대금(공급원가) 상승분에 대해 수탁기업을 대신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를 진행
 - 위탁기업과 협의가 결렬되면, 분쟁조정 절차로 진행
- 진행 협의절차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내로 서류검토
 - 그 후 위탁기업과 30일내 협의. 다만 위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단축



※ 합의 불성립시, 분쟁조정 신청(수탁, 위탁기업/조합/중앙회→중기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2021.4.21.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 가능

신청·접수

- 「각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 (신청기간 없음)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센터
- ☎ 02-2124~3207~3209. 홈페이지/상담센터/ 납품대금조정협의

Q&A

Q. 신청요건을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A. 중소기업매뉴얼(홈페이지/상담센터/납품대금조정협의/알림마당)에 신청요건과 방법이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Q. 위탁기업이 조정협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위탁기업은 조정협의를 성실하게 임할 법적의무가 있고, 만약 위탁기업이 조정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 5천만원 이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수탁·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위탁기업")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이하 "수탁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2-22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혁신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에 빅데이터, 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 도모

지원대상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기업(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 장비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 유흥·향락업, 주점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단, ①과제 신청을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지원내용 ●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혁신 등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 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

- 솔루션 구축비용 일부(50% 이내, 최대 6천만원) 지원 사전진단·컨설팅 지원(선착순 지원)

〈 스마트서비스 유형 (예시) 〉

분야	세부 분야(예시)	기대 효과
온라인경제	①온라인 신선식품(마켓컬리), ②온라인(원격) 헬스·의료, ③온라인 교육, ④온라인 지식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공공문제	⑤사회문제해결(코로나 맵 등), ⑥업종공통 플랫폼(협업 솔루션)	신규 BM 창출
기업혁신	⑦로봇자동화(RPA, 단순반복업무자동화), ⑧물류관리(WMS), ⑨고객관리(CRM), ⑩Business Intelligence(의사결정 등 지원), ⑪챗봇(대화형 메신저), ⑫비대면스마트워크(원격근무 등)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신청·접수

- (신청기간) 사업공고기간
- (접수방법)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https://kbiz.or.kr>)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서비스) → 공지사항 참조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www.smb-service.kr) 사업신청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공급기업 투입인력 경력 증빙서류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사업 및 지원규모는 당해연도 정책에 따라 변경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홈페이지(<https://kbiz.or.kr>)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02-2124-4312, 4313)

Q&A

Q. 비제조 분야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지원이면, 제조업은 참여가 불가능한가요?

A. 제조업도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비제조 분야 서비스관련 솔루션을 구축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예정된 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Q. 공급기업인데 외산 솔루션을 도입기업에 구축하여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산솔루션 도입을 먼저 검토해 주시고 국산솔루션이 없거나 도입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외산 솔루션에만 있는지 여부 등을 사업계획서에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현장조사 및 평가위원 검토 대상)

Q. 자체 솔루션 개발·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도 공급기업 풀에 등록하여야 하나요?

A. 네, 공급기업 풀에 등록해야 합니다.(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계정으로 각각 회원가입 후 기관 등록) 공급기업 회원가입 시 소속기관 정보의 기관구분은 반드시 '공급기업'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기업 풀 등록 서류를 준비하셔서 공급기업 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람, 도입기업으로 가입한 계정과 다른 계정으로 회원가입 하신 후 신청해야 함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3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Q&A



함께 알아보는 금융지원

Q.질의 8년째 동네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100m 이내에 미용실이 10개나 되다보니 단골손님까지 뺏기고 있는데요, 경쟁력 있는 점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A.답변 업종별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신메뉴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술교육'을 지원합니다.(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사업설명 참조)

Q.질의 치킨점을 운영하는데 처음 오픈했을 때와 달리 요즘에는 많이 힘이 듭니다. 만약 문을 닫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답변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100만원까지 납입하실 수 있고, 연 복리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공제제도 사업설명 참조)

Q.질의 인천 지역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해볼까 하는데 상권분석에 애로가 많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자주 가볼 수도 없는 형편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답변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에 접속하시면 전국 1167개 상권의 상세한 상권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쟁점포, 인구(유동인구 포함), 시설 등 상권분석에 필요한 19여개의 정보가 수록돼있고, 전자지도 형태로 제공돼 원하시는 지역의 상권을 편리하게 분석해보실 수 있습니다.(상권정보시스템 사업설명 참조)

Q.질의 장사를 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시설이 너무 낡아 방문객이 점점 줄어듭니다. 시설을 개선하고 싶지만 상인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답변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등에 주차장, 공동화장실,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케이드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10%이내에서 민간이 자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설명 참조)

3-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현장 체험 중심의 창업교육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기초·전문교육, 상품화 지원 및 점포경영체험교육, 실제 창업을 위한 사업화 지원금 까지 패키지로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유망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에서 확인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으로 창업하려는 자
 -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 사업 공고일부터 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교육 시작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업종불문)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 수료생(기수 불문)
-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세부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점포경영체험교육, 창업자금(융자), 사업화 지원(보조금) 등
 - 창업교육 : 창업에 필요한 기초·전문교육 및 제품·서비스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점검하는 업종별 분반 교육 등 지원
 - 점포경영체험교육 :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경영 체험(상품화 지원 교육프로그램 포함)
 - 창업자금 :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보조금 일부지원(심사를 통해 선발, 총 사업비의 50%이상 자부담조건)
 - * 세부 지원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접수

- 온라인접수, '22.1월, 6월 예정(연 2기수 운영)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를 통한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교육)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지역별 교육대상자 선발(15개 지역, 기수 당 250명 내외)
 - * 아이디어의 참신성, 창업 의지, 사업계획의 구체성, 전문성, 유사경력 등 창업준비도 및 평가

사관학교	연락처	장소
서울/강원	☎ 02-717-9690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부산/울산/경남	☎ 051-463-0212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대구/경북	☎ 053-353-7667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광주/전남/전북/제주	☎ 062-367-0135	광주 서구 천변차로 268, KDB생명빌딩 24층
경기/인천	☎ 031-204-3014	경기 수원 영통구 반달로 87, 4층
대전/충북	☎ 042-363-7494	대전 서구 대덕대로 227, 동서빌딩 6층

- (창업자금)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지원여부 심사
 - * 사업화 보조금의 경우, 교육이수율, 창업자 역량, 창업준비현황 및 노력도, 성공가능성 등을 심사
 - * 세부 심사기준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시스템 직접입력)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구비 후 제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개인신용평가 확인서(선택) 등

처리절차

구분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선정결과 통보	⇨ 창업교육	⇨ 점포경영체험 (상품화지원)	⇨ 사업화지원
15기	'22.1월중 ~'22.2월중	'22.2월말	'22.3월초 ~4월초	'22.4월말 ~8월말	'22.9월초 ~12월말
16기	'22.5월중 ~'22.6월말	'22.7월초	'22.7월중 ~8월말	'22.9월초 ~12월말	'23.1월초 ~'23.4월말

* 세부 일정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지원규모

- 600명 내외(예산 197.5억원)

* '21년 지원현황 : 417명(예산 189.5억원)

문의처

- 신사업창업사관학교(newbiz.sbiz.or.kr) ☎ 135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54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Q&A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유망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입학 시 부담금이 있나요?

A. 네, 교육 수수료 후 사업화 지원(보조금)을 받을 경우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50%)

3-2

상권정보시스템

창업의 성공파트너 상권정보시스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역·업종별로 상권·입지·경쟁·수익정보 등 상권정보를 제공하여 준비된 창업 유도 및 경영안정 도모

지원대상 ● 전국민(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 (상권분석) 선택한 지역에서 관심 업종의 평균 매출액, 유동인구 등 관련 정보 제공

* 제공업종은 대분류 8종, 세세분류 477개

업종	선택상권·행정구역별 선택업종 업소 추이, 업종 생애주기, 업력현황 등
매출	선택업종 평균매출 및 이용건수 추이, 주중·요일별·시간대별·성별·연령대별 매출 비율 등
인구	선택영역 성별·연령별 주거/직장인구, 성별·연령별·시간대별·요일별·월별 유동인구 추이, 직업·직종 분포, 주거형태별 분포 등
지역	성별·연령별·행정동별·금액구간별 소득/소비, 주요시설 추이·현황, 학교시설, 교통시설

- (경쟁분석) 업소별 경쟁영역 내 거래건수를 기반으로 경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안전, 주의, 위험, 고위험 4단계 경고등 형태로 제공
- (입지분석) 특정 입지에 대한 45개 표본업종별 입지가치(예상매출액)의 평균을 종합하여 평가한 입지등급 정보 제공
- (수익분석) 특정 위치·업종의 추정매출액, 투자비 회수를 위한 목표 매출 및 고객수, 유사한 입지·업종의 매출현황의 비교분석 정보 제공

음식(21)	아이스크림판매, 제과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피자전문, 국수만두칼국수, 도시락전문, 떡볶이전문, 라면김밥분식, 죽전문점, 한식백반한정식, 해장국감자탕, 양식, 일식수산물, 중국음식, 간이주점, 갈비삼겹살, 곱창양구이전문, 족발보쌈전문, 호프맥주, 후라이드양념치킨
--------	---

소매(12)	건강식품, 슈퍼마켓, 편의점, 신발소매, 안경원, 일반의류, 캐주얼스포츠의류, 꽃집꽃배달, 화장품판매점, 사무문구용품, 인테리어욕실용품, 일반가구소매
서비스(12)	발네일케어, 비만피부관리, 여성미용실, 노래방, 모텔여관여인숙, 실내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어린이영어, 학원(음악미술체육), 학원(입시), 세탁소빨래방, 자동차정비

* 경쟁분석, 입지분석, 수익분석 제공업종 동일

- (경영컨설팅) 15개 업종에 대한 상권유형과 상권의 특징을 제시하고 해당 유형에서 매출 수준이 높은 점포의 운영방법 컨설팅 실시

음식(15)	한식/백반/한정식, 커피전문점/카페/다방, 갈비/삼겹살, 후라이드/양념치킨, 라면/김밥/분식 등 15개 업종
--------	--

- (점포이력) 특정 위치의 창업업종 및 영업기간 등 개·폐업 이력 정보 제공
- (업종추천) 7개 광역시의 전 업종에 대해 상권적합도(업종구성, 주요 고객 구성 등) 및 항목별(매출 성장성, 운영 안정성 등) 기준을 고려한 추천업종 제시
 - * 7개 광역시 :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인천, 대전
- (창업기상도) 7개 광역시의 5개 업종(커피, 치킨, 한식, 편의점, 미용실)에 대한 유동인구·매출액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창업 예측 정보 제공

'21년 서비스 개선 내역

- (업종 확대) 입지 관련 데이터를 통해 출점지 추정 매출 및 소비자 현황 등을 분석하여 '입지분석' 서비스에 매출예측 업종 확대(5개→15개)
 - * 제공업종: 한식/백반/한정식, 커피전문점/카페/다방, 편의점, 후라이드/양념치킨, 여성미용실, 등 15개 업종
- (분석서비스 강화) 선택 업종, 지역에 적합한 입지를 예측해 주는 신규 서비스 및 도보거리 등 변수를 활용하여 상권영역 자동 생성 서비스 제공
- (구독서비스 제공) 관심 지역 및 업종 선택 시 정기적으로 모바일에서 바로 확인 가능한 보고서 제공

이용방법

- (포털) 검색어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이용
- (인터넷)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g.sbiz.or.kr>) 회원가입 후 이용
- (모바일) 안드로이드마켓·앱스토어에서 ‘소상공인마당’ 앱 설치 후 이용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스템 헬프데스크 : 1644-5302

Q&A

Q.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되고 언제 갱신되나요?

A. 14개 국가·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19여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한 뒤 제공됩니다. 갱신주기는 데이터마다 편차가 있지만, 최소 일단위에서 최대 연단위로 갱신되며, 상세사항은 홈페이지 내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3-3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舊 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이버평생교육원)

소상공인의 전문능력 향상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무분별한 창업 방지 및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업종특화 및 업종공통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 휴·폐업 또는 공단 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지원내용

- 전문기술교육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개발, 최신 전문 기술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 지원(바우처 형식, 민간교육기관이 수행)
 - * 후속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까지(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 지원
- 경영개선교육
 -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한 업종별 기술교육, 중장년층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현장교육 등 실습형 교육지원(국비 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수행)
- 전용교육장교육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IT관련 스마트 교육 중점 지원(5개 전용교육장)
-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 지식배움터 :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소상공인 지식배움터, edu.sbiz.or.kr)의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한 업종별·수준별·대상별 매주 정기적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 지원
 - 지식나눔터 :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정보, 노하우, 지식을 누구나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eduopen.sbiz.or.kr) 지원

신청·접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 (edu.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 현장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교육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교육신청' 클릭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처리절차

- 전문기술교육



- 경영개선교육



지원규모

- 50,000명 내외(예산 107.59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21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edu.sbiz.or.kr)
- 소상공인 지식나눔터 홈페이지(eduopen.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 참조

Q&A

Q. 전문기술교육 교육비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교육기관이 등록한 교육과정 중 업종과 관련된 교육을 수료하신 후 교육비 신청을 해주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서류 검토 후 교육생 계좌로 교육비의 90%(50만원한도)를 지원해드립니다.

3-4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대상 경영컨설팅 지원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지원 바우처 제공으로 경영환경 개선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소지한 예비 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승소가액 3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필요에 따라 컨설팅 결과 이행을 위한 경영지원 바우처(브랜딩·디자인, 세무, 특허 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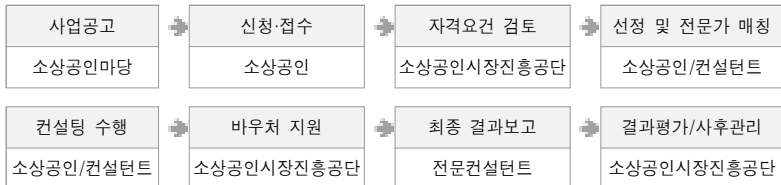
- 신청·접수**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소상공인 여부, 지원제외업종 등 확인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5,000개 업체 내외(예산 80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 042-363-7833~4
- 소상공인마당 : www.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컨설팅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5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소상공인 상거래 관련 무료법률지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등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21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승소가액 3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 * 예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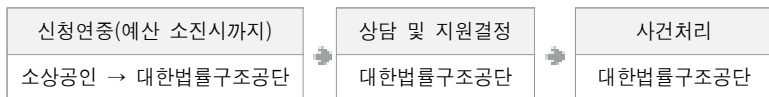
- 신청·접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여부,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여부 판단

-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연매출액 확인서류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500개 업체 내외(예산 1억원)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33~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중위소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 생계비를 대체한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은 상이합니다.
(예) 2인가구: 3,860,000원, 4인가구: 6,095,000원 <2021년 기준>

3-6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전체 조합원 중 50%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예비)협동조합, 연합회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완료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소상공인 정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름

신청요건

구 분	신청 요건(① 또는 ②)
(공통조건)	●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
준비단계	① (예비)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② 설립 6개월 미만
초기단계	① 설립 1~3년차
성장단계	① 설립 4~6년차이면서 조합원 10인 이상(연합회 포함) ② 설립 4~6년차이면서 전년대비 매출 또는 고용 10% 이상 증가
도약단계	① 설립 7년차 이상이면서 조합원 20인 이상 ② 설립 7년차 이상이면서 최근3년 이내 매출 또는 고용 20%이상 증가

지원내용

- 교육 : 교육, 상담, 인큐베이팅, 네트워킹, 사업화 자금지원 등 지원
- 공동사업(5억원 한도 내) : 공동장비, 브랜드·마케팅·R&D·시스템·네트워크 구축 등
- * 보조금 지원비율 : 정부(70~80%), 자부담(20~30%, 현금출자 원칙)
- 판로지원 : 온라인 플랫폼 입점, 라이브커머스 및 오프라인 박람회, 바이어 유통상담회 등 판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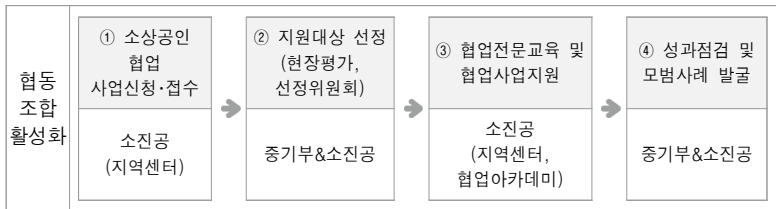
- 신청·접수**
-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홈페이지(<http://coop.semas.or.kr/>)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 별도 마감일까지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협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수익 또는 고용 창출, 조합규모화, 지역경제활성화 등), 협업성과 등
- (예비)협동조합의 지속성장 가능성, 비즈니스모델의 우수성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기타 선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처리절차



- 지원규모**
- 295개 조합(158억원)
 - * 공동사업(145개 내외), 판로사업(150개 내외)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11~4,7720~5),
 -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지원센터(국번없이 1588-530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Q&A

Q. 협동조합이란?

A.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Q. 협동조합 종류는?

A. 일반협동조합(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는데, 이중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에 해당되는 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임

3-7

경험형 스마트마켓

새로운 스마트 경험 제공하는 플래그십형 마켓 구축 지원

지역주민에게 365일 에코 쇼핑(심야시간 친환경 무인 쇼핑)과 새로운 스마트 경험을 제공하는 플래그십형 스마트마켓 구축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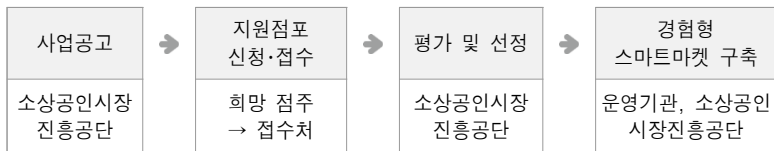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아래의 ①,②,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동네슈퍼, 동네상점 등)
 - ①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② POS기기 및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사용 중인 점포
 - ③ 소매업(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 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하는 상점)

- 지원내용**
-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체계구축, 브랜드디자인, IT환경구축, 마케팅 등 유망프랜차이즈 육성 지원
 - (창업단계) BM분석 및 체계구축, 브랜딩·디자인 구축 등 지원
 - (성장단계) 스마트 기술 도입, 모바일 접목, 마케팅·판로, BM 고도화 등 지원
 - (대표단계) 스마트화, DB구축, 규격/인증, 글로벌화 등 지원

- 신청·접수**
- 모집공고(홈페이지 등)를 통한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절차



- 지원규모**
- 지원예산 40억원 내외

- 문의처**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국번없이 1588-53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실 : (042) 363-7741~9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 204-7854, 7837

3-8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가맹점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가맹본부 지원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상생협력하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신메뉴 개발, 홍보, 브랜드 개발 등을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가맹점과 상생협력을 추진 중이거나 상생협력 모델 도입을 계획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동일한 브랜드로 동일사업에 중복 신청하는 업체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협동조합은 지원제외

- 지원내용**
-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체계구축, 브랜드디자인, IT환경구축, 마케팅 등 유망프랜차이즈 육성 지원
 - (창업단계) BM분석 및 체계구축, 브랜드·디자인 구축 등 지원
 - (성장단계) 스마트 기술 도입, 모바일 접목, 마케팅·판로, BM 고도화 등 지원
 - (대표단계) 스마트화, DB구축, 규격/인증, 글로벌화 등 지원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fc.sbiz.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업체 선정 : 상생협력 계획·실적, 아이템 및 성공가능성 등 사업 계획서 평가(서류 및 발표 평가)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직영점·가맹점 리스트 및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등본)사본, 최근 3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 15개 업체 내외(업체당 최대 5천만원 지원)

* '21년 지원현황 : 14개 프랜차이즈

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5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41, 7743, 774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3-9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역량 평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자율 신청에 따라 가맹본부의 역량을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성 요소 간의 관계 등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내용 ● 가맹본부·가맹점지원·계약·시스템·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등급	지원내용	비고
I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3년 연속 1등급 프랜차이즈 '명예의 전당' 입성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
II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심사·평가 주요내용

- 가맹본부·계약·가맹점지원·관계·시스템성과 등 5개 영역을 평가하여 4등급(I~IV)으로 등급화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fc.sbiz.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신청접수(평가비용 : 160만원)

제출서류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3개년 재무제표 1부 등
* 심사원 현장진단 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확인 가능

처리절차



지원규모 ● 업력 최소 1년 이상인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업종에 해당되는 가맹본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가맹사업 업력 1년 미만, 가맹점포 수 10개 미만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가맹 본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 대기업, 휴·폐업, 세금체납,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
- ▶ 정보공개서 미등록한 경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 044-204-785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41, 7743, 774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3-10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현장지원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해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집적지의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 별로 맞춤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지원내용 ● 교육, 컨설팅, 특화사업 등 지원

- (교육)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협업을 통한 공동개발, 집적지 홍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프로그램

자율사업 유형

-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신청·접수 ● 연중 신청·접수 (센터 별 사업 일정에 따라 모집 시기 상이)

* 센터별 사업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문의

제출서류 ● 소공인 확인서류, 사업신청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전국 34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예산 126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6, 792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현황('21년말 기준) 〉

	시·도	시·군·구	분 야	특화센터명	대표전화
1	서울	금천구(독산동)	의류봉제	서울독산의류봉제센터	070-4206-1773
2	서울	종로구(봉익동)	귀금속	서울봉익주얼리센터	02-741-8755
3	서울	성북구(장위동)	의류봉제	서울장위의류봉제센터	02-919-9623
4	서울	종로구(창신동)	의류봉제	서울창신의류제조센터	02-741-5365
5	서울	광진구(중곡동)	의류봉제	서울광진의류제조센터	02-467-8251
6	경기	포천시(가산면)	가구제조	포천가구제조센터	031-539-5093
7	경기	고양시(장항1동)	인쇄	고양장항인쇄센터	031-913-9403
8	경기	군포시(당정동)	금속가공	군포당정금속가공센터	031-454-4881
9	경기	부천시(신흥동)	전기장비	부천신흥전기장비센터	032-234-5910
10	경기	성남시(상대원동)	식품	성남상대원식품제조센터	031-750-2870
11	경기	시흥시(신천동)	기타기계·장비	시흥대야기타기계장비센터	070-4170-5973
12	경기	안양시(관양동)	전자부품	안양전자부품제조센터	031-8045-6711
13	경기	용인시(영덕동)	전자부품	용인영덕전자부품센터	031-8067-5041
14	경기	화성시(팔탄면)	기타기계·장비	화성향남기타기계장비센터	031-354-3641
15	경기	화성시(동탄면)	전자부품	동탄전자부품센터	031-377-4165
16	경기	시흥시(정왕동)	전기장비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070-7784-8802
17	인천	연수구(송도3동)	기타기계·장비	인천송도기타기계장비센터	032-723-9983
18	인천	동구(송림동)	기타기계·장비	인천송림기타기계장비센터	032-589-4011
19	충남	금산군(금산읍)	식품(인삼)	충남금산인삼센터	041-750-1621
20	충북	청주시(중앙동)	인쇄	청주중앙인쇄센터	043-299-1081
21	대전	대덕구(상서동)	금형제조	대전상서금속가공센터	042-939-4827
22	대전	대덕구(오정동)	기타기계·장비	대전오정기타기계장비센터	042-629-7728
23	대전	동구(정동)	인쇄	대전정동인쇄센터	042-226-5556
24	전남	무안군(청계면)	도자기제조	전남무안도자제조센터	061-450-6357

	시·도	시·군·구	분 야	특화센터명	대표전화
25	전북	순창군(순창읍)	식료품(장류)	전북순창장류제조센터	063-652-1034
26	전북	전주시(팔복동)	금속가공	전주팔복금속가공센터	063-219-0397
27	광주	동구(서남동)	인쇄	광주서남인쇄센터	062-236-5013
28	대구	중구(대봉동)	의류봉제	대구대봉의류봉제센터	053-783-3399
29	대구	중구(성내동)	귀금속	대구성내주얼리센터	053-219-4422
30	대구	북구(노원동)	안경제조	대구노원안경제조센터	053-350-7862
31	부산	동구(범일동)	의류제조	부산범일의류제조센터	051-631-7220
32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가죽, 가방, 신발	부산범천가죽가방신발센터	051-890-2128
33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귀금속	부산범천귀금속센터	051-636-7510
34	경남	김해시(진례면)	도자기제조	김해진례도자센터	070-4903-5545

3-11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소공인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지원내용 ● 소공인이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지원항목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 (30백만원, 80%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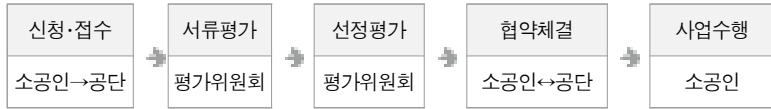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차비 등)
온라인마케팅	국내·외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지원 SNS, V-커머스,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비용 지원
오프라인 매장입점	국내·외 오프라인 매장(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전문매장) 입점비(판매수수료, 집기임차비 등) 지원
미디어콘텐츠 제작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 등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비용 지원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지원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소공인 확인서류, 개인정보동의서 등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처리절차



지원규모

- 218개사 내외(예산 76.5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3-12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소공인 스마트 기술 보급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공정에 IoT, 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소공인 작업장 스마트화 지원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화 지원사업 참여 중인 업체

지원내용

- 도입, 제품·기술 개발비용 지원(49백만원, 70% 한도)

〈세부지원내용〉

지원항목	주요내용
스마트 컨설팅	스마트 전문가 매칭(기술·공정·시장진단·사업화) 컨설팅 지원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시약·재료비, 시제품·시작품 등 제작경비
위탁개발비	개발과제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용역비 등

〈세부지원유형〉

지원유형	주요내용
①공정개선형	수작업 공정개선, 기초데이터 관리 등 H/W 중심의 스마트공방 구축
②생산관리형	자재 입고·생산·출고실적 집계, 생산관리 등 S/W 중심의 스마트공방 구축
③서비스복합형	고객 주문-생산-판매 과정을 자동연계 등 복합형 스마트공방 구축(B2C)
④제품기술혁신형	제품·기술 개발에 스마트기술 접목 등 제품·기술혁신 중심의 스마트공방 구축
⑤컨소시엄형	3개사 이상의 소공인이 데이터 등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스마트공방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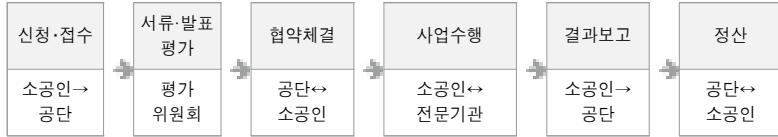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소공인 확인서류, 개인정보동의서 등
- *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고문 참고

처리절차



지원규모

- 1,000개사 내외(예산 490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3-13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집적지 혁신성장 기반의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동일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아래표 기준 이상 집적한 지역

〈행정구역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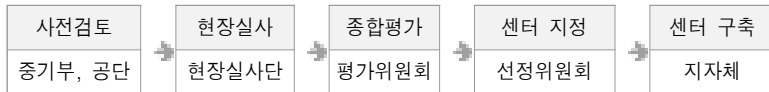
행 정 구 역	기 준
특별·광역시 內 읍·면·동	50인 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 內 읍·면·동	40인 이상(업체 수)
군 內 읍·면	20인 이상(업체 수)

- 지원내용**
- 소공인 집적지에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까지 일괄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비용의 50% 이내 지원(25억원 내외)

- 신청·접수**
- 모집 중(~'22.1.28),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 「지방자치법」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상세 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참고

처리절차



- 지원규모**
- 복합지원센터 구축 3개 내외(예산 75억원)
* '20년 지원현황 : 복합지원센터 구축 3개(예산 75억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3-14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화·오염물질 저감 등 작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 중소기업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 중인 업체(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 포함)

지원내용

- 작업장 개선 비용 지원(4.2백만원, 70% 한도)

지원항목	주요내용
에너지효율 개선	조명시설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누수, 가스누출, 장비 과부하 방지 등
생산성 향상	제품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장비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근로환경 개선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효율화 및 작업장 내 유해 물질 제거 등
안전 조치	재해 예방을 위한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등 안전조치 품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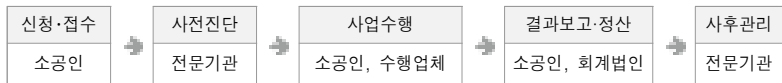
신청·접수

- 중소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 상세 내용은 신청 안내문 참고

처리절차



지원규모

- 2,000개사 내외(예산 84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9,790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h.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3-15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육성

성공CEO의 노하우 전수와 보육을 통해 소상공인별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고, 성공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상생모델 확산

지원대상

-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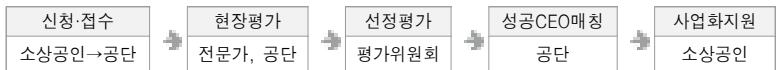
- 소상공인-성공CEO 연계 사업화지원(10백만원, 100%) 후 성과를 사회환원

지원항목	주요내용
기본교육	경영·서비스 개선, 기업가정신 역량 함양 등으로 구성된 교육 운영
사업화지원	성공CEO 매칭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해 기존상품개선, 신규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각종 사업화 항목을 지원 * 국비 100%, 사업화지원금의 10%와 성과(이익)의 일부는 사회환원
판로지원	선정업체의 우수상품을 온라인몰 입점지원 및 라이브커머스 지원

신청·접수

- '22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 상세 내용은 신청 안내문 참고

처리절차



지원규모

- 70개사 내외(예산 23.2억원 : 혁신형소상공인 관리 포함)
* '21년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88개사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 044-204-787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혁신실 : 042-363-7981, 798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h.or.kr), 「지원사업-이익공유형사업화」 참고

3-16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무료 상담지원

대기업·가맹본부 등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상담하고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 상 신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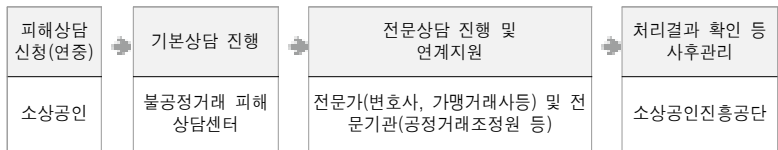
지원내용

- (상담지원) 전국 70개 상담센터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 (전문가 상담) 본부 전문가(변호사 등)의 피해구제 지원
- (교육)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영상 및 대응 매뉴얼 배포

신청·접수

- 전국 70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
- 홈페이지(<http://www.sbiz.or.kr/unfair/main.do>) 접수
- 전화상담 접수(1599-0209)

처리절차



문의처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1599-0209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2
- 소상공인지원센터 경영지원실 법무지원팀 : 042-363-7615, 7616

3-17

온라인 판로지원

온라인 판로채널 입점 지원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역량 등을 고려한 온라인 진출 쏠주기를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역량강화) 소상공인의 역량을 고려하여 교육 및 상품성 개선 컨설팅 실시하고 전문가를 1:1 매칭하여 홍보·마케팅 등을 일괄 지원
 - (진출지원) TV홈쇼핑·T커머스, V-커머스, 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O2O 플랫폼(배달앱 등) 활용, 해외쇼핑몰 진출 지원 및 온·오프라인 융합 판매전 개최
 - (라이브커머스) 라이브커머스 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 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크리에이터 교육
 - (기반마련) 소상공인 전용 쇼핑몰(가치샵시다 플랫폼) 운영,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등이 가능한 미디어 활용시설 운영(3개소)
 -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수입 창출 등을 위해 반찬·간식 등을 정기 배송하는 구독경제화 신규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온라인 진출 지원 대상 확대 ('20.4만개사 내외 → '20.5만개사 내외)
-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한 구독경제화, 스마트 플래그십 스토어 등 신규 지원

신청·접수 ● 상시 모집('21년 예산 소진시까지)

- * 아임스타즈(<http://www.imstar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소상공인마당(<http://www.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주요상품정보,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절차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유통센터 : www.imstars.or.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www.sbiz.or.kr
-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경제추진단 : 044-204-7284, 7285

3-18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0%대의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구현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0%대 수수료의 제로페이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도 가맹 가능)

지원내용 ● 가맹점
- 결제수수료율 0%대 적용

연매출액	8억이하	8억~12억	12억 초과
수수료율	0%	0.3%	0.5%

※ 소상공인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결제수수료 : 1.2%

● 소상공인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결제수수료 : 1.2%
- 인프라 및 홍보·마케팅 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인프라	QR키트	QR세트(키트, 스티커, 설명서) 보급	
	POS기기	기존 POS기기 업데이트	
	QR단말기	보급형 단말기 보급	
홍보·마케팅	지역별홍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예산	지방비 매칭
	홍보물제작 등	디지털 홍보, 이벤트, 홍보물 제작 등	
	협업공동마케팅 등	결제사업자 및 협·단체와공동 마케팅	

● 소비자 : 직불결제, 이용금액의 30%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신청 없이 자동 집계), 모바일 온누리상품권(40% 소득공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경품 및 리워드 이벤트

신청·접수

- 연중
 - 온라인 :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
 - 오프라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일부 지자체) 등

제출서류

-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등
 - * 1인 기업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맹 신청 가능

처리절차

- 온라인 :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비치된 가맹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 044-204-7873, 7877
-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 디지털전략실 : 042-363-7736, 7737
-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 02-2095-5957, 5928, 5946
- 콜센터 : 1670-0582
- 홈페이지 (http://www.zeropay.or.kr)

Q&A

소
비
자

Q. 제로페이는 어떻게 결제하는 건가요?

A. 제로페이 결제방식은 아래의 2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는 첫 번째 방식으로 결제합니다.

1. 매장에 설치(부착)된 QR코드를 소비자의 휴대폰에서 간편결제 앱 카메라로 촬영하고, 휴대폰에 금액을 입력하여 결제
2. 소비자의 휴대폰에서 간편결제 앱으로 QR코드를 생성하면, 매장 직원이 스캐너로 휴대폰의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

Q. 제로페이를 사용하려면 별도로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하나요?

A. 제로페이는 오픈플랫폼으로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없이, 소비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앱(○○페이, 시중 은행앱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 기업은행, 대구은행, 농협(NH 앱개시, 올원뱅크), 광주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수협, 하나은행, 신용협동조합,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하나카드, 케이뱅크, 핀트, 네이버 페이, 페이코, 티머니, 트립패스, 체크페이, 유비페이, 비플제로페이, 스마일페이, 뱅크페이, 머니트리, 레일플러스, 로드페이, sk페이, SSG페이, 롯데멤버스, 핫플레이스 등의 어플에서 사용 가능

Q. 제로페이 가맹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죠?

A. 플레이스토어에서 지맵(Z-MAP)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면 내 주변, 전국에 있는 가맹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A

소
상
공
인

Q. 제로페이 가맹하려면 가맹비는 없나요?

A. 제로페이는 가맹비용이 없습니다. 가맹 가입을 할 경우 QR키트, POS기 업데이트, 단말기 등의 인프라와 홍보 마케팅 지원을 받습니다.

Q. 가맹점주는 결제내역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A. 제로페이 가맹점용 앱을 설치하시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제로페이 결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로페이 결제취소 기능은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직원도 앱을 통해 직원등록을 신청하고 가맹점주가 이를 승인하게 되면, 이후 결제내역 관리, 결제취소, QR코드 관리가 가능합니다.

3-19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100년을 이어갈 우수한 소상공인 발굴 및 성장지원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백년가게)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기업 (국민추천의 경우, 업력 20년 이상)
- (백년소공인)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우수 소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유의사항

- 업력산정 : 재창업 및 가업승계 시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업력 포함 산정(증빙제출 必)
- 백년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 백년소공인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지원내용

- (홍보) 현판 제공, 방송·신문·민간 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 (시설·판로) 노후 환경 개선,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등 지원
 - * '22년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모집공고 시 별도 안내
- (연계지원)
 - (컨설팅) 소상공인 컨설팅* 활용시 자부담 면제
 - *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 마케팅, 경영관리 등 현장방문 맞춤형 컨설팅 제공(자부담 10%)
 - (금융) 혁신형소상공인 융자금리 우대 (공고문 참조)
- (신청우대) 중소기업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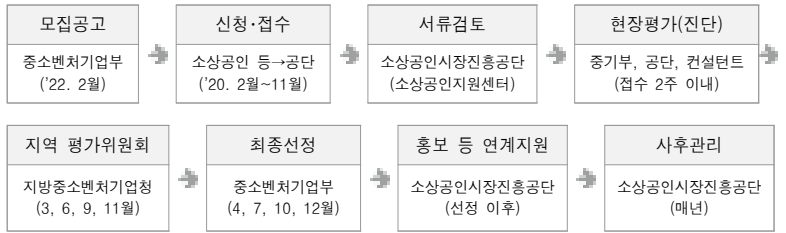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방법)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 및 E-mail(100year@semas.or.kr) 접수병행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內 국민추천 페이지를 통해 타인이 추천 가능
- (신청기간) '22.1~(연중 수시신청)
- (평가기준) 경영자 전문성, 제품·서비스 차별성, 마케팅 차별성, 조직관리 수준 및 재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업체 기술서, 매출액 및 고용 관련 증빙자료,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행정처분 및 포상이력 확인서 등

처리절차



문의처

-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81/7984/7985), 홈페이지(www.semas.or.kr)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87), 홈페이지(www.mss.go.kr)

Q&A

Q. 하나의 업체가 2개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백년가게 신청 시 업종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A. 네, 업종 및 업력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 업력 기준을 적용하며,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 (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 가업승계의 경우 증빙서류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네,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하여 가업승계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3-20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과 스마트오더 도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으로 상저를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 중인 자

지원내용 ● 스마트기술 및 스마트오더 도입 지원

- ① 스마트기술 :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소상공인 점포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국비지원 70%, 상점당 최대 45만원 이내)
- ② 스마트오더 : 모바일 예약·주문·결제 시스템 등 비대면 주문·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도입 지원(국비지원 100%, 상점당 최대 35만원 이내)

〈스마트상점 기술 예〉

(오더) 모바일 등을 이용한 주문·예약·간편결제	(스마트미러) 스타일링·피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	
		
(스마트 메뉴보드) 메뉴 제공, 신제품 홍보, 이벤트 안내	(키오스크) 주문·결제 등이 가능한 무인 주문기	(서빙로봇)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 실내에서 서빙 기능 제공
		

신청·접수

- 상인회·번영회가 관할 기초 지자체에 신청하고, 광역 시·도에서 취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공문으로 신청
 - * 신청 절차 : 상인회·번영회 → 시·군·구 → 시·도 → 소진공
- 업종별 협·단체가 공문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메일로 신청
 - * 신청 절차 : 업종별 협·단체 → 소진공

제출서류

- 스마트상가 총괄신청서, 스마트상가 운영 계획서, 예비 스마트상점 명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 상세 내용은 2021년 사업공고(3월)를 통해서 확인 가능

처리절차



지원규모

- 스마트상가 100곳(스마트상점 약 2만개)
 - * '20년 지원현황 : 스마트시범상가 55곳 지원(스마트상점 약 4천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 044-204-7874, 78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혁신실 : 042-481-7731, 7732, 7735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사업공고 참고

3-21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 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취업·재창업 등 재기 여건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재도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비영리사업자(또는 법인), 임대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지원내용 ● (선제적 경영지원) 업종별·분야별 컨설턴트 그룹을 통한 경영현황분석 및 문제를 도출하고 이의 해결을 통한 경영개선 전략수립, 경영개선 자금지원

* 업종전환 지원금액 상향(최대 1,000만원→ 최대 2,000만원)

● (폐업 지원) 폐업신고 및 행정, 법률·컨설팅·채무조정, 점포철거까지 원스톱으로 패키지 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폐업·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분야 컨설팅

- (법률자문) 임대차, 노무, 가맹 등 법률 자문 지원

- (채무조정)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

- (점포철거)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비용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

● (재창업 지원) 폐업소상공인 중 재창업의지와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발, 교육·멘토링·사업화 자금*지원

* 사업화 지원금액 상향(최대 1,000만원→ 최대 2,000만원)

● (재취업 지원) 민·관·학·공 협업 확대를 통해 성별·연령별 구직·구인 수요를 상호연계한 취업교육 및 근속 제고를 위한 전직장려수당* 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수료 후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활동 혹은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수당 지급(최대 100만원)

신청·접수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소상공인 여부 등 사업별 공고 참고

처리절차



지원규모 ● 1,139억원, 54,975건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69, 7823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Q&A

Q. 경영개선·사업화 지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A. 경영개선·재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대해 전문가 그룹의 경영위기진단, 진단유형에 따른 피보팅 전략수립, 폐업원인 분석 및 재창업 유망·특화·융복합 업종별 창업교육, 재창업 희망 업종별 트렌드 분석 및 성공전략 수립 및 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일부를 지원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해 지원금액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3-2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노란우산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소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업체
 - * 도·소매업 50억원, 숙박·음식업 및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운수업 80억원 등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5인 또는 10인 미만 업체
 -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 * 가입 제외업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가입방법

- 온라인 가입 :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노란우산 앱
- 방문 가입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 시중은행 등 위탁기관
 - * 가입업무 위탁기관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공제금 지급 지급내용

- 지급 사유 : 폐업, 사망, 퇴임(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법인대표자 퇴임), 노령(가입기간 10년이 경과하고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 지급 금액 : 적립한 부금(월 5~100만원)에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복리로 적립한 금액
 - * 기준이자율 : 폐업·사망시 2.5%, 노령·퇴임시 2.2%(‘21.1분기 기준, 분기별 변동)
 - *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됨

기타 혜택

- 소득공제 :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 공제
 - * 소득공제 제외업종 : 부동산임대업
- 공제금 보호 : 공제금 양도·압류·담보 금지, 공제금 수급계좌 압류 금지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홈페이지 : www.8899.or.kr.
- 노란우산 콜센터 국번없이 1666-9988, 전화 02-2124-3343~4

Q&A

Q.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은 일반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A.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 운영 중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경우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제제도이며, 폐업이나 사망 등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위기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에 연 복리로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업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보험과 달리 납입한 부금에 대해서 가입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공제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제공이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제 부금 납입을 연체하지 않으면 무담보·무보증으로 납입부금의 90% 한도 내에서 연이율 2.8%(‘21년 1분기)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3-23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고용보험 가입률제고와 사회안정망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하여 납부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7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월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
* 기준보수 1-2등급 50%, 3-4등급 30%, 5-7등급 20%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

(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월)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지원비율	50%		30%		20%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12,870	14,040	15,210

신청·접수 ● (온라인) go.sbiz.or.kr
● (방문) 전국 70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접수

처리절차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가입 및 납부실적 확인 → 보험료 환급

지원규모 ● 36.29억원, 18,000여개 업체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28, 7867
● 국번없이 1357
● 카카오톡 채널(@gobo1)

Q&A

Q.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하고 신청하는 건가요?

A. 네, 소상공인(사업주)이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신 경우,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언제하고, 필요서류는 뭔가요?

A. 지원신청은 예산소진을 제외하고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한번만 신청하시면 5년간 보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개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24

소상공인특화자금

숙련기술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숙련기술 기반의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 주요 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제조업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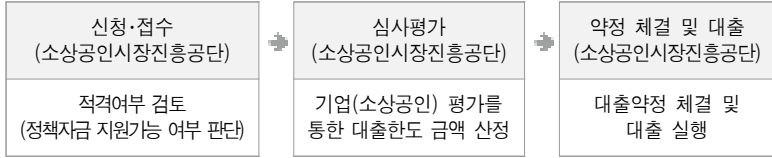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접수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 자료 내 공지
 -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처리절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지원규모

- 2021년 기준 2,500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Q. 자금 접수기간은 매월 정해져 있나요?

- A.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매월 마지막주에 3~5일간 기간을 두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공단 직접 대출 일체에 대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이며, 서류 심사를 거쳐 심사역의 사업장 방문 후 사업성 종합평가를 통해 대출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접수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5

성장촉진자금

장수 소상공인의 재정장 및 재도약 지원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직접대출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지원방법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직접대출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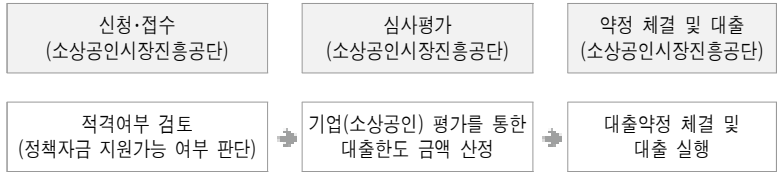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직접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대리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 자료 내 공지
 -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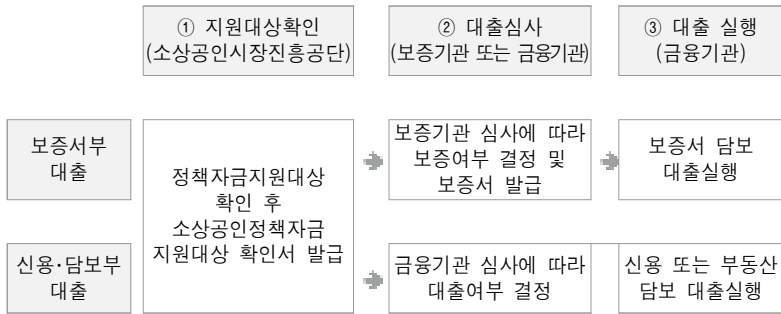
처리절차

- 직접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 대리대출



지원규모

- 2021년 기준 2,000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3-26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점포운영 자금을 지원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 및 영업지속을 제고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방법 : 대리대출
-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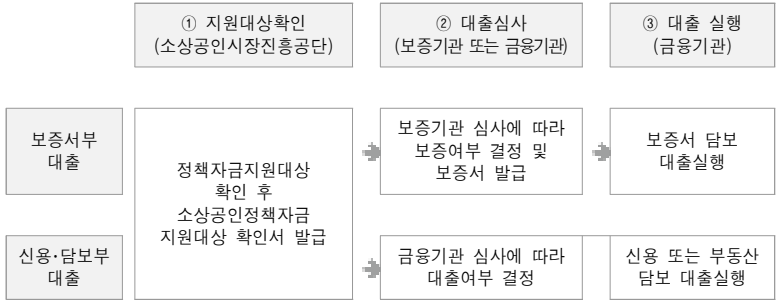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 자료 내 공지
-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처리절차



지원규모

- 2021년 기준 11,000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Q. 신용보증재단 이외에 다른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용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정책자금은 특정 보증기관에 제한을 두지는 않으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지원 대상 중첩을 피하기 위해 주로 규모가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하며,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후 보증을 지원합니다. 이에, 일반 소상공인이 보증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27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 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또는 50% 이상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3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방법 : 대리대출
-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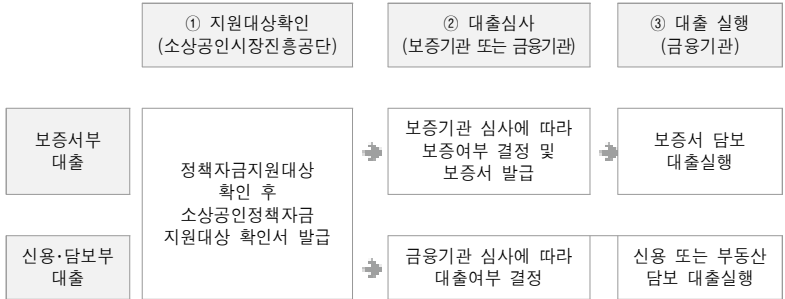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 자료 내 공지
-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처리절차



지원규모

- 2021년 기준 5,500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Q. 재외국민, 재외국민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 A.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면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 :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 재외국민 :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해당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 재외국민 및 재외국민에 대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15.1.22부터 발급)

3-28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혁신형 또는 사업성 우수 소상공인의 지속성장 마련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대상

-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 혁신형 소상공인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지원방법 : 직접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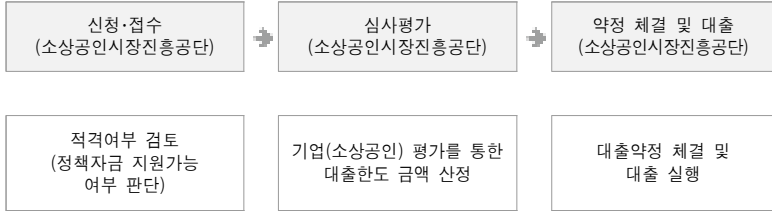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 자료 내 공지
 -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처리절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지원규모

- 2021년 기준 500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Q. 대출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A. 대출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회생·개인회생·청산절차 진행 등의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경우 기업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자금수급계획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자금의 흐름이 영업활동과 연계되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3-29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개량·보수 및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개량·보수 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사설주차장 이용을 보조합니다.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6조 각호
 - *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쇼핑센터, 아파트 단지내 상점가, 부정행위시장 등
- ▶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지원우대

- 주차장 미보유시장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장
- 임대료 동결·조정 자율합의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시장
- 대상부지 확보 등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높은 시장

-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 지원내용**
- 공영 주차장 건립 지원
 - 지자체가 전통시장 인근에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및 증축 시 국비 보조
 - * 주차장 부지매입, 노외/지하 주차장·주차빌딩·복합화 주차장 설치 지원
 - 공영 주차장 개량·보수 지원
 - 전통시장 고객전용 공영주차장의 개량 및 보수 시 국비 보조
 - * 주차장 노후시설 개보수, 차단기·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CCTV 등 설치 지원

- 공공·시설 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 부지확보 등으로 주차장 건립 곤란 시 전통시장 인근 공공·시설 주차장 이용 보조
 - * 주차 쿠폰 발행비용, 주차장 임대계약, 주차요원 인건비 등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실집행률 50%미만인 시·군·구는 다음연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신청·접수

- '22. 5월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광역시·도에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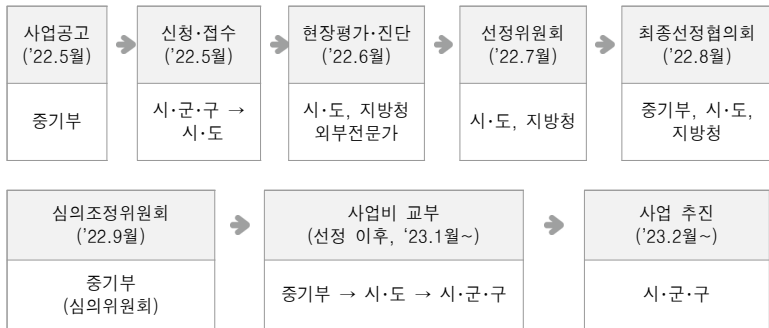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의 효율성, 부지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 시장활성화 등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 매매 사전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자문 또는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총사업비 1억원 이상)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지방비 투·융자 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연도 심사계획서(실시한 경우에 한함)
 -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90곳 시장(752억원)
 - * '20년 지원현황(1,424억원) : 88곳(주차장 건립 지원), 20곳(주차장 개보수 지원), 27곳(공공·시설주차장 이용보조)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4-204-7892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주차환경개선사업의 보조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비율은 국비(60%), 지방비(40%)이며, 시설현대화와는 달리 시장 자부담이 없습니다.

Q. 지하 주차장 건립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시장건물 지하공간 매입 등을 통해 지하 주차장 건립 지원이 가능하지만, 부지 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3-30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 정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전통시장으로서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영업점포의 30% 미만이 신청한 시장
- ▶ 민간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시장
- ▶ 동일한 지원사업에 선정 된 후 포기한 지 3년 미만인 곳

지원우대

- 화재위험이 높은시장(C등급 이하 우대지원)
- 화재공제 가입률이 50% 이상인 시장
- 화재감지시설 및 공용구간 노후전선정비사업(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장
-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높은 곳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자부담 10%(지자체 부담가능)
 - 개별점포 국비 기준 125만원 이내(시장규모 당 최대 5억원 이내)

- 지원내용**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배관, 전등 및 콘센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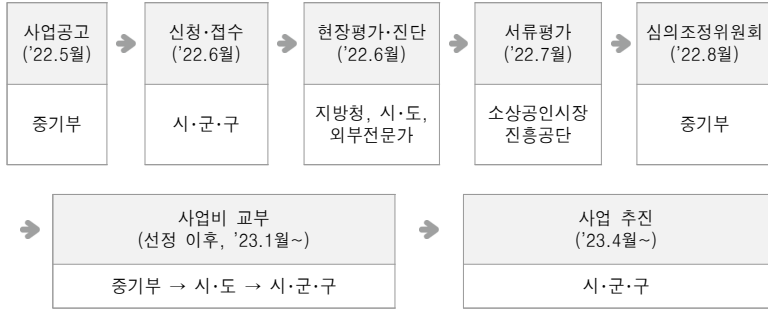
- 신청·접수**
- '22.5월 중
 - 전통시장에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시·도)를 경유하여 지방 중기청에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전통시장 40곳 내외(60억 원)

* '21년 지원현황 : 60곳 시장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4-204-7892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3-31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자율적 사업설계를 통한 자생력 강화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마케팅·시장매니저·배송매니저 등의 정책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 동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의 시·도 지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22년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이 예정된 곳
- ▶ 최근 3년 내 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가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곳(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곳(자)

지원내용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마케팅, 상인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선정 등급별 바우처 지원 한도〉

패키지 등급	가	나	다
패키지 지원 한도	60백만원	40백만원	30백만원

* 상인연합회 패키지 지원 한도는 별도 운영

- 패키지 활용 범위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필요한 시장경영혁신사업을 자유롭게 선택·추진 가능

구분	분야	패키지 활용 범위
사업 지원 패키지	공동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시장 진출 : 상권분석, 품목 개발,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 등 ▶ 체험교실 : 유아·청소년 장보기 체험, 문화교실 운영 등 ▶ 행사 : 축제, 이벤트, 문화공연, 플리마켓 등 ▶ 콘텐츠 제작 : 시장지도, 스토리북, 리플렛, 브랜드(BI, CI, 마스코트) 개발 등 ▶ 미디어·인터넷 홍보 : TV, 신문, 잡지, SNS, 포털 등 ▶ 기타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활동
	상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 회계, ICT, 우수시장 견학 등 ▶ 기타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경영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경영자문 : 경영전략, 법인설립, 특허·인증 등 ▶ 기타 시장 경영 관련 자문
	온라인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민간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에서 이미 서비스 중인 플랫폼에 한함(자체 쇼핑몰·앱 구축 불가) - 도입, 구축, 운영, 프로모션(배송비 무료, 할인 쿠폰, 광고 등) 등
인력 지원 패키지	시장 매니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인회 일반행정사무 수행 ▶ 이벤트·축제·행사 지원, 정부지원사업 신청·관리·정산 등
	배송 매니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리, 택배, 온라인 배송서비스 운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센터 직원, 배송기사 등

* 각 분야별 사용 조건 및 사업기간 등은 별도 안내

신청·접수 ● 사업부문별 상이

지원분야	사업부문	사업비 매칭 비율																				
사업지원	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온라인 플랫폼	▶ 국비 90%, 지방비·자부담 10%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 시장 규모에 따라 국비 90~30%, 지방비·자부담 10~7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소형</th> <th>중형</th> <th>중대형</th> <th>대형</th> </tr> </thead> <tbody> <tr> <td>영업 점포 수</td> <td>~99개</td> <td>100~499개</td> <td>500~999개</td> <td>1000개 이상</td> </tr> <tr> <td>국비</td> <td>90%</td> <td>70%</td> <td>50%</td> <td>30%</td> </tr> <tr> <td>지방비·자부담</td> <td>10%</td> <td>30%</td> <td>50%</td> <td>70%</td> </tr> </tbody> </table>	구분	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영업 점포 수	~99개	100~499개	500~999개	1000개 이상	국비	90%	70%	50%	30%	지방비·자부담	10%	30%	50%	70%
		구분	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영업 점포 수	~99개	100~499개	500~999개	1000개 이상																
		국비	90%	70%	50%	30%																
지방비·자부담	10%	30%	5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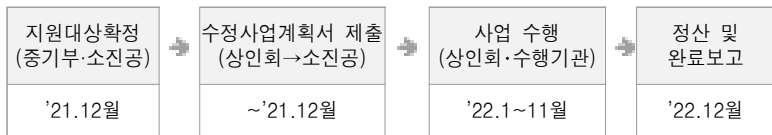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시장 선진화, 상인 조직화, 화재안전, 타당성, 효과성 등

지원조건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상인회등록증 등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절차



지원규모 ● 350곳 내외 전통시장·상점가('22년도 예산 14,142백만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35, 7637, 7638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044)204-7893, 7896

3-32

온누리상품권 발행

전국 1,500여 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법정상품권으로, 전국의 가맹 전통시장, 상점가(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용이 가능

상품권구매처 ● 지류상품권 : 16개 금융기관

-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하나은행·수협중앙회·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 전자상품권 : BC카드 및 6개 금융기관

- BC카드, 우리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

● 모바일상품권 : 10개 금융기관 및 12개 간편결제사 앱(APP)

- 신한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농협상호금융·우체국·체크페이·비플제로페이·머니트리·010pay·페이코·핀트·제로페이온·핀크·티머니페이·syrup wallet·유비페이·택시제로페이

상품권사용처 ●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포함) 및 상권활성화구역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 가맹점은 전통시장통통(<https://www.sbiz.or.kr/sijangtong/nation.do>)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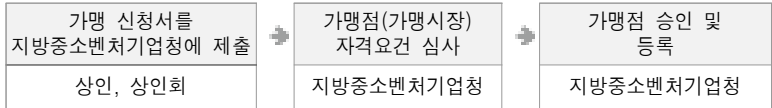
● 전자·모바일상품권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온라인 사용 가능

온라인 전통시장관

- ▶ (전자·모바일 결제처) 온누리전통시장, 온누리팜도시장, e경남, 온누리굿데이, 인더마켓
- ▶ (모바일 결제처) 놀장, 가치삼시다 플랫폼, 장보다, 꿈지락배송, 장봄, 위메프오, 종량제닷컴, 배달을거제, 맛있는소리 땃땃, 장바오, 달려라큰동해
- ▶ (전자 결제처) 우체국전통시장, 피쉬세일, 제주전통시장, 온누리장터, 온누리시장, G마켓, 옥션

가맹신청

- 가맹점 등록 신청
 -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포함)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 신청 및 등록절차



* 신청서는 '전통시장통통(<https://www.sbiz.or.kr/sijangtong/nation.do>) - 온누리상품권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가맹점 제한업종

- ▶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
- ▶ 담배·주류·모피제품·도박기계·귀금속 도매업, 금융업, 보험, 골프장운영업, 부동산업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5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제한업종

지원내용

- 상인(개별가맹점)
 - 상품권 판매, 회수수수료 국비 지원
- 상인회(환전대행가맹점)
 - 상품권 환전대행 시 수수료 지급

상품권종류

- 지류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 전자상품권 : 5만원권, 10만원권, 충전식(온누리멤버십)
- 모바일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발행규모

- '22년 3.5조원 규모 발행계획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0번
- 제로페이 콜센터(모바일상품권 관련 문의) : 1670-058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 : 042-363-7641~5, 7650~52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4-204-7895, 7899

3-33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개성과 특색이 있는 전통시장 육성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살린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 육성함으로써 고객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육성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중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으로 특성과 역량이 충분한 시장
 - 상인조직 :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 또는 상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지원우대 사항(접수마감일 기준)

-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자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곳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 '상인정보통' 상인교육 50% 이상인 곳

신청 자격(접수마감일 기준)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25% 이상인 곳
-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각 80% 이상인 곳
- * 단, 첫걸음기반조성 사업에 한하여 각 60%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접수 마감일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시장
- ▶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개년 간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내용

- 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관광형)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콘텐츠 육성
 -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개척 지원
 - 상인 조직화(협동조합 등)을 지원하여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성과 유지 효율성 제고 방안 수립 지원
- 특성화시장육성사업(디지털전통시장) : 디지털 전통시장 운영 조직 역량 강화, 상품 발굴, 입점지원, 인프라 구축, 공동마케팅 등 종합 프로젝트 지원
 - 온라인플랫폼 입점 이후 홍보, 고객관리, 상품 및 서비스 품질관리 등 지속 운영을 위한 상인 조직(조합) 설립 및 교육
 - 근거리 배달 및 전국 배송에 필요한 픽업·배송 인력 등 인적 지원, 배송센터, 공동장비 등 현장 인프라 구축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 이벤트, 프로모션 등 고객 모집을 위한 마케팅 지원
- 특성화시장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 : 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수행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기초역량 강화
 - 결제편의, 고객신뢰, 위생청결, 상인조직 역량제고, 안전관리·화재예방

* 첫걸음기반조성 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도약

신청·접수

- 매년 6월경 다음년도 지원사업 공고 및 선정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주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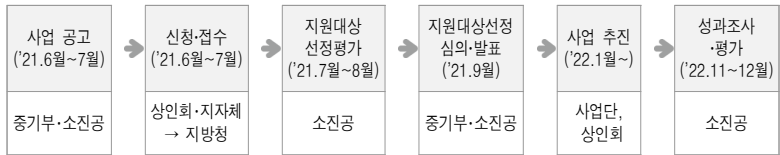
- 특성화 추진역량(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 지원
 - 3대 고객서비스 혁신과제

- ① 편리한 지불결제
 - ② 고객신뢰(가격·원산지 표기, 교환·환불·A/S, 친절맞이 인사 등)
 - ③ 위생 및 청결(고객선 준수, 상품진열, 공용공간 청소, 정리정돈 등)
- 2대 역량강화 과제
- ① 상인조직 역량(상인회 가입률, 회비 납부율, 정기이사회·총회 운영 등)
 - ②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1점포1소화기, 자율소방대 운영, 화재예방훈련 등)

제출서류

-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77호)에 따름

사업절차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105곳* 내외
 - * 예산 등에 따라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관광형) : 2년간 시장 당 최대 10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10% 차등)
- 특성화시장육성사업(디지털전통시장) : 2년간 시장 당 최대 6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1년차)~40%(2년차), 자부담 10%(2년차)
- 특성화시장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 : 1년간 시장 당 3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10% 차등)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4-204-789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 042-363-7622, 762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장의 상황에 맞게 가장 필요한 1개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Q.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은 적인 없는 경우에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특성화시장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없는 곳은 우선 첫걸음 시장 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다음 단계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단계 : 특성화 첫걸음시장 → 문화관광형시장육성

Q.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은 적 없는 경우에도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신청할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공고문의 지원대상 중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Q. 기존 글로벌명품 및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금번 신청 가능한 사업이 있나요?

A. 최상위 단계의 사업인 글로벌명품 및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졸업시장은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Q. 기존에 첫걸음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또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문화관광형시장육성 또는 디지털전통 시장 육성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기존 문화관광형시장 및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시장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글로벌 명품 및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졸업 시장은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3-34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개성과 특색이 있는 전통시장 육성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볼거리·즐길거리가 가득한 복합청년몰 조성과 준비된 예비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 既지원 청년몰의 사후지원 및 청년상인의 자생력 강화 도약지원 등으로 젊은 고객 유입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제고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지원대상

- (조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시장 내 유휴공간(500㎡ 내외) 확보가 가능한 시장
- (활성화 및 확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지원우대 사항(청년몰)

- (공통 우대사항)
 -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상인정보통' 상인교육 50% 이상 이수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 (개별사업 우대사항)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곳(접수 마감일기준)

- 화재공제 가입률에 따른 가점 차등 부여
- 공설시장, 지자체 소유부지, 지자체 매입 및 신축시장
- 창업보육형 청년몰의 경우 우선 지원

지원제외(청년몰)

- ▶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 시장 내 청년몰(국가, 지자체 모두 포함)이 이미 운영 중이거나 국가, 지자체로부터 관련 사업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시장
- ▶ 최근 3년간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 전통시장 안전점검 후속조치 미이행시장

지원제외(청년상인)

- ▶ 미성년자
- ▶ '15~'20년 정부지원(청년상인 창업, 청년몰) 후 폐업하거나 지원 중에 중도 포기한 자
- ▶ 도박, 유희 등 불건전 업종을 희망하는 자
- ▶ 대부, 유사금융 및 부동산 업종을 희망하는 자
- ▶ 청년상인 육성사업 세칙에 따라 청년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청년몰 조성(몰 당 2년 40억원) : 전통시장 내 일정구역 안에 청년상인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휴게실 등 공용공간 조성 등을 지원
 - 지원금액은 시장 여건 및 사업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여 15억 내외로 하되, 시장상황, 사업 규모 및 타당성 검증 등을 통해 조정(국비 50%, 지방비 40%, 민간 10%)
- 청년상인 도약지원(1명 당 최대 10백만원) :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전문가 컨설팅 및 시작품 제작, 상품·포장 디자인 개선 등) 지원
- 청년몰 활성화(몰 당 5억원 이내) 지원 :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컨설팅, 교육, 조직화 지원 등 SW중심의 활성화 지원
- 청년몰 확장(몰 당 10억원 이내) 지원 :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고객편의 시설, 공용공간(휴게실 등), 진입환경(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지역민 소통공간(공공어린이집, 공용카페 등) 조성 등 HW지원

신청·접수

- 신청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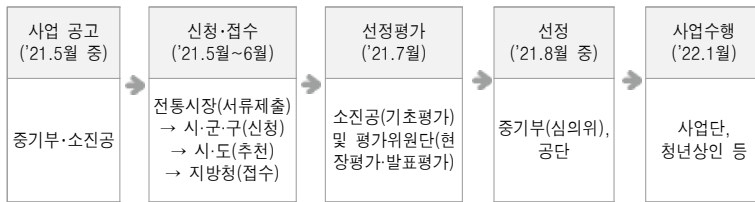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주요사항

- (청년몰 조성) 상권활성화 수준, 성장가능성, 시장이 보유한 인프라 및 상인 역량, 지자체(상인회)의 지원계획 등
- (청년몰 활성화·확장) 청년몰 운영성과, 발전가능성, 지자체·상인회의 지원노력 및 향후 계획, 청년상인 상생지수(협동, 단결력) 등
- (청년상인 도약지원) 아이템 전문성, 성장가능성, 영업실적, 파급효과 등

제출서류

-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참조

사업절차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 복합청년몰 조성 5곳 내외(신규 2곳, 계속 3곳), 청년몰 활성화·확장지원 3곳 내외, 청년상인 도약지원 200명 내외(20억원)
 - * '21년 지원현황 : (1차 모집) 조성2곳, 활성화·확장 3곳 (2차 모집) 조성1곳, 활성화1곳
 - * '20년도 시장 : '19년 선정원료, '21년도 시장 : '20년 선정원료
- 청년몰 조성: 2년간 몰 당 40억원 이내(국비 50%, 지자체 40~50%)
- 청년몰 활성화: 몰 당 5억원 이내(국비 50%, 지자체 40~50%)
- 청년몰 확장: 몰 당 10억원 이내(국비 50%, 지자체 40~50%)
- 청년상인 도약지원: 1인당 최대 10백만원(국비 90%, 자부담 ~10%)
 - * 사업비 편성 :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 지원)
 - * 예산 등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81, 7785
- 청년상인육성재단 : 042-252-1414, 042-826-593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 참조

Q&A

Q. 만39세를 초과하면 청년상인 창업을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네 청년상인의 나이기준은 전통시장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Q. 지원자금은 지원 대상자에게 입금 되나요?

A. 아니오 사업단을 통해 집행되거나 용역수행업체에 지급됩니다.

3-35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사업)

해당 구역의 특색을 반영한 상권 단위 지원사업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활성화구역'에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전통시장 혹은 상점가를 포함한 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요건 (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 ▶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 해당 구역 내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신청요건

- 상권협의체(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운영을 위하여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상인, 임차인, 임대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최종적으로 상권관리기구에서 사업 운영)
- 해당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 (예시) 임대료 동결, 임대료 인상폭 5% 이하 제한 등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 구역경계는 사업신청시 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사업공고시)

지원우대

- 해당 구역에서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연계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평가 시 가점 부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디지털사업(중기부) 등)

- 50% 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은 필수 조건이며, 그 이상 동의율에 대해 구간별 가점 부여
- 해당 구역 화재안전을 위해 화재공제 사업 또는 민간화재보험 가입율이 50% 이상에 대한 가점 부여

지원내용

- 지자체·상인회 주도로 상권의 특색이 반영된 구역을 조성하고, 쇼핑·커뮤니티·청년 창업, 힐링(문화·예술) 등이 이루어지는 상권 조성
 - * 상권 자체의 핵심 역량(음식, 의류, 디자인 등) 및 지역 역사자원, 인물 등과 연계
- 상권환경개선사업(H/W)과 상권활성화사업(S/W)을 추진
 -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조형물 등
 - * 활성화사업(예시) : 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신청·접수

- '22년 상반기 공고예정
 - * 시·군·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로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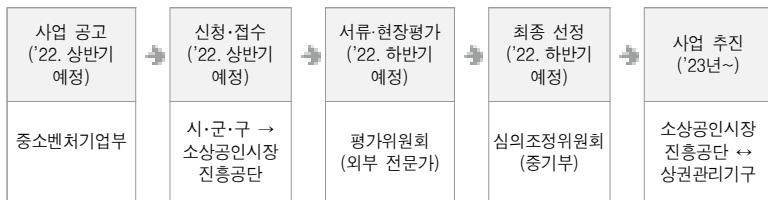
평가 주요내용

- 서류심사 : 상권활성화구역의 법적요건 충족 여부, 가·감점 등 검토
- 현장·발표평가 : 사업추진 적합성, 역량, 경제성, 향후 관리계획 등 평가

제출서류

- 사업운영계획서, 지방비투자 협약서, 시·도 추천서, 상생협약서, 사업동의서(임차인·상인) 등
 -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상권활성화구역 당 5년간 총사업비 80억원 내의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 '21년 선정현황 : 총 25곳('18년 3곳, '19년 9곳, '20년 8곳, '21년 5곳) 선정

문의처

- 중소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2, 7867, 786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774, 7775, 7779, 77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상권 르네상스(상권 활성화) 사업의 민간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재원 부담비율은 국비 50%, 지방비와 민간부담금을 포함해서 50%이며, 민간부담금(10% 이내)은 현금과 현물 모두 가능하고 지자체에서 부담 가능합니다.

Q. 상권관리기구는 무엇이며, 그 역할은 무엇인가요?

A. 상권관리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민법」에 따라 설치하는 비영리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이며,

상권활성화사업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비 집행, 정산, 상권협의체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36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저렴한 비용의 공제로로 전통시장 화재 시 피해 보상

전통시장 상인을 회원으로 순보험료로만 공제료가 산출된 저가의 보장성 공제사업을 도입, 가입자 납부 공제로로 재원을 조성하여 화재 피해 발생시 가입한도 내 실손 보상

지원대상

- 상인이 납부한 공제로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 운영
- 대형화재 발생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상품안내

- 가입대상 : 전통시장 특별법 상 전통시장 (등록, 인정)
- 가입단위 : 개별점포
- 가입목적물 : ① 건물(자기점포, 임차점포), 시설(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집기
② 재고자산 ③ 타인의 신체 및 재물(화재배상책임 특약)
- 가입기간 : 가입일(공제금 납입일)로부터 1,2,3년 선택 (종료일의 16:00까지)
- 보상방식 : 가입한도(최대 건물3천만, 동산3천만) 내 실손보상
- 상품구성 : 기본상품(재물손해),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화재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화재별금, 시설소요·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점포휴업일당 특약
- 납입방법 : 연납
- 공 제 료 :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2개 등급(A, B)으로 차등

〈가입 금액 예시 (가입기간 1년)〉

구분		2천 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 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6천 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주계약	A급	66,000원	132,000원	198,000원
	B급	101,500원	203,000원	304,500원
특 약	화재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임차자 배상책임	- 가입시 건물요율의 10% 할인 적용		
	음식물 배상책임	추가공제료 : 연 1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1년다원)중 5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0만원)		
	화재별급 특약	추가공제료 : 100원 계약자의 별급형 확정 판결에 따른 실손 보상(형법170조) 1.5천만원 / (형법171조)2천만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약	- 추가공제료 : 2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1년다원) 중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점포휴업일당 특약	- 추가공제료 : 2,400원 - 1사고당 30일 한도(매 1년마다 총 60일 한도) - 점포휴업 일당(3일 초과)=복구기간 내 휴업일수X1일당 가입금액(5만원)		

* 건물구조급수(A/B급) : 건물의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의 건축 자재에 따라 나눈 등급

* 가입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건물/동산 각 3천만원)

* 주계약의 경우 100만원 단위로 가입가능

〈건물구조급수에 따른 등급구분〉

급별	주요구조부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
A급(1~2급)		내화구조	내화구조 / 불연재료	내화구조
B급(3~4급)		상기 이외의 것		

가입이 안되는 점포

- ▶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점포(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 전통시장 내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
- ▶ 공제목적물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점포
 - 지정된 위치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영업종료 시 공제목적물의 보관 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점포

신청·접수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송부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건물구조급수를 A로 선택한 경우 건물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처리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4-204-782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773, 7976
- 콜센터 : 042-363-7877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 www.fma.semas.or.kr

3-37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안전점검

주기적 안전점검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예방 강화

전통시장·상점가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전국 전통시장 대상 3년 단위 주기적 점검(무등록 시장 포함)
 - 지자체 의원을 수렴(추천/제외)하여 예산 범위 내 점검대상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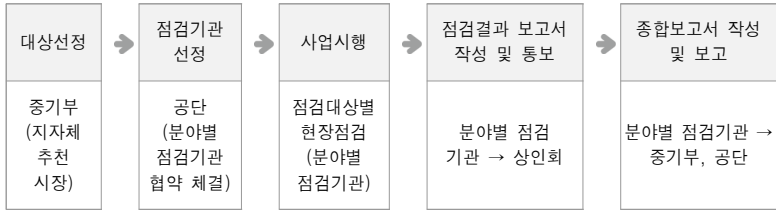
지원내용

- 전통시장의 공용부분·개별점포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화재안전점검 및 개별 점검결과보고서 작성·제공
 - 소방·전기·가스 분야별 시설물 점검
 - 상인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설비 사용법 등 교육)
 - 분야별 안전시설 취약정도에 따라 시장별로 안전등급화하여 점검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관계기관 간 점검결과 공유

〈분야별 점검내용〉

구분	점 검 내 용	비고
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구간) 소방시설 관리 및 공용 소화기 비치 수량·상태, 아케이드 및 방화문 설치·유지, 시설 개·보수비용 산정 등 • (개별점포) 소화기 비치여부 및 보급비용 산정, 자동확산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 보유 및 관리실태 등 	분야별 상인 안전교육 실시 및 시장별 안전 등급화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구간) 아케이드 작동 전기설비, 주차장·쉼터·상인회 사무실 등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등 • (개별점포) 절연,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옥내·외 배선, 접지 상태 등 	
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의 LPG 시설, 도시가스 시설 점검 * 가스누출 점검, 감지기상태 점검, 가스용기 보관함 점검 등 	

추진절차



지원규모

- 599개 시장 내외(예산 3,248백만원, 국비 100%)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4-204-782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826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Q&A

Q. 화재안전점검은 법정무점검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점검인가요?

A. 화재안전점검은 '19년 2월 15일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정무점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상인 분들의 생활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무료점검이므로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Q.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도 해 주나요?

A. 공용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현대화사업예산으로 시설물 개·보수 지원이 가능하며, 개별점포는 점포주께서 자진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3-38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화재 초기 진화, 대형화재로의 확산 방지

전통시장 내 화재발생 사전감지를 위한 화재알림시설을 지원하여 조기에 발화요인을 감지하고 소방서와 상인에게 통보하여 화재 초기 진압 등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

지원조건

- 점포당 총사업비 80만원 한도
 - 국비 : 총사업비 70%(56만원 이내)
 - 지방비 : 총사업비 30%(24만원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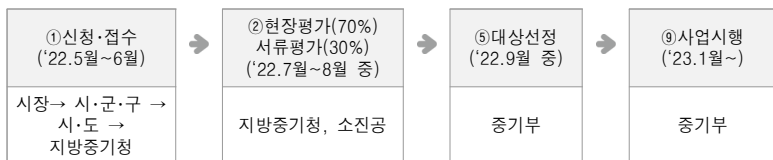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 영업점포의 30%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25%이상인 곳

지원내용

-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 부분 화재감시용(방범기능 포함) CCTV 설치** 등 지원
 - * 소방관련법에서 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의 경우 화재감지시설 지원 불가
 - **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사업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주소형감지기, 공용부분에 감시 CCTV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주소형감지기 및 감시 CCTV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추진절차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 14,900개 점포 내외(78.4억원)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4-204-79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777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 지역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담당자

Q&A

Q. 공용공간 CCTV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CCTV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신 후 잔여 예산을 활용한 화재감시용 CCTV설치가 가능합니다.

[참고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락처 (소상공인정책자금 상담 등)

센터	전화 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02)730-936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대시앙루브 7층	서울특별시, 강원도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21 (02)839-87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14, 다이치빌딩 3층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 평창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3층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1층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강원)속초센터	(033)638-1950 (033)638-1951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469-4680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 구, 동구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부산광역시 북구 기차로12 이수타워 9층	북구, 사상구, 강서구

제2편 유관기관 (비금융기관)

센터	전화 FAX	주소	관할구역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울산)남부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광역시 남구 둔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남구, 울주군
(울산)북부센터	(052)243-7490 (052)243-7495	울산광역시 중구 새즈문해거리 28 2층	북구, 중구, 동구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상남도 창원시 상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 (구, 마산시, 진해시), 창녕군, 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상남도 진주시 총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함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055)367-7116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양산시, 밀양시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29-4633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북구, 동구
(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053)639-34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달서구, 달성군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6층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센터	전화 FAX	주소	관할구역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상북도 경주시 북문로 125-5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경북)영주센터	(054)634-6975 (054)634-6980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82 영주상공회의소 1층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광주호남지역본부	(062)369-8754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광주광역시, 전라도, 제주도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서구, 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	동구, 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여수시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61)332-5309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시
(제주)서귀포센터	(064)739-9216 (064)739-921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0, 1층 (KT신서귀포빌딩)	서귀포시

제2편 유관기관 (비금융기관)

센터		전화 FAX	주소	관할구역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완주군,진안군, 무주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익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라북도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김제시,고창군, 부안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장수군,임실군, 순창군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경기인천지역본부		(031)204-30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경기도,인천광역시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1)666-0270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평택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광주시,이천시, 여주시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 시, 양주시,연천군,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안양시,군포시,의왕시, 과천시	

센터		전화 FAX	주소	관할구역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경기)하남센터	(031)794-4383 (031)794-4390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경기)용인센터	(031)337-1830 (031)337-18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116 용인타워 303호	용인시
	(경기)안성센터	(031)677-6192 (031)677-6188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호~203호	안성시
대전 충청지역본부		(042)864-1609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9층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102호	유성구, 서구, 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1층	중구, 동구
	(세종)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세종시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 보령시, 청양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 문경빌딩 3층(구 황산빌딩)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2동 2층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홍성군

센 터		전화 FAX	주 소	관할구역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신한은행 3층	청주시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충주시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문화회관 2층	제천시, 단양군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3 미르타워 3층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옥천읍사무소 3층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참고 2]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재 단 명	전 화 번 호	홈페이지
강원재단	(033) 260-0001	www.kwsinbo.co.kr
경기재단	1577-5900	www.kgsb.co.kr
경남재단	1644-2900	www.gnshinbo.co.kr
경북재단	(054) 474-7100	www.gbsinbo.co.kr
광주재단	(062) 950-0011	www.kjsinbo.co.kr
대구재단	(053) 560-6300	www.ttg.co.kr
대전재단	(042) 380-3800	www.sinbo.or.kr
부산재단	(051) 860-6600	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1577-6119	www.seoulshinbo.co.kr
울산재단	(052) 289-2300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1577-3790	www.icsinbo.or.kr
전남재단	(061) 729-0600	www.jnsinbo.or.kr
전북재단	(063) 230-3333	www.jbcredit.co.kr
제주재단	(064) 750-4800	www.jejusinbo.co.kr
충남재단	(041) 530-3800	www.cnsinbo.co.kr
충북재단	(043) 249-5700	www.cbsinbo.or.kr
중앙회	(042) 480-4201	www.koreg.or.kr

〈유의사항〉

개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 서류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추가 공고될 예정입니다

- 사업 추진일정, 예산 및 지원규모 등의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4부

대한상공회의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1

코참경영상담센터

경영 실무 애로 해소 지원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법무, 무역/관세, 창업/경영, 특히 분야의 전문위원들이 보다 나은 기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전화상담(1600-1572)
 - 해당분야의 전문위원과 즉시 전화연결 및 경영애로 상담
- 온라인 상담(www.korcham.net)
 -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행사/교육 코참경영상담 게시판을 통해 상담 신청 및 전문위원 답변 확인
- 방문상담
 - 대한상공회의소 본소 및 서울시내 25개 구상공회에서 상담의뢰인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 방문하여 전문위원과 대면상담

처리절차

- 1단계 상담신청
 - 전화(1600-1572), 온라인, 방문 상담신청
- 2단계 상담실행
 - 전문위원과 즉시 연결되어 상담
 - 전문위원이 실시간 질의 확인 후 답변 등록
 - 서울시내 본소/구상공회 상담센터에서 대면 상담

지원규모

- 연간 약 14,000건 이상의 경영애로 상담 실시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총괄팀 T. 02-6050-3479

Q&A

Q. 상공회의소 회원이 아니어도 경영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Q.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혀 없나요?

A. 비용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각 분야 전문위원들이 경영 실무애로 해소를 지원하여 보다 나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4-2

계약서 검토 서비스

계약서 관련 분쟁을 사전 예방

경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서를 전문가가 검토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위험을 예방해드리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회원

지원내용 ● 서비스 분야

분 야	주 요 내 용
경영일반	구매, 공급, 납품, 용역 등 관련 계약서
근로	채용, 연봉계약 등 관련 계약서
무역	수출, 수입, 위탁판매, 판매대리, 대행 등 관련 계약서
MOU	업무협약

- 검토위원
 -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중재인, 경영지도사 등 분야별 전문가

처리절차 ● 올댓비즈(allthatbiz.korcham.net)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결과 확인

이용횟수 ● 제한 없음 (내부 정책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총괄팀 T. 02-6050-3479
 - 홈페이지 <http://allthatbiz.korcham.net>
 - 이메일 review@korcham.net

4-3

제조물배상책임(PL) 단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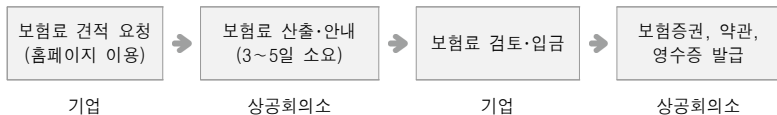
보험료 할인혜택을 통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제품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제조업자가 PL보험을 가입할 경우, 손해보험사에 개별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최대 40% 저렴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 단체보험 할인적용 및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최대 40% 보험료 할인
 - 손해보험사와 제휴, 개별가입과 동일한 보험 서비스 제공
 - 개별 가입보다 유리한 보험료 산정 및 사고처리
 - 온라인 접수시스템(모바일 포함) 도입으로 편리하고 신속한 보험료 안내

- 가입대상**
- 제조업체, 공급 및 판매업체, 수출·입업체, 명의표시 판매업체, OEM업체
 - 승강기·정수기,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 등

가입절차



* 참여보험사 : 현대상상화재보험(주공사),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 손해배상 범위**
-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배상합의금, 법정판결금
 - 사고처리비용 : 긴급조치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방어(소송)비용 등

-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Tel. 02-6050-3875~8 / Fax. 070-7614-3422)
 - E-mail : plcenter@korcham.net
 - 홈페이지 : <http://pl.korcham.net>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

4-4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휴양·여행, 자기계발, 건강관리, 기업소모품을 비롯한 상품쇼핑몰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지원대상

- 전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 ‘중소기업확인서’ 보유 기업 (가입시 제출)

지원내용

- 복지분야 주요 서비스를 시장최저가 수준으로 이용 가능
 - 주요 입점사 : 여기어때/살레코리아(국내숙박), 아고다(해외호텔), 롯데시네마(영화), 민병철유포/시원스쿨/이패스코리아(교육), 밀리의서재(도서), 선헬스케어(건강검진), 베네피아(SK임직원몰), 삼성전자/애플/LG(전자제품), 온누리전통시장몰, 행복마트(직판관)
- 복지포인트 활용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공
- 우수활용기업 인증서 발급
 - 인증기준 : 전체 근로자 중 30% 이상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 복지 플랫폼에서 복지포인트 지급한 기업
 - 우대내용 : 성과공유기업 자동 지정, 일자리평가 우대 등 중기부 사업우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복지포인트 활용 선택적 복지제도 서비스 운영(21.7월)
- ▶ 우수활용기업 인증제도 시행(21.3월)

신청·접수

가입 및 이용절차

- ① 기업회원 가입신청(<http://welfare.korcham.net>)
 - * 기업정보 입력 및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② 회원가입 승인 (24시간내)

- ③ 기업관리자 페이지에서 전체 임직원 일괄 정보입력 및 로그인계정 생성
- ④ 임직원에게 로그인계정 통보
- ⑤ 임직원 로그인 후 개인정보활용 및 서비스약관 동의 후 서비스 이용

복지포인트 신청절차

- ① 복지포인트 유선 상담 → ② 계약체결 → ③ 포인트사용신청 →
- ④ 포인트 사용승인 → ⑤ 임직원 포인트 배정 및 이용공지 →
- ⑥ 포인트 사용 → ⑦ 포인트 월 정산

우수활용기업 인증서 신청절차

- ①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신청관리” 메뉴에서 신청
 - * 전체 근로자 복지포인트 배정완료 후 신청 가능
 - * 제출서류 : 건강보험 등 가입 증빙서류(전체근로자수 확인용)
- ② 인증서 발급 승인
- ③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메뉴에서 인증서 출력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복지센터 : 02-6050-3811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고객센터 : 1588-6555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홈페이지 : welfare.korcham.net

Q&A

Q. 복지플랫폼에 가입시 가입비와 이용료가 있나요?

A.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가입비와 이용료 없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 개인이 가입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회사대표 또는 인사담당자가 대표로 가입한 후 기업 승인이 되며, 기업관리자가 전체 근로자를 등록하고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개인자격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Q.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 가입하면 복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근로자 개인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별도의 복지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용어설명

복지포인트 : 회사가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배정하는 포인트로 복지플랫폼의 다양한 서비스를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되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

성과공유기업 :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우대를 통해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제5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1

해외진출 및 인증 상담

중소기업의 수출애로해소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및 인증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전화, 온라인, 채팅, 내방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지원대상

- 수출, 해외 투자진출 관련 문의가 있는 모든 기업 또는 개인
 - * 기업의 수출과 관련없는 학술 목적의 문의, 현지 한국기업·한국인에 대한 평판 및 신인도 등의 문의는 답변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수출, 투자진출에 대한 전반적 상담 진행

수출	투자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실무 전반 ▪ 거래선 발굴 방법 ▪ 계약관련 서류검토 ▪ 인증 및 규격 ▪ 대금 결제 및 금융, 수출보험 ▪ 해외시장정보 ▪ 관세, 통관절차 ▪ KOTRA 및 유관기관 지원 사업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투자 절차 및 법규 ▪ 투자진출 유망지역 안내 ▪ 법인 설립 절차 및 현지 노동법 안내

지남해와 달라진 내용

- ▶ 지역/ 기능별 상담 지역별 내선 수정

- 지역·기능별 상담

지역	연락처	
미주 및 유럽	대표전화(1600-7119) - 2번(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	내선 1번
아세안		내선 2번
중화권		내선 3번
CIS·몽골·인도		내선 4번
중동·일본·기타		내선 5번
인증 및 규격		내선 6번
무역사기		내선 7번


* 카카오톡 채팅상담 또는 KOTRA 수출투자챗봇으로도 상담 가능

● 법률 상담

지역	상담 내용	상담 수행기관	상담 예약 전화
중국	중국 법률 자문 (매주 목 13:00~17:00)	해외진출상담센터 중국 전문 변호사	02-3460-7218

신청·접수

신청·접수 방법

- 유선 상담 (음성 및 보이는 ARS 지원)
 - 고객센터(1600-7119) → 2번 ‘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 선택 → ‘진출 희망지역’ 혹은 ‘상담분야’ 선택
- 온라인 상담
 - KOTRA 사업신청 홈페이지(www.kotra.or.kr/biz) → 상담 메뉴 중 ‘무역투자상담’ → ‘온라인 상담’ → ‘신청하기’
- 카카오톡 채팅상담
 - QR코드 스캔  → ‘채팅하기’
 -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검색 → ‘채팅하기’
- 방문(내방) 상담
 - 전화(02-3460-7218)로 사전예약 (상담내용 및 스케줄 조율) → KOTRA 본관 1층(무역투자상담센터) 방문 상담

문의처

- ☎ 해외진출상담센터 : 1600-7119

용어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용자잔액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5-2

이동 KOTRA

중소기업의 수출애로해소

중소기업의 수출 전반에 대한 문의 및 수출 진행 중 겪는 애로 사항을 방문하여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지원대상 ● 수출관련 상담이 필요한 전국의 중소기업

이용료 ● 무료

- 상담내용**
- KOTRA 및 수출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
 - 타겟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시장 정보 안내
 - 무역실무 관련 상담(계약서 및 신용장 검토, 통관절차 안내 등)
 - TriBIG(빅데이터 플랫폼) 잠재 바이어 추천
 - 코로나19 대응 바이어 방한 대행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해외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별 목표시장 도출 등 컨설팅 제공

진행절차

GCL TEST

사업 신청·접수

방문 컨설팅

마케팅 연계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무역투자 상담 → 현장상담 → 이동KOTRA(기업 방문상담) 글로벌역량진단(GCL TEST) → 맞춤형 컨설팅 지원

문의처 ● 서울 : 02-3460-7547

● 경기북부 : 070-7931-0442

● 경기 : 031-273-6035

● 인천 : 032-822-9817

- 강원 : 033-261-5312
- 충북 : 070-4185-8448
- 대전충남 : 042-341-8319
- 광주전남 : 062-369-9054
- 전북 : 070-7931-0812
- 대구경북 : 053-659-2280
- 경남 : 055-290-0604
- 부산 : 051-740-4153
- 울산 : 052-289-4654

Q&A

Q. 담당 직원 변경으로 인한 신규 입사자에 대해 무역실무 교육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무역계약에서 운송, 보험, 통관절차 및 무역서식 작성요령 까지 실무에 필요한 모든 내용에 대해 방문하여 교육진행 가능합니다.

Q. 회사 소재지가 대구인데 서울 위원님께 컨설팅 신청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기업 소재지 관할 지원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용어설명

글로벌역량진단(GCL TEST)이란 기업의 수출 및 해외마케팅 부분별 세부역량을 확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입니다.

5-3

해외시장조사

해외시장조사는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 잠재 바이어 파트너 발굴, 시장 동향,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타깃 시장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지원내용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참가비 (VAT 포함)	비고
사업 파트너 연결 지원	① 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 수입 업체 조사 ② 발굴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 교신지원 (2개월)	33만원(2~3개사) *先입금 후 사전 조사 착수	사회적경제 기업, 소상공인 대상 20% 할인
항목별 시장 조사	수요동향, 수입동향/수입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등 조사	16만 5천원 / 1항목	-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조사 신청 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	33만원(3개사)	-
해외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기업 존재 여부, 대표 연락처 확인 ※ 기업 신용도 및 구매담당자 연락처 제공 불가	연간 6개사까지 무료 * 추가시 건당 1만원 부과	-
거래선 관심도 조사	국내업체가 보유한(연락처 등 既확보된) 바이어의 관심 유무	5만 5천원/개사	-
맞춤형 해외 시장 조사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섭외한 현지 전문가 (또는 전담인력)을 활용 고객 요구에 맞게 수행하는 맞춤형 유료 심층조사 서비스	조사내용 및 조사 방법에 따라 개별 협의를 통해 책정	-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30대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2배 적용

※ 바우처 이용가능 서비스(사업파트너 연결지원/항목별 시장조사/원부자재공급선 조사)

지원절차

- ① KOTRA 사업신청 홈페이지(kotra.or.kr/biz) → ② 상단 메뉴 중 '맞춤형 서비스' → ③ '해외시장조사' 클릭 → ④ 상단 항목 중 '신청하기' → ⑤ 사전 유선상담(본사) → ⑥ 해외무역관조사 가능여부 검토(약 9일) → ⑦ 조사 시작(3주) → ⑧ 결과보고서 송부(본사) → ⑨ 보고서 확인 및 A/S 신청
-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수수료 납부 시기 다름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상담센터 : 1600-7119

5-4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GCL Test(Global Competence Level Test)는 기업의 수출 및 해외마케팅 부분별 세부역량을 진단하고 역량별 수출 지원 사업을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진단 결과를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KOTRA 기업회원
- 이용료 :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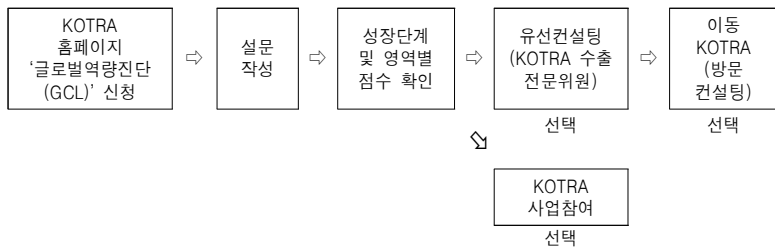
지원내용

- 기업의 수출역량 성장단계 확인 및 세부역량별 강약점 분석
 -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 등 컨설팅* 제공
- * 유선, 이메일, 내방, 기업방문 중

신청·접수

- 신청시기: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① KOTRA 사업신청 홈페이지(www.kotra.or.kr/biz/) 접속
 - ② 상단메뉴 중 '맞춤형 서비스' 클릭
 - ③ 글로벌역량진단(GCL TEST) 클릭
 - ④ 로그인 후 설문 진행

진행절차



* 컨설팅 신청 시, GCL에 결과에 대하여 1~2일 이내에 담당 수출전문위원이 고객님의 직접 연락을 드립니다.

문의처

-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02-3460-7344

5-5

수출상담회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한국 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업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복잡한 시장조사와 바이어 발굴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출장을 가지 않고도 바이어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지원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 선정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한 유치를 희망하는 해외바이어와 취급 품목이 일치하여, 바이어가 상담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 참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 사업비는 KOTRA 및 주최기관(지자체, 유관기관)이 지원 |
| 지원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품목에 대한 홍보 활동 추진 ● 방한 바이어와 1:1 온라인/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 수출상담 사후 A/S지원 |
| 진행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RA 홈페이지 및 buyKOREA.org에서 연간계획 확인 → 주최기관 (KOTRA, 지자체, 유관기관)에 사업신청 →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당 품목 바이어의 방한 유치 → 주최기관을 통해 방한 확정 바이어와 1:1 상담추진 추진 → 주최기관 및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출 상담 후속 지원 ● 2022년도 수출상담회 일정은 KOTRA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안내센터(1600-7119) - 1번(KOTRA 사업안내) |

5-6

무역사절단

중소기업의 수출애로해소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KOTRA가 지자체, 유관기관과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해외로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KOTRA 해외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수출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내수·수출초보기업, 벤처기업 등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신청업체 품목에 대한 해외무역관의 상담가능성 평가와 파견기관의 자체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

- 지원내용**
- 신청 품목에 대한 목표시장별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제공
 - 목표시장 적격 바이어와 1:1 온·오프라인 상담회 개최
 - e-카탈로그 제작,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오프라인 판촉전 연계, 긴급지사화 등 사절단 파견 전·후 단계 지원 서비스 연계
 - KOTRA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활동 기회 제공
 - 수출상담 사후 A/S지원

- 신청·접수**
-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에서 연간계획 확인
 - 사절단 파견기관(광역 및 기초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참가신청

- 처리절차**
-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선정)

사업공고

신청·접수

상담가능성 조사

참가기업 확정

- (무역사절단 파견)

사절단 파견

상담 주선

바이어1:1상담

- 지원규모**
- 무역사절단 170회 파견, 1,800개사 내외
 - * '21년 지원현황 : 170회 파견, 참가기업 대략 2,180개사

- 문의처**
- 수출기업화팀 / KOTRA 홈페이지

Q&A

Q. 코로나 19 상황으로 무역사절단 파견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현지 파견이 불가능할 경우, 무역사절단은 온라인 사업으로 변경 추진됩니다. 이 경우, 바이어와의 1:1 상담회는 화상상담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e-카탈로그 제작, 현지 특성화 사업(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오프라인 판촉전 연계 등) 및 긴급지사화 사업이 연계되어 진행됩니다.

Q. 무역사절단 참가 신청은 소재지 구분없이 연간사업계획상 명시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무역사절단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유관기관 등 파견기관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협업기관에 따라 관할 소재지 또는 관련 산업군 대상으로 업체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바, 관심있는 사업의 주관부서에 먼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KOTRA와 유관단체가 연간 130여회에 걸쳐 국제 유명 전시회 및 신흥 유망 전시회에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 수출업체의 전시회 참가를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 대상기업 :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참가비 : 직접경비(부스 임차료, 전시디자인설치비)의 70% 국고지원
- 온·오프라인 70% 국고지원 동일
● 운송비 : 1부스당 1CBM 한도 해상 편도운송비 100% 지원
● 행정서비스 : 한국관 주관 운송사·여행사·장치사 선정, 전시장 출입증, 주최측 디렉토리 신청 등
● 해외마케팅 :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 잠재 바이어 리스트 제공, 현장 사무국 운영, 사후관리, 샘플 발송비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해외전시회 연계 온라인 한국관 사업을 통해 분기말마다 사전·사후 화상상담 지원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정기준 : 수출실적, 기업경쟁력, 일자리창출, 전시적합성, 정책우대 가점에 따라 본사, 무역관, 공동수행기관이 평가
- 정책 우대 가점 사항 : 신규수출기업화 또는 내수기업, 전문무역상사, 5대 소비재, 사회적 경제기업, 유턴기업, 뿌리전문기업 등

* 글로벌 전시 플랫폼(www.gep.or.kr) 공지사항에서 세부 사항 확인 가능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정책우대 가점 서류

처리절차 ●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한국관 주관 운송사, 여행사, 장치사 협의 → 사전 마케팅 지원(한국관 디렉토리 제작 지원, 잠재 바이어 리스트 제공) → 전시회 참가 → 사후관리

지원규모 ● 전시회별 상이
- 전시회별 업체 모집규모는 글로벌 전시 플랫폼(www.gep.or.kr)
통해 확인 가능

문의처 ● 해외전시팀 : 02-3460-7286, 3331

5-8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에 개별(독자)적으로 참가 시, KOTRA가 부스임차비, 장치비, 편도 전시물품 운송비, 주최사 제공 마케팅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대상기업 : 2022년 내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민간 협단체를 통해 전시회 신청 및 참가 시, 필수 구비서류 제출의 경우에 한해 지원
 - 지원규모 : 총 1,500여개사

- 지원내용**
- 선정기업 당 연간 최대 1회, 50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사후정산)
 - 부스임차비, 장치/집기비, 편도 전시물품 운송비(1CBM / 9sqm, 수출통관 기준), 주최사 제공 마케팅비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정기준 : 수출실적, 진출지역 유망성, 기업경쟁력, 전시참가 기대 성과, 수혜실적, 정책호응도, 정부정책 우대 기타 가산점 평가
- 신청방법 : 글로벌 전시 플랫폼(www.gep.or.kr)의 모집공고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통장 사본
 - 정책우대 가점 서류

- 진행절차**
- 글로벌 전시 플랫폼(www.gep.or.kr)의 모집공고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서류심사 → 선정업체 발표 → 전시회 개별참가 → 지원금 신청 → 증빙서류 검토 → 지원금 교부

- 문의처**
- KOTRA 해외전시팀 : 02-3460-7256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02-420-2042

5-9

한국우수상품전

신흥 유망시장, 전략시장 등 국내기업의 시장진출이 어려운 지역에서 개최되는 단독 해외전시회입니다.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외 한류행사, 사회 공헌 활동(CSR) 등의 연계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합니다.

대상기업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전시 품목의 현지 시장성
- 전시회 참가 후 수출 기대성과
- 최근 3개년 개최지역 사업 참가실적
- 고용창출우수기업 여부

지원내용

- 온라인 전시관 구축 및 화상상담회
- 기본부스 1부스
- 전시품 운송 (해상단체편도운송, 1CBM 한도)*
 - * 현지 통관법 의거 정식 통관 불가시 지원 불가
- 단체항공 및 숙박 주선 (항공임 및 숙박비는 출장자 부담)
- 바이어 상담주선 및 현지 체류기간 동안 단체이동 차량 지원

참가비 ● 1부스 당 50만원 내외 (잠정)

시기/장소 ● 연중 추진 / 오프라인

신청·접수 ●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www.gep.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인터넷 신청시 입력), 참가각서(인터넷 신청시 동의)
- 전시품목 상세서 (제품 설명 인터넷 기재, 제품 브로슈어 파일 첨부)
- 사업자 등록증 (인터넷 신청시 파일로 첨부)

문의처

- 전략전시팀 / 02-3460-7295, 7272

Q&A

Q. 한국우수상품전 개최지 및 개최시기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를 통해 모집공고 예정이니 확인 바랍니다.

Q. 한국우수상품전 바이어 상담주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현장에서 원활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희망 바이어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개최일 전까지 2~3차에 걸쳐 참가기업에 바이어 정보를 제공합니다.

용어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응자잔액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5-1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아시아 대표 식품분야 B2B 전시회

‘SEOUL FOOD’는 1983년 최초 개최 이래 40년간 지속된 국내 최대 규모 식품 산업 전시회이자 국내식품업계의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KOTRA 대표 전시회입니다. 전시회 품목군은 식품, 식품 관련 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식품관련기업(식품, 식품기기, 포장기기, 호텔레스토랑기기, 안전기기 전반)

시기/장소 ● 2022. 6. 7.(화)~10.(금) / KINTEX 1전시장(1~5홀)

신청·접수 ● 신청기간 내 전시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 후 참가비 납부
● 참가비

구분	참가비(Vat 포함)	제공내용
독립식 부스	2,750,000원	전시면적만 제공(부스자체시공)
조립식 부스	3,080,000원	면적+기본장차+상호간판+조명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할인을 위한 각종 서류

처리절차 ● 전시회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인보이스 발송 → 참가비 납부 → 부스배정 → 전시회 참가

* 홈페이지 : seoulfood.or.kr

문의처 ● (식품분야) KOTRA 전략전시팀 : 02-3460-7267
● (식품기기분야) KINTEX 소비재유통팀 031-995-8213

Q&A

Q. 조기할인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A. 조기할인 기간은 2022년 2월 28일(월)이고, 해당 날짜까지 온라인신청 및 참가비 납부 50% 납부 시에만 조기할인이 가능합니다.

Q. 할인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할인은 중복(조기/규모/특별/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적용되며, 독립식/조립식 부스에 관계없이 독립식부스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5-11

디지털 마케팅(buyKOREA)

온라인 B2B 수출지원 플랫폼

buyKOREA는 전 세계 바이어와 한국공급업체를 연결해 주는 글로벌 B2B e-마켓 플레이스입니다. buyKOREA는 한국 상품 해외홍보, 해외 바이어의 구매정보 검색 등록 및 검색, 거래대금 온라인 결제, 국제배송(EMS,DHL) 등 거래프로세스를 모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수출상품등록	· 수출상품 등록 가능 · 유튜브(YouTube)에 등록된 상품 동영상을 바이코리아에 등록 가능
바이오퍼 조회	· KOTRA 및 해외바이어가 등록된 구매 오퍼 검색 가능
인콰이어리 발송/수신	· 바이오퍼 검색 후 연락희망 바이어에게 인콰이어리 발송 가능 · 자사 상품을 검색한 바이어로부터 인콰이어리 수신 가능
수출대금 결제	· buyKOREA에서 온라인 수출대금 결제 가능 (PG사*와 별도 계약 필요) - VISA, Mastercard, JCB, UnionPay, Alipay, WechatPay, Paypal * Payment Gateway
수출상품 발송	· EMS, DHL 배송접수 및 할인혜택(별도계약필요)
비즈니스행사	· KOTRA의 오프라인 사업신청 가능
온라인전시관	· KOTRA 오프라인 사업과 연계하여 비즈니스 매칭 등을 위한 온라인 전시관 운영

신청·접수 ● KOTRA 기업회원가입 후, 바이코리아(www.buykorea.or.kr) 로그인

문의처 ● KOTRA 바이코리아팀 : 02-3460-3311

5-12

코로나19 대응 화상상담

화상상담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출장과 대면상담이 불가능한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격 온라인 화상상담 발굴, 지원, 통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기업
 - 기본적으로 '국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나, 프로젝트 수주 등 특수 분야의 경우 대기업도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기업
- ▶ 휴/폐업 및 '관심고객'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

지원내용

- 화상상담 관련 지원 서비스 제공
 -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 무료 통역 지원
 - 화상상담 장소* 및 화상상담 솔루션 제공(신청시)
 - * KOTRA 본사 사이버무역상담실 또는 KOTRA 지방지원단

신청·접수

- KOTRA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참가희망 사업 선택 후 신청
 - ① (회원가입)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 기업회원 가입 (무료)→KOTRA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아이디·패스워드로 바이코리아(www.buykorea.or.kr)에 로그인
 - ② (상품등록) 바이코리아(www.buykorea.or.kr)→My buyKOREA→내상품관리→상품등록
 - ③ (참가신청) 바이코리아(www.buykorea.or.kr)→모집중인 행사→참가희망 행사(클릭)→참가신청서 작성
 - ④ (신청완료) 해당부서/지원단에서 참가 선정여부 안내

문의처

- KOTRA 사업 신청 페이지(kotra.or.kr/biz)에서 '맞춤형 서비스→디지털 B2B 플랫폼→코로나19 대응 화상상담'에서 본사 산업별 담당 부서 및 지방지원단 연락처 확인

Q&A

Q. 현재는 '행사' 참가를 통해서만 화상상담 신청이 가능한데, 개별 화상상담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현재 KOTRA 홈페이지에서 개별 화상상담 신청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개별 화상상담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KOTRA 본사의 산업별 부서 또는 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KOTRA 지방지원단에 유선으로 연락하셔서 화상상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3

K-스튜디오 활용 디지털 마케팅 사업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콘텐츠 제작 인프라인 K-스튜디오를 기반으로 웨비나, 라이브커머스, 제품 홍보영상 등 비대면·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해 디지털 무역 시대에서의 국내 기업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기업
- ▶ 휴/폐업 및 '관심고객'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

지원내용 ● 'K-스튜디오' 보유 지원단을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 스튜디오 보유 지원단('21.12월 기준) : 광주, 부산, 대전충남, 강원, 충북
- △인플루언서 활용 라이브커머스 △해외진출을 위한 웨비나 △기업의 제품 홍보영상 제작 △지역 마케터 인재 육성을 위한 마케터즈 사업 등 지역특화 서비스 제공

* 보유 지원단/무역관별 지원 사업 상이

신청·접수 ● KOTRA 사업 신청 페이지(kotra.or.kr/biz) → 사업안내에서 모집 중인 국내외 K-스튜디오 활용 디지털 마케팅 사업 확인 후 신청

* 지원단/무역관별 지원 내용 및 범위 상이

문의처 ● 국내기업 소재지 혹은 진출희망 지역에 위치한 지원단/무역관 연락처 확인

Q&A

Q. 본사/지원단 K-스튜디오를 예약 후 사용할 수 있나요?

A. 현재 본사 K-스튜디오는 대외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지원단의 경우, 아래 지역 및 담당자를 확인하여 개별 예약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KOTRA 광주전남지원단 062-369-8613

(부산) KOTRA 부산지원단 051-740-4152

(대전세종충남) KOTRA대전세종충남지원단 042-341-8317

(강원) KOTRA 강원지원단 070-8822-5311

(충북) KOTRA 충북지원단 070-4185-6949

5-14

수출바우처사업

원하는 수출지원서비스를 바우처로 구매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역량에 맞는 지원사업을 선택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수출지원서비스를 자유롭게 구매해서 이용하는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자/기업
- ▶ 기타 세부 사업별로 규정하는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등

지원내용

- 중소기업을 선정, 온라인 포인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발급
 - 바우처 금액은 정부보조금과 기업분담금의 합계액으로 표시
 - 기업분담율은 30~70%로 사업별, 기업규모별로 상이
 - 기업은 발급받은 바우처로 exportvoucher.com 메뉴판에 등록되어 있는 13개 분야, 7,000여개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서비스 분류	서비스 메뉴 (예시)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CI 및 BI개발, 온/오프라인 제품 매뉴얼 제작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조사/일반 컨설팅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조사 및 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서비스 분류	서비스 메뉴 (예시)
역량강화 교육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서류대행/현지등록/ 환보험	계약서, 통관/선적 필요서류, 결제관련 서류,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통번역	계약/법률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번역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디자인
홍보동영상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서비스
특허/지재권/시험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IP 전략 컨설팅
국제운송 (‘21년 신설)	보험, 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및 도착국 비용 제외)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 신규 도입, 21년 추경 사업으로 한시 지원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를 본사업으로 추진

신청·접수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22년 1차 사업의 신청/접수기간은 '21.12.7.~'21.1.7) (변경 가능)

심사·평가 주요내용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내 공고내용 참조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계획서 등
- 제출 서류 세부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공고내용 참조

지원규모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6개 사업 000개사
- 산업부 소관 6개 사업 : 중견 글로벌 지원,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그린 선도기업 육성, 물류전용수출바우처
- * '21년 지원현황 : 약 1,300개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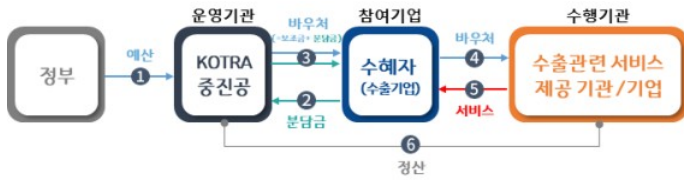
문의처

- KOTRA 수출바우처팀 : 02-3460-3425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Q&A

Q. 수출바우처로 서비스를 구매한 후, 비용 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수출바우처 발급과 정산은 아래 그림과 같이 처리됩니다.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①국고+②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③바우처(가상 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④,⑤)를 이용한 후 ⑥비용 정산

5-15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내수·초보기업 수출지원

국내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퇴직 무역 전문인력인 수출전문위원과 참가기업을 ‘멘토·멘티’로 지정하여 수출 계약 이행까지 1:1로 밀착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실적 0불) 약 3,000개사,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약 1,500개사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글로벌 역량진단(GCL Test) 선정기준 40점 미만 기업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 ▶ 비영리법인, 외국법인의 본·지점, 국가, 지자체 등

지원내용

- 선정기업 대상으로 수출성약을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 무료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온라인마케팅 지원, 바이어 발굴, 샘플 발송 지원, 유관기관 연계 지원 등 수출에 필요한 사업을 연간 지원

신청·접수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자격 기본요건, 우대서류 제출여부, GCL Test 40점 이상 등 서류 평가 후 수출전문위원의 현장 실태조사 실시
- 고용창출 우수기업, 소상공인,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 기업의 경우 서류평가 제외 (단, 현장평가는 실시)
- 수출 제품·서비스 보유기업, 영문 카탈로그 보유기업, 해외 인증 보유 기업 등 우대

- 내수기업의 경우, 과거 수출실적이 있었으나, '21년 수출 중단으로 내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우선 선정
- 초보기업의 경우, '21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 후 수출 발생으로 초보기업으로 전환 기업을 우선 선정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온라인 신청)
- 수출희망 제품/서비스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택)
- 영문 회사소개서, 카달로그 등(선택)

처리절차



문의처

- KOTRA 수출기업화팀 : 02-3460-7543, 3236, 3237

Q&A

Q. 자세한 선정 기준이 뭔가요?

A. 온라인으로 신청한 신청서 검토, 글로벌역량진단 40점 이상, 우대조건(소상공인, 고용우수기업 등)을 1차 검토합니다. 이 후 수출전문위원의 기업 실태 조사를 우선·방문 등을 통해 현장평가를 2차로 실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Q. 수출전문위원은 어떤 분이신가요?

A. 무역회사, 무역유관기관, 제조업체 해외영업부 근무 경험이 있으며 20년 이상 실무 경험을 보유한 퇴직 무역전문가입니다.

5-16

지사화사업

중소·중견기업의 현지지사 역할 대행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역할을 대행,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해 드립니다. 해외진출 단계별 수요에 따라 OKTA 글로벌마케터(진입), KOTRA 지사화전담직원(발전), 중진공 해외민간네트워크(확장) 중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공정위 발표 대기업군),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지원내용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간	기업부담금	수행기관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6개월	50만원	OKTA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6개월	180만원	KOTRA
		1년	250~350만원 (지역별 차등)	KOTRA 중진공 OKTA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 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1년	665~1,015만원 (지역별 차등)	중진공 OKTA

* 기업부담금은 각 사업 참여 건별 금액이며, 수출 바우처를 사용하여 기업부담금 납부 불가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 신청기간 : (KOTRA)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중진공 및 OKTA) 모집 시행 차수별 별로 신청기간 운영

- 제출서류**
- 상품소개 자료(브로셔, 제품사진 등), 납세증명서, 인증서(보유 시) 등

처리절차



- 문의처**
- (KOTRA) 유망기업팀: 02-3460-7439, 7441, 7445
 - (중진공) 글로벌사업팀: 055-751-9679, 9680, 9682
 - (OKTA) 해외지사화사업팀: 031-927-9218

5-17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수출바우처 사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강소중견기업을 선발, 1:1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합니다.

- 지원대상**
-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견기업, 월드클래스 지정기업, 중견글로벌 졸업기업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매출액 1조 이상의 기업은 지원 불가
-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8회 이상 참가기업

- 지원내용**
- 참가기업과 KOTRA가 공동으로 해외시장 분석을 통해 목표시장을 선정 후 진출전략, 액션플랜(로드맵) 수립 및 시행
 -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단독 로드쇼·기술세미나 등 고객행사, 전문 전시회 참가, 홍보, 시장조사, 세일즈랩 운영, 법인 설립, 국제 운송비 지원 등
- (수출바우처사업 內 메뉴판 선택을 통해 시행)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Jumping중견글로벌 신설

지원규모 ● 매년 000 개사

구분	내수중견	Jumping 중견	중견 글로벌	Post 중견
지원대상	①중견기업 ②중견후보기업 ③예비중견기업	①중견후보기업 ②예비중견기업	①월드클래스 선정기업 ②중견기업 (중견유예포함)	중견 글로벌 졸업기업
지원기간	최대 3회	최대 5회	최대 5회	최대 3회
매칭펀드 총액	최대 10,000만원	최대 10,000만원	(중소) 최대 13,000만원 (중견) 최대 20,000만원	최대 20,000만원
국고지원 한도 (보조율)	국고보조 7,000만 원 (70%)	국고보조 7,000만원 (70%)	(중소) 최대 9,100 만원 (중견) 최대 10,000만원	최대 6,000만원

신청·접수

- 신청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4대보험 가입자명부, 중견·중소기업확인서 등
- 처리절차



문의처

- KOTRA 강소중견기업팀 (02-3460-7281/7238)

Q&A

Q. 한 번 사업에 선정이 되면 몇 년을 지원받으며, 최대 몇 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사업은 연간 사업으로, 한 번 선정될 경우 1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사업에 계속 참가를 위해서는 매년 신청 및 선정 과정을 거쳐야하며, 최대 8회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내수중견기업 :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10% 미만이거나 수출액이 1,000만달러 미만인 기업

후보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업

유예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의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에 해당하는 기업

예비중견기업 : 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수출증가율 높은 강소기업 우대)

5-18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발굴 및 육성

수출 상품 다양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계시장점유율 5% 이상 및 5위 이내 상품과 생산기업(7년 이내 진입 가능 상품 및 생산기업 포함)을 선정하여, 세계일류상품 로고 사용과 해외마케팅 사업 등을 통한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하기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 및 기업

구분		선정기준
현재 세계 일류	상품	해당 상품이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이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일 것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일 것 단, 서비스업 상품은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의 요건만 충족하여도 현재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생산 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차세대 세계 일류	상품	해당 상품이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 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상품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받아 선정할 수 있다.
	생산 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3위 이내인 기업

구분	선정기준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이나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4.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5. 최근 4년 이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6. 최근 5년 이내 월드클래스300으로 지정된 기업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의 생산기업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받아 선정할 수 있다.

지원내용

- KOTRA, 간사기관 및 유관기관의 직·간접 지원 제공

구분	지원 내용
직접지원	세계일류상품 로고 사용 지원
	KOTRA가 지원하는 해외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수출상담회,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선정 우대 등
간접지원*	유관기관 지원사업 활용 시 우대 혜택
	(참여기관) 조달청, IBK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공인검사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 '21년 기준, 변동사항 및 세부내용은 세계일류상품 홈페이지 참고(www.wcp.or.kr)

신청·접수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및 세계일류상품(www.wcp.or.kr) 홈페이지의 공고문 확인 후 해당 간사기관에 문의하여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선정 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매출액·수출액, 지적재산권, 인증 및 수상 등

문의처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044-203-4377)
- 운영기관 : KOTRA 강소중견기업팀(02-3460-7233, 7231)
- 온라인 문의 : wcp@kotra.or.kr

* 세계일류상품 홈페이지 참고(www.wcp.or.kr)

Q&A

Q. 세계일류상품 신규 선정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대개 5~6월경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업종별 간사기관의 추천위원회(8월경)를 거쳐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10월경)에서 최종 선정 되며, 이후 선정기업 대상 인증서 수여식(11월경)이 개최 됩니다.

Q. 간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업종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해당 간사기관이 없는 경우, wcp@kotra.or.kr로 신청하시면 KOTRA에서 진행되는 추천심의위원회로 배정이 됩니다.

용어설명

간사기관 : 신청기업의 선정기준 충족 여부 및 성장성 등을 1차적으로 평가하는 추천위원회를 주관하는 산업별/품목별 협회 및 조합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

5-19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진입 지원 사업

글로벌 수요연계 해외진출 지원사업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글로벌기업의 개방형 혁신수요를 연결하여 기술실증, 공동개발, 투자유치 등 레퍼런스 구축을 통한 해외 진출 및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한국 스타트업
 - 스타트업: 해외 시장 진출을 상위 목표로 가지고 있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비상장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예) 예비창업자, 혁신기술 및 혁신제품 미보유 기업, 상장 기업, 국내에 법인인 없는 스타트업 등

지원내용

- 추진 과정

수요 발굴

스타트업 모집

글로벌기업 심사

1:1상담 지원

- 스타트업거점무역관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수요를 발굴해 수요에 맞는 적격 스타트업을 모집. 글로벌 기업 심사를 통해 스타트업이 선정되면 선정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간 1:1 상담 또는 피칭데이 등 지원
- GPOI 전용관 (오픈이노베이션 온라인 플랫폼)
 - 오픈 이노베이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개방형 혁신 수요에 대한 정보를 상시 제공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buyKOREA 사이트 내 GPOI 전용관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수요 및 온라인 접수 신청 가능
- ▶ 글로벌 기업 뿐 아니라 기업 연구소(코퍼터랩), 병원 등 수요발굴처 다변화

- 신청·접수**
- www.kotra.or.kr/biz 또는 www.buykorea.or.kr 에서 온라인 접수
영문 피칭덱 및 참가 신청서(영문) 제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술 수요 적합도, 제품의 혁신성, 해외진출 준비 역량 등

- 문의처**
- KOTRA 스타트업지원팀(02-3460-7394)

용어설명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 개방형 혁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함과 동시에 내부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

5-20

클라우드펀딩/오픈마켓 연계 혁신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사업

스타트업 입점 지원

클라우드 펀딩 활용 방법 및 미국 아마존 입점 방법 교육을 통해 국내 혁신 스타트업의 해외 수출 지원

지원대상

- (클라우드펀딩) 예비 창업자 및 국내 스타트업
 - 현지 시장에 출시된 적 없는 혁신 기술 소비재 보유 기업
- (아마존)창업 7년 이내 국내 스타트업
 - 아마존 입점 가능 완제품을 구비한 제조기업 및 자체 브랜드 기업
 - 품목의 가짓수가 많고, 판매 개시 가능일이 빠른 기업 우대
 - 미국 수출 인증 보유 우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클라우드펀딩) 시장에 유통된 적 있는 제품
- ▶ (아마존)입점 불가 품목(냉장보관식품, 주류, 미술품, 귀금속, 상품권, 소프트웨어, 계약 서비스, 향균 관련 제품, 인증절차가 복잡한 제품 등)

지원내용

- (클라우드펀딩) 클라우드펀딩 입점 지원 웨비나, 상담회
 - 해외클라우드펀딩 플랫폼(마쿠아케, 킥스타터, 인디고고) 입점 상담
 - 해외클라우드펀딩 플랫폼 입점 방법 및 노하우 웨비나
- (아마존) 아마존 US 입점 교육
 - 집체 교육 16시간; 계정생성, 카테고리 승인, FBA 입고, 광고
 - 교육 수행사 입점 관리 및 컨설팅
 - 아마존코리아 매니저 이메일 컨설팅
 - 디지털 마케팅 지원 등

신청·접수

- www.kotra.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 희망 품목에 대한 설명서 제출 → 이메일 선정 발표
 - * 신청 마감 후 14일 이내
 - (아마존) 기수별 신청 기간 3주 → 이메일 선정 발표
 - * 신청 마감일 후 7~10일 이내

문의처

- KOTRA 스타트업지원팀(02-3460-7366, 7368)

Q&A**Q. 아마존 입점지원 사업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업이 제공한 정보를 종합하여 선정합니다. 제품사진 보유 여부, 영문 설명 가능 여부, 홈페이지 보유 여부, 입점 가능 시기, 판매가능 제품 수, 해외 수출 인증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Q. 아마존 입점 절차와 관련한 KOTRA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A. KOTRA는 예산을 투입하여 아마존 입점 컨설팅사를 선정하여 기업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아마존 계정, 배송, 브랜드 등록과 같은 입점 절차 관련한 일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마존 셀러 고객센터, 선정기업의 경우 컨설팅사 혹은 아마존코리아 매니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21

CES 혁신상 수상 지원

스타트업 입점 지원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선정하는 'CES 혁신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우리 스타트업이 해외의 공신력있는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업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 국내 스타트업
 - 혁신적인 기술과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춘 제품을 가진 기업
 - 혁신상 수상 연도에 신규 출시하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 수상 노하우 공유 웨비나
 - 전년도 수상경험이 있는 기업 초청
- CES 혁신상 영문 신청서 작성 멘토링
 - 스토리빌딩 방법, 영어 문법 및 어휘 검사
- CES 혁신상 신청비
 - \$650~\$950 한도 내 실비지원

신청·접수

- www.kotra.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3주~4주
 - 이메일 선정 발표(신청 마감일 후 2주~3주 이내)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혁신성 및 디자인의 심미성
- 제품 관련 시각적 자료 보유 여부(이미지, 영문 홍보영상 등)
- 당해연도 신규 출시 제품 여부
 - * 미국 CTA 혁신상 수상 기준 참고

문의처

- KOTRA 스타트업지원팀(02-3460-7366)

Q&A

Q. 혁신상 신청금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A. 사후 실비 정산의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영문 혁신상 신청서, 영수증, 매출 전표 등을 증빙서류로 받은 후 1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Q. 지원 내용 중에 CES 전시회 참가도 포함되나요?

A. 스타트업지원팀에서는 CES 혁신상 수상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시회 한국관 참가 관련 문의는 'KOTRA 해외전시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22

KOTRA 글로벌접프300

연간 맞춤형 스타트업 지원 사업

1년간 바이어, 투자자, 글로벌기업 등 해외파트너 발굴,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시장 조사, 전문위원 컨설팅, 컨퍼런스 참가 지원, 해외 법인 설립 지원 등 개별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해외 시장에서 확산성이 있는 혁신 제품 혹은 서비스를 보유한 시리즈A 이상 국내 스타트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상장 기업
- ▶ 투자 유치를 받은 기록이 없거나 재무건정성이 부족한 기업
- ▶ MVP가 없거나 MVP의 혁신성이 부족한 기업
- ▶ 해외 진출 준비가 부진한 기업 등

지원내용

- 해외 시장 조사
 - 목표 시장 전망, 현지 경쟁사 동향, 현지 VC의 투자 동향 등
- 투자자, 바이어, 글로벌기업 등 해외 유망 파트너 연결
- 해외 기업 대상 기술 실증 지원
- 수출전문위원의 종합 수출 컨설팅
- 해외법인 설립 및 해외전문인력 채용 지원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OTRA 사업 홈페이지에서 ① 해외진출 역량평가 설문 제출 후, ② 신청서 제출
- 신청 기간
 - '21.10.22~'21.11.29(연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21년에 선발)

- 제출 서류
 - 해외진출 역량평가 설문, 사업 신청서, 영문IR피치덱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문제&솔루션, 제품/서비스, 비즈니스모델, 재무, 시장, 경쟁사, 팀빌딩, 견인력, 마일스톤, 글로벌 시장 확장성의 10개 항목으로 심사

문의처

- KOTRA 스타트업지원팀(02-3460-7368)

Q&A

Q. 2023년 글로벌점프300은 언제 모집하나요?

A. 현재 내부에서 논의중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으나, 2022년 10월~11월경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용어설명

스타트업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J커브의 성장을 이루는 비상장 기업

5-23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해외 유망 프로젝트 발굴, 전파, 발주처 네트워크 지원, 입찰참여 지원 등 단계별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한 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관해 지원이 필요한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동 지원사업은 프로젝트 수주 지원이 목적이며 벤더 대상 일반 기자재 납품은 대상이 아니므로 후자는 수출 관련 다른 서비스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애로상담) 신청 시 내용 검토 후 이메일, 유선 또는 대면 상담 서비스 제공
- (프로젝트 정보) KOTRA 해외조직망을 통해 발굴된 국가별 유망 프로젝트 정보 온라인 조회
 - 접속 : <https://news.kotra.or.kr> → (우측 메뉴)해외투자 → (좌측 메뉴)유망프로젝트
 - 뉴스레터 발송 : 신규 등재 해외 프로젝트 정보 메일 알리기
- (해외 발주처 상담)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MDB 프로젝트 플라자 등 발주처 유치 프로젝트 설명회 및 상담회

신청·접수

- (애로상담) consultants@kotra.or.kr 로 이메일 접수
- (해외 프로젝트 정보) 상기 홈페이지 통해 자체 조회
 - consultants@kotra.or.kr 로 뉴스레터 발송 신청 가능
- (해외 발주처 상담) 각 사업 홈페이지 통해 신청
 - 사업공지 : <https://kotra.or.kr>
 - consultants@kotra.or.kr 로 뉴스레터 발송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애로상담, 프로젝트 정보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해외 발주처 상담 : 홈페이지 접속 시 기본정보입력

처리절차

- (애로상담) 이메일 접수 → 애로상담센터 검토 → 1차 상담(국내)→ 필요시 : 2차 상담(해외무역관) → 지원 조치(조사·상담) → 피드백 및 완료
- (해외 프로젝트 정보) 별도 절차 없음
- (해외 발주처 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신청 및 기업 정보 등록 → 해외 발주처 및 프로젝트 정보 확인(온라인 사전 게재) → 상담주선 기간에 맞춰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신청 → 상담회 기간 온라인 화상 상담 또는 오프라인 현장 상담 → 상담 결과 제출 → 사후 지원

지원규모

- 제한 없음

문의처

- 그린산업팀 : 02-3460-7484

5-24

ICT 글로벌멘토링센터

ICT 기업 해외진출 상담·컨설팅

ICT 분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전문 상담센터로 ICT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시 직면하는 단계별 문제를 해결하고 진출국 현지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및 ICT 융합 수출희망 기업
 - 디지털뉴딜 분야(D.N.A., 초연결신산업, 스마트SOC*, 디지털정부 등)
 - *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스쿨, 스마트의료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일반 소비자, 전자부품 및 소재, 자동차 등 기타 분야의 관련 기업

지원내용

- 해외 ICT 시장진출 애로해결 및 컨설팅
 - 해외진출 사전 준비
 - 국가정보 및 시장현황
 - 기업 및 제품 현지화
 - 현지 거점 설립
 -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안내
 - 협상 및 계약
 - 기타 해외진출 관련 사항

신청·접수

- ICT 글로벌멘토링센터 전화/이메일 상담
 - 공정훈 전문위원 (02-3460-7754 / danikong@kotra.or.kr)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접속

무역투자상담

상담방식

온라인상담

- ICT 글로벌멘토링센터 내방 상담
 - KOTRA 본사 5층 디지털그린실 ICT융복합팀 내 상담센터 방문
- 기업 출장상담
 - 제품 및 서비스 확인 등 기업 현장방문 필요 시, 출장상담 가능
- 제출서류
 - 서류 불필요하나 원활한 상담을 위해 회사 및 제품 / 솔루션 소개 자료 권장
- 처리절차
 - 전화 / 이메일 / 내방 / 출장 상담



- 온라인 상담



문의처

- KOTRA 디지털그린실 ICT융복합팀 ☎ 02-3460-7754

Q&A

Q. 해외 수출이나 진출 경험이 없는 초보기업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제품 및 솔루션의 현지화 준비, 타겟국가 선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부터 수출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

5-25

ICT기업 해외수출지원(K-Global@)

ICT 기업 전시상담, 네트워킹

'K-Global@'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통해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 ICT 시장에 중소·벤처기업 해외수출을 확대하며 전시상담, 컨퍼런스, 기술교류, IR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ICT 분야 모든 기업
 - H/W, S/W, 모바일, 정보보호, 디바이스, IT 서비스 등

지원내용

- ICT 분야 융복합사업 지원
 - 무역(전시상담회), 정보(컨퍼런스), 투자(스타트업IR), 네트워킹 등
- 국내기업 및 해외 바이어(발주처) 수요 연계 사업 추진 및 후속 지원
 - 참가비 무료 (항공료, 체재비 등 개인경비는 참가기업 자체 부담)

신청·접수

- 매 개최 시기 약 3~4개월 이전 KOTRA 홈페이지에 사업 신청공고문 게재
 - 세부일정 문의 요망
- KOTRA 홈페이지 신청 방법 (www.kotra.or.kr/biz)

사업영역 소개

산업별특화지원

ICT

K-Global@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기업/제품 소개 카탈로그,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
- 선정절차

공고 및 접수

현지 전문가 심사

결과발표

사업참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규모 : 30~40개사 선정

문의처

- KOTRA 디지털그린실 ICT융복합팀 ☎ 02-3460-7472

5-26

해외IT지원센터

ICT 기업 입주사무실·현지화 지원

국내 ICT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실리콘밸리, 베이징, 도쿄 등 주요 ICT 거점 지역에 우리기업이 입주하여 현지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수출역량을 보유하고 현지 법인 설립 등 본격적인 해외진출 단계에 있는 중소·중견 ICT 기업
 - 국내에 본사가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공정위 상호출자 제한 기업군
- ▶ 휴, 폐업 상태의 기업
- ▶ IT지원센터 기 입주, 졸업 기업의 자본 60%이상을 소유한 기업

지원내용

- 운영지역
 -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 현지 사무공간(입주사무실) 제공 및 현지 정착 지원
- 현지 바이어 발굴, 소개 및 상담 기회 제공
- 국내·외 투자가 및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 ICT정보 제공 등

신청·접수

- 신청방법
KOTRA 홈페이지 상시모집 (www.kotra.or.kr/biz)

맞춤형 서비스
해외 인프라공유
'해외IT지원센터'
센터별 입주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기업소개서, 해외진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 선정절차



● 지원규모

- 실리콘밸리 55개실, 베이징 16개실, 도쿄 16개실

심사·평가 주요내용

* 1차 서류 및 온라인 비대면 심사, 2차 현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입주기업 적합성 평가

문의처

● KOTRA 디지털그린실 ICT융복합팀 ☎ 02-3460-7472, 7470

5-27

GMV (Global Mobile Vision)

ICT 해외바이어 초청 B2B 상담회

GMV는 2008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ICT 분야 B2B 전시상담회입니다. 국내 유망 ICT 기업과 해외바이어간 직접 상담을 통해 신규 거래선 발굴, 계약 추진, 사업제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유·무선통신, AI, IoT, AR/VR, 로봇, 정보보안 등
-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전자정부, 핀테크, 디지털콘텐츠·서비스 등 다양한 ICT 융복합 솔루션 분야 기업

지원내용

- 전시상담 : 해외바이어·투자사·발주처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
 - 해외바이어·투자사 200개사, 국내 기업 200개사 규모
- 컨퍼런스 : 글로벌 시장 트렌드 공유 및 미래전략 제시
- 스타트업 : 해외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 대상 피칭 IR 진행

신청·접수

- 2022년 6월 / 서울·경기
 - 시기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GMV 홈페이지(www.gmv.or.kr) 온라인 신청
- 참가비 안내

부스안내	기본 부스	고급 부스	스타트업 부스	독립 부스
참가비용	275만원	350만원	80만원	150만원
제공내역	해외 바이어/투자사와의 1:1 비즈니스 상담 - 상담주선시스템 활용 상담신청 및 상담스케줄 제공			
	▶ 3mx3m 조립부스		▶ 3mx1.5m	▶ 3mx3m (면적만)

문의처

- KOTRA 디지털그린실 ICT융복합팀 ☎ 02-3460-7467 / 7461

5-28

ICT컨소시엄 수출지원

해외 ICT프로젝트 수주 지원

ICT컨소시엄 수출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 국내 IT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ICT프로젝트 공동수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깃 프로젝트 추진 지역의 현지 전문가 활용을 비롯한 다양한 수주 마케팅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ICT 분야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전자정부 등)
해외 프로젝트 수주 또는 참여가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협회, 단체, 기관, 대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매년 15개 내외 컨소시엄 선정
 - 기업 자체 발굴 프로젝트 및 타깃형 수주활동 추진 가능

지원내용

- (전담인력 지원) 현지 전문가 채용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 마케팅 추진
- (맞춤형 정보제공) 현지 프로젝트 수주에 필요한 해외시장정보 제공
- (발주처 네트워킹)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발주처 및 바이어 발굴 및 네트워킹 지원
- (현지 세미나 개최) 발주처 및 바이어 대상 기업 홍보 세미나,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지원

신청·접수

- 신청방법
 - 12월 KOTRA 홈페이지 통한 사업신청 (www.kotra.or.kr/biz)

사업영역 소개

산업별특화

ICT

ICT컨소시엄 수출지원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공동참여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 선정절차



● 지원규모

- 15개 내외 컨소시엄 선정

문의처

- KOTRA 디지털그린실 ICT융복합팀 ☎ 02-3460-7470

5-29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

스마트시티 ICT 솔루션 해외마케팅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원으로 국내 유망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을 현지 진출 정보 조사,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수주 지원 마케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스마트시티 구축에 적용되는 ICT 솔루션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주요품목 : 방법/방재, 의료/보건, 교통, 에너지, 물관리, 쓰레기 처리, 전자정부, 시민참여/커뮤니티 등

지원내용

-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운영
 - 현지 수주정보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국별 진출전략 보고서 발간
 - * 협력센터 운영 무역관 : 방콕, 이스탄불, 자카르타, 하노이, 리야드 (5곳)
- 국내기업 및 해외 바이어(발주처) 수요 연계 사업 추진 및 후속 지원
 - 스마트시티 발주처·바이어와 국내기업간 네트워킹 지원(1:1 화상상담 등)
 - 지역별 로드쇼 및 발주처 대상 기술·솔루션 IR 참여 지원
 - 현지 진출 및 수주활동 정보 제공(설명회 및 세미나, 자료 발간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협력센터 추가 (리야드)
- ▶ 정보제공 채널 확대 (설명회 및 세미나)

신청·접수

- 연간 상시 운영 (KOTRA 사업안내 홈페이지 참조)
 - 세부 사업별 행사 개최시기는 KOTRA 사업안내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 등을 통해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문의처

- KOTRA 디지털그린실 ICT융복합팀 ☎ 02-3460-7466

5-30

스마트팜 해외진출 지원

스마트팜 ICT 솔루션 해외마케팅

스마트팜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현지 시장조사, 해외 전시회 한국관 운영, 수출상담회, 해외 수출사절단 파견, 데모온실 구축 등 해외 마케팅 활동을 상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해외진출에 관심있는 국내 스마트팜 관련 기업
 - 스마트온실, 노지재배, 축산, 양식, 가공, 물류·유통, 판매 등 농림축산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ICT 기술 및 솔루션 보유 기업

지원내용

-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 및 발주처 대상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운영
- (해외전시회) 국내외 농업, 축산업, 스마트팜 국제전시회 한국관 운영
- (해외사절단) 목표시장별 핀포인트 수출사절단 파견
- (마케팅 자료 제작 지원)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영문 동영상, 영문 카탈로그 등 디지털 마케팅 자료 제작 지원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절차

공고 및 접수

현지 전문가 심사

결과발표

사업참가

문의처

- KOTRA 디지털그린실 ICT융복합팀 ☎ 02-3460-7467 / 7473

5-31

서비스 BM 사업

융복합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IOT, ICT, 5G의 발전으로 일상생활의 편리성이 가속화되면서 융복합 서비스 업종이 각광 받고 있어, 해외진출이 유망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함

지원대상

- 융복합서비스 해외진출을 수행 중인 국내기업
- 서비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
 - 업종: 비대면 서비스, 공유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등

지원내용

- 컨설팅(자금연계, 기업인증, 지식재산권, 마케팅, 판로개척, 자문컨설팅, M&A 등)
 - 컨설팅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BM 취약분야를 진단하여 자문 및 해결 방안 제시
- 서비스 거점 지원(해외 거점 전담직원을 통한 현지 시장조사, 투자가 매칭 등 현지 애로사항 해결)
 - KOTRA 해외 서비스 거점 무역관을 활용하여 전담직원을 배치, 현지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 해외마케팅 지원(해외 판로개척, 인허가 지원, 상권분석, 법인설립, 홍보 지원을 위한 실비 지원 등)
 - 국고 편당으로 해외마케팅 비용 지원(기업부담금 30%)

사업신청절차

- KOTRA 기업회원가입(최초 1회) ▶ 사업공고/신청접수 ▶ (해외) 시장성 평가 ▶ 사업참가 ▶ F/U

문의처

- KOTRA 지식서비스팀 : 02-3460-7613, hotcoff22@kotra.or.kr

5-32

에듀테크 해외진출 지원

에듀테크 해외 진출 지원

교육 플랫폼·솔루션·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전문전시회, 사절단 등 기업 맞춤형 사업을 통해 수출 성약을 제고하고 해외기업과 네트워킹을 지원

-
- 지원대상** ● 국내 우수 교육 플랫폼 · 솔루션 · 콘텐츠 기업
-
- 지원내용** ● 에듀테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전시회 및 로드쇼 개최
 ● 온오프라인연계 해외전시회 참가
 ● 해외바이어 온라인 상담회(진출 희망지역 해외바이어 온라인 상담 주선)
-
- 사업신청절차** ● KOTRA 기업회원가입(최초 1회) ▶ 사업공고/신청접수 ▶ 사업참가
-
- 문의처** ● KOTRA 지식서비스팀 : 02-3460-7615/3268

5-33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지원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지원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조사 및 진출전략 자료집 발간, 글로벌 프랜차이즈 세미나 개최, 해외전시회, 초청상담회, 사절단 파견 등 해외 시장 선점 및 글로벌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프랜차이즈 분야 국내 기업
 - 해외진출 유망 분야의 프랜차이즈 기업
 - 프랜차이즈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서비스 기업

지원내용

- 온라인 사절단 파견(해외바이어 온라인 상담 주선 및 기업설명회)
- 온오프라인연계 해외전시회 참가
- 해외바이어 온라인 상담회(진출 희망지역 바이어 온라인 상담 주선)
-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자문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시기별 상황에 따른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여부는 사업별 공고 확인 필요

신청·접수

- KOTRA기업회원가입(최초1회)▶사업공고/신청접수▶사업참가▶ F/U

문의처

- KOTRA 지식서비스팀
02-3460-7613/7612, hotcoff22@kotra.or.kr

5-34

콘텐츠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웹툰, VR·AR 등 우수 콘텐츠 제작사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기업과의 수출상담 지원

지원대상

- 콘텐츠 분야 국내 기업
 - 국내 우수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웹툰, VR·AR 등 콘텐츠 분야 제작사 및 개발사

지원내용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 제작투자 해외 파트너 발굴 및 지역별 온라인 사절단
- 해외 시장 현지 정보 제공 세미나 참여 기회 등 제공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시기별 상황에 따른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여부는 사업별 공고 확인 필요

신청·접수

- KOTRA 사업신청 홈페이지 및 BuyKorea '모집중인 사업' 참고

문의처

- KOTRA 지식서비스팀 : 02-3460-7616, k-content@kotra.or.kr

5-35

서비스 해외거점 지원

서비스 해외 진출 지원

KOTRA에서 「서비스거점 무역관」으로 지정한 해외무역관의 서비스 전담직원이 최대 10개사의 서비스 기업을 담당하며, 기업에게 필요한 해외마케팅을 밀착 지원함. 참여기업은 KOTRA 서비스 전담직원을 활용하여 관심바이어 발굴, 현장지원, 시장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지원대상

- 서비스분야 해외진출 또는 추진 중인 서비스 기업*
 - * 콘텐츠(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전자출판, 캐릭터), 에듀테크(이러닝, 학원, 교재), 프랜차이즈(외식업, 이미용, 키즈놀이타), 기타서비스

지원내용

- ① 바이어 발굴
 - 전담직원이 관심도 선별 후 직접 대면 접촉한 바이어
 - * 전담직원이 관심도 선별, 바이어社 방문 또는 무역관 내방으로 대면접촉
- ② 현장지원
 - 현지 출장 참여기업 밀착 지원
 - * 또는, 주재지역에서 개최되는 서비스분야 글로벌 전시회 참관보고서 제공
- ③ 시장조사
 - 기업별 개별 요청사항 처리
 - 서비스 분야별 현지 이슈 정리
 - * 현지 언론 스크랩 및 무역관 의견 포함
- ④ 고객관리
 - 전담직원과 참여기업간 직접 소통
 - * 지원 방향의 적정성, 참여기업의 니즈 파악 등
 - * 상기 4가지 항목에 대한 무역관의 지원활동 내역을 참여기업에게 매월 월간보고
 - ** 기업별 개별 요청사항으로는 현지 시장정보 조사, 주요 경쟁사 조사, 현지 법률정보, 지원기업의 현지 출장시 상담주선 및 동행, 단순번역 등의 지원이 가능

처리절차

- 2021년 3월 1일~2022년 2월 28일(1년)
 - * 2021년 수출바우처로 참여 가능(www.exportvoucher.com)

문의처

- KOTRA 지식서비스팀 : 02-3460-3251/7609, jeonivory@kotra.or.kr

5-36

서비스 온라인 수출대전(K-Service Digital)

서비스 산업 전문야

대한민국 서비스온라인수출대전(K-Service Digital)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서비스 전문 수출상담회입니다. 해외 유력 바이어 발굴, 네트워킹 등을 통해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대상기업
 - 콘텐츠, 교육(에듀테크), 서비스BM,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산업 전문야

지원내용

- 온라인 수출상담회: 유력 해외 바이어와 1:1 비즈니스 상담주선
- 온라인 컨퍼런스, 온라인 설명회: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관련 행사 참가 기회 제공
- 참가비 무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시기별 상황에 따른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여부는 사업별 공고 확인 필요

신청·접수

- KOTRA 사업신청 홈페이지 및 BuyKorea '모집중인 사업' 참고

문의처

- KOTRA 지식서비스팀 : 02-3460-7615, kn_team@kotra.or.kr

5-37

한류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대표 사업 : 한류박람회

글로벌 한류 확산에 따른 파급 효과를 유망 소비재 및 서비스 산업과 연계, 한류 박람회 등 한류 활용 마케팅을 추진하여 국내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브랜드 제고를 선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한류 기반 소비재 및 서비스 산업

지원내용 ● 한류박람회(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KBEE) : 전세계적인 한류열풍을 활용, 소비재 및 서비스 수출 활성화 지원
● 글로벌 미디어커머스 : 한류콘텐츠 연계 소비재 간접노출(PPL) 연계 및 해외유통망 입점·판촉 지원

신청·접수 ● 사업 확정시 코트라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참가신청 접수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추후 게재(사업 공고시 참고)

문의처 ● 소비재팀 : 02-3460-7739, 3347 7747

5-38

방산물자 교역지원

방산·치안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KOTRA가 국내 방위·치안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관 정부부처 및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방산·보안물자의 수출을 지원

지원대상

- 방위·치안산업 제품, 부품, 솔루션 등을 생산 제공하는 국내 기업
 - * 방위산업 : 총, 포, 탄약, 함정, 항공기, 미사일 등 무기 장비의 생산 및 개발 등
 - * 치안산업 : 대테러, 범죄예측, 사이버수사 등 치안 관련된 재화서비스 생산 개발 등

※ 참고사항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소개

-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는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민간합동 조직으로 방산물자 교역지원 업무 등을 수행

지원내용

- 정부간(G2G)계약
 - 구매국 정부의 G2G 계약 의사 확인, G2G 계약 체결 및 이행 모니터링 수행
 - 계약 체결 이후 국내기업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계약 이행 모니터링 실시 및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마련 협조
 - * 관련법 : 대외무역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등
- 방산 해외 마케팅 지원(온라인 상담 및 사절단 병행)
 - 방산수출 유망국 군 인사 및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
 - * KODAS, DX코리아, ADEX 등 국내외 유명 방산 전시회와 연계하여 개최
 - 해외 방산 G2G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지원을 위한 방산보안 무역사절단
 - * 중남미·중동·아시아 등 전략 지역에 코트라 무역관과 협업하여 방산·보안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무역사절단 파견(현지 방산 에이전트, 군경 등 보안 관련 기관 면담 주선)
 - KOTRA 무역관에서 발굴한 해외방산 소식 및 인콰이어리 정보 제공
 - * KODITS 홈페이지 (kodits.kotra.or.kr)를 통해 확인 가능

- 국내외 무관 및 유관기관, 국내외 기업 네트워크를 통한 방산수출 인프라 운영

신청·접수

- KODITS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사업 참가신청 안내문 확인 후 신청

제출서류

- KODITS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별사업 참가신청 안내문에 따름

처리절차

- (G2G 정부간 계약)
구매국 G2G 계약의사 확인 → 국내업체 수출이행능력 평가 및 선정 → G2G계약 협상 → G2G 계약특별위 심의 → KOTRA - 국내기업 간 이행약정 체결 → G2G계약 체결(KOTRA - 구매국정부) → 계약 이행 (국내업체) 및 이행 모니터링(KOTRA)
-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한 바이어/에이전트 모집 → 국내기업-해외 바이어 간 상담 주선 → 최종 상담스케줄 안내 → 사후관리 및 지원
- (온/오프라인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바이어 유치 및 상담 주선 → 해외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 → 사후 관리 및 지원

문의처

- 기획총괄실 : 02-3460-7813
- 정부간거래관리실 : 02-3460-7809
- 방산교역실 : 02-3460-7803
- KODITS 홈페이지 : <https://kodits.kotra.or.kr>

Q&A

Q. 'G2G계약'은 무엇인가요?

A. 외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인 KOTRA가 국내 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국내기업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외국정부에 물자 및 용역을 유상으로 수출하기 위해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외국 정부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자국에 맞는 맞춤형 조달을 신속하게 할 수 있어 최근 중남미·동남아·북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활용 되는 새로운 거래방식입니다.

5-39

해외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해외 공공조달 진출 지원사업

해외공공조달시장 진출 희망 기업의 수출 성과 확대 제고를 위한 해외마케팅 맞춤형 패키지 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동 사업에 5년이상 참가한 국내기업은 지원 불가능
- ▶ 사업 참가 신청 후 평가위원회를 통해 미선정 처리된 기업은 사업 진행 불가능

지원내용

- 참가 기업별 타깃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로드맵 기반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예시) 제품홍보 세미나, 시연회, 온라인 로드쇼 및 런칭쇼 개최 및 참가비 지원, 광고 제작 등
-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마케팅 실비지원
(기업당 최대 1천만원 한도 지원, 단, 3백만원 참가비 납부 필수)

신청·접수

- 신청기한 : 2022년 1월 말(추후 확정)
-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 검색창에 '2022년 해외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가안내' 검색 →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및 로드맵 작성 → 제출서류 총 6개 구비 후 이메일 접수 (ykoh@kotra.or.kr)

제출서류

- 1) 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2) 해외마케팅 로드맵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기업 소개자료 및 조달시장 진출 희망제품 국문 카탈로그 5) 기업 소개자료 및 조달시장 진출 희망제품 영문 카탈로그 6)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처리절차

- 참가기업 모집공고 → 참가기업 선정 → 참가비 납부 및 협약서 체결 → 전담 해외무역관 관리하에 사업 수행 → 결과보고

문의처

- 그린산업팀 : 02-3460-7492

5-40

해상풍력 글로벌 파트너십 사업

해상풍력 분야 국내기업 지원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상풍력 글로벌 공급망 진입 확대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글로벌 기업의 수요품목 및 협력 희망 분야에 적합한 국내기업
 - 참가비 : 무료
- 지원내용**
- 해상풍력 동향 및 유망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 개최
 - 해상풍력 유망 시장 및 글로벌 기업별 수요발굴 상담회 개최
- 신청·접수**
- 글로벌 기업 수요 발굴 → 사업 공고 → 국내 기업 신청 → 참가기업 선정 → 상담회 실시 → 제휴 및 매칭 지원 → 기업별 맞춤형 후속 지원
- 제출서류**
- 사업별 상이하며 사업 추진시 공고
- 지원규모**
- 제한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참가기업 선정 → 상담 매칭
- 문의처**
- 그린산업팀 : 02-3460-7489

5-41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

국내기업의 GVC 진입지원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협력 수요를 발굴하여 국내 소재·부품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의 밸류체인(GVC)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기업
 - 글로벌 기업의 밸류체인에 진입하여 벤더로 납품하고자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분야 중소중견기업
 - *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 선정기준
 - 글로벌 기업의 수요품목 및 협력 희망 분야에 적합한 국내기업
- 참가비 : 무료

지원내용

- 산업 Mapping 자료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 지원
- 국내외 권역별·산업별 수출상담회 개최
 - 해외 : GP Europe, GP USA, GP Japan, GP China 등
 - 국내 : GP Korea 등
- 글로벌 기업과의 핀포인트 상담 지원
 - 공장방문, 심층상담 등 지원(연중 수시)

신청·접수

- 신청서 접수 → 바이어 검토 → 상담 매칭
- 일정에 따라 별도 공고

문의처

- 제조산업팀 : 02-3460-7644

용어설명

글로벌 기업 : 'Fortune Global 500' 기업 및 매출액 1억 달러 이상 해외기업

5-42

해외경제정보드림(해드림)

해외진출정보 통합 플랫폼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부처·기관에 산재된 대외경제 정보 통합하여 맞춤형 수출시보고서, 지원사업 통합열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글로벌 기업 : 'Fortune Global 500' 기업 및 매출액 1억 달러 이상 해외기업

이용방법 ● KOTRA 회원가입 또는 기업 회원가입 후, 해드림 홈페이지 (<https://dream.kotra.or.kr>) 접속

구 분	주 요 내 용
해외수출	해외수출정보를 단계적으로 제공. 시장조사-수출기반준비-시장개척-계약및신고 등
해외투자	해외투자정보를 단계적으로 제공. 현지조사-투자준비-투자추진 등
드림AI	수출시보고서, 지원사업추천, AI이미지검색 등 서비스 제공
드림토크	무역자료, 상담안내, 해외취업 등 서비스 제공

문의처 ● OTRA 해외시장정보센터 : 02-3460-7413, 7415

Q&A

Q. 일반회원, 기업회원간 차이가 있나요?

A. 기업회원으로 가입하면 수출AI보고서, 지원사업 추천 등 추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수출시보고서 : 품목별 해외진출 정보를 AI가 수집하여 한눈에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AI이미지검색 : KOTRA의 해외시장뉴스에 제공되는 표, 그래프, 사진 등의 이미지 정보를 검색으로 보여주는 서비스

5-43

KOTRA 해외시장뉴스

해외무역관 수집 정보 제공

‘KOTRA 해외시장뉴스’는 84개국, 127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집한 전 세계 산업·상품정보, 국가정보, 통상·경제 동향 등의 수출관련 정보를 비롯하여, 취업·창업 등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용방법

- 해외경제정보드림을 통해 KOTRA 해외시장뉴스 접속
 - 홈페이지 주소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
- 매주 화·금요일 해외시장뉴스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
 - 뉴스레터 신청방법
(신규가입자) KOTRA 회원가입 시 뉴스레터 신청 박스 클릭
(기존가입자) 로그인 후 ‘My Kotra’ > ‘회원정보수정’ > ‘개인정보수정’ > ‘관심서비스/EMAIL 수신여부’에 ‘통합사업안내/통합시장정보’ 체크

이용료

무료

제공정보

유형	내용
뉴스	경제·무역, 통상·규제, 투자진출, 현장·인터뷰, 기획성속보, 기고, 일자리 동향, 코로나19 뉴스
상품·산업	트렌드, 상품DB, 국별 주요산업, 해외인증정보
국가·지역정보	세계 90개국 국가·지역정보, 북한정보, 진출전략, 출장자료
보고서	심층보고서, 글로벌이슈모니터링
영상뉴스	90초 해외시장뉴스, 포토뉴스, 카드뉴스, 설명회, 웹툰
해외투자	해외투자 안내, 직접투자 절차, 국별 참고자료, 유망프로젝트, 진출기업정보

문의처

- KOTRA 해외시장정보센터 : 02-3460-7409, 7414

5-44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KOTRA는 매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계시장 조망 및 권역별 이슈 점검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차년도 해외 지역별 진출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우리기업, 유관기관(사업별 협회 등) 및 연구기관 등

지원내용 ● 국내외 전문가와 KOTRA 10개 해외지역본부장이 함께 주요 세계경제 이슈 및 권역별 시장을 조망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전략 제시
● 오프라인 개최 시, 국내 설명회 참가고객 대상 자료집 제공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온라인 신청 접수 (※ 행사 개최 시 별도 안내)

문의처

● KOTRA 구미팀 (02-3460-7677)

Q&A

Q. 지난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영상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A. 설명회 녹화영상은 유튜브 'KOTRA 비즈니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A.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자료집은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사이트 내 해외시장뉴스의 영상뉴스 - 설명회 카테고리에 업로드 예정입니다.

5-45

경제외교 활용포털

경제외교 비즈니스 활용 종합 포털

대통령 해외순방을 계기로 추진하는 경제외교 및 경제사절단 경제행사(예:비즈니스 파트너십)를 통해 도출된 경제·산업 부문 성과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통해 우리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경제외교 비즈니스 활용 종합 포털 사이트입니다.

이용방법

- 경제외교 활용포털 접속 후 무료이용

* 모바일 앱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경제외교 활용포털' 검색 후 다운로드

지원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경제외교 성과	정상회담 계기의 공동성명, 합의내용 및 경제행사 등 경제·산업 성과를 DB로 구축
경제외교 종합정보	정상 순방 및 방한국의 국가정보, 출장가이드, 해외기업정보, 상품·산업정보, 전시회정보, 진출기업정보 등 경제외교 관련 종합 정보 제공
비즈니스 파트너십 지원	대통령 및 총리 순방 계기로 추진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십 경제행사 모집공고·선정 및 사후관리의 전 과정 지원
경제외교 활용사례	해외 순방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및 후속사업 참가 계기의 수출계약, 투자진출 등 성과를 거둔 기업사례 소개 및 공유
후속조치 사업	정상회담 공동성명·합의내용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후속조치 및 정상 순방 시 사업에 참가하지 못한 관심기업도 활용 가능한 참가 사업 및 결과 안내

문의처

- 경제협력총괄팀 : 02-3460-7687
- 경제외교 활용포털 : <https://president.globalwindow.org>

5-46

FTA 해외 활용 지원센터

FTA 정보제공, FTA 상담, FTA 활용 애로해소 지원

FTA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9개국 15개 도시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과 해외 바이어들이 FTA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층 상담을 실시하며 각종 애로해소를 돕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FTA 활용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수출기업

지원내용

- FTA 홍보활동 및 정보제공
 - FTA 활용 설명회(웨비나) 및 현지 유명 전시회 공동 홍보부스 운영
 - FTA 실무활용가이드북, FTA 활용 Tips 책자 제공
- FTA 상담서비스
 - (상시상담) 관세율, 원산지 등 FTA 활용 전반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진행
 - (이동상담) 현지기업, 진출기업 밀집 지역 방문 상담
 - (헬프데스크) 주요 전시회, 상담회 FTA 활용부스 및 헬프데스크 운영
- FTA 활용 애로해소 지원
 - 통관, 인증 등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 유관기관 및 정부기관 협력을 통한 애로해소 지원 등



신청·접수 ● 문의처로 연락 시 해당 FTA적용 지역의 센터로 연결

문의처 ● KOTRA 통상협력실, 02-3460-7515
 ●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연락처

센 터	전 화	웹사이트
베이징	(86-10) 6410-6162	www.kotra.or.kr/KBC/beijing
상하이	(86-21) 5108-8771	www.kotra.or.kr/KBC/shanghai
칭다오	(86-532) 8388-7931	www.kotra.or.kr/KBC/qingdao
광저우	(86-20) 2208-1939	www.kotra.or.kr/KBC/guangzhou
다롄	(86-411) 8253-0051	www.kotra.or.kr/KBC/dalian
하노이	(84-24) 3946-0511	www.kotra.or.kr/KBC/hanoi
호치민	(84-28) 3822-3944	www.kotra.or.kr/KBC/hochiminh
뉴델리	(91-11) 4230-6319	www.kotra.or.kr/KBC/newdelhi
첸나이	(91-44) 2499-7283	www.kotra.or.kr/KBC/chennai
자카르타	(62-21) 574-152	www.kotra.or.kr/KBC/jakarta
방콕	(66-2) 035-1555	www.kotra.or.kr/KBC/bangkok
마닐라	(63-2) 8894-4084	www.kotra.or.kr/KBC/manila
중남미	(52-55) 5514-3173	www.kotra.or.kr/KBC/mexicocity
프놈펜	(855-23) 999-099	www.kotra.or.kr/KBC/phnompehn
시드니	(61-2) 8233-4050	www.kotra.or.kr/KBC/sydney

Q&A

Q. 국내에서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국내에서 FTA상담을 원하실 경우 궁금해하시는 FTA 적용 국가의 FTA해외 활용지원센터에 연결해드리거나 본사 자문 관세법인과의 상담을 주선해드립니다.

용어설명

비관세 장벽 : 한 국가의 정부가 국내 생산품과 국외 생산품을 차별하여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외한 정책

5-47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등 출장지원업무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 KOTRA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 후 해외무역관에서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고객 안내

지원내용

서비스 유형	서비스 안내	
해외 세일즈 출장	<p>[일반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역 : 상담주선(3~4개사) + 교신지원(2개월) • 상담방법 : 상담 스케줄에 따라 기업이 자체 진행 • 수수료 : 50~70 만원 (3~4 개사)(VAT별도) • 대상기업 : 통역, 차량지원 불요 기업, 독자적으로 상담 가능 기업 	<p>[프리미엄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역 : 상담주선(3~4개사) + 상담지원 (통역 및 차량 지원) + 교신지원(2개월) • 상담방법 : 2일간 무역관 직원이 상담지원 * 통역 : 일부 지역은 한국어 통역 불가('현지어-영어', '현지어-불어' 지원) * 차량 : 관할도시에서 편도 120km 이상 방문 상담시 별도 차량 임차료 발생(기업 부담) • 수수료 : 100~140 만원(3~4 개사)(VAT별도) • 대상기업 : 통역, 차량지원 필요 기업, 지사화 사업 관심 기업
해외 투자 환경 조사 출장	<p>[일반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역 : 기업 요청별 상담주선 (2개사내외) + 교신지원(2개월) • 상담방법 : 무역관이 제공한 상담 스케줄에 따라 기업이 자체 진행 • 수수료 : 50~70만원(VAT별도) • 대상기업 : 통역, 차량 필요 기업, 지사화 사업 가입 관심 기업, 투자진출 관심 기업 	<p>[프리미엄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역 : 기업 요청별 상담주선(2개사 내외) + 상담지원 (통역 및 차량 지원) + 교신지원(2개월) • 상담방법 : 무역관 직원이 상담지원 * 통역 : 일부 지역은 한국어 통역 불가('현지어-영어' 등 지원) * 차량 : 관할도시에서 편도 120km 이상 방문 상담시 별도 차량 임차료 발생(기업 부담) • 수수료 : 100~140 만원(VAT별도) • 대상기업 : 통역, 차량 필요기업, 지사화 사업 가입 관심 기업, 투자진출 관심 기업

신청·접수

- KOTRA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 후 해외무역관에서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고객 안내

KOTRA 사업신청 홈페이지(www.kotra.or.kr/biz) → 상단 메뉴 중 '맞춤형 서비스' → '수요기반' 메뉴 아래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 '사업 신청하기' → 로그인 후 신청(출장 1.5달 전) → 해외무역관이 지원가능여부 검토(2주 소요) → 지원 가능 시 대고객 전적서 송부 → 출장비 납부 및 출장준비(약 2주 소요) → 출장일 5일전 스케줄 송부 → 출장시행

- 일반서비스 : 50만원~70만원 (VAT별도)
- 프리미엄서비스 : 100만원~140만원 (VAT별도)
 - * 지역별, 바이어수 별 참가비 상이(상세 내역은 KOTRA 홈페이지 참고)
 -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0대 기업의 경우, 수수료 2배 적용
 - * 바우처 이용가능 서비스(최종 수수료의 부가세 10% 제외 금액을 바우처로 사용 가능)

문의처

-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 02-1600-7119

5-48

수출인큐베이터

해외 주요 거점도시 사무공간 제공

현지 KOTRA 무역관과 연계하여 해외 주요 거점도시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정착지원 서비스와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국내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견기업, 대기업
- ▶ 불건전 제조업, 협회 및 단체, 국제 및 외국기관 등

설치지역 및
입주 규모

	설치지역	입주규모	설치지역	입주규모	
중국	베이징	17	멕시코	멕시코시티	9
	상하이	22	인도	뉴델리	14
	광저우	14	미국	뉴욕	19
	시안	7		LA	20
	충칭	8		워싱턴	10
베트남	호치민	15		시카고	16
	하노이	15	독일	프랑크푸르트	15
일본	도쿄	15	러시아	모스크바	8
칠레	산티아고	9	UAE	두바이	11
태국	방콕	10	카자흐스탄	알마티	7
미얀마	양곤	10			

- 지원내용
- 사무공간(3~4평) 및 공동회의실, 창고, 사무용집기 및 전화·인터넷 등
 - 마케팅 전문가에 의한 시장정보 수집, 분석 제공
 - 법률 및 회계 고문의 자문
 -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

수수료

- 입주보증금 : 500만원
- 월 임차료(사용면적에 따라 부과, 지역별 상이, 1차년도 10~40만원)
 - 임차료 1차년도 20%, 2차년도 50%, 3~4차년도 100% 부담
 - 전화, 인터넷 사용 등 관리비는 실비 부담

입주기한

- 최장 4년

신청·접수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참가 신청 (연중 수시) → 업체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KOTRA·중진공) → 업체 선정통보 (약 1~1.5개월 소요) → 입주협약서 작성 및 보증금 납부 → 입주준비 및 인큐베이터 입주

심사·평가 주요내용

- 입주타당성 평가(현장 실태조사), 해외 시장성 평가 등

문의처

-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0
- (중진공) 글로벌사업팀 : 055-751-9674, 9686

* 입주신청과 접수 문의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연락

5-49

해외 GP센터(Korea GP Center)

해외에 공동 사무공간 및 마케팅 지원

해외 GP센터 (Korea GP Center)는 해외 지역별 공동 사무공간을 운영하여 현지 전담 마케팅을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운영센터(10개)
 - 나고야, 디트로이트, 멕시코시티, 뮌헨(신규), 상하이, 실리콘밸리(신규), 아테네, 오사카(신규), 쿠알라룸푸르, 프랑크푸르트
 - 대상기업/선정기준
 -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즉각적 현지 대응 및 엔지니어링 서포트를 요구받은 기업
 - 해당시장 집중 마케팅을 위해 연락사무소, 지사 또는 현지법인 설치를 고려중인 기업
 - 현지법인/지사 설립은 되어 있으나 성과 제고를 위해 KOTRA와의 협업이 필요한 기업
- * 단, 동 사업의 목적을 감안하여 대기업은 입주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지원사항
 - 사무공간 제공 : 독립공간(독립입차형 사무실 혹은 공유오피스) 및 공동 사용공간(회의실)
 - 현지 마케팅 활동 지원 : 신규 거래선 발굴 및 기존 거래선 관리 등
 - * 전담직원을 통해 지사화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
 - 초기 셋업 : 입주업체 신규 법인/지사 설립/비자발급 등 지원
 - 세일즈랩 활용 : 입주업체 세일즈랩 활용 희망시 업체선정 등 지원
 - 물류서비스 지원 : 무역관 공동물류센터 활용, 물류서비스
 - 현지 전시회, 세미나 등 참가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뮌헨, 실리콘밸리, 오사카 센터 신규 개소

-
- 신청·접수** ● 접수방법 : KOTRA홈페이지 > 맞춤형서비스 > 해외GP센터 > 신청
가능사업 보기 > 신청
-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이메일 접수(sekyung_lee@kotra.or.kr)
-
- 처리절차** ● 참가신청서 검토(약 2주) 후 승인여부 통보
-
- 지원규모** ● 지역별 상이
* 디트로이트, 나고야, 프랑크푸르트, 상하이, 쿠알라룸푸르, 멕시코, 아테네, 뮌헨, 실리콘밸리,
오사카 10개소
-
- 문의처** ● KOTRA 소재부품장비팀 : 02-3460-7757

5-50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해외마케팅 자금 지원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역량 제고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해외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 기업
 - 소재·부품 :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 장비 :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나 설비
- 지원규모 : 바우처 6,000만원(최대 1억) / 약 200개사
 - * 국고지원금/기업보담금 : 중소기업 70%/30%, 중견기업 50%/50%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이미 타 바우처를 지원 받고 있는 기업
- ▶ 중기부 수출바우처를 중복하여 받는 경우
- ▶ 동일 사업을 이미 2회 참가한 기업

지원내용

- 13개 분야에 대한 수출지원 서비스 이용(해외 전시회, 디자인 개발, 해외규격인증, 통·번역 등)
- 전담 전문위원 배정,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진출전략 수립 및 타겟국가 선정 지원 등

신청·접수

- 사업공고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 및 신청 방법 확인
- * www.exportvoucher.com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바우처발급

- 세부 제출 서류는 공고문 확인

문의처

- 제조산업팀 02-3460-7633, 7643

5-51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해외물류 풀필먼트 및 수출마케팅 서비스 제공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은 해외 현지에 독자적인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현지 KOTRA 협력물류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 지역에 물류센터가 필요한 국내에서 수출 중(예정 포함)인 중소·중견기업
- 수입, 제3국의 경우 공급선 다변화 대응을 위한 원부자재 조달에 한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대기업(공정위 발표 대기업군) 및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국고지원 모집기간: 매년 12월 중(별도 공고, 선정평가)
 - 마감 시 전액 자부담 서비스는 9.30일까지 연중 신청 가능
- 지원기간: 협약개시일 ~ 동일년도 11월 30일까지
- 지원사항: 해외 현지창고 보관 및 입출고, 포장, 배송, 반품, 통관, 수입대행 등 풀필먼트 + 수출마케팅 서비스 지원
- 물류창고 내 보관 필수(수입대행·배송·수출마케팅 등은 서비스 가능 시 필요에 따라 이용)
- 1개 사당 최대 5개 지역까지 신청 가능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국고지원 비율: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로 차등

중소기업	중견기업	한도 총액(A+B)
참가비(A) 30만원 ~ 600만원 국고지원(B) 70만원 ~ 1400만원	참가비(A) 50만원 ~ 1000만원 국고지원(B) 50만원 ~ 1000만원	최소 100만원 ~ 최대 2000만원

문의처

- (KOTRA) 유망기업팀: 02-3460-7445, 7426, 7428

5-52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진출 지원

해외진출이 활발한 지역 17개국에 27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 투자 진출기업의 성공적인 현지정착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해외투자 희망기업 및 기진출 우리기업(규모 무관)

지원내용

- 해외투자 진출기업의 현지 설립 및 운영 지원
 - 전문가(변호사, 관세사, 회계사, 노무사 등) 상담 지원
 - 현지 해외투자 이슈 및 경영정보 제공(각종 세미나/포럼/뉴스레터 등)
 - 해외 주재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 현지 마케팅 및 제3국 수출지원
 - GVC 관련(예: 공장 이전, 수입선 발굴 등)지원
 - CSR(예: OVOP)사업 지원
 - 진출기업용 현지 M&A 매물 발굴 지원
- 17개국 27개소
 - * 2021년 개소 완료 : 뉴욕, 달라스, 쿠알라룸푸르 3개소 추가

운영조직 ● 17개국 27개소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미얀마		태국		
하노이	호치민		다낭		자카르타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다롄	양곤		방콕
미국			캄보디아		인도		폴란드		몽골		말레이시아				
뉴욕	달라스		프놈펜		뉴델리	첸나이	바르샤바		울란바토르		쿠알라룸푸르				
필리핀		브라질	헝가리		멕시코		독일		러시아						
마닐라	상파울루		부다페스트		멕시코시티		프랑크푸르트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문의처

- 투자M&A팀 : 02-3460-7352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투자' 內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5-53

해외지식재산권 보호(IP-DESK)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해외진출(예정) 국내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상담, 확보,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

운영조직

- IP-DESK 소재 국가 (11개국 17개소)

국 가 (11개국)	IP-DESK (17개소)
중국(홍콩)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홍콩
미국	LA, 뉴욕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도쿄
태국	방콕
베트남	호치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핀	마닐라
인도	뉴델리
러시아	모스크바
멕시코	멕시코시티

- IP-DESK 미소재 국가 (22개국 22개소)

권역	지원 국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대만, 몽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호주, 뉴질랜드
유럽 및 중동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북미 및 중남미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지원대상

-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중소기업*으로 IP-DESK 소재 및 미소재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중인 자

*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절차

- IP-DESK 소재 국가



- IP-DESK 미소재 국가



지원내용

- IP-DESK 소재 국가 지원 사업
 - 지식재산권 상담 지원
 - 해외 상표·디자인·특허 출원 비용 지원
 -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구 분	지 원 비 용												
상표· 디자인·특허 출원	-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지원 (단위 : US\$)												
	지원 건수	한도 (건)	중국 (홍콩)	미국	일본	독일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 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멕시코
	10건 /1사	상표	300 (650)	600	500	1,000	550	300	300	300	300	450	400
		디자인	300 (650)	1,000	500	600	550	600	200	300	300	700	450
3건/ 1사	특허	1,000 (1,200)	2,000	1,500	2,500	1,500	2,000	1,500	1,500	500	1,000	750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 최대 70% 지원, 중복 지원시 20%p씩 지원비율 하락 (1사당 3건) * 최대 \$10,000(피침해실태조사만 진행시 \$6,000)												

- IP-DESK 미소재 국가 지원 사업
 -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 분쟁대응,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

구 분	세부 지원 사업	비용	지원건수
출원지원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소요비용 50% (건당 \$1,500한도)	연 4건/1사
분쟁대응	경고장 접수 등 지재권 분쟁 발생에 따른 법률 상담비용 지원	소요비용 70% (건당 \$3,000한도)	연 1건/1사

구 분	세부 지원 사업	비용	지원건수
침해조사	위조상품 유통현황 파악, 출처추적 등	소요비용 70% (건당 \$6,000한도)	연 1건/1社
행정단속	침해기업 현장단속 및 법률조치, 세관조치 지원 등 (침해조사 연계만 가능)	소요비용 70% (건당 \$4,000한도)	

신청·접수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KOTRA 홈페이지-맞춤형서비스-해외지식재산권보호-지원신청

제출서류

- 국내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중견)기업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등

문의처

- KOTRA 해외지재권실(02-3460-3357), ip-desk@kotra.or.kr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맞춤형서비스-해외지식재산권보호



Q. 기업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A. 아닙니다. 필수 서류만 제출하시면 지원해드립니다.

Q. 사업수행대리인 리스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해외지식재산권보호 사이트 내 '사업관련연락처'에서 수행대리인 리스트 및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5-54

국내복귀기업 지원

유턴기업 지원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단,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혜택(조세·임대료 감면 등)을 받은 기업이 아니거나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것

지원내용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사업 이용 시, 최대 USD 20,000 지급합니다.
- ☑ 사용하던 중고 자본재, 사용할 신규 자본재 수입 시 관세 50~100% 감면합니다.
- ☑ 이전 운송비, 수수료 등 11~44%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사업장
투자

- ☑ 전국 산업단지 및 지자체 입주를 지원하고, 토지매입비용, 건설투자비용, 기계구입비용 등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 K-제조업 및 장기적인 경쟁력 배양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고도화, 로봇제조 활용혁신 등 스마트 공장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 인력 충원 시 고용창출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 월60만/1인)과 해외 인력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내사업장
운영

- ☑ 법인세 최장 7년, 50~100% 감면과 시설-운영자금 융자, 보증 보험 우대 등, 금융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 R&D를 지원하고, IP(지적재산권)을 보호합니다.
- ☑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영 애로 등을 상시 경청하며, 국내복귀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형	복귀 지역	보조금			조세		인력		구조 조정 컨설팅	스마트 공장	입지 지원	금융 지원	보증·보험 우대	R&D	
		투자		이전	법인 소득세	관세	고용 창출 장려금	외국인 고용							
		입지	설비					E-7							E-9
중소 중견 기업	비수도권	○	○	○	○						○			모두 지원	
	수도권 (과밀이외)				○			○	○	○	X	○			
	수도권 (과밀이내)	X	△	△	X						X				
대 기업	비수도권	X	○	○	○						○			모두 지원	
	수도권 (과밀이외)				○	X		X	X	X	X	X			
	수도권 (과밀이내)	X	△	△	X						X				

문의처

- 유턴지원팀 : 02-3460-7361~4

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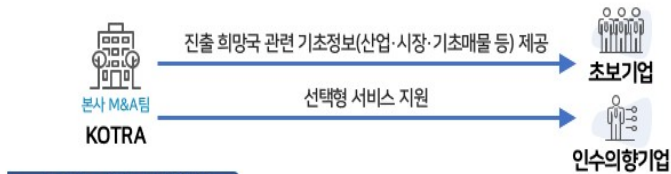
글로벌 M&A 지원사업

우리기업의 글로벌 M&A 진출지원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핵심기술·브랜드·유통망·생산기반의 효율적 확보를 위한 M&A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중소·중견기업
 - 산업군(품목군)
 - 산업 및 품목 무관
- * (지원 불가 대상) ① 국내 M&A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지원내용**
- 서비스 지원사항



서비스 패키지 세부내용

▶ 초보기업용 : M&A Learning Pack

- ① 산업 및 시장동향보고서(구독 자료 중 선택제공)
- ② Trial 매물(2~3건) 발굴
- ③ 동종업종 리스트 조사
- ④ M&A 원포인트 전략 보고서 제공(인수시장, 핵심플레이어, 인수사이즈, 인수전략 등 구성된 요약서)

▶ 인수의향기업용 : M&A Selection Pack

- ① 산업조사보고서(필요 시 무역관 비용 지원)
- ② 관심 매물(3~5건) 발굴
- ③ 현지 자문사 연결 서비스
- ④ 현지 출장/대행 실사 지원 서비스
- ⑤ 인수 후 합병(PMI) 지원(재용, 마케팅 등)

- 비용 지원사항
 - 지원 대상 : KOTRA 글로벌 M&A 지원사업 신청기업
 - 지원 금액 및 범위 : 서비스 무료 지원
- ※ 실사 비용 지원: 회계·법무 실사 자문수수료의 50% 해당 금액을 평가 진행 후 지원 (단, 3,000만원 한도 내)

신청·접수

- 신청방법 : 담당자와 유선 협의 후 신청서 양식 송부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심사·평가 :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 평가 없음

문의처

- 문의처 : 투자M&A팀
- 대표전화 : 02-3497-1110
- 홈페이지 : 코트라 사업신청 홈페이지 > 사업영역 소개 > 해외투자 > 글로벌 M&A 지원

5-56

KOTRA 글로벌 ESG + 사업

글로벌 ESG

ESG가 신규 국제규범으로 확산되어 우리기업에 글로벌 ESG 활동지원을 강화하여 현지 사회공헌과 해외시장 진출 기반 확대

- 지원대상**
- 해외 ESG 활동에 관심 있는 우리 중소·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창업 벤처기업 또는 이들과 공동사업이 가능한 대기업 및 공공기관 및 공기업
 - (글로벌 ESG) 상·하반기 2회 대내외 공모 사업으로 추진
 - (+형 사업) 긴급 재난, 보건·의료 및 프로젝트 특화형만 수시사업으로 추진

※ 참고사항

- ▶ (대기업 및 협회) 동반성장형 사업 지원(중소·중견기업 제품 구매시 사업비 지원)
- ▶ (공공기관 및 공기업) 현지 기부 행사만 지원(사업비 미지원)

지원내용

- 지원사업

사업유형	사업내용
E 형 (그린 이니셔티브)	○ (글로벌 녹색협력) 저탄소·친환경 소재 제품, 교육, 기술·경영 지원 활동을 통해 친환경 가치소비를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협력 구축
S 형 (인도적 상생지원)	○ (상생협력) 현지 지역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UN이 지정한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기부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활동 등
G 형 (지속가능 글로벌 경영구축)	○ (지속가능 경영구축) ① 국내·외 글로벌 ESG 활동이 우수한 기업 포상 ② 국내 기업·기관 대상 ESG 역량 강화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해외 주요 ESG 동향 및 정보 확산 온라인 세미나 개최(연 1회) ③ 국내외 구직자 대상, 대·내외 ESG 유망기업 채용 상담회
+ 형 (맞춤형 재난·보건· 의료, 프로젝트 특화형)	○ (재난 및 보건의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및 코로나19 및 현지 전염병 확산, 심화로 피해가 발생한 국가가 요청한 구호물품 및 의료물품을 기부 ○ (프로젝트 연계) 개발협력사업(ODA, KSP, EIPP 등), 공공조달, G2G 방산사업 등 KOTRA 유관부서와 협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연계형 글로벌 ESG 사업 추진

● 수행방식

사업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E형 (그린 이니셔티브)	제품·장비·기자재 (유형) 기부	우리기업의 제품·장비·기자재를 현지에 기부하여 녹색 협력을 구축하고, 현지 정부 및 주요 바이어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
S형 (인도적 상생지원)	기술·서비스 (무형) 교육 프로그램	우리기관기업이 현지 정부, 발주처 등을 대상으로 기술·서비스 경험 전수 또는 교육을 제공하여 현지 전문 인력 양성을 돕고, 현지 정부, 발주처와 유대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구축
+형 (맞춤형 재난·보건·의료, 프로젝트 특화형)	유휴장비 이전 및 기증	유휴·저활용·불용장비를 수리하여 신흥국에 기증하고 산업표준 및 운영경험을 전수하는 사업으로, 신흥국의 산업 발전, 공공서비스 개선, 생산기술 혁신에 기여

신청·접수

- KOTRA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https://www.kotra.or.kr/biz/overseas/kotraCsr/csrBoard.do?menuCode=D04>
- 제품·서비스의 해외진출 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충실성, 현지 사회 공헌 정도, ESG 및 SDGs의 부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참가 기업을 선정

문의처

- 개발협력실: 02-3460 7532, 7524, csr@kotra.or.kr

Q&A

Q. 사업 품목별 지원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A. 기업지원금은 참가사업의 품목별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 ① 글로벌 ESG형: 제품·장비·서비스 및 기술·경영 교육은 최대 1,500만원 지원, 유휴장비 이전사업은 최대 5,000만원 지원됩니다.
- ② 긴급재난, 보건·의료 사업은 재난, 의료물품은 500만원, 의료장비(특수장비 포함)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5-57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 사업

Contact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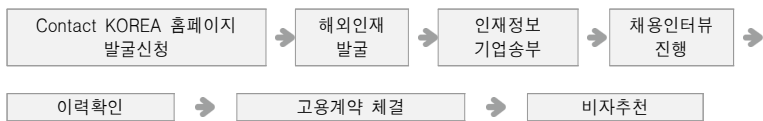
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 해외 마케팅, R&D인력 등 해외 전문인력 발굴부터 인터뷰 주선, 이력확인, 비자추천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국내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 해외 전문인력 채용 수요 기업 및 기관
 - 중소·중견기업 : 무료
 -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 110만원 (적격인력 발굴 기준)

- 지원내용**
- 출입국관리법상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및 D-8(기업투자) 비자직종에 해당하면서,
 - 4년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경력 1년 이상
 - 석·박사
 - 경력 5년 이상인 자

-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contactkorea.kotra.or.kr) 신청

- 처리절차**
- 글로벌인재 발굴서비스



- 고용추천서 발급서비스



- 문의처**
- 해외취업팀(02-3460-7387~8)
 - 홈페이지(www.contactkorea.kotra.or.kr)

5-58

KOTRA아카데미 교육·연수

글로벌 시장지출 역량강화 지원

KOTRA아카데미는 국가별 해외시장 개척과정,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과정, 역량별 해외 마케팅 실무과정 등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글로벌 시장지출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기업 관계자

지원내용

교육과정

- 글로벌 지역전문가 육성 과정
 - 해외마케팅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지역별 진출전략 과정
 - * 중국, 미얀마,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중남미, 러시아·CIS 등
-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 과정
 - 특정 국가 내 유망산업에 대한 수출 마케팅 역량 강화 과정
 - * 화장품, 자동차 부품, 식품, 의료기기, 유통 등
- 기업 역량별 맞춤형 과정
 - 수출 초보·유망·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교육 과정
 - * 수출 첫걸음,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과정 등
-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 해외시장 진출 관련 실무역량 강화 과정
 - * 해외전시 마케팅, 온라인 수출 마케팅, 영업 역량 강화과정 등
- 해외진출 컨설턴트 양성 과정(GBC)
 - 국내 중소·중견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컨설턴트 양성 과정
 - * 컨설팅, 마케팅(온라인 플랫폼 포함), 해외시장 진출방안, 협상 및 계약관리 등
- 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
 - 통상·무역 전공 고졸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수출 실무 인재 매칭 프로그램

- FTA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
 - 현장에서 수출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수출전문위원, 멘티기업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마케팅 연계형 FTA 활용 컨설팅 교육
- * 교육일정 및 세부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신청·접수 ● KOTRA 홈페이지(www. kotra.or.kr) 사업신청 참고

문의처 ● KOTRA 아카데미 : 02-3497-1196 /
042-338-1702(대전분원) academy@kotra.or.kr

용어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용자잔액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5-59

열린무역관

KOTRA 해외무역관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근무시간 중 사무공간, 시장정보 및 기초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진 KOTRA 회원(기업/개인회원)
 - * KOTRA 업무영역과 관련된 무역, 투자 등 일반 비즈니스 목적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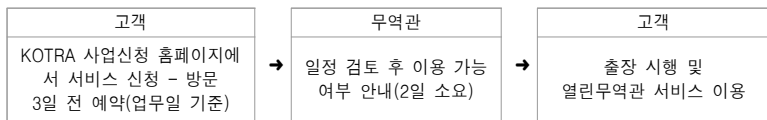
- 지원무역관**
- 81개국 123개 무역관
 - * 여행금지국, 신설 무역관 등 4개 무역관 제외

- 지원내용**
- 업무일 기준 1회 최대 5일 이용 가능 (무역관별 분기 당 1회만 가능)
 - * 현지 공휴일 등 무역관 업무시간 외에는 지원 불가
 - * 바이어 상담주선, 통역/차량 지원 등 유료 서비스는 미제공

구분	세부 지원내역	비용
사무공간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복사기, 회의실 등	무료
체류정보	현지 체류정보 안내	
기초상담	상담 신청고객 대상으로 현지 경제동향 등 기초상담	

* 바이어 상담주선 등 유료 서비스 항목은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사업으로 별도 신청 필요

제출서류



- KOTRA 사업신청 홈페이지(www.kotra.or.kr/biz) 접속 → 상단 메뉴 중 ‘맞춤형 서비스’ → ‘해외 인프라 공유’ 메뉴 아래 ‘열린 무역관’ → ‘사업신청하기’

- 문의처**
- 해외진출상담센터 : 1600-7119
 - 각 무역관(대표 e-mail / KOTRA 홈페이지 참고)

5-60

경제외교 활용 사업

1:1 비즈니스 상담 주선

신남방, 신북방 및 기타 전략시장에 대한 대통령, 국무총리의 해외순방 및 해외정상 방한 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하여 국내 기업과 해외 파트너 간 1:1 비즈니스 상담을 주선하며, 경제외교 후속사업을 수행하고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모든 국내기업

지원내용

- 해외순방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 1:1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를 통한 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 제공, 정부 간 협력을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해외정상 방한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 외국 경제사절단 방한 시 1:1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무역·투자 교류의 기회 제공
- 경제외교 후속사업 및 사후관리 지원
 - 비즈니스 파트너십 참가기업의 무역·투자·프로젝트 유망상담 건 상시 지원
 - 후속사절단 파견, 후속상담회 개최 등 추진

문의처

- 경제협력총괄팀 : 02-3460-7687
- 신남방·신북방 경제협력팀 : 02-3460-7661

제6부
한국무역협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1

포춘 500대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스타트업 글로벌 지원

글로벌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팀과 국내 스타트업 간 연결을 통해 스타트업의 해외 판로 개척, 후속 투자유치, 공동 연구 등 글로벌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

지원내용 ● 다국적 기업과의 연결을 통한 해외 판로 확보
● 대기업 협력 레퍼런스를 통한 투자유치 기회 제공
● 공동 연구 및 공동 실증사업 진행

신청·접수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온라인 신청
● 무역협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www.innobranch.com)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영문 사업소개서 및 협력 제안서)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기술의 시장성 및 해외 진출 가능성
- 시제품 출시 여부 및 대량 양산 가능성

문의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해외진출실: hy.park@kita.or.kr/ 02-6000-5658

Q&A

Q. 창업 연도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정해지나요?

A. 아닙니다. 협회의 글로벌 기업과의 밋업에는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응어설명

오픈이노베이션 : 기업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 개발에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

6-2

스타트업 해외 실증 테스트베드

스타트업 글로벌 지원

스타트업의 혁신 솔루션을 실제 다중복합시설 및 대기업 내외부 시스템에 접목하여 스타트업에게 기술 실증(PoC)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

지원내용 ● 대기업/ 복합시설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스타트업 기술 실증
 ● 다국적 기업과의 연결을 통한 해외 판로 확보
 ● 대기업 협력 레퍼런스를 통한 투자유치 기회 제공

신청·접수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온라인 신청
 ● 무역협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www.innobranch.com)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영문 사업소개서 및 협력 제안서)
 - 개별 사업 계획에 따라 이메일 접수 병행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기술의 시장성 및 해외 진출 가능성
- 시제품 출시 여부 및 대량 양산 가능성
- 시장 내 실제 접목 사례

문의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해외진출실: hy.park@kita.or.kr/ 02-6000-5658

Q&A

Q. 창업 연도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정해지나요?

A.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마다 모집요건이 상이하여 개별 사업 계획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용어설명

PoC(Proof-of-Concept), 개념 증명 : 기존 시장에 없었던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성능에 대한 검증을 위해 사용해보는 것. 특정 방식이나 아이디어를 실현하여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

6-3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운영

스타트업 글로벌 지원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의 다각적인 연결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주로 국내외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양방향 매칭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

지원내용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국내외 기업과 스타트업 연결 지원
●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챌린지를 생성·관리하여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직접 운영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으로 해외 이용자 접근성 제고
- ▶ 스타트업 DB 검색 기능 도입으로 스타트업 노출 확대
- ▶ 스타트업 간 소통 창구 개설로 네트워킹 활성화

신청·접수 ● 무역협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www.innobranch.com) 가입을 통한 플랫폼 이용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기술의 시장성 및 해외 진출 가능성
- 시제품 출시 여부 및 대량 양산 가능성
- 신규사업 등록 시 공고 내용의 적격성

문의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해외진출실: kw.lee@kita.or.kr/ 02-6000-5342

Q&A

Q. 기업별로 한 명의 관리자만이 가입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여러 명이 가입 가능하며, 기가입된 기업의 경우 기업 소개 내용은 추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4

tradeKorea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

B2B e-Marketplace 온라인마케팅 지원 플랫폼

B2B e-Marketplace 기반 바이어/셀러 매칭 및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플랫폼. 거래제외서 작성/발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바이어와의 매칭을 지원하는 해외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빅바이어 상시 거래알선, 미니사이트 제작지원 등 온라인마케팅부터 계약성사까지 지원

지원대상

- tradeKorea.com에 가입한 국내 기업회원
 - * 일부 서비스는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만 제공

지원내용

- 무역협회 바이어DB 활용 타겟 마케팅
 - 국내 기업이 직접 무역협회 바이어DB에서 바이어 검색
 - 관심바이어 대상 C/L(거래제외서) 작성 및 발송
- 해외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 무역협회 해외지부 관할 지역 대상
 - 해외지부에서 직접 마케팅 통해 관심 바이어 발굴 및 매칭
 - * 1회 신청 시 최소 1개 ~ 최대 3개 지역 서비스 원칙 (연 3회 최대)
 - * 이 서비스의 경우, 협회 회원사만 지원 가능
- 빅바이어 상시거래 알선
 - 글로벌 빅바이어를 온라인으로 초청해 국내기업과 상시 알선 지원
- 미니사이트 제작지원
 - tradeKorea 내 기업/제품홍보 페이지 무료 제작지원
 - 홈페이지처럼 이용 가능한 도메인 및 웹사이트 제공
-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 바이어로부터 공개가 허가된 인콰이어리에 한해, 구매오퍼 공개제재
 - 바이어가 지정한 기간동안 노출이 되며, 기간이 지나면 이용할 수 없음

신청·접수

- tradeKorea 국문 페이지(kr.tradekorea.com)에서 신청

문의처

- 온라인마케팅실 : 02-6000-5417

6-5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FTA 활용 지원

FTA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업체에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을 지원

지원대상

- 전국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 ▶ 직전 2년내 FTA 컨설팅 수혜기업
(단, 품목, 협정 등이 상이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FTA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관리 컨설팅과 비관세분야(해외인증, 지재권 등)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 (▶아래 4가지 컨설팅유형 중 택1)
 - (필수) FTA 활용(원산지관리) 컨설팅
 - * 관세법인 소속 전문 컨설턴트(관세사)가 컨설팅 수혜기업을 방문하여 FTA 활용 및 원산지 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아래 4가지 컨설팅 유형 중 택1)
 - (선택) 비관세분야 컨설팅
 - * FTA종결국 수출 시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또는 지재권 분야에 관한 전문가의 맞춤형 정보 제공(▶해외인증 또는 지재권/계약 중 선택)

유형	FTA 업무	지원일수(MD)		담당기관
		제조업체	비제조업체	
필수	A OK FTA Master 컨설팅*	6~8	4~6	FTA종합지원센터(전국)
	B OK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지원	2~4		FTA종합지원센터(서울) +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C OK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지원	2~4		
	D OK FTA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취득 지원	3~5		
선택	해외인증 컨설팅	FTA종합지원센터 비관세장벽 컨설팅 사업과 연계(전국)		
	지식재산권 컨설팅			

* 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 컨설팅의 경우 OK FTA Master 컨설팅을 통해서만 가능

업체 분담금

- 전년도 매출액 기준 차등분담 : ① 50억원 이하 : 무료
 ② 50억원~100억원 미만 : 10% ③ 100억원~500억원 미만 : 20%
 ④ 500억원~1,000억원 이하 : 30% ⑤ 1,000억원~1,500억원 미만 : 40%
 ⑥ 1,500억원 이상 : 50%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종합컨설팅(Master) 신설(전국대상 FTA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 수행)
- ▶ 컨설팅 유형 축소(원산지확인서 전산발급, 세관장 사전확인 지원 등 폐지)

신청·접수

-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okfta.kita.net)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 참가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후 아래 필수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필수 제출 서류	① 사업진행 동의서 1부	② 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 매출실적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만 인정 / 기장대리 세무사 확인본 불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FTA관세실익, 직전 2년내 FTA 컨설팅 여부, 대기업집단 여부 확인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 1380 콜센터 및 지역FTA활용지원센터
 - 서울 : 02-6000-7583~4
 - 경기(남부)FTA활용지원센터 : 1688-4684(1번)
 -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 : 1688-4684(2번)
 - 인천FTA활용지원센터 : 032-810-2824
 - 충남FTA활용지원센터 : 041-539-4531
 - 세종FTA활용지원센터 : 044-863-3080
 - 대전FTA활용지원센터 : 042-480-3044
 - 전북FTA활용지원센터 : 063-711-2046
 - 광주FTA활용지원센터 : 062-350-5862

- 전남FTA활용지원센터 : 061-288-3872
- 강원FTA활용지원센터 : 033-257-4071
- 충북FTA활용지원센터 : 043-229-2722
- 경북FTA활용지원센터 : 054-454-6601
- 경북(동부)FTA활용지원센터 : 054-274-2233
- 대구FTA활용지원센터 : 053-222-3105~8
- 울산FTA활용지원센터 : 052-287-3060~1
- 부산FTA활용지원센터 : 051-990-7016
- 경남FTA활용지원센터 : 055-210-3043
- 제주FTA활용지원센터 : 064-757-2164

6-6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사업

비관세장벽 지원

비관세장벽(해외인증·지재권)으로 인해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업체들에 맞춤형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지원대상 ● 전국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콜센터, 특강/설명회 : 제한 없음
- ▶ 비관세장벽 현장방문 컨설팅
 -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 최근 2년 이내 비관세장벽 컨설팅 수혜기업 (단, 품목이나 국가가 상이할 경우 지원 가능)
- ▶ 해외인증 획득 및 지재권 출원 지원
 -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 최근 2년 이내 해외인증 획득 및 지재권 출원과 관련하여 국고보조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

지원내용

- ① 비관세장벽 대응 1380콜센터 연중 상시 운영
 - 국번없이 1380으로 전화하면 FTA종합지원센터 전문 상주인력(해외인증 전문가, 변리사)과의 지재권, 해외인증 관련 전화상담 상시 가능
 - 운영 시간 : 월~금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② 비관세장벽 현장방문 컨설팅
 - 해외인증 전문가 혹은 변리사가 직접 해당 기업을 방문(1~3회)하여 업체 맞춤형 심층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
 - * FTA통합 플랫폼(okfta.kita.net)을 통해 신청 가능
- ③ 해외인증 획득 및 지재권 출원 지원
 - 해외인증 획득 및 지재권 출원 시 소요되는 쉐 과정의 제반비용을 일정 한도 내 지원 ('21년 기준, 해외인증 최대 800만원/지재권 최대 600만원)
 - * 2022년도 사업은 2022년 3~4월 중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④ 비관세장벽 특강/설명회 개최

- 특허·상표 출원 기초교육 특강, 미·중·유럽 마스크 해외인증 설명회 등 매 개최 때마다 상이한 주제로 강연 예정 (연중 수시 개최)

* 무역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요망

신청·접수

- FTA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 및 무역협회(kita.net)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FTA기업지원실 (02-6000-7582)

6-7

TradeSOS 무역애로건의 종합지원시스템

무역정책 애로 해결

무역업계의 애로사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접수하고 모든 진행과정을 이메일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무역애로건의 DB를 통해 기존 접수된 애로사항을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자격) 제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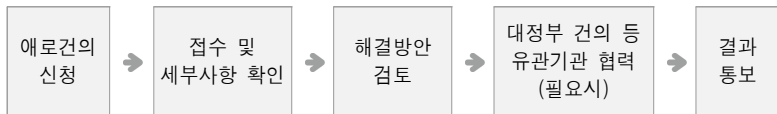
지원내용 ● 무역업계 애로사항 온라인 접수 및 처리

- 신청, 접수, 검토, 완료 등 업무처리 과정을 무역업계가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며, 애로건의 처리 단계별로 업체 측에 이메일, 문자 등 통보
- 무역애로 DB 검색시스템 구축
 - 무역업계가 제기한 애로사항 검색을 통해 업무에 활용 가능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무역지원서비스 - 무역애로건의

-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한국무역협회 국내지역본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6-8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업체 방문을 통한 맞춤형 현장컨설팅

종합상사 및 대기업·중견기업 출신의 무역분야 평균 30년 이상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1:1 맞춤형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지원대상 ● (신청자격) 제한 없음

지원내용

- 해외시장 정보, 바이어 발굴 등 해외마케팅 관련 단계별 종합 컨설팅
- 업체 애로 발굴 및 해소
- 거래 단계별 맞춤형 무역실무 및 경영컨설팅 등
 - 거래선 분석, 무역서식 및 계약서 작성·검수, 신용장분석, 효과적인 바이어 대응과 협상 전략, 선적서류 작성, 무역클레임 상담 등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무역지원서비스 - 무역현장 컨설팅
-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한국무역협회(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층) 회원서비스센터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6-9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수출중소기업에 자금지원

수출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이 2,000만 달러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협회 회비를 완납한 업체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시중은행(7개) 및 지방은행(6개)의 본·지점을 통하여 융자
* 한국무역협회 본부(무역진흥자금사무국) 및 13개 국내지역본부가 추천업체 선정

유의사항

- 은행 심사결과에 따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또는 자체 신용이나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출하여야 함

융자조건

- 금리 : 연 2.0~2.5%(고정금리)
 - 회비납부 10년이하(2.5%), 11~20년(2.25%), 21년이상(2.0%)
- 기간 : 3년(2년 거치 후 연 4회 균등 분할상환) (1,4,7,10월의 25일)
- 융자한도 : 최고 3억원 (회비납부 연차에 따라 한도 차등)
 - 회비납부 10년이하(2억원), 11~20년(2.5억원), 21년이상(3억원)
 - * 단,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사업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 수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금액을 산정

신청·접수

-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fund.ki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3월~11월, 월초(1일~10일) 신청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제출서류

- 기본서류
 - 무역진흥자금 융자추천 신청서(온라인 양식)
 - 무역진흥자금 사용계획서
 - 사업계획서(기 작성된 자료 첨부 가능)
- 선택서류
 - 융자신청서 상의 가점 항목(특허·인증 및 수상이력 등)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하여 해당 서류 사본 제출
- 서류제출
 - 온라인 신청서 상 내용 작성 및 파일 첨부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및 해당지역의 지역본부
-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fund.kita.net)

6-10

KITA 해외 바이어 초청 화상수출상담회

코로나 극복 비대면 마케팅 지원

코로나19로 해외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바이어를 초청하여 1:1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개최하는 비대면 마케팅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내용 ● 국내외에서 글로벌 바이어를 초청하여 우리기업과 상담 주선
● 지역별/품목별 바이어 선정을 통한 전략적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 화상 상담 인프라 (상담장, 화상시스템 등) 및 무료 통역 지원
● 수출상담회 연계 마케팅 지원 (무료 샘플 배송, 사후 마케팅 등)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온라인 신청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병행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품 영문 카탈로그 1부 등
* 상담회별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모집공고 확인 필수



지원규모 ● 지역/품목별 연중 상시 개최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6-11

020 전시·화상 수출상담회

코로나 극복 비대면 마케팅 지원

코로나19로 현지 출장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 오프라인 샘플 전시, 초청 바이어 온라인 화상상담, 일반 참관객 대상 B2C 홍보 등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마케팅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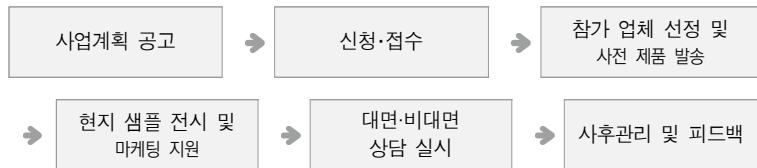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내용 ● 현지 샘플 전시 및 마케팅 (사전 샘플 발송 및 인허가 절차 지원)
 ● 바이어 초청 상담 (B2B), 일반 참관객 대상 홍보 (B2C)
 ● 화상 상담 바이어 매칭 및 통역 지원
 ● 현지 인플루언서 초청 제품 홍보, 뷰티·메이크업 쇼 등 부대행사 지원
 ● 온라인 전시관 (tradeKorea.com) 운영 및 홍보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온라인 신청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병행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품 영문 카탈로그 1부 등
 * 상담회별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모집공고 확인 필수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6-12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매칭 수출 상담회

중소·중견기업 간접 수출 지원

전문무역상사와 제조기업의 1:1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매칭 상담을 알선하여 수출 전문기업으로 하여금 노후유가 부족한 우수 제조기업의 수출대행을 지원하게 하는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전문무역상사 지정 기업

지원내용

- 수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간접 수출 지원을 위한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 국내 유망 제조기업과 온라인·오프라인 맞춤형 매칭 상담 알선 등 수출 마케팅 지원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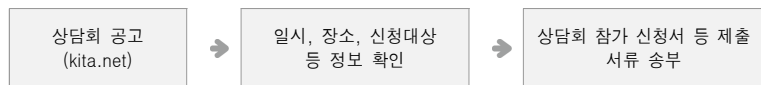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ctc.kita.net) 온라인 신청
-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병행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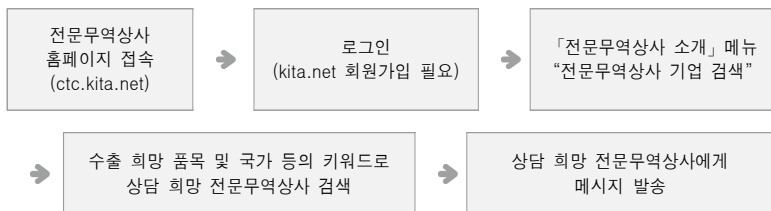
- 상담회별 모집공고문 참조

처리절차

- 오프라인 상담회



- 온라인 매칭



지원규모

-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매칭 상담회 연중 상시 개최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 : ctc.kita.net

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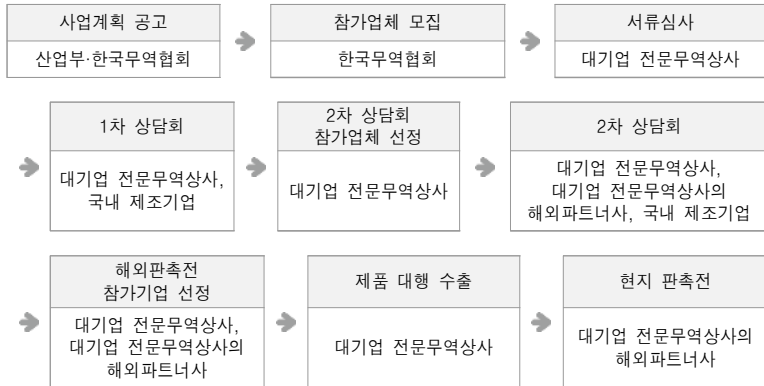
대기업 전문무역상사 네트워크 활용 해외시장 개척 지원

중소·중견기업 간접 수출 지원

대기업 전문무역상사의 해외 인프라 및 현지 네트워크 (파트너사 등)를 활용하여 국내 우수 제조기업과의 수출상담회 및 온·오프라인 해외 현지 판촉전을 지원하는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내용** ● 대기업 전문무역상사 및 대기업 전문무역상사의 해외파트너사와 수출 상담회
● 우수 제조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해외 현지 판촉전 지원
-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ctc.kita.net) 온라인 신청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병행
- 제출서류** ● 상담회별 모집공고문 참조

처리절차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 : ctc.kita.net

6-14

국내 전문 전시회 개최

산업별 전문 국제전시회 개최

국내 전문 전시회 개최 및 연계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해당 업계 및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전시 마케팅 사업

- 지원대상** ● 해당 산업 분야 관심기업
- 지원내용** ● 국내 온·오프라인 전시회 개최
● 전시회 연계 바이어 초청 대면·비대면 상담회, 세미나 등 부대행사 개최
- 신청·접수** ● 전시회 부스 참가 : 각 전시회별 지정 접수처
● 전시회 연계 마케팅 사업 : 전시회 참가기업 우선 매칭
- 제출서류** ● 전시회별 참가 안내문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전시회 2건, 해외바이어 50개사 내외 초청 및 매칭 상담회 개최
* 추진 과정에서 지원 방식·규모는 변동 가능

	전시·상담회명	시기	장소	홈페이지
1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2.18 ~ 21	코엑스	spoex.com
2	월드IT쇼 (World IT Show)	4.21 ~ 23	코엑스	worlditshow.co.kr

문의처

- 전시회 참가 문의 : 각 전시회 홈페이지
- 전시회 연계 마케팅 사업 문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1566-5114, www.kita.net)

6-15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망 해외 전시회 한국관 참가

국내 유망 수출기업들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신규 바이어 발굴, 기존 바이어 관리, 제품 홍보, 현지 시장 트렌드 파악, 국내외 동종산업 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수출 마케팅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준에 준하는 업체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최대 70%) 및 장치비(최대 70%) 지원

● 장치·운송·상담·현지언론 홍보 등 애로사항 지원

● 전시정보·시장동향 등 정보 수집

* 전시회별 지원을 상이, 지원전시회 및 업체 수 변동 가능

신청·접수 ● 공동수행기관 사이트 온라인 신청

- 무역협회 (www.kita.net)

- 중소기업중앙회 (www.smes.go.kr/sme-expo)

- KOTRA (www.gep.or.kr)

제출서류 ● 공동수행기관 사이트 온라인 신청 및 무역협회로 서류 제출

-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 및 전시품목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정산용 통장(회사명의) 사본 1부, 영문 카탈로그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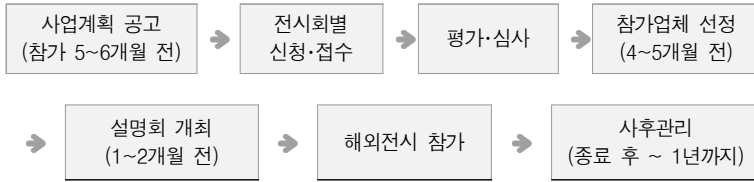
*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 최근 3개년도 연도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선택서류

* 국내외 전시회 참가증명서, 각종 규격인증/우수디자인/ 산업재산권 인증서, 정부/지자체 표창 사본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6개 해외전시회, 약 60개사 한국관 참가 지원

구분	전시회명	시기	모집업체	공동수행기관
1	독일 쾰른 FIBO	4.7~10	10개사	중소기업중앙회
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PLMA 프라이빗라벨 전시회	5.31~6.1	10개사	코트라
3	독일 함부르크 조선해양 기자재 전시회	9.6~9	10개사	코트라
4	미국 LA 무선통신 전시회	9.6~8	10개사	코트라
5	미국 시카고 PLMA 프라이빗라벨 전시회	11월중	10개사	코트라
6	중국 상하이 프라이빗페어 아시아 전시회	12월중	10개사	중소기업중앙회

* 지원 전시회, 시기, 모집업체 숫자는 변동 가능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6-16

디지털 무역상담 플랫폼 TradePro

무역 전문상담 맞춤형 지원 (채팅/화상/전화)

무역업체의 전문상담 지원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무역실무, 해외인증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채팅/화상/전화 맞춤형 상담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무역협회 회원사 (비회원사도 연 1회 이용 가능)

지원내용 ● 변호사, 회계사, 무역실무, 해외인증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맞춤형 방식으로 제공 (채팅/화상/전화)

상담분야	이용방식	컨설턴트
수출입실무/신용장/대금결제	온라인 예약제 (전문가의 상담 가능 시간에 맞추어, 고객이 원하는 상담형태로 사전예약)	무역실무 전문가
해외인증		해외인증 전문가
관세/HS분류/FTA/원산지		관세사
국제계약/클레임		변호사
세무/회계		회계사/세무사
환율/외환		외환전문가
온라인마케팅		오픈마켓 파워셀러
인사/노무		노무사
특허/상표		변리사
창업컨설팅		무역업 창업 전문가
지역전문가		지역별 무역 전문가
물류전문가		지역별 물류 전문가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TradePro > 1:1상담/오픈상담

6-17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중소기업 해외지사 설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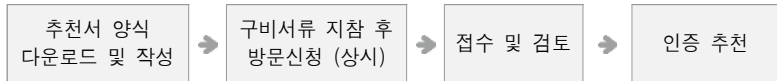
해외지사 및 해외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무역업체를 추천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이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 추천기준
 - 해외지점 설치인증 추천
 - * 신청일 현재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업체
 - * 10만불 이상의 취소불능신용장 수취 또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업체
 - * 상기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출실적, 수출의지, 수출전망 등을 중점 평가)
 - 해외사무소 설치인증 추천
 -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출실적 유무, 수출경험, 수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수출입과 관련 없는 업종은 업종관할 주무부 장관 추천
- 지원내용**
-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 운영에 따른 외화 송금에 필요한 인증추천서 발급
- 신청·접수**
- 홈페이지에서 서류양식 다운로드 후, 구비서류 작성 및 지참하여 방문 신청
 - 온라인 :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membership.kita.net) - [무역관련 증명서 발급] - [무역업고유번호증·추천서·확인증] - 양식 다운로드
 - 전화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내방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층) 및 13개 국내지역본부

제출서류

- 추천서, 수출실적증명서(또는 신용장 사본),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membership.kita.net)에서 다운로드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회사현황 : 개요 및 연혁, 연간매출액, 인원현황, 생산능력 및 가동률, 주요생산시설
 - 해외사업부문
 - * 해외지점(사무소)의 설치목적(목적, 파견인원, 운영비용 등)
 - * 사업배경(수출계획 및 향후 사업 추진 방향(3개년), 시장규모/특성/유통 등의 현황)
 - * 현지판매 및 영업 전략(마케팅 전략 포함)

처리절차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membership.kita.net) 참조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6-18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발급

신속한 출입국 수속

APEC 회원국간 역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멀티 VISA로써 역내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60~180)일간 체류 보장하고, 공항내 전용 수속레인을 통한 출입국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추천대상

- 법무부 훈령 제1192호 제3조에 의거
 - 무역업체 :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최소 6개월 이전) 수출 또는 수입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무역업고유번호 필수)
 -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실적도 인정
 - *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주회사현황에 등록된 업체만 신청가능
 - 해외투자업체 : 해외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 *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도 가능
 - 해외건설업체 : 해외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
 - 외국인투자업체 :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기업
 - 전시업체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 규모가 10,000㎡ 이상이며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카드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3회 이상 개최한 기업이나 단체
 - * 수출입과 관련 없는 업종은 업종관할 주무부 장관 추천

추천 제외 대상

- ▶ 상기 지원 대상 기업의 수출입 또는 투자업무 담당자라 하더라도 APEC 회원국으로의 출입국사실(최근 2년간 4회 이상 상용목적으로 방문)이 없는 개인
 - *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개인 자격 요건 완화 ('19년 1월 ~ 신청일까지 상용목적으로 APEC 회원국을 2회 이상 방문한 자) → 조기종료될 수 있음

추천내용

- APEC 회원국중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출입국을 보장
- 가입국 공항내의 ABTC 소지자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한 출입국 수속 가능
- ABTC 21개 가입국
 - VISA 면제(19개국)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페루, 홍콩, 멕시코, 러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칠레, 일본, 브루나이
 - 미국과 캐나다는 비자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공항에서 전용레인 (Fast Track)을 통한 수속만 보장하는 잠정회원(Transitional Membership)으로 입국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
- 카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유효기간 만료 시 신규신청)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ABTC 홈페이지(abtc.kita.net)를 통한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 업체 공통서류(각 1부)
 - 추천의뢰서(인감날인 필) ※ 온라인 입력후 출력
 - 신청자명단 및 재직정보확인서(인감날인 필) ※ 온라인 입력후 출력
 - 소지자 명단(ABTC 소지자가 있는 경우) ※ 온라인 입력후 출력
 - 사업자등록증명(2개월 이내 발급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자격 확인용 실적 증빙서류(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표 참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연월 기준 최근 한 달전, 기업 인감 날인 필, 매월/반기 체크 필)
- * 1인 기업으로 발행이 되지 않을 경우, 납부내역증명으로 대체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신청대상	증빙서류	발급처
무역업체	수출/수입실적증명서 - 직전년도 또는 해당년도(6개월 이전) -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것	직수출/입 : 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 외국환은행/ KTNET
해외투자업체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외화송금확인서 또는 외화 송금전문사본 - 해당 거래 은행 명판 및 도장 날인	외국환은행(증권사/보험사의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재정경 제부에서 발행)

신청대상	증빙서류	발급처
건설업체	해외건설 수주실적 확인증명서	해외건설업협회
외국인투자업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100만 달러 이상 투자기업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전시업체	국제전시연합(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s)인증서 - 국제전시회 3회 이상 개최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 규모가 10,000㎡ 이상 - 인증서 사본에 기업인감 날인후 원본 제출	
APEC중사자 경제단체 공무원	별도 실적서류 필요 없음 - 해당 경제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원인 지역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에 근무하는 임직원 - 단체별 카드발급 인원은 20인 이내 (단, 지역상공회의소는 3인 이내) - 업무기술서 및 재직증명서 필요	해당업체(근무처)

● 개인서류(신청자 개인별 각 1부)

- 영문신청서(규정양식) + 여권사진 부착(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 규정양식에 빈칸없이 작성
 - * 서명은 여권서명과 동일, 굵은펜을 이용한 자필 서명(굵은펜이 아닐 경우 발급된 카드서명이 보이지 않을수도 있으며, 서명 교체 등록 불가)
 - * 흰색배경/가로 3.5cm x 세로 4.5cm (외교통상부에서 규정한 여권사진 규격)
- 여권사본 :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복사 (여권서명 포함)
 - * 주민등록 후단번호 와 하단의 숫자정보 가린 후 복사한 여권사본 제출
- 정보이용동의서(규정양식)
 - * 작성일자, 생년월일, 신청인명 반드시 작성
 - * 수기로 자필서명 후 원본서류 제출
- 서약서(규정양식)
 - * 작성일자, 신청인명, 대표자명 반드시 작성
 - * 자필서명 및 기업인감 날인
- 범죄·수사경력회보서(범죄경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본서류 제출)
 - * 발급처 : 전국 경찰서 방문/온라인 발급,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 * 온라인발급(공통인증서) 발급시스템 주소 : <http://crims.police.go.kr>
 - * 발급용도 :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실효된 형 미포함)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국문, 영문회보서 상관없이 신청가능
- * 반드시 밀봉하여 봉투에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업체명/신청자명' 표기
- * 실효되지 않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불가
- * '실효된 형'은 형집행 종료 후 다음기간을 경과한 형을 말함
- * 3년 초과 징역·금고형 : 10년, 3년이하 징역·금고형 : 5년, 벌금형 : 2년(벌금 납부한 날로부터)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ABTC홈페이지 : <http://abtc.kita.net>

Q&A

Q. ABTC를 신청하고 발급받기까지의 소요기일은 얼마인가요?

A. ABTC를 신청하신 후 추천심사에서 발급심사를 거쳐 각 국가별 승인이 이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3~4개월 소요 예정입니다(코로나19 등 특수한 업무장애요소 발생 시 발급에 시간이 더욱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ABTC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거나 ABTC 홈페이지의 FAQ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btc.kita.net)

응어설명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 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신속한 출입국 수속을 보장하는 VISA 면제 출입국카드

6-19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외국인력 고용 촉진 지원

기업이 무역분야 외국인 고용을 위해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자 할 때, 사증(VISA) 발급의 필요성을 인증해주는 추천제도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천
 - 무역업고유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무역업체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
 - 사증발급 추천대상 외국인은 무역관련 전공(경제, 경영학포함)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했거나, 국내외에서 1년 이상 무역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함
 - 하나의 신청업체는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2명 이상 추천할 수 없음. 다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원내용**
- 무역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VISA) 발급 추천

- 신청·접수**
- 홈페이지에서 서류양식 다운로드 후, 구비서류 작성 및 지참하여 방문 신청
 - 접수처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층)
 -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을 통한 접수·발급 일절 불가)
 -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 발급 추천란에 게재된 구비서류(해당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 포함)
 - 사증발급 추천신청서 1부(신청업체가 반드시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
 - 회사소개서 1부(대표, 업종, 종업원수, 생산품목, 해외영업 등 서술)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사본 1부
-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 외국인 여권 사본 1부
- 외국인 이력서 1부
- 외국인 학력증명서(졸업장 사본 가능) 1부
- 경력증명서(현지 공증서 첨부) 1부
- 고용계약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무역인력 사증발급 추천 서약서 1부
- 외국인 고용 사유서(외국인 고용의 불가피성 서술) 1부

처리절차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membership.kita.net) 참조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6-20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서비스 무역 활성화 지원

서비스 및 무형재화의 수출실적 확인을 통해 무역지원사업 혜택 제공

- | | |
|--------------|--|
| 지원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 |
| 지원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실적 온라인 확인 및 증명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디자인, 컴퓨터 설계 자문업, 특허권, 상표권, 프로그램 제작 등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 영화, 게임, 만화, 동영상 등 |
| 신청·접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신청 :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membership.kita.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관련 증명서 발급] → [수출입실적 증명서] → [발급 신청] → [용역/전자적무체물] 탭 선택 후 신청 |
| 제출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신청 시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파일) - 거래증명서 서류 - 송금 및 입금 증빙서류 |
| 처리절차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 text-align: center;">외화 입출금 증빙 발급
(거래 외국환은행)</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 text-align: center;">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접수</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 text-align: center;">담당자 검토 및
승인(3~7일)</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 text-align: center;">홈페이지에서
실적증명서 인쇄</div>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0px;">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membership.kita.net) 참조</p> |
| 문의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Q&A

Q. 신청에서 증명서 발급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온라인 접수 후 보통 최소 3일~최대 7일의 검토기간이 소요되며 검토 후 증명 발급 여부를 SMS / E-Mail 로 통보해 드립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온라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6-21

국내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대중견기업 혁신 및 스타트업 스케일업 촉진

개방형혁신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스타트업은 대·중견기업에 혁신역량을 수혈하고 대·중견기업은 스타트업에 인프라 및 사업화 기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혁신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 혁신적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지원내용 ● (대·중견기업) 수요 맞춤형 스타트업 선발
- 협회가 소싱/추천한 매칭 스타트업 대상, 참여 대·중견기업이 선발
● (스타트업) 대·중견기업과의 협업 및 투자 기회 제공
- 대·중견기업과의 1:1 실무 밋업 및 C-level 대상 IR 기회 제공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일부 대기업 대상) 협력 촉진을 위한 실증 PoC 프로세스/자금지원 도입

신청·접수 ● 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 /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이노브랜치 (<https://innobranch.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솔루션의 대·중견기업 수요 연계성 등

제출서류 ● (대기업) 혁신 수요 분야 자료 (전화/이메일 상담 가능)
● (스타트업)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서류(협력 제안서) 업로드

처리절차

대·중견기업
수요 확인

모집 분야 공고 및
참가 접수

선정평가

선정기업 밋업

처리절차

- (스타트업) 약 200개사

* '21년 지원현황 : 대중견기업 40개사 초청, 창업기업 200개사 참여

문의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브랜치 : wr.choi@kita.or.kr / 02-6000-5171

용어설명

오픈 이노베이션 : 기업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 개발에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

6-22

무역센터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스타트업 스케일업 촉진

무역센터 CMC(코엑스 MICE 클러스터 위원회)와 협력하여 스타트업 기술의 현장 검증 및 비즈니스 레퍼런스 축적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제품/솔루션의 실증을 위한 현장 PoC(Proof-of-Concept) 프로세스를 지원

지원대상 ●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

지원내용 ● 무역센터 CMC 보유 인프라(WTCS, 코엑스, 도심공항, 현대백화점, GKL 등)를 활용한 스타트업 기술 및 서비스 실증
● 대기업 협력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후속 투자유치 및 판로 확대에 활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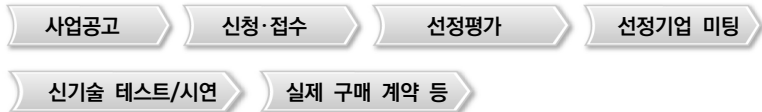
신청·접수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이노브랜치(<https://innobranch.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제품/솔루션의 무역센터 CMC 수요 연계성
- ▶ 다중 복합이용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성 및 신뢰성 등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 서류 업로드
(국문 IR 및 협력 제안서)

처리절차



지원규모 ● 약 20개사

* '21년 지원현황 : 무역센터 CMC 6개사 협력, 창업기업 18개사 선정

문의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브랜치 : wr.choi@kita.or.kr / 02-6000-5171

6-23

스타트업 브랜치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민간주도 스타트업 생태계 기반 확충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이 만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서울 코엑스 2층, 뉴욕, 두바이에 구성되어 있으며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지원대상**
- 스타트업, 투자자(AC/VC), 스타트업지원기관, 창업희망자 등
- 지원내용**
-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 내 행사장, 회의실 및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 행사장(피칭센터, 150인 수용가능), 회의실(3개) 및 코워킹 라운지
 -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스타트업의 니즈에 따라 공간 대여
 - 스타트업 브랜치 뉴욕, 두바이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 협회 뉴욕지부를 통한 미국진출 핵심 스타트업에 대한 공유 오피스 및 투자자와의 미팅을 위한 회의공간 제공
 - 협회 UAE지부-두바이 미래재단(DFF) 협업을 통한 중동진출 희망 한국 스타트업 발굴 및 현지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 신청·접수**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 무역지원서비스 - 스타트업 브랜치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사업 내용 등 필수 기재)
- 처리절차**
- kita.net 회원 가입 → 스타트업 브랜치 멤버십 가입 → 이벤트 예약
- 멤버십
신청 및 승인

이벤트 개최
신청

이벤트 개최
승인

브랜치 사용
및 정리
- 오시는 길 및 이용방법**
- 코엑스 동문(영동대로변)으로 입장하신 후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지나 좌측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면 우측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스타트업브랜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간 소개 및 사용 신청에 대한 상세 설명을 보실수 있습니다. <https://bit.ly/3I87ueG>

6-24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현장방문컨설팅

체계적인 한중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업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FTA 활용 실무, 중국인증, 지식재산권, FTA 시스템 분야의 전문 컨설팅 제공

지원대상 ● 전국 중소·중견기업(對中 무역 관련)

지원내용 ● 수요자 선택형 종합 컨설팅

- FTA 활용 교육 1MD를 필수로 선택 후, 나머지 9MD에 대해서는 총 4개 분야를 수요자 필요에 따라 구성하는 맞춤형 컨설팅(MD=Man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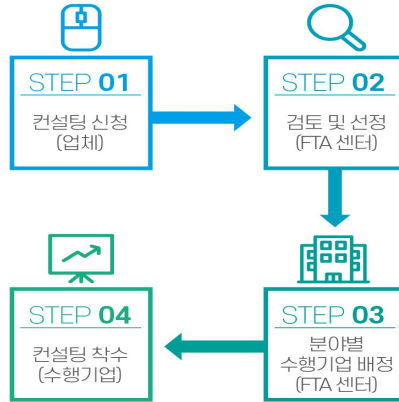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FTA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okfta.kita.net>)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메뉴 선택
 - 신청기간 : ~2022. 11. 30(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 직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업체 분담금 발생

매출액	분담금
50억원 이하	무료
50억 ~ 100억원 미만	10%
100억원 ~ 500억원 미만	20%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30%
1,000억원 ~ 1,500억원 미만	40%
1,500억원 ~ 대기업 미만	50%

- 제출서류**
- 2021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진행 동의서, 정보제공 동의서, 직전년도 매출 실적 증빙서류,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등), BOM(있을 경우)

처리절차



- 지원규모**
- 100개사 내외(사업비 1.5억원)
 - * '20년 43개사, '21년 76개사 지원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380
 - 이메일 : chinadesk@kita.net
 - 홈페이지 : <http://okfta.kita.net>

6-25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전략시장 진출 지원

체계적인 한중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업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FTA 활용 실무, 중국인증, 지식재산권, FTA 시스템 분야의 전문 컨설팅 제공

지원대상

- 대상국가 진출 관심기업

지원내용

- 공통경비 전액 지원
 - 각종 부대행사 개최비 - 비즈니스 포럼, 세미나, 공식 오만찬 등
 - 파견국 내 단체차량 임차비, 행사장 임차 및 조성비, 통역비 등
- 현지 산업시찰 및 주요기업/기관 방문 지원
 - 개별기업 항공임 및 체제비(숙박비 등) 제외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문 카탈로그 1부 등
 - * 행사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 확인 필수

처리절차



지원규모

- 사절단 파견 일정 및 규모 변동 가능

	사 절 단 명	시 기	규 모	지 역
1	대미 경제통상협력 사절단	6월	30개사	미국
2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9월	50개사	러시아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제7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1

기업간 거래공정화

불공정거래 상담 및 자문, 수위탁분쟁조정

기업 간 수·위탁 거래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법률상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해결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분쟁조정, 법률상담·자문 :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등에서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조정협약이 필요한 수탁기업의 경우, 법률자문 지원
 - 공정거래교육 : 불공정거래 피해방지 및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공정거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기업

- 지원내용**
- 분쟁조정 : 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 법률상담·자문 :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자문을 통한 법률적 피해구제 및 애로해소 지원
 - (상담)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 위반여부 및 하도급법 대상여부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시
 - * 협력재단 내 상주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서면·방문·온라인 상담 지원
 - (자문) 피해사안이 복잡하여 심도있는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 지원
 - 납품대금조정협약제도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약 지원
 -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 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가능

- 공정거래교육 : 공정거래 준수, 불공정 피해의 사전방지를 위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신청·접수

- 법률상담 : 전국 불공정거래신고센터 70개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1357+내선9) 또는 전국 신고센터*
 -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주요연락처 참조
-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유 선 : 대표번호 135+내선9
 - 온라인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
- 공정거래교육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이메일 : pey@win-win.or.kr
 - 온라인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 유 선: 02-368-8463/ 이메일 : pey@win-win.or.kr

Q&A

Q.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는 위탁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 위탁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 용품을 구매하거나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 원재료의 구입은 수·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위탁기업이 수탁기업보다 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도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나요?

A. 수·위탁거래는 하도급거래와 달리 위탁기업의 매출액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기업의 매출액이 수탁기업보다 적더라도 수·위탁거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이 될 수 없나요?

A.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 수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Q. 대기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나요?

A. 수·위탁거래에는 판매위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조나 가공행위 없이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불공정신고센터 주요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4-204-7946	중소기업중앙회(KBIZ)	02-2124-3131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대표번호 1357+내선9, 02-368-8463	벤처기업협회	02-6331-7004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1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INNOBIZ)	031-628-9633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29	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 (한국기계산업진흥회)	032-680-3903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6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02-2188-6933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3	한국정보산업연합회	02-2132-0723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9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02-761-2054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63	대한전문건설협회	02-3284-1087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63	한국전기공사협회	02-3219-0516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8	한국의류산업협회	02-528-0111
전북지방중소 벤처기업청	063-210-6446	대한건설기계협회	02-2055-3606
대전·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16	한국플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연합회	02-2280-8222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1	한국의로기기산업협회	02-596-6381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8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031-724-6142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36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 협동조합	02-783-6952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02-783-1711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02-597-9411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02-813-1735	(사)한국포장기계협회	02-6123-3051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연합회	02-3481-9906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032-423-9305
한국금속열처리공업 협동조합	02-712-1072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02-710-0832

제2편 유관기관 (비금융기관)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한국골판지포장산업 협동조합	02-3474-7124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041-411-2112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02-3432-5301	대한영상콘텐츠제작 협동조합	02-556-030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02-3488-6182	한국펄프공업협동조합	070-5029-3714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02-830-0233	(사)한국제화산업협회	02-2234-9131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02-780-261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26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02-536-2141~2	한국감시기공업협동조합	02-454-5114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02-786-8291	(사)서울의류협회(의류제조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02-865-9213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02-711-0989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02-855-5871
한국다이캐스트공업 협동조합	02-716-1611	한국PCB&반도체패키징협회	031-431-7629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02-6240-1151~2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3440-7460
한국벨브공업협동조합	02-782-5611	한국소프트웨어개발 협동조합	053-756-6681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051-264-0197	(사)IT여성기업인협회	02-6956-9952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02-2025-3100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 사업자협동조합	02-368-8470
한국신발산업협회	051-317-5202	(주)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	02-2239-0700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02-587-0331	현대정비가맹점협동조합	02-2038-2558
한국전등기구엘이디 산업협동조합	032-675-9742	한국베어링산업협회	02-784-1705

7-2

성과공유제

대·중소기업 공동의 노력으로 새롭게 창출한 혁신성과를 공유하는 제도

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공동협력 활동을 통해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 대기업 등 위탁기업이 협력사(수탁기업)와 사전에 합의를 통해 신제품 개발·판로개척·생산성 향상 등 공동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합의한 계약대로 공유하는 계약모델

추진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사업내용 ●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업이 시행하는 협력활동을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을 통해 확인

- 성과공유제의 핵심 요건

① 협력활동 목표 합의

- * (제안방식) 위탁기업 제안모집형(공모), 수탁기업 제안형
- * (협력유형 협의 및 합의) 국산화개발, 신기술개발, 판로공동개척, 기술이전 등

② 사전 계약체결

- * (계약체결 시기) 위·수탁기업이 과제 수행 전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계약체결
- * (계약서 작성 시 필수사항) 1)성과공유과제의 목표, 2)위·수탁기업의 공동노력, 3)성과의 공유방법 명시

③ 성과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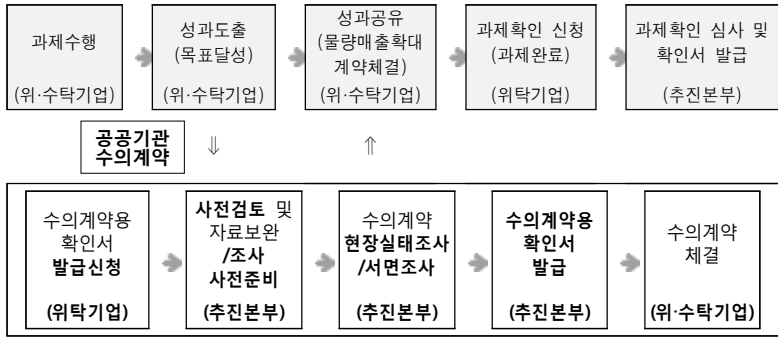
- * (성과공유 방법)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유
- * (성과공유 방식) 현금보상, 물량매출 확대

- 성과공유제 참여절차

① 성과공유과제 등록 :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② 성과공유과제 확인 : 과제계약서, 사업계획서, 공동노력 및 성과공유 실적 등



문의처

- 중소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4-204-7922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력성과확산부 : 02-368-8942
-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www.benis.or.kr

Q&A

Q. 중소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성과공유제' 제도가 2종류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성과공유제는 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기업과 기업간' 협력 활동을 실시하고 발생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와 ②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①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홈페이지) www.benis.or.kr (문의처) 02-368-8793
- ②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성과공유제
(홈페이지) sanhakin.mss.go.kr (문의처) 055-751-9825

응어설명

- 등록과제** : 신청과제 중 성과공유 핵심요건을 갖춘 과제임을 승인받은 과제
- 확인과제** : 등록과제 중 목표달성, 공동노력 및 성과공유 실적을 확인받은 과제

7-3

상생누리 플랫폼 운영

상생협력 프로그램 서비스 플랫폼 “상생누리”

대기업·공공기관 상생협력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자사 협력사 뿐만 아니라 미거래 중소기업에까지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누리(winwinnuri.or.kr)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

지원대상

- 국내 모든 중소기업 대상
 - 단, 프로그램 운영은 대기업·공공기관 정책에 따라 지원 가능범위가 상이할 수 있음

지원내용

- 대기업·공공기관의 노하우가 담긴 10가지 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제공
 - 각종 프로그램을 상생누리 시스템에서 상시 확인 및 신청 가능

[상생누리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지원분야]



프로그램별 지원범위

- ▶ 협력사 지원 : 대기업·공공기관이 시스템 상 협력사로 승인한 기업만 해당 프로그램 조회·참여 가능
- ▶ 계열사 오픈 : 기존 협력사와 계열사 협력사까지 포함하여 프로그램 조회 및 참여
- ▶ 부분 오픈 : 기존협력사와 계열사 협력사 및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프로그램 조회 및 참여
- ▶ 전체 오픈 :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 프로그램 조회·참여 가능

신청·접수

- 상생누리(<https://www.winwinnuri.or.kr>)를 통해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회원가입

프로그램 검색·신청

선정결과 확인

프로그램 참여

단계별 세부사항

- ▶ 회원가입
 - * 사용자별 아이디·비밀번호 부여, 소속 기업정보 등록 후 대기업·공공기관 협력사인 경우 주거래기업 등록 및 승인 필요
- ▶ 프로그램 검색 및 신청
 - * 기업명, 지원대상, 지원분야 등 상세 조건을 설정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신청서 작성·제출
- ▶ 선정결과 확인
 - * 대기업·공공기관이 프로그램 운영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 후 시스템에 결과 업데이트 하고 중소기업은 동반성장 프로그램 탭 중 신청 및 참여이력을 통해 선정 결과 확인
- ▶ 프로그램 참여
 - * 대기업·공공기관 안내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4-204-7913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획운영부 : 02-368-8487
- 홈페이지 : 상생누리(<https://www.winwinnuri.or.kr>)

Q&A

Q. 프로그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기업 회원가입 후 동반성장 프로그램 탭에서 프로그램 검색을 클릭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업명 혹은 프로그램명으로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 기업 회원가입 시 주거래기업 신청 후 승인이 나면, 해당 기업의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회원은 예비창업자 및 취업 연계 지원 프로그램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한 기업 당 한 사람만 가입 가능한가요?

- A. 아닙니다. 상생누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한 없이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응어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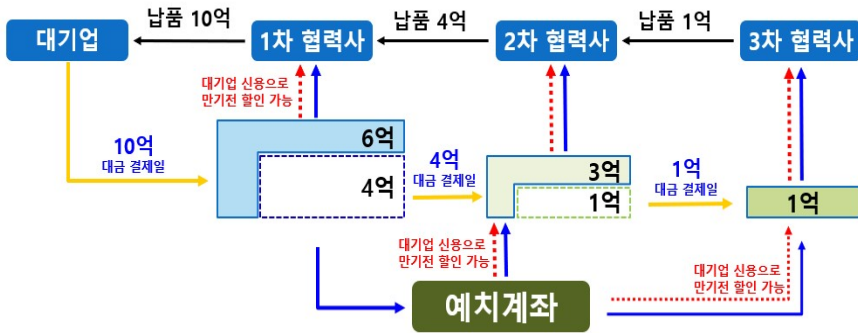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란? :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성의 모든 제도, 정책, 사업, 행사 등을 총칭합니다

7-4

상생결제제도

중소기업의 결제환경 개선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대금결제 제도입니다.



제도장점

-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회수
 - 자금 유동성 개선
 -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고, 거래처에 미리 지급 가능
 - 세액공제 혜택 및 금융수익 발생
 -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및 장려금·환출이자 수익 발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 상생결제로 하도급대금 지급 시 지급 보증의무 면제
-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이용절차

- 상생결제제도 약정체결
 - 구매기업이 약정한 금융기관과 약정체결
 - * 구매기업의 상생결제 도입여부와 약정 금융기관 사전에 확인 필요
 - ** (도입 금융기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SC제일, 하나, 경남, 대구, 전북은행, 현대 커머셜 총 11개 금융기관 운영 중
-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및 이용
 -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후,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하위 거래처, 결제일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
 - * 업무사이트는 은행별로 상이하며, 상생결제 홈페이지 내 금융기관별 현황 참고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정부·지자체에서 집행하는 납품대금을 상생결제로 받을 수 있음
 - * 상생협력법 제22조제6항('21.10.19)

문의처

-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Q&A

Q. 구매기업으로부터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하위 거래처에 구매대금 지급 시 상생결제로 지급해야하나요?

A.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거래처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화 규정을 준수바랍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Q. 상생결제로 하도급 거래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상생결제제도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및 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합니다.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장려금 : 하위 거래처에 대금을 보관하는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상생결제 이용기업에 분기별로 지급

환출이자 : 하위 거래처가 조기 현금화 시 지급한 수수료의 일부를 상생결제 이용기업에 지급

7-5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대기업 해외 인프라 활용 해외진출 지원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공동수주, 법인설립, 해외유통망 입점, 전시회(Booth in Booth) 참가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4에 따른 ‘특례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단, 사업을 신청하는 주체(주관기업)는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 * 참여기업은 주관기업 또는 관리기관(협력재단)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유형(해외거점,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별 연간 2회 초과 참여 제한이 있어 연간 2회이상 참여는 불가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보조금관련법에 의해 참여제한된 기업

지원내용

- 해외거점 :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업종·진출지역별 특성을 살린 제품 현지화 및 안정화 등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활동 지원
 -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동반진출 모델 발굴
- 해외홈쇼핑 : 현지 해외홈쇼핑사 활용한 국내 중소기업의 방송지원
- 한류연계 : 글로벌 한류행사 및 콘텐츠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제품 판촉 및 수출상담 등 한류활용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 유형별 업체당 최대지원 한도액 및 주요 지원항목〉

사업유형	세부내용 및 지원규모	지원항목
해외거점 활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유형·단계별 중·장기 판로개척 활동 60% 이내 지원 (최대 3년 장기과제 지원 가능, 단 2·3차년도 정부보조율 50% 이내, 연도별 성과평가 후 계속 지원여부 판단) 대·중소기업 1:1 매칭 가능 (공동수주, 시범사업 등 한정) 중소기업 1개사당 최대 2천만원 한도 (공동수주 또는 시범사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과제당 최대 5억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조사비, 교육/컨설팅비, 브랜드/인증비, 현지화 개발비, 공간임차료 및 장치비, 제품운송비, 판촉비, 간담회비, 운영비, 통역·안내원 및 상담주선용역비, 홍보비 등 * 비목별 50~100%까지 지원
해외홍소평 방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홍소평 방송 및 소요비용 70% 이내 지원 중소기업 1개사 당 최대 2회 지원 1회 지원 시 최대 2,000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제작비, 제품현지화 등
한류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 콘텐츠 연계 해외 프로모션 등 60% 이내 지원 중소기업 1개사당 최대 2천만원 한도 * 스타마케팅은 중소기업당 최대 4,000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임차료 및 장치비, 제품운송비, 판촉비, 교육비, 부대행사비(이벤트), 간담회비, 운영비, 통역·안내원 및 상담주선용역비, 홍보비 등 * 비목별 50~100%까지 지원 가능

- 세부지원 내용은 사업형태에 따라 변경 가능(사전협의 및 심의 필요)

신청·접수

- 22.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온-오프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동반진출 계획 타당성, 효율성 및 이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044-204-7503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 02-368-8752~55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이유가 있나요?

A.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 법에 근거해 대기업은 동반성장 지수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Q. 참여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A. 참여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해외판로지원 활동이 평가 등에 반영되고 포상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동반성장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홍보되어지고 있습니다. 협력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해당 출연금의 10%를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용자잔액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7-6

기술보호 현장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보안, 법률 분야 200여명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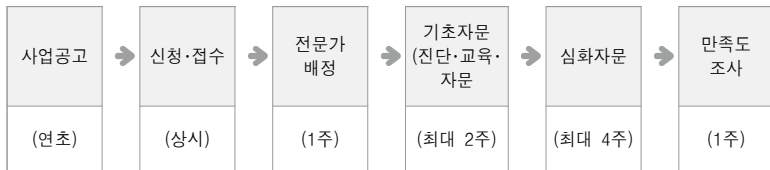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의 경우 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만 지원
 - *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미만, 중소기업 종료 기간 3년 이내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초자문) 기술보호 전문가가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해결방안 자문(전액 무료, 최대 3일)
 - 보안전략 : 보안규정 수립, 영업비밀관리, 임직원 보안교육 등
 - 보안시스템 : PC서버, 네트워크 보안, 클린데스크 지원 등
 - 스마트공장 : 수준별 보안진단, 보안시스템 도입 자문 등
 - 법률자문 : 기술거래, IP, 영업비밀 관련 자문 등
 - 해외진출기술보호 : 해외 기술거래 계약, 해외 IP 대응 자문 등
- (심화자문) 심각한 보안문제 해결, 기술유출 피해 대응방안 마련 등 기초자문 결과에 따라 보안분야 심화자문 지원(소요비용의 75%, 최대 7일)



신청·접수

- 기술보호올타리(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상시 신청
- * 온라인 신청·접수로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으나 중소기업 여부 확인을 위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올타리 : www.ultari.go.kr



Q. 보안자문과 법률자문 둘다 상담이 필요한데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연 1회 보안, 법률 자문을 각각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전략과 시스템, 스마트공장은 같은 보안 분야로, 법률과 해외진출 기술보호는 같은 법률 분야로 분류되어 중복지원이 어렵습니다.

Q. 기초자문의 경우 꼭 3일을 진행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기업 일정에 따라 최대 3일내에서 유동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Q. 법률분야는 심화자문을 지원하지 않나요?

A. 네, 현재 심화자문의 경우 보안분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의 경우 심화자문 필요시 법무지원단으로 연계지원하고 있습니다.

7-7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중소기업 법정대응 능력 제고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법적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법률자문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경우

지원내용

- 변호사 변리사 법률자문 최대 30시간 지원(무료, 150개사 내외)
- 기술유출 탈취 등 기술분쟁 관련 법적대응 및 기술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자문
 - ① (사전예방)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 자문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 출원·심사·등록 관련 자문 및 선행기술조사 지원 등
 - 거래관계기업의 기술자료 요구 시 대응방안 등
 - ② (사후구제) 기술유출 발생 시 민·형사적 대응
 -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침해기업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 특허심판 및 소송 등 법적대응 관련 자문
- 기술탈취 피해기업 대상 침해구제지원팀의 소송대리 및 비용 지원
 - 행정조사를 통해 기술침해가 입증된 신고기업을 대상으로 민사소송 지원

신청·접수

- 이메일 상시 신청·접수(law@win-win.or.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문의처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 이메일 신청·접수(law@win-win.or.kr)

7-8

기술보호지원반

지역별 민관합동 기술보호 전담조직

민관 합동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유출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지원 및 조속한 사건 해결 유도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 지원내용**
- (사전예방) 기술보호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방문교육을 통해 기술보호 중요성 함양 등 사전예방 실시
 - (사후구제) 지역별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유출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지원 및 조속한 사건 해결 유도

- 신청·접수**
- 이메일 상시 접수(support@win-win.or.kr)

- 문의처**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Q&A

Q. 사후구제 방문 시 지원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 변호사(변리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하여 방문합니다.

7-9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지원

기술유출 디지털 증거수집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 대응을 위해 기업소유의 업무용 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활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내부직원에 의해 사자의 업무용 디지털기기를 통한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희·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경우
- ▶ 소유권이 불분명한 대상물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지원내용**
-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피해중소기업의 증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 기업소유의 PC, 노트북, 태블릿, 모바일 등 업무용 디지털기기를 디지털포렌식 전문기업을 통해 분석 지원(20개사 내외)
 - 디지털포렌식 전문기업을 통해 디지털포렌식을 지원하고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추가비용 자부담)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이메일 상시 신청·접수(forensic@win-win.or.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의뢰물 소유권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 문의처**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 이메일 신청·접수(forensic@win-win.or.kr)

7-10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역량강화, 기술보호인증을 통해 선도기업으로 육성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우대지원 : 기술유출·침해 등 피해경험기업, 국가핵심기술/소부장 등 혁신·전략성장분야 중소기업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등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지원내용

-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역량부터 고도화 수준까지 맞춤형·단계별 지원
 - 기본역량강화(관리적보안) : 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조직·교육·인력관리에 대한 자문비용 지원, 기술자료 임치수수료 지원
 - 고도화(기술적·물리적보안) : 기업의 기술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장비, 암호화, 접근통제, 시설보안비용의 일부 지원

기본역량 강화	고도화
① 현장자문(최대 10일 무료) ② 기술자료임치 (최대 3건, 90만원 한도) ③ 법무지원단 (30시간 무료(최대 7.5백만원))	④ 기술지킴서비스(5년 무료) 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최대 50% 이내, 4천만원 한도)

- * 기업의 필요성과 보안역량, 참여이력에 따라 차등 지원
- * 지원방법 : 간접지원(전문가 또는 전문공급기업을 통한 자문·서비스 지원)

신청·접수 ● 이메일 접수(ultari@win-win.or.kr) <'22년 2월경 공고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를 통한 참여기업 선정
- 지원 필요성, 핵심기술 보유여부, 기술보호 노력정보와 의지, 기대효과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Q&A

Q. 기술보호 선도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맞춤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A. 참여기업 대상으로 기술보호 전문가의 사전진단을 거쳐 보안취약항목을 진단한 후 기업의 보안수준과 기술보호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단계별로 종합지원하게 됩니다.

Q. 올해는 몇 개사를 지원하게 되나요?

A. 2021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하였고 2022년 본격적으로 25개사 내외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7-11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증제(신규)

기술보호 지원 체계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자발적인 기술보호 역량제고 노력을 유도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 사전 컨설팅, 인증심사비용 지원 (무료)
- (인증기준) 국내외 보안인증 지표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5개 대분류 20개 항목으로 구성
- (인증특전)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참여시 가점, 기술보호 정책 지원 등 우대

신청·접수 ● 이메일 상시 접수(ultari@win-win.or.kr) <'22년 3~4월 공고 예정>

문의처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Q&A

Q. 기술보호인증제와 다른 인증제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국내외 인증지표를 벤치마킹하여 설계하였고, 전문인력, 비용부담으로 기술 보호가 어려운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하여 쉽고, 준비기간이 짧고, 준비과정이 실질 도움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7-12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시범)

기술분쟁 법률비용 보상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분쟁 대응 유도 및 재정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술(특허, 임차기술)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 지원내용**
- 가입 보험료의 최대 70%이내 지원
 - 보험목적물 : 중소기업 기술(특허, 임차기술)
 - 보장내용
 -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피소대응) 비용보상
 - 보험 가입자의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소제기) 비용 등을 보상

구분	피 소 대 응(기본)	소 제 기(특약선택)
내용	•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기술, 권리)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 대응 - 경고장, 침해소송, 권리 무효소송 대응 등	• 보험가입자의 보험목적물(기술,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 침해사실 조사(피해입증), 경고장 발송, 라이선스 협상, 침해소송 등
보장기간	단기(1년) 또는 장기(3년)	단기(1년) 또는 장기(3년)
보상금액	최대 5천만원	최대 5천만원
보험효력	가입 즉시	(1년)3개월 이후, (3년)6개월 이후

* 세부 보험료와 참여 보험사는 '22년 사업공고시 게재 예정

- 신청·접수**
- 이메일 상시 접수(ultari@win-win.or.kr)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6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7-13

기술자료 입치제도

핵심기술의 안전한 보관

기업 핵심 기술자료를 입치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개발사실 입증 및 기술유출 사전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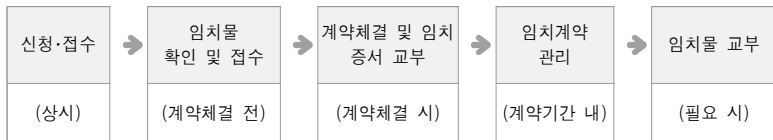
- 지원대상**
- 타업체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 지원내용**
- 핵심기술 정보를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 발생 시, 입치한 기술의 개발사실을 입증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추정력을 부여

- 수수료**
- 신규 30만원/년(최초 입치계약), 갱신 15만원/년
 - * 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 기업한 기업은 입치수수료를 1/3 감면, 5년이상 장기입치시 입치수수료를 1/2 감면
 -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 거래예정기업으로 제출하기 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입치제도 무료이용(1년이내) 가능(창업기업 무료, 벤처기업 5만원 / 온라인 신청 500MB 이내 입치가능 / '22.10.29일까지 시범 운영

- 신청·접수**
- 온라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입치센터(www.kescrow.or.kr)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셰이프(ts.kibo.or.kr)로 접속
 - 오프라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기술보증기금(대전)으로 직접 방문(방문 전 문의처로 유선 연락 필요)

처리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3
- 기술자료 임치센터 : 02-368-8484, www.kescrow.or.kr
테크세이프 : 1544-1120, ts.kibo.or.kr

Q&A

Q.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가요?

A. 기술임치제도는 '코카콜라 제조비법'과 같은 기술·경영상 핵심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영업비밀을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기술임치제도와 특허제도의 차이는 뭔가요?

A. 특허권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 기술에 대하여 청구범위에 한해 독점배타적인 권한을 부여 받지만, 기술이 외부로 공개되기 때문에 대체 기술이 쉽게 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술임치제도는 맡겨놓은 기술정보에 대해 맡긴 사람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고, 제품 설계도 및 생산제조방법, 소스코드, 원가정보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7-14

기술보호 역량강화

기술보호 기반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보안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지킴서비스(보안관제, 악성코드 탐지 등 24시×365일 모니터링)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지원내용

- (일반과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 망분리 등),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 (해외연계과제)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
 - *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 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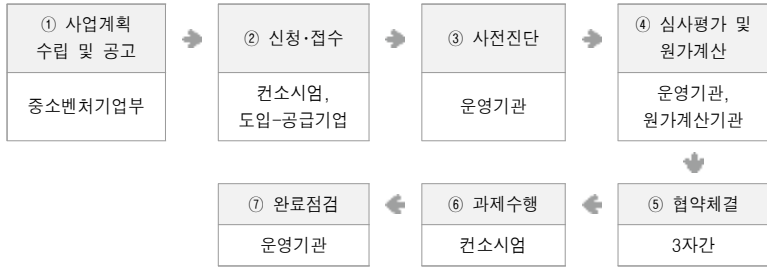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은 별도 공고
 - *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https://www.ultar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도입기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업의 이해도 및 추진의지, 기술보호 실적 및 노력, 구축 기대효과
- (공급기업) 지원역량, 지원전략, 사업관리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부), 가격제안서(1부)

처리절차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4천만원

* '21년 지원현황: 59개사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 02-368-8762
- 기술보호 율타리 : www.ultari.go.kr

제8부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8-1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의 성공적 창업도전 지원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해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사업

지원대상

-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자
- ▶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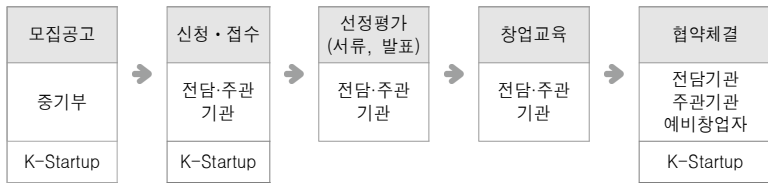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과 창업교육 및 멘토링 지원
 -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창업 교육 : 기업이 정신, 아이디어 보완 및 BM 구체화 등 창업기초부터 투자, 마케팅 등 성과창출을 제고할 수 있는 실무교육 제공
- 멘토링 지원 : 창업 경영 전반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 매칭하여 사업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신청·접수

- 지원규모 : 예비창업자 1,500명 내외(988.89억원)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모집공고를 확인
- 선정평가 : 서류평가 → 발표평가의 2단계 평가 진행 예정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가점 증빙서류 등
- 처리절차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예비창업실) : 044-410-1803~1810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지원을 해도 될까요?

A. 예비창업패키지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기에 신청 가능합니다.

Q. 어떤 주관기관을 선택해야하는 걸까요?

A. 주관기관은 신청 후 선정평가, 사업 진도관리, 사업비 집행관리 등의 업무 수행합니다. 거주지, 창업예정지 등 관계없이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변경은 불가하오니 공고문과 함께 제공되는 주관기관 소개자료를 통해 보유역량, 운영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8-2

초기창업패키지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 및 성장 지원사업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 등을 통해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는 자금과 아이템 실증검증 등으로 구성된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제외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1억원)
- (특화프로그램) 아이템 시장검증,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주관기관별 상이)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를 검토
 - 서면 및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등 종합적으로 평가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초기창업실) : 044-410-1834, 1837~9, 1841, 1843~6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사업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거주지역 이외의 주관기관을 선택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의 사업공고에 업로드된 주관기관 자료를 참조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창업 3년 이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다수의 사업자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초기창업 패키지에 신청하시고자 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8-3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데스밸리 극복 지원

창업도약기(3~7년) 창업기업이 어려운 시기(죽음의 계곡)를 극복하고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 혁신, 시장진입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 공고일 현재 창업 3~7년 이내인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종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종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사업모델 개선, 사업아이템 고도화 등 사업화자금 지원 및 마케팅, 상장, 디자인 개선 등 특화 프로그램 지원(최대 3억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 ▶ 대기업과 협업을 통한 사업모델 개선, 제품·서비스 고도화 자금 지원 및 스케일업 프로그램 등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기회 제공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3월
 - 처리절차 및 기간 : 신청·접수(3~4주) → 선정평가 및 협약(2개월) → 자금 및 서비스 지원(10개월 내외)
 - * 기간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문제인식 : 제품서비스 해결과제, 경쟁자 대비 개선과제, 고객니즈 개선과제
- 실현가능성 : 제품서비스 개발방안, 고객 요구 대응방안,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 성장전략 :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출구(EXIT) 목표 및 전략
- 팀 구성 : 대표자 및 팀원 보유역량,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기술 개발 역량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처리절차



지원규모

- 600개사 내외(예산 900억원)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도약실) : 044-410-1860, 1861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중기부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1~3년) 지원사업을 기 수혜 받았는데 창업
도약패키지 지원사업도 참여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대표님께서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경우에는 예비 또는 초기 창업사업 지원사업 기 수혜여부와 상관 없이 참여
가능 합니다.

용어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용자잔액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8-4

재도전성공패키지

우수한 (예비)재창업자 발굴·육성

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재창업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지원대상**
- 폐업 후 기술창업 아이템 및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사업 공고일 기준)
 - IP전략형 트랙의 경우 재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까지 가능
 - TIPS-R 트랙의 경우 재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까지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최종 선정 공지 전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기업 등 일부 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체납처분유예 승인 통지서 제출하거나 선정전까지 완납한 기업은 예외)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 3에 따른 성실경영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 또는 기업
- ▶ 중기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 또는 기업
- ▶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선정자 또는 기업
- ▶ 중기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 ▶ 기타 중기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지원내용**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일반형, 채무조정형, IP전략형(40~60백만원 이내), TIPS-R(1억원 이내)
 - 사업역량강화를 위한 재창업교육 및 멘토링, 특화프로그램 지원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2.1월 말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 → 성실경영평가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문제인식(폐업 원인 분석 등), 실현가능성(제품,서비스 개발 방안 등), 성장전략(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등), 팀 구성(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등)
 - * 세부 평가지표는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재도전창업실) : 044-410-1760~6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지원조건에 나이, 지역, 폐업한 일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건가요?

A. 나이, 지역에 대한 제한조건은 없으나, 폐업 관련하여 사업 공고일 이전에 폐업이력(폐업사실증명)이 있으셔야 합니다.

Q. 재창업 전 폐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나요?

A. 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로, 사업 공고일 이전에 폐업한 이력(폐업사실증명)이 있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용자잔액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8-5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TIPS)

민간주도형 창업사업화

성공벤처인 등이 주도하는 틱스 운영사가(창업기획자 등)가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을 엄선하여 투자·보육하면, 정부가 R&D,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을 매칭 지원하는 민간주도의 기술창업 프로그램

지원대상

- (프리팁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초기 창업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팁스 운영사,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유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종인 자(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종인 자(기업)
 -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 ▶ 창업지원사업 계획공고 기준, '사업화' 분류에 포함된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또는 기업
 - ▶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 또는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팁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기업(또는 예비 창업기업*)
-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운영사 추천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팁스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창업기업(재참여 불가) 및 현재 프리팁스 및 팁스 R 수행기업(사업 종료 후 참여가능)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팁스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받은 기업 중 후속 민간투자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졸업기업**
- * 아래 6개 기준 중 1개 이상 달성 시, ‘성공’판정
 - ①사업화에 따른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②사업화에 따른 연간 수출액 50만달러 이상,
 - ③상시근로자 20인 이상, ④후속투자 유치(최근 3년 벤처캐피탈 평균 투자금 이상),
 - ⑤M&A(10억 이상), ⑥코스닥(코넥스 포함) 등 IPO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TIPS 프로그램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또는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프리팁스)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 대상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10개월간 최대 1억 지원
 - * 전체 지원 규모의 60% 이상을 지방소재 창업기업으로 선발
- (팁스)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의 기술개발(R&D) 자금(최대 5억원)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 자금(최대 1억원)을 연계지원
 - * 운영사별로 지정된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및 멘토링 등 종합적인 밀착 지원
- (포스트팁스) 제품·서비스의 상용화(사업화) 또는 국내외 마케팅(판로 확대) 등 사업 고도화를 위한 자금을 18개월 최대 5억원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프리팁스 협약기간 12개월 → 10개월로 축소
- ▶ 포스트팁스 협약기간 24개월 → 18개월로 축소

신청·접수

- (팁스) 상시 접수 (팁스 홈페이지 www.jointips.or.kr 및 각 팁스 운영사 홈페이지)
 - * (심사평가 주요내용) 각 팁스 운영사별 자체 평가(투자심사) 후 정부 최종 선정평가 (정부 최종 선정평가 주요내용) 기술성, 사업성, 사업수행역량 등
-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프리팁스) 아이템의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사업성, 기술성 등
- (포스트팁스) TIPS 성과,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구성 등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민관협력창업실) : 02-3440-7306
- 한국엔젤클투자협회 TIPS사업본부 : 02-3440-7421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프리팁스는 개인이나 엔젤클투자로 받아도 지원자격 되나요?

A. 안됩니다. 프리팁스의 투자자는 '팁스운영사, 엑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 개인투자조합' 3가지만 인정됩니다.

Q. 타 창업사업화 사업(초기, 도약패키지 등)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팁스 이후 '창업사업화'사업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 합니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동시에 중복으로 수행은 불가능합니다. 단, 협약기간이 3개월 미만 남으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팁스운영사 : 엔젤클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춘 중기부 지정 엔젤클투자회사, 재단,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선도벤처기술대기업 등

8-6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사업화 지원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천억 이상)으로 육성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 투자유치 실적(누적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 있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20~'21년도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지원 Post-TIPS(포스트팁스) 선정 자(기업)
- ▶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창업을 하지 않았거나,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기업
- ▶ 공고마감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시장개척자금 최대 3억원 지원
 - 국내외 신시장 분석, 사업모델 최적화, 시장개척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시장개척자금 최대 3억원 지원
- 후속지원 및 타 기관 사업연계 등 지원
 - 연중 창업기업 규제 해소, R&D 기획, 후속 투자유치 IR, 홍보 등 후속지원
 - 특별보증, 정책자금, R&D 등 타 기관 사업 연계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규제 해소, R&D 기획 등 후속지원 강화

신청·접수

- K-유니콘 홈페이지(www.k-unicorn.or.kr),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요건검토 → (1차) 기술·사업성 평가 → (2차) 심층·토론식 평가 → (3차) 발표평가
 - * 접수 마감 이후 최종 선정 결과 안내까지 약 3개월 소요
 - ** 평가단계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모델의 혁신성, 성장성, 시장확장성,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민관협력창업실) : 02-3440-7314
- K-유니콘 홈페이지(www.k-unicorn.or.kr)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투자계약서 외에 투자의향서, 주금입금내역, 이사회 회의록 등으로도 투자실적 증빙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투자내역 확인이 가능한 투자계약서만 증빙이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유니콘 기업 : 기업가치 10억 달러(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8-7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국내 창업자의 해외창업 진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 함양 유도

지원대상 ●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7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 '11년~'15년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 또는 '16년~'21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사업 또는 '19~'21년 한-러혁신플랫폼 사업 기 수혜 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해외시장검증 : 해외 진출을 시작하는 초기창업기업에 글로벌진출교육, 현지시장조사, 전문가 멘토링, 1:1 비즈니스 매칭 등 밀착지원
- 해외실증지원 : 글로벌 대기업과의 기술·사업 모델 실증(PoC)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 현지화 및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글로벌 창업진출단계별 사업개편으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한 창업기업을 그 지원대상으로 함(예비창업자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지원)
- * 정부지원금 확대 (25백만원 → 30백만원)
- * 해외 AC뿐만 아니라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국내 AC도 운영기관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보육기업의 10% 내에서 시드 투자 의무 예정

신청·접수 ●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www.k-startup.go.kr>

● (신청기간) 모집공고 확인

- (선정평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심사평가항목은 엑셀리레이터별로 상이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글로벌창업실) : 02-3440-7312, 7322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사업 참여시 기업 자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화 자금 지원 시 자부담 비율은 30% 이상이며, 이 중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입니다.

Q. 해외시장검증과 해외실증지원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해외시장검증과 해외실증지원은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간 중복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용어설명

해외실증지원(PoC) : 해외시장에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성능을 검증하는 것

8-8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대기업의 수요에 대응 가능한 스타트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 제고와 대·중견기업의 수요 소재·부품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발굴·육성

지원대상 ● 업력 7년 이내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기타 중소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후보기업(40개사) 지원내용

- 타 기관 연계지원 추천 및 네트워킹 행사 등 지원

● 창업기업(20개사)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 교육·멘토링·IR·네트워킹 등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서 발급
- 연계지원(안) : 중소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가점 부여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모집공고 확인

● 처리절차 : 신청·접수(3~4주) → 선정평가 및 협약(2~3개월) → 사업화 자금 및 연계지원 등(7개월 내외)

* 기간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창업아이템의 개발·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출구 목표 및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 역량 등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혁신창업실) : 044-410-1690, 1691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가점은 얼마인가요?

A. R&D 과제마다 상이하며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최대 5점까지 부여할 예정입니다.

Q. 후보기업이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A. 최종 선정되는 창업기업(20개사)를 선정하기 앞서, 후보로서 선정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8-9

혁신분야 창업패키지(BIG3)

BIG3 분야 혁신성장 지원

글로벌 미래 성장동력인 BIG3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사업화·기술개발 등 지원을 통해 글로벌을 선도하는 핵심 BIG3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

지원대상

- BIG3 분야 업력 7년 이내 기업

* BIG3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자
- ▶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기간) 최대 3년
 - 사업 선정 시, 최대 3년간 지원자격 유지
 - * '22년 선정 시, '24년까지 지원('22~'24년)
-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 및 기술개발·정책자금·기술보증 연계
 - (사업화) 연간 최대 2억원 (3년간 최대 6억원)
 - * 연간 사업지원금 배정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별 차등 지원 예정
 - (연계지원) 기술개발, 정책자금, 기술보증(최대 30억원)
 - * (기술개발) 최대 6억원 (2년간, 별도 평가를 통한 연계지원)
 - * (정책자금) 최대 100억원 (수수료 등 우대)
 - * (기술보증) 최대 30억원 (수수료 등 우대)
 - (기타) 국내 사업화·기술개발·투자유치 등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 컨설팅 등 상시 지원

신청·접수 ●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www.k-startup.or.kr

- (신청기간) 모집공고 확인
- (선정평가) 참여신청서 기반의 서류 및 발표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사업화·기술개발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혁신창업실) : 044-410-1681~4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지원을 해도 괜찮은가요?

A. 동 사업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창업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Q. 선정 후 교부받은 지원금은 3년간 집행하나요?

A. 사업지원금은 매년 최대 2억원으로, 매년 초 사업지원금 배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Q.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화, 기술개발, 정책자금, 기술보증까지 모두 지원을 받는 것인가요?

A. 선정 후 사업화 자금은 모든 창업기업에 지원되나, 기술개발, 정책자금, 기술보증은 별도 신청·평가 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용어설명

BIG3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8-10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비대면 분야 유망 (예비)창업기업 발굴·지원

비대면 분야 유망한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창업사업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 육성

지원대상 ●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K-유니콘 프로젝트(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18~'21년 포스트팁스(POST-TIPS) 사업화 지원을 받은 자(기업)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비대면 분야 유망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1.5억원)
- 특화프로그램 : 분야별 전문 주관기관*을 활용한 (예비)창업기업 맞춤형 지원(인증, 기술평가 등) 및 소관부처별 정책 연계 지원

* 공고문 붙임자료의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조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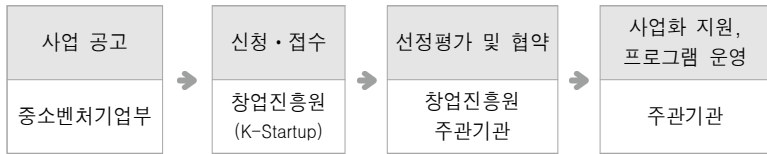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증빙서류 포함)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를 검토
 - * 서면 및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개발방안,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 종합 평가

처리절차



지원규모

- 300개사 내외(예산 450억원)
 - * '21년 지원현황 : 400개사(최대 1.5억원 지원)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비대면창업실) : 044-410-1989, 1982, 1991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비대면 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는데, 비대면 분야 창업아이템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A. 비대면 창업아이템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거나,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대면 관련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Q. 어떤 주관기관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사업 아이템과 연관성이 높은 세부 분야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고문 붙임자료의 [주관기관 소개자료]를 확인하시어, 귀하가 원하는 특화 프로그램(인증, 시장검증 등)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8-11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국내 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창업사업화 지원)와 글로벌 기업(보유인프라 지원)이 협업하여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입기회 마련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제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 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 중소벤처기업부 '19~21년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 포스트팁스 (POST-TIPS)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신규 콘텐츠 개발, 서비스 기능 개선, 직원 고용, 특허 출원 등 사업화 및 기술개발 비용 지원 (기업당 최대 3억원)
 - (해외시장 진출) 글로벌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교육, 전문기술 코칭, 유통망 연계, 마케팅·홍보, 투자유치 기회 등 제공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참여기업 현황 : ('19년) 구글플레이 → ('20년)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MS, AWS, 다쏘시스템 → ('21년)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MS, 다쏘시스템, 엔시스, 지멘스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3월
 - 처리절차 및 기간 : 신청·접수(3~4주) → 선정평가 및 협약(2개월) → 사업화 자금 및 글로벌 기업 서비스 지원(8개월 내외)

* 기간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문제인식 : 제품서비스 해결과제, 경쟁자 대비 개선과제, 고객니즈 개선과제
- 실현가능성 : 제품서비스 개발방안, 고객 요구 대응방안,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 성장전략 :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출구(EXIT) 목표 및 전략
- 팀 구성 : 대표자 및 팀원 보유역량,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기술개발 역량
-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시너지 : 협업 희망 분야와 계획, 보유역량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처리절차



처리절차

- 200개사 내외(예산 300억원)
- * '21년 지원현황 : 창업기업 200개사 선정·운영 중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혁신창업실) : 044-410-1685~7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글로벌 기업에서 창업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항목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글로벌 기업에서는 보유한 인프라(전문인력, 플랫폼 등)를 통해 전문교육, 컨설팅, 판로개척, 투자유치 연계, 네트워킹 등 창업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 촉진을 지원합니다.

8-12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사내벤처팀(기업)의 사업화지원

대기업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팀)의 사업화와 성장 지원을 통해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대상 ● 사내벤처팀 및 업력 3년 이내 분사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자
- ▶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기간) 10개월 내외
 ● (지원규모) 150개 내외 창업기업(팀)
 ●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실증 및 시제품고도화를 위한 후속 지원금 최대 1억원

〈세부 지원 내용표〉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	· 시제품제작, 지적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
실증 자금	· 시험·인증, 소비자 검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
성장프로그램	· 주관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창업기업 지원 특화 프로그램 지원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2~3월 공고 예정, 모집공고 확인
 * 기간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운영(모)기업 추천서 등

사업절차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혁신창업실) : 044-410-1695~6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사내벤처팀(예비창업팀)은 언제 분사해야 하나요?

A. 사내벤처팀은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Q. 후속지원(실증 자금 등)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 중 '성공' 판정받은 후, 지원 가능합니다(별도 공고 안내).

용어설명

운영기업 : 사내벤처 지원제도, 지원인력 및 재원 등을 보유하고 사내벤처팀을 육성하거나 분사창업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는 대·중견·중소·공기업

* 상·하반기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모집·선정

8-13

메이커 스페이스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창작활동공간 조성

시제품 제작, 양산 등 전문 메이커 활동을 통한 제조창업 촉진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운영하는 사업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제조 창업 지원과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법인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는 참여기관으로 신청
- 신청요건 : 일반랩(특화랩) 100㎡ 이상, 전문랩 기준 1,000㎡ 이상 전용공간 보유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 중소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법인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 당해연도 교육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 ▶ 기타 중소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0개소 내외(일반랩(특화랩), 전문랩)
- 지원내용 : 시설 구축, 장비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지원예산 : 일반랩 1.5억원 내외(특화랩 1억원 내외), 전문랩 최대 15억원 내외
 - 총사업비의 40% 이상 대응자금 구성
 -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자본보조'와 제조창업 촉진 및 메이커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 지원으로 구분
- 지원기간 : 최대5년(3년+2년)
 -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예산 차등지원
 - 선정 후 3년간의 운영성과에 대한 중기평가를 통해 추가 2년 연장 지원여부를 결정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대응자금 규모 총사업비의 30% 구성 → 40% 구성 변경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선정절차 : ① 서면평가(필요시 현장점검 포함) → ② 대면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조 창업 지원계획의 우수성, 메이커 공간 및 장비 구축 계획의 타당성, 메이커 활성화 노력의 적정성 등을 중점 평가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지역창업실) : 044-410-1882, 1884, 1886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대응자금을 총 사업비의 40%를 매칭해야 하는데,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을 의미하나요?

A.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현금, 현물)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Q.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기관)도 동 사업에 참여 가능한가요?

A.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동 사업의 대응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참여기관 : 주관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지방자치단체 포함)

중기평가 :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및 결과 등을 중간평가하는 것을 말함

8-14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혁신창업의 허브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및 창업 등 지원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

지원내용

- 창업지원* :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 IR, 창업경진대회, 창업세미나, 지역 창업자·기업 간 네트워킹, 마케팅·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등 지역별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별 기술특화분야 연계

- 원스톱서비스 지원 : 창업관련 법률·특허·금융·경영(세무회계, 인사노무 등) 원스톱 컨설팅(상담) 서비스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서비스 지원내용이 상이

신청·접수

- '21년 연중 수시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접 방문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ccei.creativekorea.or.kr)를 통해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온·온라인 신청·접수(프로그램별로 신청 방식 상이)

* 원스톱서비스(법률, 회계 등)는 지역별 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문의 가능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지역창업실) : 044-410-1881, 1887, 1892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강원	033-248-7900	세종	044-999-0003
경기	031-8016-1102	울산	052-222-9120
경남	055-256-2700	인천	032-458-5000
경북	054-470-2614	전남	061-661-2002
광주	062-974-9361	전북	063-220-8900
대구	053-759-6380	제주	064-710-1900
대전	042-385-0666	충남	041-536-7888
부산	051-749-8900	충북	043-710-5900
서울	02-723-9100		

●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홈페이지 : ccei.creativekorea.or.kr

지역	센터별 홈페이지	지역	센터별 홈페이지
강원	ccei.creativekorea.or.kr/gangwon	세종	ccei.creativekorea.or.kr/sejong
경기	ccei.creativekorea.or.kr/gyeonggi	울산	ccei.creativekorea.or.kr/ulsan
경남	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	인천	ccei.creativekorea.or.kr/incheon
경북	ccei.creativekorea.or.kr/gyeongbuk	전남	ccei.creativekorea.or.kr/jeonnam
광주	ccei.creativekorea.or.kr/gwangju	전북	ccei.creativekorea.or.kr/jeonbuk
대구	ccei.creativekorea.or.kr/daegu	제주	ccei.creativekorea.or.kr/jeju
대전	ccei.creativekorea.or.kr/daejeon	충남	ccei.creativekorea.or.kr/chungnam
부산	ccei.creativekorea.or.kr/busan	충북	ccei.creativekorea.or.kr/chungbuk
서울	ccei.creativekorea.or.kr/seoul		

8-15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하는 사업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의 로컬크리에이터*
 - *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자

지원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하여 성장단계에 따라 사업화 자금, 교육, 인프라 등 맞춤형 지원
- 사업화지원 : 사업화 BM실행에 필요한 자금을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예비창업자, 창업기업)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최대 3천만원)
- 협업지원 : 로컬크리에이터 선도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과제 발굴 및 지원 ① 로컬 X 로컬, ② 로컬 X 선도기업 등
- 네트워킹 : 지역내 혁신을 위한 협업 촉진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간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네트워킹 진행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시장성, 창업자의 자질 및 역량진단,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행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규모

- 304명(100억원)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지역창업실) : 044-410-1883, 1885, 1890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로컬크리에이터란 무엇인가요?

A. 지역특성(문화, 관광 등) 및 자원(공간, 생산품 등)을 기반으로 ICT 또는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로 7대 유형*으로 분류

- * ①지역가치 ②로컬푸드 ③지역기반제조 ④지역특화관광 ⑤거점브랜드 ⑥디지털문화체험 ⑦자연친화활동

8-16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세무·회계, 기술보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 처리, 기술 임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창업자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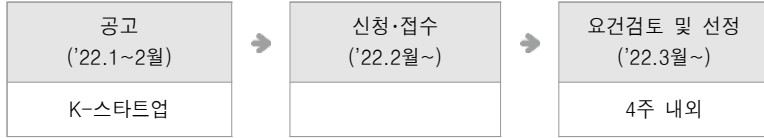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지원 받은 자(기업)
- ▶ 협약기간 내 휴·폐업 혹은 중단(중단 처분, 중도 포기)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세무·회계’, ‘기술보호’ 등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2년간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부문	지원내용	지원한도
세무·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장 대행 수수료 ·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료 등 	연간 최대 100만원
기술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등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 접수일정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인프라조성실) : 044-410-1925, 1927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Q&A

Q. 타 부처 및 중기부 지원사업 등과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A. 타 사업과 중복 선정은 가능하지만, 창업기업이 타 사업에서 세무·회계 관련 사업비를 지원받을 경우, 동일 항목에 대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한 지원금(바우처) 집행은 어렵습니다.

Q. 세무·회계 자문료도 지원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기장 대행 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이용료,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를 제외한 타 항목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8-17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사무공간 등 1인 창조기업 창업 및 경영 지원

사무공간 제공,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교육·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

지원대상

- (예비)1인 창조기업
- 지원 대상 업종 확인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사업소개-시설·공간·보육-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을 통하여 확인 가능
- * 유의사항 : 예비 창업자인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창업해야 함(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영위하는 주된 사업이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부동산업 등 32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제공, 교육·전문가 자문 등 경영지원,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비용 지원 등

구 분	주요내용
사무공간	· (예비)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제공
전문가 자문	· 세무, 회계, 법률, 창업, 시장조사, 유망산업, 정보제공 등
교육·멘토링	· 경영, 마케팅 등 센터별 기본·특화 교육 제공
사업화	· 마케팅(광고, 홍보, 디자인 개선 등) 및 판로개척 지원
네트워킹	· 동·이종 창업기업 및 투자기관 등 네트워크 활동 지원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 신청방법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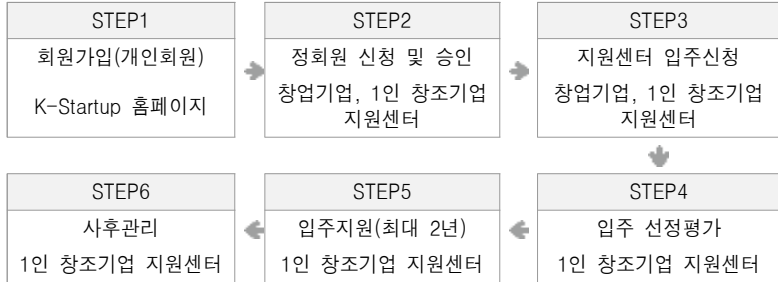
신청·접수

- K-스타트업을 통해 연중 수시 신청·접수
 -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별로 공실 발생 시 지원센터별 수시 모집
 - * K-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메뉴에서 1인 창조기업 정회원으로 승인 확인된 정회원에게 입주 신청 가능
- 정회원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예비창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 * 정회원 신청(창업기업) → 정회원 자격요건 검토(지원센터) → 정회원 승인(지원센터)

심사·평가 주요내용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별 상이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인프라조성실) : 044-410-1922, 1926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Q&A

Q.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A K-스타트업 정회원 신청 시 선택하신 센터에서 승인받으시면 됩니다.

Q.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모집은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A. 지원센터별 모집시기가 상이하므로 해당 지원센터에 모집 일정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받으면 입주가 되는걸까요?

A. 아닙니다. 1인 창조기업 정회원은 '1인창조기업법'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입주 신청은 센터별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신청하신 뒤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1인 창조기업 이란?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8-18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창업보육 인프라 지원

숙련된 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중장년(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거점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만 40세 이상 창업 3년 이내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지원내용 ●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있는 중장년을 발굴하여 교육·창업공간·보육 등 One-stop 형태의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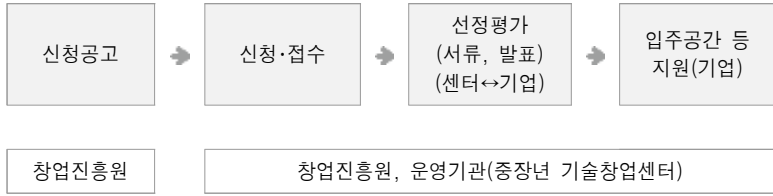
분 야	내 용
발굴	• 대기업·공공기관 등 (예비)퇴직자 대상 '맞춤형 창업교육'을 실시, 기술·경험·직무역량이 있는 중장년을 창업생태계로 유도
창업교육	• 사업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 등을 위한 실전창업 교육과정을 각 센터별로 운영하여 창업준비기 중·장년의 창업역량강화
공간 지원	• 입주 및 코워킹, 네트워킹 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교류를 통한 중장년 창업분위기 조성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보육 지원	• 중장년 (예비)창업자에게 네트워킹 행사, 멘토링, 경영·마케팅, 사업화 연계 지원 등을 통하여 창업성장 지원

신청·접수 ● '22년 연중 수시*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직접 방문 또는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해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 입주기업 모집 기간을 확인하여 온라인 신청

* 센터별 모집일정에 따라 교육생, 입주기업 모집기간 상이

처리절차



처리절차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36개소 내외(22년, 46.08억원)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인프라조성실) : 044-410-1921, 1928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권역	지역	연락처	권역	지역	연락처	
서울	마포구	070-7727-4100~4101	울산	동구	052-209-1510	
	성북구	02-941-7257		울주군	052-277-1996	
대구 경북	달서구	053-589-7558	인천	남동구	032-726-3883	
	수성구	053-784-8261		경기	성남시	031-707-5961~2
	칠곡군	054-973-9605			의정부시	031-850-5815~6
광주 전남	광주 동구	062-610-9520, 9522	경기	고양시	031-936-7485	
	전남 목포시	061-280-7499		포천시	031-539-2888	
충북	청주시(상당구)	043-254-8666	경기	안양시	031-8045-6715	
	청주시(서원구)	043-217-1311~2		이천시	031-639-1442	
충남	당진시(읍내동)	041-356-8748	경남	진주시	055-772-3613	
	서산시(해미면)	041-660-1327		양산시	055-380-9656	
	논산시(내동)	041-730-5626		김해시	055-310-9260~1	
대전	유성구	042-939-4741	부산	통영시	055-649-0216	
전북	익산시	063-851-7480		금정구	051-581-4050	
	전주시	063-711-2141	제주	서귀포	070-7732-0202	
	군산시	063-446-6700				

8-19

창업존 운영

유망 창업기업 맞춤형 보육지원

유망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및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

- 지원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선정 후 입주전 채무변제 완료 증빙시 예외)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 입주 이력 또는 입주 포기 이력이 있는 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보육공간 제공 : 창업기업 입주사무실 및 규모별 회의실, 행사 공간 등
 - 보육프로그램 : 교육, 네트워킹, 마케팅, 글로벌 진출 등

구 분	주요내용
교육	· 최신 선도 기술 세미나, 글로벌 진출 세미나, 실전형 창업교육 등
네트워킹	· 내부(입주사), 외부(대기업 연계) 네트워킹 등
마케팅	· 각종 홍보물 제작(브로셔, 동영상, CI 등)
글로벌 지원	· 해외 진출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멘토링	· 소그룹 기술·비즈니스 멘토링, 1:1멘토링 등

- 인프라지원 : 통·번역, 3D 제작보육실 및 글로벌 테스트 베드

구 분	주요내용
통·번역센터	· 美, 中, 日 3개국 전문 통번역 서비스 및 교육 제공
3D제작 보육실	· 디자인·설계 및 3D프린터 등 장비를 구축, 시제품 제작 지원
글로벌 테스트베드	· 해외 통신환경 구축 및 글로벌 상용망 테스트 서비스 제공 (2G~4G)

-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수시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면평가)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도, 사업 내·외부 환경 이해도, 창업자 및 직원 역량 보유, 사업 아이템 기술성, 비즈니스 모델 분석, 시장성 등
- (발표평가) 창업자 역량 및 의지,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인프라조성실) : 044-410-1925, 1928
 - 판교 창업존 홈페이지(<http://www.pangyozone.or.kr/>)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창업존 입주기간과 임대·관리비가 어떻게 되나요?

- A. 입주기간은 2+1년으로, 기본 입주 2년 이후 성과평가를 통해 입주 연장 여부(1년)를 결정하여 최대 3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관리비는 창업기업 업력 및 공간유형에 따라 차등 부 되며, 전용 면적 3.3㎡당 평균 50,000원 정도가 부과 되고 있습니다.

Q. 창업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 A. 창업존 입주기업은 개별 사무공간 이외에도 미팅룸, 수면실, 샤워실 및 공용OA사용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세미나, 대내외 네트워킹, 외국어 통번역 지원, 시제품 제작 및 해외 통신망 테스트 서비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합니다.

8-20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 활성화 지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여 원격근무 확산

지원대상 ● 중소기업 1.5만개사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주된 업종이 유흥주점업 또는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인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에서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솔루션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

- (지원금액) 1개사 당 400만원(자부담 30% 포함, 부가세 별도) 한도
 - * 지원하는 서비스 분야 및 자부담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자부담금 상향(기존 10% → 변경 30%)
- ▶ 선정방식 변경
 - * 자격요건 충족시 선착순 선정 →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통해 선정
- ▶ 바우처 지급방식 변경
 - * 서비스 결제 시 바우처 지급 → 서비스 실사용 여부 확인 후 바우처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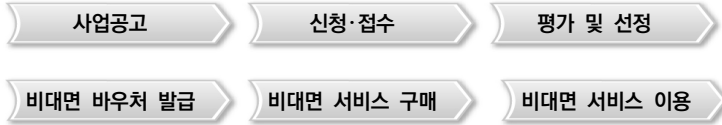
신청·접수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서비스 활용계획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지원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처리절차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비대면창업실) : 044-410-1984~9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면 바우처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A. 선정이 되면 바우처 플랫폼에 접속하여 신청당시 선택한 결제수단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결제수단을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서비스를 검색하여 공급기업에 거래상담을 요청합니다. 공급기업에서 거래를 수락하고 수요기업에 결제를 요청하면 수요기업은 결제후 공급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자부담금(30%) 및 부가세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Q.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기업인데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이 공급하는 서비스 분야 이외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8-21

청소년 비즈쿨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열정, 도전정신 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모의 창업 등을 활용한 기업가정신 교육 실시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정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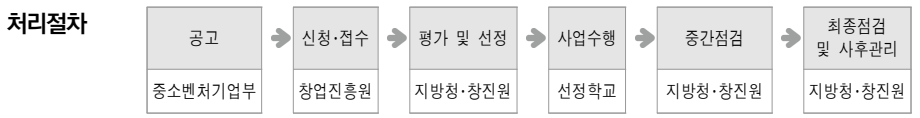
- 기업가정신 및 체험형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 등을 위한 비즈쿨 지정·운영
- 비즈쿨 페스티벌, 교재·콘텐츠 개발·보급, 담당교사 직무연수 등
- 체험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비즈쿨 캠프

신청·접수

- '22년은 '21년 청소년 비즈쿨 학교 및 센터 연속 운영

제출서류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및 사업계획서, 정보제공활용 동의서 등



지원규모

- '22년 예산 : 63.9억원, 전국 424개 초·중·고등학교 지원
- * '21년 지원현황 : 424개 기관(초등 92개, 중등 72개, 고등 212개, 특수·31개, 대안 8개, 센터 9개)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교육실) : 044-410-1951~4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용어설명

비즈쿨(Bizcool) : Business+School의 합성어로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

8-22

창업에듀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 포털 '창업에듀'를 통해 창업관련 역량강화 교육, 기관 패키지 과정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성공 창업을 지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학생, 일반인 등 일반교육생 및 기관 담당자
- 지원내용**
- 일반 교육생 :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강좌 수강 가능
 - 창업초기부터 재창업까지 단계별, 창업자 역량별 강의 주제 300여개 제공
 - 기관 담당자 : 기관의 요구에 맞춘 '패키지과정'을 구성하여 제공
 - 대학, 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으로 패키지과정 구성 가능
 - 패키지과정 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발급
- 신청·접수**
- 창업에듀 홈페이지(www.k-startup.go.kr/edu)를 통해 연중 수강신청 가능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교육실) : 044-410-1958, 1959, 1961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8-23

실전창업교육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등 창업교육 지원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최소 요건제품 제작, 고객반응조사 등을 지원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사업

- 지원대상**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온라인 교육 : 창업 관련 기초 역량 함양 교육 및 아이디어 구체화 등 비즈니스모델 수립 지원
 - 오프라인 교육 : 최소요건제품 제작, 고객 및 시장검증,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사업비(최대 500만원) 지원
-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사업계획서 등
- 처리절차**

사업공고

➔

온라인 교육

➔

오프라인 교육

➔

최종보고 등
- 처리절차** ● 교육생 2,100명 내외, 시장검증 200명 내외(29억원)
 - * '21년 지원현황 : 2,282명 교육, 253명(팀) 시제품 제작 및 시장검증 지원
-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교육실) : 044-410-1958, 1959, 1961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용어설명

최소요건제품(MVP) : 상용화 목적이 아닌 고객반응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기능만 구현한 초기 시제품

8-24

창업기업 확인(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창업기업 공공시장 진출지원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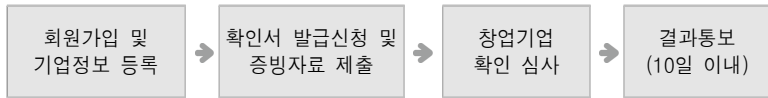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지원내용 ●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우선구매비율 8%)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

신청·접수 ● 창업기업확인시스템(<http://cert.k-startup.go.k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후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제출서류 ● 창업기업 해당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총사업자등록내역, 중소기업확인서
- (조건별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상속세·증여세 납부확인서, 증여계약서, 금융기관 미지급 증명, 파산선고결정문, 파산면책선고문, 주주명부, 정관, 출자자명부 등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서비스 활용 시 최대 4종 제출서류 간소화

처리절차



문의처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콜센터 : 1811-3773
- 창업진흥원(창업기업공공구매실) : 044-410-1771~82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www.cert.k-startup.go.kr)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확인서 신청 후 발급까지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A. 일반적으로 확인서를 신청하시게 되면 확인기관에서 접수 후 10일 이내 (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결과가 안내됩니다. 증빙자료 미비 등 사유발생 시 확인기관은 신청 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한은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 완료된 시점부터 산정됩니다.

Q. 오프라인으로 신청은 어려운가요?

A.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자가진단이 무엇인가요?

A. 창업기업 확인 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자가진단은 참고 사항일 뿐이며, 실제 창업기업 여부는 창업기업 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자 기재사항 및 사실관계서류 등을 확인하여 최종 판단합니다.

8-25

도전! K-스타트업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중기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부처 합동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포상 및 창업 후속지원

지원대상 ●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팀) 및 창업자(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기수상자 또는 수상 아이템(특별상 제외)
- ▶ 도전! K-스타트업 통합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 금액 50억원 초과 기업
- ▶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다른 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팀)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원의 수상내역 포함, 기창업자는 대표자 수상내역만 해당)
-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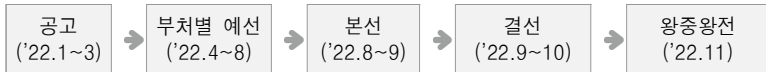
- (예산) 21.15억원, (규모) 20개팀 내외

지원내용

- 상금 (총 15.3억원, 수상자당 최대 3억원)
- 상장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예비·초기창업패키지 등) 연계 지원 등

신청·접수

- 1~3월 중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통합 공고 후 부처별 예선리그 개별 접수
- 부처별 예선 → 본선 → 결선 → 왕중왕전을 거쳐 최종 수상팀 결정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교류협력실) : 044-410-1711, 1713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8-26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4차 산업혁명 분야 상생협력 지원

대기업(선배벤처·공공기관 포함)과 스타트업이 협업이 필요한 사업·기술을 상호 제한, 해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지원대상**
- (1탄) 최초 신청마감일 기준 업력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 (2탄) 예비창업자(팀) 또는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공고 마감일 기준 휴업 상태인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 (1탄) 수요기업별 선정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R&D 사업연계(최대 3억원), 정책자금 연계(최대 20억원) 지원
 - (2탄) 과제별 선정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R&D 사업연계(최대 3억원), 정책자금 연계(최대 20억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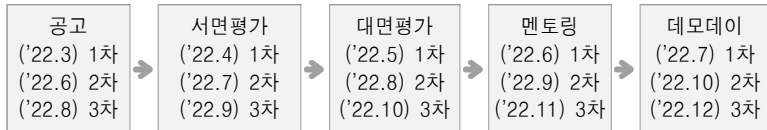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공기업·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 과제출제기업(수요기업) 참여
- ▶ 2탄의 경우 과제별 우수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21년과 다르게 과제별 1~3위 기업 모두 지원(순위별 차등 지원)
- ▶ R&D 사업연계 금액을 '최대 4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축소된 대신, 1,2탄 선정기업 중 20개사에 대한 전략형 과제(최대 3억원) 지원 확정
- ▶ 2탄의 경우 '20년 상장과 함께 지급하였던 상금 삭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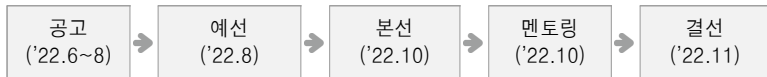
- K-Startup(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1탄)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수요기업 멘토링 → 데모데이*를 거쳐 수요기업별 최종 선정기업 결정(연간 3회 이상 운영 예정)

* 수요기업별 3개사 이내 선정 후 지원 연계



- (2탄) 예선(서면평가) → 본선(대면+알고리즘 개발) → 과제출제기업 멘토링 및 컨설팅 → 결선*을 거쳐 과제별 최종 우승기업 결정

* 과제별 3개사(1~3위) 선정 후 사업화 비용 차등 지급



심사·평가 주요내용

- (1탄) 기술 및 시장 이해도, 실현가능성, 사업성, 팀 구성 등 평가
 - (2탄) 과제 해결방안, 데이터 활용방안, 기술경쟁력, 사업화 방안 등 평가
- * 대-스타 2탄 본선평가는 온라인(알고리즘 개발), 오프라인(대면평가) 총 2차례 진행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교류협력실) : 044-410-1715~1718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용어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8-27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법인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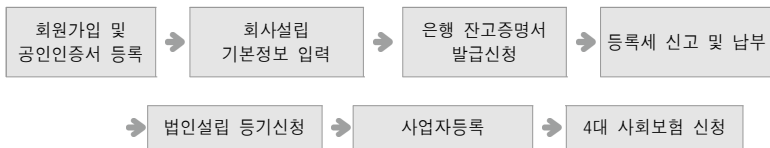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원스톱 시스템

지원대상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

지원내용 ●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 지원
 ●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
 ● 연계기관(5개) :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행정안전부(지방세 정보망), 국세청(EITC),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보험센터 (4대보험 연계시스템)

신청·접수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에서 회원가입 후 사용가능

처리절차



절 차	관련기관	제출서류의 종류
-----	------	----------

상호검색	서울지법상업등기소	-
------	-----------	---



공증	공증사무소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주주·임원 인감증명서, 진술서, 창립사항보고서
----	-------	---





문의처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콜센터 : 1577-5475
- 창업진흥원(ICT전략실) : 044-410-1652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가능합니까?

A. 네. 현재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법인전환, 이미 설립된 법인의 변경등기 업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Q. 법인설립을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A.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1. 자본금을 확인하는 잔액(고)증명 수수료(약 2천원, 신한은행 면제)
 2. 법인등록면허세(자본금규모와 지역, 형태에 따라 상이)
 3. 법인등기를 위한 수수료(약 2만원)

8-28

창업지원포털(K-Startup)

단계별 정부 창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교육, 창업기반시설 및 공간 등 창업정보를 종합 제공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지원기관 관계자, 학생, 일반인 등
- 지원내용**
-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성장 단계별로 정보 제공
 - ① 창업준비(대국민) ② 예비창업(예비창업자) ③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 ④ 창업도약(3~7년 기업) ⑤ 재창업(재창업자)에 맞추어 사업화, 창업 교육,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R&D 정보 제공
 - 창업사업의 '신청·접수, 협약, 사업비 정산' 등을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예비창업, 창업초기, 창업성장, 재도전 창업단계별 온라인 창업 강좌 서비스
 - (예비)창업자 창업역량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 공간정보제공 : 전국 13,000여개의 창업공간 정보 제공
- 신청·접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ICT전략실) : 044-410-1652~7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9부
기 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9-1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교대제 도입·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희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희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 (56219), ⑤기타 캐블링 및 베틀업(91249),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제외
-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

지원내용 ●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 근로시간을 단축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피보험자 수가 단축한 달의 직전 3개월보다 증가하여야 함

교대제 도입 확대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다만, 직전 1년 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 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지원 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지원
 - 증가한 근로자수 1인당 연간 480~1,200만원 지원(최대 2년)

-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근로자 1인당 연간 120~480만원 지원(최대 2년)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21년 7월 1일 이후 5인 이상 전 사업장 주52시간제 도입 법정시행일
- ▶ 경과에 따라 주근로시간 단축형은 실근로시간 단축형으로 통합 운영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에서 신청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044-202-7218
- 고용노동부 :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 참조
- 관련 고시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9-2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여성가장·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모든사업주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①고용노동부(고용센터)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 ②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③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④여성가족부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내일이름학교」, 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기술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⑥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 「직업능력 개발훈련」, ⑦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⑧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취업워크숍」, ⑨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취업 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및 취업 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참여하기 어려운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및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 ▶ 비상근 촉탁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 ▶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 근로자가 1년 이내 이직한 당사와 같은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로 예외 규정
- ▶ 대규모기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720만원(대규모기업 360만원) 1년간 지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 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에서 신청
-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044-202-7218
- 고용노동부 :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 참조
- 관련 고시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9-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자 해당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원 초과,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 ▶ 국가 및 공공기관
-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등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22년 지급은 상반기 6개월간 한시적 지원
- (지원요건)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 기존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조건
 - 법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
 - *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자)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등
- (지원금액)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 * 단시간 노동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일용 노동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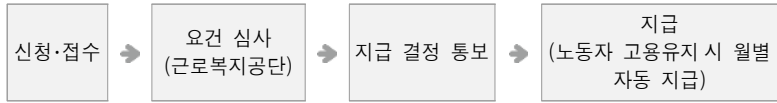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 월 평균보수 기준(219만원 이하 → 230만원 미만) 및 지원금액(7/5만원 → 3만원) 조정, 지원기간(12개월 → 6개월) 조정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
 -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서면 등 오프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처리절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지원 요건, 신청 절차·서식 등 세부정보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참고

9-4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대상

- 소속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 유형

선택 근무제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 일반유희·무도유희·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내용

- 활용 근로자 1명당 1년간 최대 36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한도: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월 6일~11일 활용	월 12일 이상 활용	
재택·원격근무제	15만원	30만원	360만원
선택근무제	30만원		360만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21.1.1. 이후 시차출퇴근제 신규지원 폐지

- 신청·접수**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체 현황(법령 위반, 근태관리 가능성, 업체 규모, 재정건전성 등), 사업내용(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지원필요성), 활용계획(유연근무 활용 규모, 근로조건 등)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제도 안내 :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식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Q&A

Q.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먼저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승인 이후 유연근무를 활용 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인원 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1년간 지원인원 한도는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범위 내에서 최대 70명(단, 시차 출퇴근제는 30명)입니다. 다만,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이거나 당해연도 신규 성립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9-5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사업에 참여하여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소기업의 사업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 일반유희·무도유희·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내용**
-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인프라 구축비용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종 류	지원금 용도
정보 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 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 신청·접수**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체 현황(법령 위반, 근태관리 가능성, 업체 규모, 재정건전성 등), 사업내용(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지원필요성), 활용계획(인프라 활용 계획 등)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제도 안내 :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식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Q&A

Q. 노트북, 태블릿 등 재택근무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재택근무자용 정보통신기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6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전일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허용한 사업주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

지원대상

-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 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 일반유희·무도유희·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 요건
 -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임금감소액 보전금(보전확인 후 지원)
 - 임금감소액을 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월 20만원을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원(사업주 통한 근로자 지원)
- 간접노무비
 - 중소·중견기업에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 월 20만원(정액) 지원
- ▶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 월 30만원(정액) 지원

신청·접수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식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9-7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신중년의 경력 및 특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더 적합한 직무 등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 시키는 경우
- ▶ 비상근 촉탁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 ▶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 근로자가 1년 이내 이직한 당사와 같은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 * 다만,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960만원(중견기업 480만원) 1년간 지원(3개월 단위로 지원)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문의처

- 고용노동부 :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책자료실」 참조
- 관련 고시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9-8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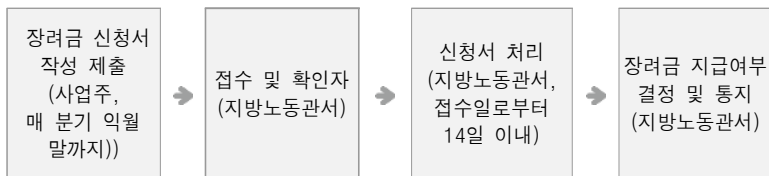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정년을 운영중인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재직 근로자를 1년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일반유통 주점업(56211), 무도유통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 201년1월1일 이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 사업주
- ▶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20%를 초과한 사업주

- 지원내용**
- 기업별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분기별 피보험자 수의 30% (10명 이하 사업장은 3명)

신청·접수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9
- 고용노동부 :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Q&A

Q. 정년 제도가 없는 사업장도 근로자를 60세 이후로 계속 고용하면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정년 제도가 있는 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가 지원대상입니다

Q.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 이미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도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장려금 지원대상입니다

용어설명

계속고용제도 : 약칭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

9-9

고령자 고용지원금('22년 신설 시행)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에 대해 당해 분기 월평균 인원이 과거 3년간 월평균 인원보다 증가한 사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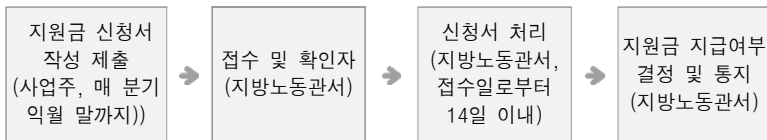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일반유희 주점업(56211), 무도유희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지원내용

-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분기별 피보험자 수의 30% (10명 이하 사업장은 3명)

신청·접수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9
- 고용노동부 :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Q&A

Q.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을 지원합니다.

용어설명

고령자 : 고령자 고용지원금에서 사용하는 '고령자'는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9-1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아래(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중소기업 사업주
 - 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고용유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중에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금의 나머지 100분의 50을 지급
 - ②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
 - (고용기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 (고용유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금의 나머지 100분의 50을 지급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 등을 통한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감원방지)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 지급한 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 조치
- * 해당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인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고용된 자 포함)는 감원방지 의무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 *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한되지 아니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총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① 육아휴직 지원금

- (금액)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특례* 적용

* (특례)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주기)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30만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으로 부여한 사업주부터 세 번째로 부여한 사업주까지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가산)
- (주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③ 대체인력 지원금

- (금액)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기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주기)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출산전후휴가 등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한꺼번에 신청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특례* 적용
 - * (특례)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 ▶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 * 단, '21.12.31.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기존 제도에 따라 지원금 신청 가능
- ▶ 대규모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월 10만원)과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월 30만원) 폐지
 - * 단, '21.12.31.이전 육아휴직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지원 가능

신청·접수

- 오프라인 신청: 제출 서류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

〈제출 서류〉**① 육아휴직 지원금**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 문서 등)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 근로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 문서 등)

③ 대체인력 지원금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 대상자별 정책 > 여성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Q&A

Q. 우리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설되는 '육아휴직지원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신설되는 '육아휴직지원금'을 포함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사항은 '22.1.1 이후에 시작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부터 적용됩니다.

Q. 제도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 중인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나요?

A.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2.1.1부터 폐지되나, 제도 시행 전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었다면 기존 제도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대체인력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수행을 위해 직무 재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새로 채용한 근로자

9-11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한 일터 조성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50억 미만의 다음 적용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방호장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 태양광패널 설치 작업·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업에 한함)
 -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에 한함)
 - (추락방지 안전시설)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및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의 건설업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하도급) 포함]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업단지 내 입주사업장, 사업주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안전투자 혁신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의 설비교체 또는 공정개선 참여 신청자

- 위험기계(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권동식리프트), 노후(30년 이상)기계(프레스, 사출성형기, 크레인, 전단기, 컨베이어, 롤러기만 해당) 교체

* '09.9.30일까지 생산된 카고형 이동식크레인에 한함

** '09.6.30일까지 생산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한함

- 표준산업분류 상 뿌리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제조업 사업장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을 보유한 사업장
- 사고사망 고위험 3대 중업종(①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②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③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산재보험가입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전년도 상시 근로자수가 0명인 사업장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 휴·폐업 중인 사업장

지원내용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 한도, 공단 판단 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 화재·폭발, 폭염, 끼임, 추락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현장 당 최대 3천만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50~65% 또는 정액 지원
 - 지원품목: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업단지 당 10억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 지원품목: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자료실 및 상담실, 교육시설, 체력 증진시설, 목욕·샤워·세탁시설 등) 설치비용
- (안전투자 혁신사업) 총 소요비용의 50%(위험기계교체 7천만원 / 위험 공정개선 1억원)

구분	지원내용
위험기계교체	카고형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원치식, 권동식, 유압식 리프트
	안전검사대상 30년 이상 노후 위험기계
위험공정개선	뿌리공정 중 주조, 소성, 표면처리 공정
	고위험 TOP3 업종의 제조공정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대상 확대(위험기계 교체 3종→9종, 위험공정 개선 뿌리공정→뿌리공정+고위험 3대 중업종)
- ▶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한도 감축(위험기계 교체 1억원 한도→7천만원 한도)

신청·접수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은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우편 및 직접 방문제출
- (안전투자 혁신사업)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anto.kosh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지원
 - * [위험기계교체] 설비의 제작연식, 소유기간, 교체품목 등을 종합하여 선정
 - * [위험공정개선] 사업주의 의지, 위험수준, 영세성 등을 종합하여 선정

문의처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대표번호(1588-3088)
- (안전투자 혁신사업)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anto.kosha.or.kr)/ 대표번호(1644-4555)

Q&A

Q.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지원과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당해연도에 한하여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안전투자 혁신사업 이동식기계 지원 시, 기존 설비는 어떻게 하나요?

A. 신규 설비 인도 후 30일 이내 기존 설비의 폐기 및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자가 신청가능하며, 이동식기계의 경우 대표자와 설비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업종구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재 보험료를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를 말함

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름

9-12

소규모 사업장 건강 디딤돌 사업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배치전 건강진단비용지원

보건관리가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배치전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업무상질병 예방에 기여

지원대상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비용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강관리카드 소지자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없는 사업장
-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사업장

지원내용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신규사업장 100%(100만원 한도), 기존사업장 70%(40만원 한도)
 - * 신규사업장이란 과거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 미 실시 사업장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비용지원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1차·2차 검진비용 전액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20인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원 확대

- 신청·접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를 통한 연중 수시접수
 - *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홈페이지 별도 공지

심사·평가 주요내용

- 비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공단에서 심사(적정성 심사)하여 비용 지급
-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는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공단으로 전송

-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재정사업실(Tel : 052-703-0784)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Q&A

Q. 비용지원 사업 시행 전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사업 시행 전, 당해연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여 비용지원이 가능합니다.

Q.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하나의 법인(법인등록번호 기준) 또는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기준)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30인 미만을 판단합니다.

용어설명

작업환경측정 :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현장 내 유해인자 수준을 측정·평가하는 제도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9-13

근로복지기금지원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 지원

지원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 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 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매년 2억원 한도)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지원(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20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지원(매년 10억원 한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지원(3년간 매년 6억원 한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둘 이상의 기업 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 관계인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등

신청·접수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우편접수
(주소) (우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4층 복지계획부

신청기간

- 근로복지넷(workdream.net) 누리집에서 별도 공지

처리절차



*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052-704-7304)
- 근로복지넷(workdream.net) 홈페이지 참조

9-1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 (대상기업) 사업 참여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각급 학교 등
 -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일반유희 주점업, 무도 유희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틱업.))
 - ▶ 임금체불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재해 명단공표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내에 있는 사업주 등
 - (대상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청년
- *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지원내용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 (지원요건)
 -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4대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사업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 후 1년간 인위적 감원 금지
- (지원규모) 2022년 채용 청년 14만명

신청·접수

- (신청시기) 2022년 1월 중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work.go.kr/youthjob)
 - 사업 누리집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 (참고) 사업 시행시기 및 세부요건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사업 누리집에서 확인)
- 고용노동부 1350
- 사업누리집(www.work.go.kr/youthjob)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공고문 및 지침 참조

▶ 용어설명

우선지원대상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운영기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신청, 자격요건 심사, 장려금 지급심사 등을 위탁한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9-15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맞춤형 전문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성과와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위법행위로 인해 '기소' 처분을 받은 지 3년 이내 사업장

지원내용

- 사업장 맞춤형 무료 컨설팅
 - 사업장당 1개에서 최대 3개 영역까지 컨설팅 지원(10주~21주)
 - * (컨설팅 분야) ① 노사파트너십체계 구축 ② 작업조직·환경개선 ③ 고용문화개선 ④ 임금체계개선 ⑤ 평가체계개선 ⑥ 장시간근로개선 ⑦ 평생학습체계 구축 ⑧ 장년고용안정지원 ⑨ 안전일터 조성
- 중소기업 CEO 코칭, 일터혁신 CEO 클럽
 - 중소기업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코칭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지원
 - 일터혁신 우수기업 대표를 CEO 클럽 회원으로 위촉하여 지역별 일터혁신 기반구축 및 확산 지원
- 일터혁신 교육
 - 인사노무 담당자, 일반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일터혁신 개념·필요성, 사례공유, 변화관리 등 교육
-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성과를 낸 사업장을 선정하여 인증·시상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컨설팅 물량 확대('21년 2,484건 → '22년 2,836건)
- ▶ 정책과 연계한 대상사업장 풀(pool) 구축 및 이를 중심으로 한 컨설팅 대상사업장 발굴

- 신청·접수**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www.nos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기간: 상반기 중 상시 접수
-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02-6021-1000
 - 자세한 사항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참고

Q&A

Q. 한 사업장에 동일한 영역으로 연속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연속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사업장 선정 심사 시 컨설팅 필요성, 전년도 컨설팅 수행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및 연계성, 사업장 참여 및 협조 등을 감안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컨설팅 완료 후 제도 도입이 어려운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컨설팅 완료 후 3개월간 이행관리 기간이 있고, 이 기간 동안 컨설팅 결과로 설계된 내용이 사업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부지원사업과의 연계도 도와드립니다.

용어설명

일터혁신 : '협력적 노사관계'와 '근로자 참여'를 바탕으로 한 현장의 일하는 방식 변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제고하는 지속적·조직적인 혁신활동

9-16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 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규모 기업 등 규모 관계 없이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훈련개시일로부터 비용지원완료 기간 중 폐업한 법인 사업장이 실시한 훈련비용 지원 불가
- ▶ 훈련수료일 이전 폐업한 개인 사업장이 실시한 훈련비용 지원 불가
 - * 단, 폐업신고 일자 당일에 HRD-Net 및 고용보험정보시스템에 즉시 반영

- 지원내용**
- 사업주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소요 비용 지원
 - 【집체, 현장훈련】: 표준훈련비(직종별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 인원 × 지원비율

< 기업 규모별 지원 비율 >

기업구분	훈련구분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향상, 양성훈련 등	자체 훈련	100%
		위탁훈련	90%
대규모기업	향상, 양성훈련	60%	
	비정규직대상훈련/전직훈련	7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향상, 양성훈련	40%	
	비정규직대상훈련/전직훈련	70%	

- **【원격훈련지원금】:** 등급별 지원금액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기업규모별 지원을 × 조정계수

훈련과정 심사 등급	인터넷	스마트		우 편
		교수설계유형	기술기반유형	
A	6,160	12,100	18,150	3,960
B	4,180	8,140	12,210	3,080
C	2,970	5,940	5,910	2,170

* 위 금액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위탁은 90%), 대규모기업은 60%, 1,000인 이상 기업은 40%의 비율로 지원(외국어과정 및 직무법정훈련은 규모별로 50%/30%/20% 지원)

- 위의 훈련비 이외에 훈련수당, 숙식비, 임금의 일부가 요건에 충족될 경우 지원
 - 〈훈련수당〉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원한 경우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
 - 〈임금의 일부〉 유급휴가훈련으로 과정을 인정받은 경우, 훈련생에게 지원된 임금을 한도로 『시간급최저임금×훈련시간×10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50%)』지원
 - 비정규직 대상으로 근무시간이내에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생에게 지원된 임금을 한도로 『시간급최저임금×훈련시간×100%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지원
 - 〈숙식비〉 1일 평균 5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식비나 숙식비를 지원한 경우, 식비는 1일 3,3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원까지 지원(1개월 330,000원 한도)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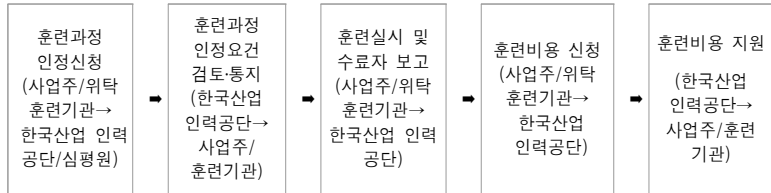
- ▶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훈련수료 경우: 별표 4의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2.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또는 평가성적이 훈련 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미만인 경우: 학습진도율 × 별표 4의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80%

신청·접수 ● 훈련기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분사무소), 직업훈련정보망 (www.hrd.go.kr)

<HRD-Net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훈련과정인정신청 : 훈련개시 7일 전까지(자체훈련은 5일 전까지, 채용예정자 과정 및 NCS적용과정은 훈련개시 2주 전까지)
- 훈련개시전까지 실시신고, 훈련생 명단변경은 수료보고 전까지
- 수료자보고 및 확정 : 훈련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원격훈련은 30일 이내)
- 훈련비용 신청: 훈련 종료 후

<훈련 실시 및 비용 지원 절차>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 지부·지사(대표 전화 1644-8100), 직업훈련 정보망(www.hrd.go.kr)

Q&A

Q. 지원금은 훈련만 하면 제한없이 계속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주가 납부한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를 한도로 지원합니다.

- 위의 금액이 지원한도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용자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 지원한도 최소금액은 개산보험료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문의바랍니다.

Q.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나요?

A.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자체훈련)뿐만 아니라,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훈련(=위탁훈련)도 가능합니다.

-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 관리 등을 수행하는 훈련이고,
- 위탁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의 훈련 방법은 동일하나, 지원되는 지원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용어설명**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을 정하고 있는데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

9-17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자금지원 공통사항

중소기업 재직자의 일대일 경력진단 및 심층 경력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100만원)

지원대상

-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미만인 사업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평균 1천명 이상인 사업장의 재직자 :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에 따라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계좌 지원한도(300~500만원) 외 민간 컨설팅 기관의 경력설계 서비스에 사용가능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100만원 추가 지원
- 전담 경력설계 매니저의 일대일 경력진단, 재취업 적합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 심층 경력설계

신청·접수

-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 또는 인근 고용센터에서 재직자가 직접 신청(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지원 신청)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Q&A

Q.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에 참여하려면 내일배움카드를 꼭 발급받아야 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심층 경력설계와 직업훈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HRD-Net(www.hrd.go.kr) 또는 인근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9-18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술가와 기업의 협업을 통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및 기업 혁신 지원

예술가와 기업의 협업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확산하고, 홍보 마케팅, 사회공헌, 제품개발, 환경개선, 조직문화개선 등의 분야에서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예술(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예술인과의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기업
- 예술인과의 협업활동 및 지원(공간·재료비 등),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는 워크숍, 모니터링, 행사 등 참여 가능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종교기관, 정치적 이익집단 및 관련 기관의 소속단체
- ▶ 학교 및 사회예술강사, 생활문화센터 강사 등의 역할을 요구하는 기업
- ▶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예술관련 프로젝트성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섭외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기업
- * (예시) 정부 부처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해당 사업을 운영 할 예술인을 섭외 할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 ▶ 기업이 수행해야 할 고유 업무 또는 단순 업무의 지원을 예술인에게 요구하는 기업

지원내용

- 기업이 제출한 과업 해결을 위해 예술인 4~5명을 6개월간 파견(예술인 1인당 6개월 간 120~140만원 활동비 지원)
- 과업 해결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컨설팅, 모니터링 제공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2년 1월 중 공고(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http://goartist.kawfartist.kr>)에서 접수
- 심사방법: 서류 심사진행

심사·평가 주요내용

평가항목(안)	세부평가 내용
작성의 성실성	▶ 지원신청서 각 항목별 제시된 내용·분량을 성실히 작성하였는가?
사업의 이해	▶ 본 사업에 대한 이해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예술협업 역량	▶ 파견지원 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 예술인과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는가?
협업주체의 적절성	▶ 지원신청 내용이 본 사업의 취지에 적절한가? ▶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수행가능성이 있는가?
예술협업 지속가능성	▶ 신청 기업·기관의 내·외부 환경 및 협업주체가 지속적인 예술협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 협업주제 방향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가?

제출서류

- (필수) 사업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해야 사업에 참여 가능
- (선택) 기업 소개 자료 1부.
 - * 기업 소개 자료는 예술인 매칭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처리절차

사업신청	심사	예술인 매칭	과업수행
2022년 1~2월 중	2022년 2월 말	2022년 3월 중	2022년 5~10월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지원 사이트 (goartist.kawfartist.kr)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성 검토	과업을 함께 해결할 예술인(4~5명) 매칭	매칭된 예술인과 과업 수 행(6개월)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40)

Q&A

Q. 예술인과 매칭이 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심의를 통해 선정이 되었더라도 예술인과 매칭이 되지 않을 경우, 아쉽지만 사업 참여가 어렵습니다.

Q. 기업 사정 상, 중간에 참여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리더예술인에게 사업 참여 어려움을 잘 설명해주시고, 즉시 재단 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설명

리더예술인 : 기업의 이슈를 진단하고 참여예술인의 예술적 역량 및 경험과 기업을 매개하여 예술협업 활동을 기획·운영·성과관리 등을 진행하는 예술인

참여예술인 : 리더예술인과 함께 예술협업활동을 기획·운영 및 실행하는 예술인

9-19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관광분야 혁신적 사업소재의 발굴 및 창업·사업화 지원

기존 관광산업과 연계한 창의성, 혁신성, 개방성, 기술성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관광 형 벤처기업 발굴하여 육성·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관광사업 창업 및 사업 고도화 지원 필요 기업
 - 예비관광벤처사업 : 예비(재)창업자(공고일 기준)
 - 초기관광벤처사업 : (재)창업 3년 이하(공고일 기준)
 - 성장관광벤처사업 : 창업 7년 이하(공고일 기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종인 자 등
-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 당해년도 공모전에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응모자 이름을 바꾸어 2회 이상 지원 하는 경우

〈유의사항〉

- 공모전 시작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응모 불가

지원내용

-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육성 지원
 - 사업화 자금 지원 : 단계별 약 3~9천만원 내외(자부담 매칭/확정 금액은 공고안 확인)
 - * 인건비, 임차료, 시제품개발을 위한 용역비, 홍보마케팅비 등으로 활용 가능 (세부내용은 공고안 참조)
 - 사업 전반 지원 사항
 - * 관광특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관광벤처 아카데미 운영
 - * 기업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진단·담임·전문 컨설팅 제공

- * 국내외 박람회 참가, 온라인 광고, 여행상품 기획전, 관광벤처 설명회 등 홍보·마케팅 지원
- * 관광기업 지원센터 입주기회 제공 및 '관광기업 이음주간' 등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 마련
- *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DX역량강화캠프, 맞춤형 리서치 및 테스트,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 등 지원
- *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교육, 멘토링, 데모데이 개최 등 지원

신청·접수

- 공모전 홈페이지(www.tourbiz.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평가항목 : 사업의 창의성, 시장 및 사업모델, 사업화전략, 사업의 지속가능성, 관광산업 연광성, 리더십 등 (공고안 확인)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공고안 확인)

처리절차

- 공모전 공고 및 사업설명회(2월) → 단계별 선정심사(서류·현장평가 등 /3~4월) → 지원내용 협약체결(4~5월) → 기업별 사업화 및 맞춤형 지원 (5월~11월) → 최종 성과평가(11~12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창업지원팀(02-729-9466)
- 관광벤처사업공모전 홈페이지(www.tourbiz.or.kr)

9-20

관광 중소기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

관광 중소기업 대상 크라우드펀딩 지원

우수한 관광 콘텐츠를 보유하고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관광 기업이 인터넷 등의 온라인 상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군중 또는 다수를 뜻하는 영어단어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임.

지원대상

- 관광 분야 예비 창업자, 중소·벤처 기업 등
 - 여행업, 여객운송업(관광교통), 문화예술공연업, OTA 기반 관광기업, ICT 결합 관광사업 등 국내 여행 산업 진흥과 관련된 모든 분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외 업종
 -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포함),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베딩업 등(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지원내용

- 관광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
 - 크라우드펀딩 등록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 * 기업별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계획 기본 점검, 펀딩 전략 및 IR 자료 작성 자문 등
 - 펀딩 중개 수수료 및 크라우드펀딩용 IR 콘텐츠 제작 등 관련 예산 지원
 - 참여 기업 발굴 및 국민 관심 증대를 위한 대외 홍보 지원
 - 연간 펀딩 실적에 따라 전문가 심사를 통한 우수기업 시상 및 시상금 수여
 - 펀딩 성공 기업 대상 지속 성장을 위한 후속 지원(투자자문위 IR 등) 추진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펀딩 성공상품 대상 '관광공사 크라우드펀딩 오프라인 상설매장' 입점지원 ('22년 상반기 오픈예정)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ktocrowdfunding@knto.or.kr)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등 추후 공지사항 참조(tourbiz.or.kr)
- 심사방법 : 신청서와 제출자료 기반 서류평가 진행
- 평가내용 : 지원 적합성, 계획의 적절성, 기업역량 등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육성팀(02-792-9543)
- 관광기업지원 홈페이지(www.tourbiz.or.kr)

9-21

엑셀러레이터 연계 관광기업 육성 지원

엑셀러레이터 연계 육성 및 투자 지원

관광산업 이해도가 높은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하여, 관광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민간 투자유치 등을 통해 관광기업의 단기간 고속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초기 관광 스타트업(창업 3년 미만)
 - 세부기준은 모집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 엑셀러레이터 연계 '관광 스타트업 밸류업 프로그램(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 제공
- 한국관광공사 보유 관광산업 네트워크, 빅데이터 및 지식인프라 등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등
- 우수 참여기업 대상 투자 유치 지원 등
 - 세부사항 모집 공모문 참조

신청·접수

- 신청방법 : 투어비즈 홈페이지(tourbiz.or.kr)공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 3~4월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심사방법 :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 심사내용 : 기업역량, 시장 적정성, 사업아이템 경쟁력, 관광산업 관련성 등 (심사 기준은 엑셀러레이터별 변동 될 수 있음)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육성팀(02-792-9553)
- 관광기업지원 홈페이지(www.tourbiz.or.kr)

☞ 용어설명

엑셀러레이터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전문회사

9-22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관광기업 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공

관광기업의 혁신적인 전환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혁신 바우처 제공을 통해 관광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 다양한 기업 혁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관광 분야 중소기업 및 융·복합 관광기업
 - 세부기준은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관광 혁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대형, 중형, 소형 등 규모별 바우처 제공

분야	프로그램	프로그램관광 혁신 바우처 서비스
관광 특화 혁신 지원	관광 혁신 서비스 개발	관광 상품/서비스 기획 관광 부문 상품·서비스·비즈니스 모델 기획 및 개발, 기존 비즈니스 모델 진단, FIT 여행 상품 개발 등
		관광 산업 특화 리서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인트라바운드 관점에서의 관광산업 동향 및 동종 업계 관련 시장 조사, 빅데이터기반 여행자 동향조사(소비지출, 이동통신, 상권분석) 등
	관광 혁신 서비스 구현	스마트 기반기술 도입 실감형(VR/AR) 콘텐츠 제작, AICBM 기술 구현, 챗봇 도입, 여행 상품 큐레이션 기능 개발 등
		UX 고도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홈페이지 UI/UX고도화, 모바일/O2O 플랫폼 구축, 반응형 웹사이트 구축 및 솔루션 개발 등
컨설팅 및 자문	비즈니스 컨설팅	경영 컨설팅 인사조직, 경영체계, 구조개선 등의 경영 개선 진단, 사업전략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 자문 등
		기타 전문 서비스 세무, 재무, 노무, 법률 관련 전문 자문 서비스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역량 진단 및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기업 디지털 역량 및 정보기술환경 분석과 진단, 개선 APP의 QA Test, MICE 온라인 컨설팅 등

분야	프로그램	프로그램관광 혁신 바우처 서비스
		서버 및 개발환경 구축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PaaS, IaaS) 구축, 관광기업 SW 개발을 위한 ICT 환경 구축, 관광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
		ICT 솔루션 도입 ERP/CRM/Analytics 등 솔루션 도입 및 커스터마이징, SaaS-based ICT 솔루션 도입 등
마케팅	홍보/ 마케팅 /광고	마케팅 전략 수립 마케팅 콘텐츠 전략, 채널 믹스 전략, SEO마케팅 전략 디지털/크리에이티브 마케팅 전략 수립, SNS마케팅 방안 수립 등
		홍보 지원 광고 콘텐츠제작, 국내외 마케팅/홍보/광고 집행, 유튜브 영상 제작, 기업 카달로그 및 홈페이지 제작, 라이브 커머스 활용 등
	디자인 개발	브랜딩 브랜딩, 네이밍, 브랜드 콘셉트 도출, 기업 맞춤형 BI/CI 개발 및 고도화 등 디자인/콘텐츠 제작 상품디자인, 오프라인 홍보물, 모션그래픽 영상, App/Web UI SNS콘텐츠 제작, 패키지 디자인, 3D 모션그래픽 영상 제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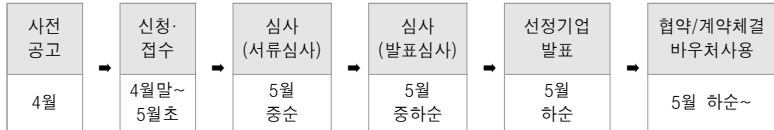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바우처 유형 확대) 중형바우처 유형 확대
- ▶ (서비스메뉴판 개선) 검색 기능 간편화(지역별/서비스 유형별/ 키워드별/ 금액별 검색), 참여기업 수요조사를 반영, 메뉴판 구체화
- ▶ (네트워킹 촉진) 기업매칭, 성과공유 등을 위한 네트워킹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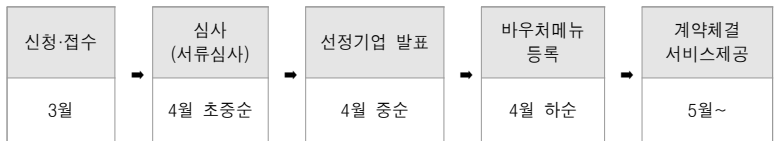
신청·접수

- 공모기간 *잠정 일정이며 변동 가능
 - (수혜기업) 2022년 4월
 - (제공기업) 2022년 3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운영시스템을 통한 접수
 - 홈페이지 : <http://tourvoucher.or.kr>
- 공모일정/방법 *잠정 일정이며 변동 가능

- (수혜기업) ▶ 서류심사(공동) ▶ 발표심사(중형·대형만 해당) ▶ 최종선정
 - (평가방법) 혁신가능성, 바우처활용계획 등, 총점 상위순 선정 (상대평가)
 - (평가위원) 관광, IT, 창업, 투자 부문 외부전문가



- (제공기업) ▶ 서류심사 ▶ 최종선정/서비스 등록
 - (평가방법) 서비스 품질 적정성, 안정성 등 총점 60점 이상시 선정 (절대평가)
 - (평가위원) 조직·인사/재무회계 부문 외부전문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성과평가
 - (수혜기업) 바우처서비스 종료 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 및 성과품 검수를 통해 서면평가
 - (제공기업) 서비스별 평가결과를 매년 집계,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으로 지원사업의 서비스 품질 상향 평준화 도모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육성팀(02-792-9554)
- 관광 혁신바우처지원 홈페이지(www.tourvoucher.or.kr)

9-23

관광플러스 팁스

관광분야 기술융합 지원

중기부 TIPS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유망한 관광기업의 기술융합 및 비관광 기술기업의 관광분야 진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중기부 TIPS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기업 및 졸업 기업 중 성공판정 기업 (부분별 세부 자격은 모집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관광 특화 사업화 자금 지원(2개년)
● 투자유치 지원, 관광 산업 연계 지원
● 관광 관련 전문 교육 및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등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신청·접수 ● 신청방법 : 투어비즈 홈페이지(tourbiz.or.kr) 공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 3~4월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심사방법 :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
- 심사내용 : 창업기업 역량, 기술아이템 전문성, 관광산업 관련성, 사업 확장성 및 지속성 등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육성팀(02-792-9553)
● 관광기업지원 홈페이지(www.tourbiz.or.kr)

용어설명

팁스(TIPS)란?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 운용사가 스타트업을 선별해 1~2억을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가 R&D(최대 5억), 창업사업화(최대 1억), 해외마케팅자금(최대 1억) 등 최대 7억원을 연계 지원하고, 엔젤투자매칭펀드(최대 2억원, 지분투자)도 추가 지원 가능

9-24

관광선도기업 글로벌 육성 지원

관광기업 해외 진출 지원

혁신 성장이 가능한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멘토링, 판로개척,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을 통해 해외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연간 매출액 규모 5억원 이상, 연간 수출액 50만달러 이상,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최근 3개년 후속 투자유치 10억원 이상 등 조건 중 1개 이상 달성한 관광분야 중소기업
 - 세부기준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단계별 지원
 - (예비교육) 멘토링 및 교육 등 해외 진출 전략 수립
 - (사업화지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 판로개척 등
 - (후속지원) 성과평가를 통한 맞춤형 후속지원(홍보마케팅, 투자유치 등)

- 신청·접수**
- 신청기간/신청방법
 - 3월~4월 예정 / 온라인 접수(엑셀러레이터별 개별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심사방법 :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영문)
- 심사내용 : 창업기업의 우수성/ 사업성/ 관광산업 연관성/현지 진출 적합성 등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육성팀(02-792-9552)
 - 관광기업지원 홈페이지(www.tourbiz.or.kr)

9-25

관광기업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

창업·경영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지원

관광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무·창업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광기업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온라인·전화 상담, 내방 상담, 현장 상담 등 원스톱 해결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 관광분야 예비 창업자, 중소·벤처 기업 등

* (예시) 전통적 관광기업(관광진흥법 상 7대 업종) + 융복합 관광기업(ICT 결합 관광플랫폼 기업, 창의적 관광체험을 제공하는 관광콘텐츠 기업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본 상담 진행 시, 지원 대상 기업 자격 요건 별도 없음
- * 심화 또는 현장 상담의 경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자체 분석 후 기업별 진행 예정

지원내용

- 상시·지속적인 관광분야 특화형 종합 컨설팅 서비스 채널(관광기업지원센터)을 통해 창업·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광중소기업의 경영상 각종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 및 자문 지원

구분	일반상담	심화상담	융복합 협력 자문단
상담 분야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창업분야 창업 및 스타트업 관련 제도 및 운영방안 ·일반 관광 분야 관광법규(숙박업, 음식점, 여행업 등) ·정부 지원사업 분야 ·기타 간단한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특허 ·인사/노무 ·재무/회계 ·판로/마케팅 ·해외진출 ·관광벤처 ·문화/콘텐츠 ·신규 아이디어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 산업혁명 ·제도 개선 제안 ·국내외 마케팅 ·투자/펀드 ·디지털 기술 ·플랫폼 개발 ·지역특화산업

처리절차

단 계	STEP 1	STEP 2	STEP 3	STEP 4
구 분	온라인·유선 상담	내방상담	전문가 심화상담	현장방문상담
내 용	에로사항 접수 및 상시상담 (간단 에로사항 해결, 내방상담 예약, 컨설턴트 배정 등 추가 단계 진행)	컨설턴트 상담 (전문 컨설턴트의 집중 컨설팅, 사안에 따라 전문자문단 배정)	전문자문단 심화 컨설팅 (주요 사안에 전문자문단의 심화 컨설팅 제공)	기업 현장 방문 상담 (전문가가 직접 기업 현장을 찾아가 기업 분석 및 대면 컨설팅)
운영(안)	상시 컨설팅 (월~금) 09:00~18:00	사전 예약제 (월~금) 09:00~17:00	사안에 따른 관련 전문자문단 배정	-기업 현장 출동 (사전 예약) -지역 관광센터 연계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온라인
 - 전화 : 02-729-9494/9454(평일 09:00~18:00)
 - 온라인 : www.tourbiz.or.kr 회원가입 후 상담요청 게시글 작성
- 신청기간 : 상시 접수(내방상담 및 심화상담 시 미리 일정 협의)
- 처리기간 : 단순상담 및 문의는 접수 후 1~3일 내 처리, 심화상담은 상담 주제에 적합한 자문위원 섭외 후 일정 조율까지 약 1~2주 소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일자리팀(02-729-9489)
- 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tourbiz.or.kr)

9-26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관광여가 사회 실현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시행하며, 근로자와 소속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가 휴가 시 국내여행에 적립금을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
 - 근로자 참여조건(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없음
(단,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지원내용

- 소속 기업, 근로자가 여행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추가비용 지원
 - (분담비율)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 (적립금)조성
 - (사용방식)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 휴가샵 온라인몰 : 숙박, 입장권, 체험/레저 입장권,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사업 전용 온라인몰(세부사항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대상별 혜택
 - 참여기업
 - (전체)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성과공유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 *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혜택 : 정부/지자체/은행 등 각종 지원사업 우대
 - *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혜택 : 정부포상, 인증기업 홍보, 문화예술 향유기회 등 제공
 - * 성과공유제(중소벤처기업부) 혜택 : 정기근로감독 면제, 인프라구축비 지원, 금융 우대 등
 -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혜택 : 정기근로감독 면제, 인프라구축비 지원, 금융 우대 등
- (우수기업) 정부포상, 기업홍보, 차년도 우선선정, 우수사례집 발간 등
 - 참여근로자 : 국내여행경비 정부 지원(1인당 10만원), 상품 할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 수시 제공, 전용휴양소 운영 등

신청·접수 ●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 (사업 홈페이지 : vacation.visitkorea.or.kr)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 * 기업/담당자 정보, 참여인원(명단 및 재직증빙은 대상 선정 후 제출) 등 작성

처리절차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4)
- 전담 지원센터
 - (전화) 1670-1330 (이메일) vacation.benepia@sk.com
 - (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Q&A

Q.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

A.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1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휴가샵 온라인몰 상품을 미리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나요?

A. 휴가샵 온라인몰은 참여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가샵에서는 여기어때, 제주도닷컴 등 40여개 제휴사 및 10만 여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휴가샵 대표상품 카탈로그'를 클릭하시면 휴가샵 입점 상품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27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지역 중소기업 대상 종합 저작권 서비스 제공

전국 15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으로 저작권에 취약한 1인·중소기업의 저작권 역량 강화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작권의 창출·활용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지역 1인·중소기업, 예비창업자(시니어예비창업자, 대학생 등)

지원내용

- 상시지원(무료): 저작권산업현장 컨설팅, SW관리체계컨설팅, 교육, 상담
 - (저작권산업현장 컨설팅) 저작권 전문가가 기업에 방문하여 자문 제공
 - 저작권 법률분쟁 자문, 계약서 검토, 해외진출 관련 저작권 해결 등
 - (SW관리체계컨설팅) 기업이 보유한 SW 관리 방향 제시
 - 최적의 SW라이선스 관리를 통한 비용절감 방법 안내
 - (맞춤형 저작권교육) 분야/장르별 저작권 교육 운영
 - (저작권 상담) 저작권 등록 등 저작권 관련 제도 안내
- 저작권 육성지원[지원금 지급]
 - 저작물 보유 기업 대상 투자 활성화 지원
 - 저작권 진단 및 사업화 컨설팅 지원, 시제품 제작, 전시회참여 지원
 - 선정 기업 당 5백만원 ~ 10백만원 지원, 각 지역센터별 5개사 선정
 - * 지역센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신청·접수

- 위원회 누리집 중소기업 지원 페이지(<https://copyright.or.kr/kcc/>)
 - *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지역센터 선택 신청

저작권 육성지원 모집공고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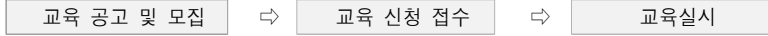
- 매년 5월 ~ 9월 모집공고 실시
 - * 지역별 모집공고 일정 및 지원사항 상이

제출서류

- (상시 서비스) 서비스 신청서
- (저작권 육성지원) 지원 신청서, 저작물 사업화 계획서 등

처리절차

● 상시 서비스



● 저작권 육성지원



지원규모

● 전국 15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23.9억원)

- * '21년 13개 지역센터 현황: 강원(강릉과학산업진흥원), 경기(안양창조산업진흥원), 경북(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대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전(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산(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전남(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북(충북지식산업진흥원), 광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울산(울산경제진흥원), 경남(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인천(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 * '22년 예정 지역센터: 서울, 제주 지역

문의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본부) : 055) 792-0222~0223
- 2022년 15개 지역센터 운영 지역



경기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25 안양창조산업진흥원 ☎ 031-8045-6757
강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2326번길 4 강릉과학산업진흥원 ☎ 033-650-3380
인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7층 ☎ 032-458-5033
충북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리1길 7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 043-210-0855
대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512번길 20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A동 1층 ☎ 042-864-5055
경북	경북콘텐츠진흥원	경상북도 안동시 영가로 16 경북콘텐츠진흥원 ☎ 054-840-7063
대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 601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 053-655-5616
울산	울산경제진흥원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4층 ☎ 052-283-7154
전북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063-281-4166
광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5 전일빌딩245 5층 ☎ 062-610-9534
전남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창의벤처센터 4층 ☎ 061-339-6994
경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로 14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2층 ☎ 055-230-8818
부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41 센텀벤처타운 4층 403호 ☎ 051-749-9366

* 서울/제주저작권서비스센터 2022년 설립 예정 *

9-28

문화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자유공모-단비)

문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콘텐츠 등 문화산업 분야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서비스와 관련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문화산업 분야의 기업, 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 ▶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 등

- 지원내용**
- 문화산업 분야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서비스와 관련한 기술개발 지원
 - 개발기간 1년, 정부출연금은 총 연구비의 75% 이내(최대 2~3억원)

- 신청·접수**
- 온라인(<http://ctrd.kocca.kr>)을 통한 제안서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분야) 문화산업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서비스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 (문화산업분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항에 포함되는 산업분야 중 선택
- * (예시분야) 영화, 음악, 게임, 출판인쇄, 방송영상,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디자인, 공연, 미술공예, 문화재, 전통문화, 대중문화예술 등
- (사회적 가치창출분야) 문화산업분야 중 1개 이상을 포함하되, ①문화 산업안전, ②문화소외계층 품목 신청

※ 본 사업은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6단계 이상의 기술성숙도를 지향함

제출서류

- 연구제안서(본문 3p 내외) 접수 후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세부 연구개발계획서를 접수 받아서 2단계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처리절차



처리절차

- 총 49.3억원, 17개 과제, 과제당 평균 2.9억원
* '21년 지원현황 : 과제수 23개, 지원금 63.2억원, 과제당 평균 2.7억원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팀 : 042-330-6643, 6647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occa.kr>
* 상기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세부 사업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29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의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대상기업 :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문화상품은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 출판에 한함
 - 신청요건

기술보증기금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신청요건	• 선판매계약금액 이내 보증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
선판매계약금액 이내	•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선판매계약금액 초과	• 제작비의 5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단,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
1억원이하	• 제작비 대비 자금조달 요건 적용 생략 가능

신용보증기금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총제작비 자금조달 확정 요건	• 총제작비 중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조달 확정 *극장용 50%, 기타 30% 등
순제작비 자금조달 확정 요건	• 순제작비 중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조달 확정 *극장용 60%, 기타 40% 등
예외사항	• 이번 보증신청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면서 문화콘텐츠종합평가 점수가 우수한 경우 자금조달 확정요건 충족한 것으로 간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프로젝트당 최대 지원한도 30억원 이내
 - * 혁신성장 공동기준 문화콘텐츠 분야(한류콘텐츠 포함) 제작기업의 경우 최대 50억원 이내 (기술보증기금)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콘텐츠(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기획력, 제작능력, 콘텐츠 우수성, 제작 완료 및 판매가능성, 보증해지 가능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제작사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에 대한 평가는 최소화

제출서류

- 완성보증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신용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법인, 대표자, 실제경영자)
- 평가대상 콘텐츠 기획서(시나리오, 제작계획서 등)
- 총제작비 조달계획서 등
- 선판매계약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처리절차



* 추천위원회 생략 대상의 경우 기보 및 신보에 직접 신청 가능

지원규모

- 2,000억원 내외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02-3215-5900)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031-725-7857)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051-726-1300)
대전문화콘텐츠금융센터(042-480-1322)

-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02-710-4562, 4567)
문화콘텐츠지원센터 글로벌게임허브팀(031-725-6802)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금융팀(061-900-6267)

Q&A

Q. 자금조달확정금액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 자기자금, 선판매계약금액, 투자계약금액, 크라우드펀딩 모집금액, 차입금 등이 포함됩니다.

용어설명

선판매금액 :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전에 선판매계약에 의해 유통사에게 판매하기로 한 경우의 판매금액(부가가치세액 제외)

9-30

스포츠 창업 지원

예비초기창업지원/창업도약센터 운영, 액셀러레이터 연계

예비창업자부터 창업 7년 미만 스포츠기업 대상 예비초기창업지원/도약센터 및 액셀러레이팅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보육·사업화 지원 및 투자유치 특화 보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일반) 스포츠산업 분야 예비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사회적기업전담) 스포츠산업 분야 예비 및 3년 미만 사회적기업
- (창업도약센터) 스포츠산업 분야 3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 중 정부 지원 받은 이력 있는 기업
- (액셀러레이팅 지원) 스포츠산업분야 7년 미만 창업기업(예비 창업자제외)
- (재창업지원센터) 폐업 경험 보유한 예비~3년 미만 창업자

지원내용

- (예비초기창업지원/창업도약/재창업) 센터별 보육기업 선발 통해 멘토링, 현장실습, 워크숍, 세미나 등 수준별 맞춤 창업보육(10개월), 사업화 자금(35~36백만원 내외) 지원
- (액셀러레이팅 지원) 전문창업기획자인 액셀러레이터별 보육기업 선발 통해 투자유치컨설팅, 초기/후속투자지원, 피칭교육 등 투자유치 특화 보육(6개월), 사업화자금(45백만원 내외) 지원
 - 액셀러레이터별 국고보조금의 20% 이상, 2개 이상 기업에 투자 의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예비초기창업지원/도약지원 기업 수 확대(100 → 140개), 액셀러레이팅 지원 기업 수 확대(50 → 70개사), 재창업 지원(100 → 50개사)

신청·접수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 / 1~2월 예정

처리절차

- 스포츠 예비 창업 및 창업 7년 미만 기업 등 260개사
 - * '22년 예산 13,800백만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2)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지원실 기업성장지원팀(02-410-1542, 1543), 기업금융지원팀(02-410-1565)

9-31

스포츠 중소기업 성장 지원

국내 스포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 경영개선, 마케팅, 자금조달, 해외전시 참가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 지원대상**
-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3년 이상 영위하고, 매출액 아래 해당 중소기업
 -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30억 이하

제외대상

- ▶ 부채비율 500%이상인 기업/전액자본잠식/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폐업중인 기업 등

- 지원내용**
- 지원 분야 기준, 3개 과제 이내 자율선택,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 * 세부내용은 변동 가능

지원분야	과제 프로그램	지원비율	비고
성장동력확보 (필수)	제품경쟁력 강화	총 사업비의 80% (기업 자부담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당 지원금은 최대 1억원 • 각 지원기업은 '필수' 지원분야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지원분야를 신청해야 함 ※ 과제 프로그램은 총 3개 이내로 제한 • '성장동력확보'(필수) 지원분야는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배분해야 함
	마케팅전략 수립		
	판로개척 컨설팅		
	경영개선 컨설팅		
	해외진출전략 수립		
IPO/자금조달 컨설팅			
사업기반지원 (일반)	제품개발		
	국내·외 마케팅		
	온라인 판로개척		
	스마트서비스		
	지식재산권·인증취득		
	전문가 자문		
해외전시참가			

● 지원 내용

* 세부내용은 변동 가능

지원분야	세부 프로그램	주요 내용
성장동력확보 (필수)	제품경쟁력 강화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제품개발·기획 연구 및 컨설팅, 품질관리 ※ 연구소기업 관련 요건 충족 시 인건비 지원 가능
	마케팅전략 수립	제품 및 브랜드 마케팅 전략수립, 온오프라인 광고전략, 브랜드개발(BI·CI 포함) 등 마케팅관련 컨설팅
	판로개척 컨설팅	국내·외 판로개척, 펀딩 추진전략 등 컨설팅
	경영개선 컨설팅	사업전환, 경영혁신 컨설팅 기업 중장기 경영전략(성장 및 발전전략) 컨설팅 기업 정보화(IT) 체계 구축·설계, 스마트서비스 관련 컨설팅
	해외진출전략 수립	해외 투자환경 및 시장조사,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컨설팅 (경쟁사, 제품, 소비자 동향 조사/분석 포함)
	IPO/자금조달 컨설팅	기업평가, 상장 사전컨설팅 등 자금조달 관련 컨설팅, 기업상장지원(당해년도에 한함)
사업기반지원 (일반)	제품개발	금형제작,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금형)제작 지원, 기존제품 개선, 제품개발용 원부자재 구입 등
	국내·외 마케팅	제품·기업의 홍보매체 개발 제작 및 홍보활동 지원 - 홍보매체: 영상물, 브로셔, 포장지, 전자종이 카달로그 등 - 홍보활동: 현지 프로모션, TV, 신문, 잡지, SNS 등 기업·제품 홍보 홈페이지 및 쇼핑물 제작 - 광고송출 (단, 광고송출비는 2천만원 한도)
	온라인 판로개척	국내 또는 해외(아마존, 알리바바 등) 온라인 스토어(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포함) 입점 수수료 지원 - 입점 프로세스, 해외 지사 및 법인설립 지원 포함 * 단, 온라인쇼핑물 입점을 통한 판매수수료는 지원불가 - 클라우드펀딩 관련 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마트서비스	비대면 영업환경, 재택근무, 클라우드 업무환경,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도입
	지식재산권·인증 취득	지식재산권(IP) 및 친환경인증 취득 지원, 시험 및 테스트비용 등
	전문가 자문	조직·인사제도·노무·법무·성과평가 보상 등 각종 전문가 자문
	해외전시참가	부스임차비·장치비·편도운송비(전액), 해외파트너발굴비(100만원 내), 기업별 통역인력(50만원 내), 온라인전시회 콘텐츠 제작비(동영상·VR콘텐츠·e카달로그 등, 합계 500만원 내) - 지원기업이 참가희망 온·오프라인 전시회 선택하여 자율참가 - 지원기업 최종 선정 이후 참가한 전시회부터 지원

처리절차

- 스포츠중소기업 74개사 내외('22년 예산 8,440백만원)
 - * 지원 규모 변동 가능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2)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진흥본부 기업성장지원팀(02-410-1545)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

9-32

스포츠 선도기업 육성 지원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유망 스포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국내 대표 브랜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3년간 해외진출 및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국내 스포츠 용품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을 3년 이상 영위하고, 3년 평균 아래 매출액을 달성한 중소 스포츠기업
 - (용품제조업)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달성
 - (서비스업, 시설업)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달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내 지사나 현지법인 등의 형태로 영업 활동 중인 외국계 기업,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기업의 출자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거나 경영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 분야

* 세부내용은 변동 가능

사업분야	지원내용
사업 고도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진단 및 역량 강화 - 신제품 개발 및 제품개선, 지식재산권(IP) 및 친환경인증 취득 관리, 영업마케팅 전략 및 실행, 원가생산성 및 품질 향상, 신규사업 개발 전략, 고유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경영지원 등 국내외 컨설팅 지원
해외판로 개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 - 해외 진출전략 수립 및 신시장 경영전략 등 해외시장 진출 전략 지원 - 바이어 발굴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해외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브랜드 성장 - 해외 홍보·광고 영상 제작, 해외 매체 홍보활동 지원 - 해외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등

● 연차별 지원 내용 (기업당 최대 3년 지원)

구분	지원사업	지원비율	비고
1차년도 (역량 강화)	사업고도화 지원(필수) 해외판로개척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총 사업비의 80%	- 지원기업은 연도별 필수 사업 포함 2개 사업분야 이상, 최소 2.5억원 이상 지원 신청해야 함 - 기업당 지원액은 연간 최대 2.8억원 * 한 사업 분야에 최대 2억원 까지 가능
2차년도 (수출기반 조성)	사업고도화 지원 해외판로개척 지원(필수) 해외마케팅 지원		
3차년도 (글로벌 성장)	사업고도화 지원 해외판로개척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처리절차

- 스포츠 중소기업 30개사 ('22년 예산 8,900백만원)
 - 지원기간 3년으로 10개사 이내 선정 예정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2)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지원실 기업성장지원팀(02-410-1546)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

9-33

IP제품혁신 지원(舊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제품 현안해결을 통한 특허사업화 촉진

중소기업 특허제품의 기술적 난제(제품개선, 신제품 기획, 장치/공정개선, 기능성/디자인 개선 등)를 지식재산(IP) 분석으로 해결하는 컨설팅 및 검증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전용실시권 포함) 보유 중소기업
 - 협업기관별 추가 지원자격은 별도 공고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지원내용

구분		지원규모 (최대 비용/기간)	지원내용
협업과제	신제품기획	11천만원 / 7개월	고객지향적 특허제품기획 컨설팅 + 협업 후속지원(시제품제작, 출원)
	문제해결		제품지향적 문제해결 컨설팅 + 협업 후속지원
	제품고도화 (개발형)		기능지향적 특허제품 고도화 컨설팅 (난이도 상) + 협업 후속지원
	제품고도화 (개선형)	8천만원 / 5개월	기능지향적 특허제품 고도화 컨설팅 (난이도 하) + 협업 후속지원
단독과제	신제품기획	7천만원 / 7개월	고객지향적 특허제품기획 컨설팅 + 후속지원(목업제작)
	문제해결		제품지향적 문제해결 컨설팅 + 후속지원
	제품고도화 (개발형)		기능지향적 특허제품 고도화 컨설팅 (난이도 상) + 후속지원
	제품고도화 (개선형)	4천만원 / 3개월	기능지향적 특허제품 고도화 컨설팅 (난이도 하) + 후속지원

- 연간 82개 기업 내외(예산 41.3억원)
 - (협업과제) 최대 11천만원(기업부담금 10~40%) 이내에서 지원
 - (단독과제) 최대 7천만원(기업부담금 10~40%) 이내에서 지원
- * 기업부담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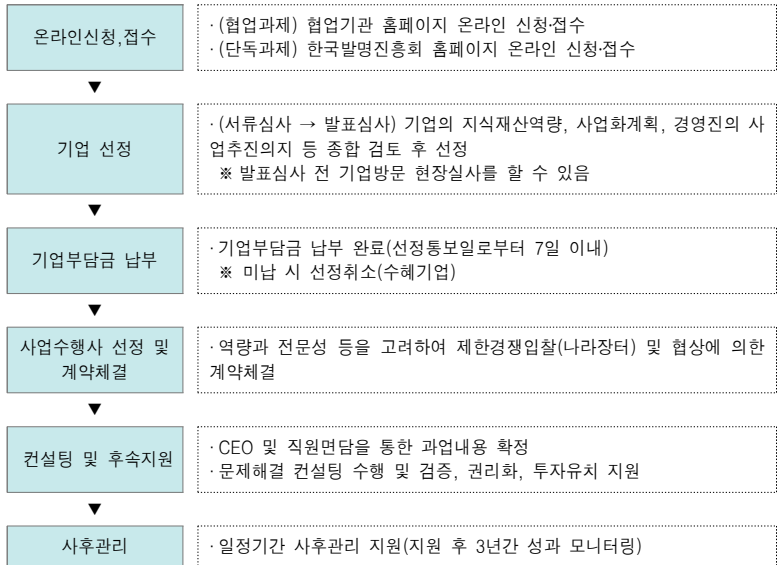
기업 매출액		50억 미만	50억 이상 ~ 100억 미만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300억 이상
기업 부담률		총 10%	총 15%	총 30%	총 40%
	현금	5% 이상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현물	5% 이하	5% 이하	10% 이하	15% 이하

지annah와 달라진 내용

* 협업규모 확대를 통해 후속지원 강화, 단독과제(개선형) 지원규모 확대

신청·접수

- 공모기간 중 해당 사업신청관리시스템으로 신청(1~4月)
 - (협업과제) 협업기관의 사업신청관리시스템 접수
 - (단독과제)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접수(www.kipa.org)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식재산 활용현황, 제품 경쟁력, 기업 경쟁력, 사업 경쟁력 등
- * 지원신청서, IP활용계획서,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등 제출

문의처

- 특허청 특허사업화담당관 : 042-481-5867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 02-3459-2937
- 홈페이지 : www.kipa.org

Q&A

Q.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모두 지원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보유한 특허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 중이거나 제품화를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협업과제와 단독과제에 중복 신청도 가능한가요?

A. 네. 협업과제 지원 탈락기업이 단독과제에 재신청 가능합니다.(협업과제, 단독과제 순차공고) 단, 중복지원을 위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용어설명

IP활용계획서 : 특허적용제품 정보, 핵심 니즈 및 활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서류로 신청기업의 지식재산, 기술, 연구역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9-34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해외 수출(예정)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글로벌 IP 기업으로 선정하여, 3년간 지식재산 전문 컨설팅의 체계적인 관리 하에 해외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 종합지원 사업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수출(예정) 중소기업
- 수출기업 : 직전 3년간 수출 실적*이 있거나, '22년 수출 예정** 기업
 - * (수출기업) 관세청, 무역협회, 기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증명서류
 - * (수출예정기업) 별도의 "수출 예정 계획서" 작성·제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해외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 ▶ 해외수출을 하고 있지 않고, 2022년 수출예정이 없는 기업
- ▶ 글로벌IP스타기업 졸업기업 중 만 2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지원내용

- 선정된 기업에게 해외 권리화 비용지원,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특허·디자인개발 전략수립(특허맵·디자인맵 등), 기업 IP 경영진단·구축, 상표/디자인 개발 등 해외 진출 시 필요한 IP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기업의 니즈(Needs)에 따라 지원

신청·접수

- 매년 1~2월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홈페이지 (www.ripc.org)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정량평가(IP스펙트럼) 40점 + 정성평가 60점
 - * 정량평가(IP스펙트럼) : 연구역량, 지적권역량, 기업역량, 글로벌 역량에 대한 정량 평가
 - * 정성평가 : 사업계획의 적절성, 기술역량 및 파급효과, 경영자의 의지 및 사업비전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및 지원절차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추진(활용)계획서 등
-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기업 및 세부사업선정

컨설팅 수행

문의처

-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 1661-1900

Q&A

Q. 본사와 연구소 소재지가 다른데요. 어느 지역 지식재산센터에 지원을 해야 하나요 ?

A. 글로벌 IP스타기업의 경우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본사 소재지에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Q.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만 선정되나요 ?

A. 아니요, 수출예정기업의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해외진출 예정기업의 경우, 수출예정계획서와 함께 계약서, 업무협약체결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글로벌 IP스타기업 졸업기업인데, 재신청 가능한가요 ?

A. 네, 가능합니다. 단 졸업 후 2년 이상 기업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9-35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출 기업을 위한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해외 진출(예정) 중소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 제고 및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쟁 상황별 맞춤형 IP 보호 전략 제공

- 지원대상**
- 외국기업과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지원내용**
- 해외 진출(예정)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 제공

구 분	지 원 내 용
특허 실용신안	수출(예정)지역 분쟁위험 특허 조사 분석 및 종합적 사전대응전략 제공
	(해외기업과의) 경고장 및 소송 대응, 라이선스 분쟁, 권리행사 전략 제공
상표 디자인	해외 상표·디자인 분쟁위험조사 및 상표·디자인 현지화 전략 제공
	해외 모조품 대응 또는 무단선등록 권리 무효화 전략 제공

- 기업당 최대 0.5억원 컨설팅 비용 지원

* 특허침해소송 대응인 경우 연간 2억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 기업부담금

기업구분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업 부담률	총 30%	총 30%	총 50%
	현금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현물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 신청·접수**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www.ip-navi.or.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매월 공고를 통해 기업모집. 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시 신청 가능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 선정) 심사 결과 80점 이상

* 기업 역량(규모, 지식재산 보유 수)과 컨설팅 활용계획(제품 관련 기술의 독창성,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의 구체성, 수출전략의 적극성) 등을 종합평가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 042-481-3573 또는 5925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대응센터
 - 특허 : ☎ 1600-8145, ARS 3번 / ipkoipa@koipa.re.kr
 - 상표 : ☎ 1600-8145, ARS 4번 / kbrand@koipa.re.kr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 www.koipa.re.kr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 : www.ip-navi.or.kr

Q&A

Q. 현재 해외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수출을 위해 해외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 등)를 기준으로 선정심사에서 수출예정 여부를 평가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합니다.

Q. 저작권 관련 분쟁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저작권을 제외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나고야 의정서,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 지식재산권 관련 해외기업과의 분쟁이 지원 대상입니다.

Q.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권리별로(특허·실용신안 / 상표·디자인) 연 1회 지원 가능합니다.

응어설명

나고야 의정서 : 공식명칭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로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생기는 이익 공유를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을 말함

9-36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사업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상표를 모니터링하여 우리기업에 제공 및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게시물(URL) 삭제 지원

지원대상

-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중소·중견기업 중
 - 지원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해당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
- ▶ 출원중이거나(출원신청서, 출원확인서 미인정) 최종등록에 실패한 권리, 유효기간이 경과한 권리 등

지원내용

- 상표브로커 대응
 - 해외에서의 상표선점 모니터링 및 피해기업 통보, 피해기업 설명회, 해외지재권 보호사업 연계 등
-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신청을 통한 게시물 삭제,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교육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상표선점 모니터링 대상 국가 확대 : 중국·베트남·태국·인니에서 싱가포르(시범)까지 확대

신청·접수

- (신청방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www.koipa.re.kr) 사업공고 확인 및 이메일 접수
- (신청기간) 2월 / 5월 / 8월 ※ 신청기간 변동가능
- (처리기간) 3개월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규모, 위조상품 유통규모, 지재권 보유현황 등을 기반으로 종합 평가(서면) 후 선정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
 - 02-2183-5885(중국), 02-6250-5253(아세안)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www.koipa.re.kr)

Q&A

Q. 중국 및 아세안의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게시물이 삭제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위조상품 유통대응 파트너십을 체결한 쇼핑몰에서만 게시물 삭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쇼핑몰은 중국 알리바바(타오바오, 티몰, 티몰국제, 1688, 알리바바닷컴, 알리익스프레스)와 아세안 라자다 및 쇼피입니다.

용어설명

상표브로커 : 우리기업 관련 상표를 해외에서 3건 이상 다수 출원한 상표도용 의심자

9-37

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창업보육센터 연계 지식재산 교육

한국창업보육협회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협력해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연계 가능한 맞춤형 지식재산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새로운 산업 흐름을 이끌어 갈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지원대상

- 초기 창업기업, 중소기업 관계자 등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예비창업자(대학생 포함), 거점지역 중소기업 관계자
 - * 창업보육매니저 등 기업보육담당자도 교육 대상자에 포함 운영

지원내용

- 창업보육센터 연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운영
 - 중기부·한국창업보육협회와의 협력으로 전국 창업보육센터 대상 사전 지식재산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거점 교육센터 선정 및 지식재산 교육 운영
 - 거점 교육센터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교육 커리큘럼 설계 및 강사풀 구성
 - * 각 창업보육센터 수요에 따라 ①범용센터(지식재산 개요 중심교육) ②특화센터(센터기술 기반 지식재산 융합교육)로 구분하여 운영
 - 센터별 3회차 내외 기술분야별 맞춤형 교육 기획 및 운영
 - * 회차당 3시간 내외로, 입주기업의 지식재산 교육수준 및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 개요교육부터 분쟁 대응, IP금융, 특허정보 활용실무 등 실무사례 중심의 교육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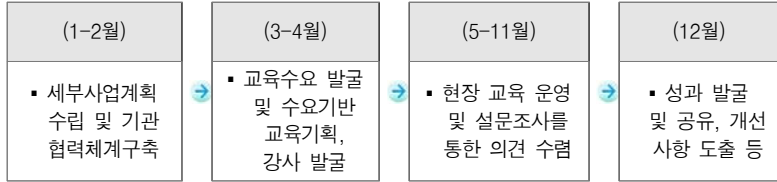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교육 거점 센터 수 확대 운영 예정(안) ('21년 10개 → '22년 12개)

신청·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 교육광고 및 신청 접수 안내 진행

● 추진절차(안)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02-3459-2835)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Q&A

Q. 창업보육센터 연계 지식재산 교육은 지정 센터 내 입주한 초기 창업기업만 참여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창업보육센터 연계 지식재산 교육은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관계자 등 지식재산 역량 제고 교육을 희망하는 분들은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9-38

전경련경영자문단 경영자문

중소창업기업 무료 경영자문

풍부한 현장경험과 경영노하우를 가진 대기업 임원 출신 자문위원 177명과 법무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전경련경영자문단이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와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스케일 업을 위해 무료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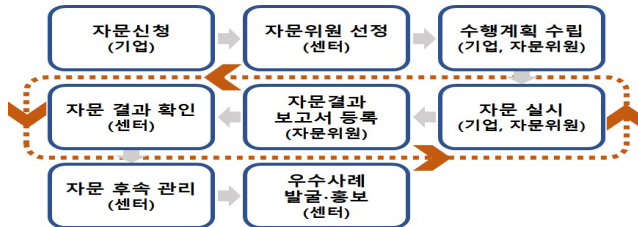
지원대상 ● 전국 중소기업,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등

지원내용

- 일반자문(단기)
 -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예비창업자)을 대상으로 경영전략관리, 마케팅, 기술·생산·품질, 해외진출, 자금·재무, 인사·노무 등 희망 자문분야에 대해 원포인트 현장자문 제공
- 비즈니스 멘토링(중장기)
 - 전경련 경영자문위원이 6개월간 ‘비상근 고문(멘토)’이 되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중장기 무료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일반자문 진행 중 종합적인 경영자문 희망 시 센터에 서류 요청 및 제출 후 진행

신청·접수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www.fkils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목표 달성시까지 지속 자문(장기·밀착공동 자문)

문의처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 02-3153-7950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 : www.fkilsc.or.kr

9-39

경영닥터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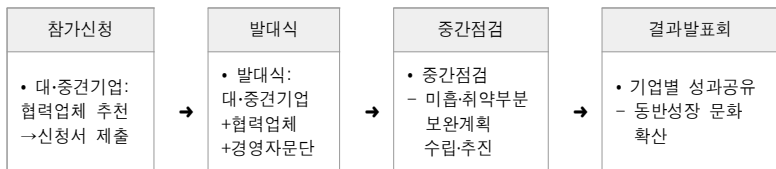
대·중견기업, 협력업체, 경영자문단 3자 협력 자문으로 대·중견기업 1·2차 협력업체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6개월간 현장 중심 자문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동반성장 지수 평가대상 대·중견기업의 협력업체

지원내용 ● 대·중견기업 협력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실천

협력업체	전경련 경영자문단	대·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신청→대·중견기업 - 경영애로 및 경영역량 강화가 필요한 분야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매칭→협력업체, 대·중견기업 결과 안내 - 담당자문위원 선정(매칭) - 자문프로그램 기획·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체추천→센터 - 참여업체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협조 - 경영자문 CEO 참여 - 자문이행 전담TFT 설치·운영(권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제공(6개월 이내) - 종합 경영진단, 강점·약점 분석 - 마케팅 등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 - 협력업체에 무료경영자문, 경영노하우 전수 - 맞춤형 교육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점검 - 협력업체에 대한 공동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협력업체 애로 파악·지원 - 협력업체 경영닥터제 성과 분석·취약부분 보완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결과 성과분석 - 실행내용에 대한 성과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관리 - 결과발표회, 비즈니스멘토링 등 사후 지원·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관리 - 협력업체에 대한 지속 관리

신청·접수 ● 센터 공문발송(대·중견기업) 및 홈페이지 공지 → 대·중견기업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참여기업 확정



문의처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 02-3153-7953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 : www.fkilsc.or.kr

9-40

중소기업 경영진단

중소기업 경영역량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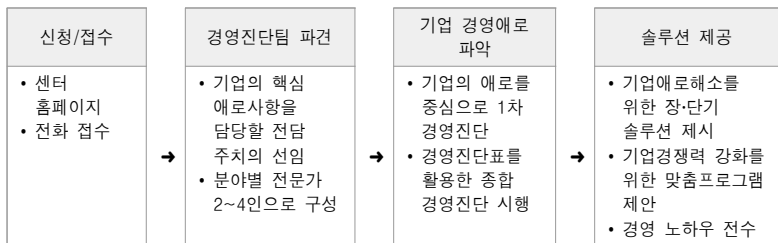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가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영전략, 인사조직, 재무, 마케팅, 생산관리, 연구개발 6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내부의 경영역량을 분석하고 경영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전국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

지원내용 ● 경영진단 매뉴얼을 활용한 종합 경영진단 시행

- 진행기간 : 1개월 이내(협의 후 조정 가능)
- 장 소 : 현장방문
- 진단위원 : 전경련 경영자문단 자문위원 2~4인으로 구성된 경영진단팀
- 진단대상 : 중소기업(CEO, 부문별 임원, 부서 등)
- 진단내용 : 기업을 방문하여 각 분야별 현장진단 실시
- 진단비용 : 투입 인력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유·무료 협의

신청·접수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www.fkils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또는 전화(02-3153-7950)



문의처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 02-3153-7950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 : www.fkilsc.or.kr

9-41

맞춤형 교육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자문위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 전국 중소기업,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등
- 지원내용**
-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경영전략, 인사/노무, 마케팅, 기술/생산, 해외 시장개척, 법무 등 기업별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제공
 - 교육대상 :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예비창업자) CEO 및 임직원
 - 교육접수 : 연중수시
 - 교육장소 : 신청기업에서 준비
 - 교육비용 : 무료
 - 교육커리큘럼 : 경영전략, 인사/노무, 마케팅, 기술/생산, 해외시장 개척, 창업, 법무, 기타 8개 분야별 93개
- 신청·접수**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www.fkil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문의처**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 02-3153-7950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 : www.fkils.or.kr

Q&A

Q. 교육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업 CEO 및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시간, 장소, 주제에 맞춰 자문위원 강사를 매칭 및 파견해드립니다.

Q. 교육커리큘럼에 희망하는 교육이 없으면 교육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희망하는 교육이 커리큘럼에 없는 경우 센터에 직접 연락하시어 희망하는 교육을 말씀해주시면 맞춤형 교육을 개설해드립니다.

9-42

중장년 전직 지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및 재직자, 퇴직예정자 대상으로 전직스쿨, 생애설계, 재도약프로그램 등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중장년 구직자를 중소기업에 알선하는 취업 매칭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중장년 구직자 및 재직자, 퇴직(예정)자, 중장년 채용 기업

지원내용 ● 전직스쿨프로그램

- 내용 : 중장년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 전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퇴직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전직계획 수립 및 구직역량을 강화하여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 구성 : 기업과정과 일반과정으로 나뉘서 운영

* 기업과정: 기업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기업단위별로 운영

* 일반과정: 10인 이하의 소규모 퇴직으로 기업과정에 참여가 어려운 퇴직 예정자를 위한 과정 운영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 내용 : 장년에 진입하는 시점에 생애주기의 이해와 생애경력 점검을 통해 인생 후반부 일(활동)영역을 확장시켜 능동적으로 삶을 설계 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구성 : 구직자과정과 재직자과정으로 나뉘서 운영

* 구직자과정: 만 40세 이상 구직자

* 재직자과정: 만 40세 이상 재직자

● 재도약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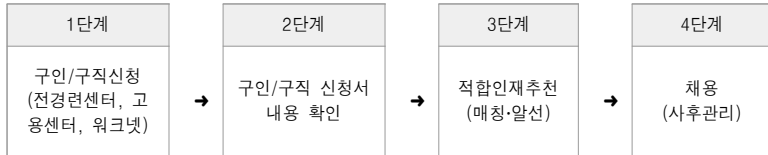
- 내용 : 중장년 구직자에게 재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퇴직 후 변화관리, 역량진단, 눈높이 조정, 취업 역량 강화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조기 재취업 및 창업·귀농·귀촌·사회공헌 등 인생 2막을 지원

- 구성 : 구직자 과정

* 구직자과정: 만 40세 이상 구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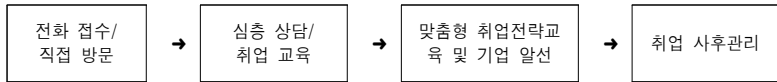
● 취업 알선

- 내용 : 중장년 채용 희망 중소기업과 적합한 구직자를 매칭하여 구인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맞춤 일자리를 알선



신청·접수

- 전경련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02-3153-7962~3)에 전화 신청·접수 또는 고용센터 직접 방문



문의처

- 전경련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02-3153-7962~3



Q. 40세 이상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본 사업은 40세 이상의 중장년 구직자 및 재직자,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Q. 비용은 무료인가요?

A. 네, 저희 센터에서 제공되는 중장년 교육 및 취업 알선은 모두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9-43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를 지원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높은 방송광고 제작비 부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방송광고시장과 중소기업간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방송통신발전기금사업)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
 -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
 -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 그린비즈 중소기업, 글로벌IP(지식재산)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지원 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 * 인증서는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인증기간 유효한 것에 한함
 - 고용우수인증 기업(지자체, 고용노동부 발급) 및 비수도권 기업에 가점 5점 부여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전년도 본 사업을 통해 광고제작비를 지원받은 기업
 - * 단, 라디오 제작비 지원 기업은 TV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신청 가능
- ▶ 직전 2개년도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수행 중도 포기한 기업
- ▶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채널에 방송광고를 집행한 기업

지원내용

- TV : 전체 제작비의(부가세 제외) 50%, 지원금액 최대한도 4,500만원
- 라디오 : 전체 제작비의(부가세 제외) 70%, 지원금액 최대한도 300만원
 - 지원금액은 사업수행 협약서에 따라 검증절차 완료 후 최종 조정된 방송광고물제작비 지급(부가세 제외)
 - 본 사업은 지원대상 선정기업의 신규 제작 방송광고물만 대상으로 인정함(신규 제작 방송광고물의 최초 심의 신청일은 협약체결일 이후여야 함)

-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kobaco.co.kr/smad)를 통해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 및 접수
 - 1월말 ~ 2월초 공모 개시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계량) 성장성(매출증가), 안정성(순이익), 방송광고 집행예정 규모
- ▶ (비계량) 상품경쟁력, 독창성(시장 개척 및 선도의 수준)
 - *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협의회'를 구성,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

- 문의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 : 02-731-7317~7321
 - 사업 홈페이지 : www.kobaco.co.kr/smad
 - 기업마당 : www.bizinfo.go.kr

※ 상기 사항은 2021년 11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2022년 지원사업 모집 시 내용 변동 가능
 자세한 사항은 2022년 1~2월 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9-44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송출비를 지원

비용 부담이 높은 방송광고 송출비의 할인 또는 보너스 광고 제공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
 -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
 -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우수녹색경영 중소기업, 녹색인증 중소기업, 하이서울브랜드기업, 글로벌IP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중소기업유통센터 지원기업, 연구소 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기업, 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기업, 소셜벤처기업, 기술보증기금 지원기업, 신용보증기금 지원기업, 창업진흥원지원기업, KOBACO 방송광고지원 기금사업수행기업, 스마트공장인증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 * 인증서는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기간 유효한 것에 한함
 - 우대사항 : 신기술개발/정부선정 등의 해외수출기업, 혁신성장동력 분야 제품 생산기업, NEP/NET 등 신기술/아이디어제품 공인 생산업체, 국제전시회/신기술발명전시회 수상 경력, KOBACO 혁신형 중소기업방송광고활성화지원사업 선정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지상파(전국) 광고를 집행한 기업
- ▶ 본 사업을 통해 광고 송출비를 지원받은 기업
- ▶ 방송광고와 관련 행정처분,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고 있거나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지원내용

- 방송광고 송출비 70% 할인 혹은 250% 보너스 제공 (계약일로부터 3년간)

-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kobaco.co.kr/smad)를 통해 매월 20일까지 신청 및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 혁신노력, 성장성 및 파급효과, 광고 계획 등
- *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협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

- 문의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 : 02-731-7317~7321
 - 사업 홈페이지 : www.kobaco.co.kr/smad

Q&A

Q.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도 이 사업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Q. 지원대상이 되면 TV와 라디오 광고비 중 하나만 지원받나요?

A. 아니요, 지원기업이 KOBACO를 통해 광고 청약하는 모든 매체에 대해 지원혜택을 드립니다.

9-45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소상공인 지역방송 광고제작·송출비 지원

자금 및 정보 부족으로 방송광고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지역밀착형 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방송광고 시장과 소상공인이 상호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방송통신발전기금사업)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 가점사항(2점/100점) 부여 대상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내 '고시' 참조)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백년가계, 백년소공인에 선발된 소상공인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우수사례 선정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상파 방송광고 집행경험이 있는 기업
- ▶ 방송광고금지품목 제조/판매 업종(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등)
- ▶ 소상공인 정책지원 배제업종(유형향락업종, 여관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및 프랜차이즈 업종
- ▶ 정부지자체 유사사업에서 동일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기업
- ▶ 휴폐업 및 부도, 세금 체납 기업

지원내용

- 전체 제작비와 송출비(부가세 제외)의 90% 지원(최대한도 900만원)
 - 제작비는 선정 이후 신규로 제작한 방송광고물에 대해서만 지급
 - 송출비는 지역밀착형 매체(로컬 매체) 광고시에만 지원
 - 사업수행 완료 후 협약서에 따라 검증 절차를 완료한 후 지원금 지급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지원기업 확대 : 136사 → 177사(1차 107사, 2차 70사 모집)
 - * 비수도권 지역 최소 100사 이상 선발 예정
- 해당 지역 전문광고인에 의한 1:1 맞춤형 광고마케팅 컨설팅

-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kobaco.co.kr/smad)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 1차 공모 : 1월 말 ~ 2월 초 예정(지원대상 발표 3월 초)
 - 2차 공모 : 6월 중 예정(지원대상 발표 7월중)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계량) 지원항목 다양성 (제작, 송출 지원)송출지원)제작지원)
- ▶ (비계량) 사업이해도, 광고적합성, 성장기대효과, 파급효과

- 문의처**
- 사업 홈페이지 : www.kobaco.co.kr/smad
 - 기업마당 : www.bizinfo.go.kr
 - 문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02-731-7317~7321)
 - 비수도권 중소기업 권역별 상담센터
 - 부산/경남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부산지사(051-751-0400)
 - 대구/경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구지사(053-767-9900)
 - 대전/충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전지사(042-533-3821)
 - 광주/전남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주지사(062-652-3600)
 - 전주/전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전북지소(063-286-0904)

Q&A

Q. 광고제작이나 송출사업 중 하나를 골라야 하나요?

A. 아니오, 제작, 송출 모두 지원해드립니다. 최대 지원한도내에서 사용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Q.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본 사업 진행 중에는 불가능합니다. 연내 사업 완료 후에는 별도의 지원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 방송권역이 전국이 아닌 지역 한정(도, 시 등)된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 광고, 지상파 방송(KBS 지역총국, 지역MBC, 지역민방 등), 케이블TV(지역 SO) 및 IPTV 큐툰광고 포함

9-46

ICT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지원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국내 ICT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기업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을 지원하며, 컨설팅 결과에 도출된 주요 취약점 조치를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을 원스톱으로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 ICT인프라를 보유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불가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은 지원불가
- ▶ 최근 3개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동일 사업 참여자
- * 자세한 사항은 22년도 ICT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공고문(kisa.or.kr 공지사항) 참고 (5월중 게시)

지원내용

- 중소기업 규모에 따른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 제공
 - 신청기업의 ICT인프라 규모, 업종, 정보보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별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 제공
- 정보보호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조치가 시급한 보안 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조치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을 매칭형태로 지원
 - * 자세한 사항은 22년도 ICT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공고문(kisa.or.kr 공지사항) 참고 (5월중 게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지역정보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risc.kis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매년 5월 중순 ~ 10월 말

문의처

- 홈페이지 참고 : risc.kisa.or.kr

Q&A

Q.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은 전부 무료 인가요?

A. 정보보호 컨설팅은 전액 무료이며, 보안솔루션은 기업의 일부 매칭비용이 부담됩니다.

Q. 솔루션 구입 없이 컨설팅 컨설팅만 또는 컨설팅 없이 솔루션 구입만 진행이 될까요?

A.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컨설팅 및 솔루션 도입을 모두 진행해주셔야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9-47

ICT영세·중소기업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지원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지원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저예산으로도 지속·관리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불가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은 지원불가
- ▶ 최근 3개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동일 사업 참여자
 - * 자세한 사항은 22년도 ICT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공고문(kisa.or.kr 공지사항) 참고 (5월중 게시)

지원내용

-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도입 지원
 - 기업의 최소한의 정보보호 현황을 조사하고 파악된 정보보호 취약점을 조치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서비스 도입 비용을 매칭형태로 지원
 - * 자세한 사항은 22년도 ICT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공고문(kisa.or.kr 공지사항) 참고 (5월중 게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지역정보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risc.kis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매년 5월 중순 ~ 10월 말

문의처

- 홈페이지 참고 : risc.kisa.or.kr

Q&A

Q.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도입은 전부 무료 인가요?

A. 보안서비스 도입 비용은 기업의 일부 매칭비용이 부담됩니다.

Q.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지역정보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risc.kisa.or.kr/>)에서 운영중인 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로 정보보호 수준현황을 확인, 지원하고 있습니다.

9-48

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 서비스

중소기업 웹보안 수준 강화

ICT 중소기업, 침해사고 발생 중소기업, 기타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홈페이지 보안강화 서비스(웹취약점 점검, 웹셀 탐지도구, 웹방화벽, 디도스 사이버대피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보안수준 강화 지원

지원대상

- ICT 중소기업, 침해사고 발생 또는 서비스 이용 희망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대기업 및 중견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종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유의사항> 서비스 종류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서류 제출이 미비할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웹취약점 점검
 - 해킹 사고에 많이 악용되는 홈페이지 취약점(SQL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스크립팅 등)을 원격으로 점검하고 결과보고서 제공
- 웹셀 탐지도구(휘슬)
 - 공격자가 원격에서 웹서버에 악의적인 명령을 수행하도록 작성된 파일인 웹셀 및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등을 검출하는 소프트웨어
- 웹방화벽(캐슬)
 - 홈페이지 대상 해킹공격 시도를 사전에 탐지·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 홈페이지로 향하는 디도스 트래픽을 분석·차단하여 정상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신청·접수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www.boho.or.kr 접속 → 보안점검 메뉴 → 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 클릭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온라인 양식),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처리절차 ● 웹취약점 점검

온라인 신청

적격심사

점검 수행

점검 보고서 제공

● 웹셀탐지도구(휘슬), 웹방화벽(캐슬)

온라인 신청

적격심사

이용방법 안내

서비스 이용

●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온라인 신청

적격심사

서비스안내및압주조행

실시간 방어

지원규모 ● 국내 중소기업 대상 무료 웹보안 강화 서비스 보급·지원 (예산 2.8억원)
* '21년 지원현황 : 웹취약점 점검-웹셀 탐지도구-웹방화벽(약 18,000여건), 디도스 사이버 대피소(약 5,000여건)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이버방역단 : 02-405-5274, 5584
● 자세한 사항은 KISA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 참고

Q&A

Q. 중소기업 홈페이지 관리자가 아닌 개인사용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휘슬은 정보보호 전문기술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용이나 연구용으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Q. 웹셀 탐지도구(휘슬)과 웹방화벽(캐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휘슬은 공격자가 웹서버에 설치한 웹셀 등을 탐지하는 프로그램이며, 웹방화벽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어설명

웹셀 : 공격자가 원격에서 웹서버에 악의적인 명령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해킹도구

디도스 : 공격자가 대상 웹 서버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트래픽을 흘려보내 웹 서버에 과부하를 유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발행일 : 2021년 12월

발행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통계분석과

세종시 가림로 180 (어진동666)

전 화 : (044)204-7475

팩 스 : (044)204-7479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